

# 남북대화 제61호

(1994. 10. ~ 1994. 12)

# < 목 차 >

I.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 .....	3
1. 발표내용 .....	3
2. 배경 .....	6
3.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과제 .....	7
4. 북한의 반응과 평가 .....	8
II. 미·북 3단계 고위급 회담 2차 회의 .....	9
1. 경과 .....	9
2. 미·북 합의 내용 .....	13
3. 미·북 합의 이후 동향 .....	17
부록 .....	20
1. 분야별 남북회담 일지 종합 .....	20
2. 최근 남북관계 일지(1994. 9. 16~11. 30) .....	73

## I.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

### 1. 발표내용

김영삼 대통령은 11월 7일 경제인들이 마련한 대통령 아·태 경제협력체(APEC)정상회담 참석과 필리핀·인도네시아·호주 등 3개국 순방 환송 만찬 연설을 통해 "앞으로 남북관계는 창조적이고 실질적인 협력관계로 접근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과 북이 상부상조의 정신 아래 당국간의 협의를 거쳐 경제협력의 기본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여건 조성을 위하여 우리 기업인들의 방북허용 등 남북경제 협력사업을 활성화하는 단계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에 대한 후속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11월 8일 이홍구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주재로 제17차 통일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미·북 핵협상 타결로 이후 이루어진 남북관계의 새로운 국면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하고 민족공동 발전의 길을 넓혀 나가기 위한 초보단계의 남북경협을 활성화해 나아가기로 하였다.

이날 통일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의결하여 발표한 경제협력을 위한 당면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인의 방북 등 남북경제인사의 상호방문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북한과의 시범사업 협의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우리 기업인의 북한 방문 및 대북 투자환경 조사를 위한 민간차원의 조사단 파견과 함께 투자설명회, 우리의 산업현장 견학 등에 북한 경제인을 초청하는 사업을 허용해 나아갈 것이다.

둘째, 현재 진행중인 위탁가공 교역을 활성화해 나아가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현지에서의 생산설비운용, 기술지도, 품질관리 등을 위한 기술자 방북과 위탁가공 교역을 위한 시설재 반출을 허용해 나아갈 것이다.

셋째, 시범적 경제협력 사업을 허용하여 북한 주민의 생활향상과 민족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부터 소규모의 시범적 경제협력 사업과 함께 경험추진을 위해 필요한 국내기업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를 허용해 나아간다.

이와 함께 제3국에서의 건설 및 자원개발 현장에 북한 노동 인력을 시범적으로 고용하고, 제3국 합작 또는 현지법인을 통한 투자와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협력사업 참여 등을 허용해 나아간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상황에 따라 남북당국간 협의를 거쳐 투자보장과 이종과세방지 등 경제협력의 기본틀을 마련해 나아갈 것이다.

정부는 이와 같이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를 당면 조치사항으로 발표하면서, 이러한 조치로 남북경협에 대한 과잉기대를 갖거나 서두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분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이 조치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가까운 시일 내에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를 소집하여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들을 마련할 것임을 예고하였다.

이어서 정부는 11월 24일 이홍구 통일부총리 주재로 '제25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규정들을 심의하였다.

이날 심의회의에서는 남북경제교류협력이 남북교류협력을 규정한 제반 국내법 절차에 따라 신중하고 질서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관련 규정과 구체적 대책방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이날 '제25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심의된 규정들은 다음과 같다.

□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 · 남북경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 구비서류들을 명시하고 협력사업자 승인신청 시에는 북한측과의 의향서, 협력사업 승인신청시에는 북한측과의 협의서와 북한당국의 확인서를 신청서류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 · 남북경협을의 대상을 합영·합작투자, 단독투자, 제3국과의 합작투자·상대방 주민 고용 등으로 구체화하였다.

---- · 경협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수시방북이 필요한 경우 1년6개월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하였으며, 수시방북이 허용된 기간 중에는 신고로 방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 협력사업의 승인신청 처리기간을 현행 50일에서 30일로 단축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2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내기업과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

---- · 국내기업과 경제단체는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조사, 연락, 연구활동 등을 위한 북한지역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구비서류·승인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 · 기업과 은행 등 경제기관이 북한지역에 설치하는 사무소의 상주기간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통일원장관이 정하도록 하며, 사무소 설치 지역은 북한 전지역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 사무소 주재원이 업무추진을 위해 수시방북이 필요한 경우 1년 6개월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하였으며, 수시 방북이 허용된 기간 중에는 신고로 방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남북한 교역대상 물품 및 반출·반입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

---- · 대북한 위탁가공교역을 위한 생산설비 반출절차로서 무상반출, 100만불(연간 누계 300만불)이상 대규모 설비반출 등은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받아 반출하도록 하고, 소규모 설비는 외국환 은행장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북승인, 경제협력 승인 과정에서 기업인들에게 '대북투자계약서 모델', '경협협의시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기업들의 신중한 대북진출을 지원해 나아가는 한편, 남북경협을의 질서있는 추진을 위해 민간의 자율조정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 나아가기로 하였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도 남북경제교류협력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정들을 정비·간소화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아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남북경협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이중성과 불확실성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남북경협을 신중하고 차분하게 추진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는 한편, 현재 정부가 시범적으로 기업인 방북과 소규모 경협을 허용하지만 본격적

인 남북경협 추진을 위해서는 남북 당국간 합의를 통한 확실한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심의된 규정들을 바탕으로 남북경제교류협력이 질서있고 신중하게 추진되어 남북  
관계 개선과 '민족발전공동계획' 구상의 실현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 2. 배경

정부는 지난해 6월 22일 제11차 통일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남북경협을 위한 기업인 방북 등을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시'까지 유보하여 왔다.

지난 10월 21일 미·북한 제네바 협상의 타결로 북한 핵문제 해결의 제1단계인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의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부는 남북간의 경제협력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진전시켜 나아가갈 시점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반적인 한반도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남북관계를 실질적인 협력관계로 진전시켜 나아가고 김영삼 대통령이 밝힌 '민족발전 공동계획'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간의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단계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정부의 이번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 발표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미·북한 제네바 협상에서 북한 핵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데 따른 것이다. 다시 말해, 이번 조치는 새삼스럽게 취해진 것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핵문제를 남북경협에 연계시켜온 일관된 입장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조치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이루어졌던 결정사항에 근거하여 변화된 상황에 맞게 이를 완화한 것으로, 이를 새로운 대북 제의로 보거나 정부입장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이 조치는 미·북한 제네바 합의가 충실히 이행되는 전제하에서 추진된 것으로, 앞으로 미·북한 제네바 합의의 이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남북경협의 장래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한반도를 둘러싼 새로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우리 정부의 미래지향적 노력에 따른 것이다.

세계 모든 나라가 경제와 복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아·태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아시아·태평양지역 전체가 장벽 없는 하나의 공동시장을 지향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남북한도 이러한 세계사적 흐름에 합류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민족전체의 복리증진을 남북관계의 중심으로 삼는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증진의 길을 넓혀 나아가기 위해 남북한이 하루 속히 경제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 북한은 구태의연하고 소모적인 상호 비방이나 긴장고조 정책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만 한다.

이번 조치가 이처럼 창조적이고 실질적인 남북관계라는 미래 지향적 인식에서 출발한 것인 만큼 주변정세의 역동적인 변화와 남북관계의 개선을 조화시키려는 진지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할 것이다.

### 3.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과제

정부의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 발표로 당장에 남북경협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남북경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경협 추진에 대한 남북의 실천적 의지와 더불어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당국간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의 남북경협 활성화 방침 발표에 따른 북한의 반응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북한도 남북경협을 위해서는 남북간에 이미 합의한 합의서와 경제공동위원회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바로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하루 속히 남북 당국간에 합의된 기구들이 가동되고 합의사항들이 실행에 옮겨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앞으로 기업인들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 허용되더라도 이는 방북하는 기업인들의 신변안전이나 무사귀환에 대한 남북 당국간의 합의나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다.

비록 초기단계에서는 소수 기업인들의 북한 방문이 하나의 시범케이스로 허용될 수 있다 하더라도 본격적인 남북경협을 위해서는 남북 당국간의 확실한 보장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부당국으로서의 국민의 안전과 기업의 손실을 방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상황에 따라 남북 당국간 협의를 거쳐 상호 방문인사들의 통행과 통신보장 그리고 신변안전과 투자 보장 및 이중과세 방지 등 경제협력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데 최우선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4. 북한의 반응과 평가

북한은 이번 우리 정부의 '남북경제 활성화 조치'와 관련하여 '조평통' 대변인 담화 등을 통해 우리의 최고당국자를 비방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등의 부당한 주장만을 되풀이하하였다.

이같은 북한의 반응을 예상 못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정부의 이번 조치가 북한의 호응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 민족 공동발전을 위한 장기적이며 전향적인 차원에서 취한 일방적 조치이므로 북한의 반응이 우리의 추진방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북한은 정부의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에 대해서 비난하면서도 민간차원의 경협 자체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는 민간 경협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이중적 태도를 나타내 보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와 관련해서 북한이 남북경협을 이른바 통일전선 전략과 연계시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남북경협 전망은 다시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북한이 남북경협 추진의 전제조건으로 국가보안법의 폐지나 장기수 송환 등을 요구한다면, 남북경협 뿐 아니라 남북관계의 개선마저 어렵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의 이번 경협 완화조치는 어디까지나 민족복지 향상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열어 나가는 것이다.

남북경협이 잘 진전되기 위해서는 북한은 우리의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를 순수하게 받아들여 우리 민족의 공동체 발전과 복리 증진의 새로운 계기 마련으로 이어져야만 할 것이다.



## II. 미·북 3단계 고위급 회담 2차 회의

### 1. 경과

미·북한 양측은 1994년 8월 12일 1차 회의를 마감하면서 ▷북한 흑연 감속로의 경수로 대체 및 핵 개발계획 동결문제 ▷미·북한 간 정치·경제적 관계정상화문제 ▷북한의 NPT 복귀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문제 등 기본적 조치사항과, 이의 추진을 위한 전문가회의 개최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북한 양측은 9월 10일부터 평양과 베를린에서 두 갈래의 전문가회의를 갖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 실무문제에 대해 토의하였다.

평양 전문가회의(1994. 9. 10.~13.)

-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문제

베를린 전문가회의(1994. 9. 10.~14.)

- 대북 경수로 건설지원 및 대체에너지 제공, 5MW 원자로 폐연료봉의 안전한 보관 및 처리 문제

평양과 베를린의 전문가회의에서 얻어진 협의결과를 토대로 9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 동안 제네바에서 3단계 고위급회담 2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양측은 특별사찰 및 폐연료봉의 처리 등 핵 문제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와 이를 경수로 건설과 연계시키는 방안 등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별다른 진전을 이루어내지 못했다.

그러나 10월 5일부터 2차 회의가 속개되었다. 대표단 전체회의, 전문가회의, 수석대표회의 등 여러 형식의 마라톤 협상을 거친 후, 무려 1년 반 동안 지지부진하게 끌어오던 핵 협상을 10월 17일 전격 마무리 짓고 합의를 이루어냈다.

미·북한 양측은 '기본 합의문'(Agreed Framework) 문안에 합의(1994. 10. 17.) 한데 이어 각각 본국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10월 21일 양측 수석대표가 정식으로 서명하였다.

지난해 3월 12일 북한의 NPT 탈퇴선언 이래 북한 핵 문제 해결 노력은 그 동안 대화와 제재 사이를 오가며 수많은 난관과 고비가 있었다. 2차 회의 협상 과정에서도 회담결렬의 위기가 수차례 있었으나, 가능한 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한·미 양국의 기본 입장과 공동 노력에 따라 결국 타결을 보게된 것이다.

한·미 양국은 협상 전과정을 통해, 북한 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 핵 활동에 대한 과거, 현재 및 미래의 핵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아래, 북한의 NPT 완전 복귀와 IAEA 사찰의 완전 정상화, 특별사찰을 포함한 IAEA 안전조치의 전면 이행,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 등을 협상의 궁극적 목표로 설정하였다.

3단계 고위급회담 2차 회의에서의 미·북 합의는 우리정부가 당초 추구한 목표를 완전히 달성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한반도 평화와 안정, 남북관계의 활성화, 북한 체제의 궁극적 개방 그리고 우리의 외교지평 확대 가능성이라는 보다 거시적이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2차 회의에서 채택된 합의문은 대외적으로 공개된 '기본 합의문'(Agreed Framework)과 '비공개 합의문'(Confidential Minute)의 두 가지로 되어있다. 비공개 합의문은 기본적으로 기본 합의문의

내용을 좀더 구체화하거나 북한이 공개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1994년 10월 21일 미·북한간에 타결된 기본 합의문 전문이다.

미합중국(이하 미국으로 호칭)대표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으로 호칭)대표단은 1994. 9. 23부터 10. 21까지 제네바에서 한반도 핵 문제의 전반적 해결을 위한 협상을 가졌다.

양측은 비핵화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994. 8. 12 미국과 북한간의 합의 발표문에 포함된 목표의 달성과 1993. 6. 11. 미국과 북한 간 공동 발표문상의 원칙의 준수가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I. 양측은 북한의 흑연감속 원자로 및 관련시설을 경수로 원자로발전소로 대체하기 위해 협력한다.

1)미국 대통령의 1994. 10. 20.자 보장서한에 의거하여, 미국은 2003년을 목표 시한으로 총 발전용량 약 2,000MWe의 경수로를 북한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주선할 책임을 진다.

- 미국은 북한에 제공할 경수로의 재정조달 및 공급을 담당할 국제 컨소시엄을 미국의 주도 하에 구성한다. 미국은 동 국제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경수로 사업을 위한 북한과의 주 접촉 선 역할을 수행한다.
- 미국은 국제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본 합의문 서명 후 6개월 내에 북한과 경수로 제공을 위한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계약 관련 협의는 본 합의문 서명 후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개시한다.
- 필요한 경우 미국과 북한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을 위한 양자협정을 체결한다.

2)1994. 10. 20.자 대체에너지 제공 관련 미국의 보장서한에 의거 미국은 국제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북한의 흑연감속원자로 동결에 따라 상실될 에너지를 첫 번째 경수로 완공시까지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주선한다.

- 대체에너지는 난방과 전력 생산을 위해 중유로 공급된다.
- 중유의 공급은 본 합의문 서명 후 3개월 내 개시되고 양측간 합의된 공급 일정에 따라 연간 50만톤 규모까지 공급된다.

3)경수로 및 대체에너지 제공에 대한 보장서한 접수 즉시 북한은 흑연감속원자로 및 관련 시설을 동결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해제한다.

- 북한의 흑연감속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동결은 본 합의문 서후 1개월 내 완전 이행된다. 동 1개월 동안 및 전체 동결기간 중 IAEA가 이러한 동결 상태를 감시하는 것이 허용되며, 이를 위해 북한은 IAEA에 대해 전적인 협력을 제공한다.

- 북한의 흑연감속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해체는 경수로 사업이 완료될 때 완료된다.
- 미국과 북한은 5MWe 실험용 원자로에서 추출된 사용 후 연료봉을 경수로 건설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하고, 북한 내에서 재처리하지 않는 안전한 방법으로 동 연료가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4)본 합의 후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미국과 북한의 전문가들은 두 종류의 전문가 협의를 가진다.

- 한쪽의 협의에서 전문가들은 대체에너지와 흑연감속원자로의 경수로로의 대체와 관련된 문제를 협의한다.
- 다른 한쪽의 협의에서 전문가들은 사용 후 연료 보관 및 궁극적 처리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협의한다.

II. 양측은 정치적, 경제적 관계의 완전 정상화를 추구한다.

1)합의 후 3개월 내 양측은 통신 및 금융거래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무역 및 투자 제한을 완화시켜 나아간다.

2)양측은 전문가급 협의를 통해 영사 및 여타 기술적 문제가 해결된 후에 쌍방의 수도에 연락 사무소를 개설한다.

3)미국과 북한은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양국관계를 대사급으로까지 격상시켜 나아간다.

III. 양측은 핵이 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1)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위협 또는 불사용에 관한 공식 보장을 제공한다.

2)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일관성 있게 취한다.

3)본 합의문이 대화를 촉진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가는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남북대화에 착수한다.

IV. 양측은 국제적 핵 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1)북한은 핵 비확산조약(NPT) 당사국으로 잔류하며 동 조약상의 안전조치협정 이행을 허용한다.

2)경수로 제공을 위한 계약 체결 즉시 동결 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하여 북한과 IAEA간 안전조

치협정에 따라 임시 및 일반사찰이 재개된다. 경수로 공급계약 체결시까지, 안전조치의 연속성을 위해 IAEA가 요청하는 사찰은 동결 대상이 아닌 시설에서 계속된다.

3)경수로 사업의 상당 부분이 완료될 때, 그러나 주요 핵심 부품의 인도 이전에 북한은 북한 내 모든 핵 물질에 관한 최초보고서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검증하는 것과 관련하여 IAEA와의 협의를 거쳐 IAE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하여 IAEA 안전조치협정(INFCIRC/403)을 완전히 이행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석대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교부 제1부부장  
강석주

미합중국 수석대표  
미합중국 본부대사  
로버트 갈루치

## 2. 미·북 합의 내용

미·북한 합의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북한 핵 활동에 대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핵 투명성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번 협상의 결과로, 북한은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완전 복귀하기로 합의하고, 특별사찰을 포함하여 모든 핵 시설에 대한 IAEA의 사찰을 수락하였으며, 현재와 미래의 핵 활동을 전면 동결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기존 핵 시설을 해체한다는 것을 약속하였다. 북한이 핵 활동을 동결하고 모든 핵 시설에 대한 IAEA의 사찰을 받게 되면 과거와 현재, 미래의 핵 투명성은 자연스럽게 보장되는 것이다.

또한,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사업에 있어 우리가 중심적 역할을 하게되는 한편,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과 남북대화의 재개에 합의하였다.

### 특별사찰 등 과거 핵 의혹 해소

북한은 우선, 과거 핵 의혹 규명 문제와 관련, '경수로 관련 핵심부품이 인도되기 전에' IAE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를 포함한 IAEA의 안전조치 의무를 전면 이행하기로 하였다. 여기서 IAEA의 안전조치 의무 전면 이행이란 특별사찰을 포함하는 것이다.

특별사찰 시기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다소 뒤로 미루어지긴 하였지만, 2개 미 신고시설을 군사시설이라고 주장하고, 특별사찰 문제를 이유로 NPT 탈퇴선언을 한 이래 최초로 북한이 금번 회담에서 특별사찰을 수락하고 이를 이행키로 한 것은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핵 활동 동결 및 관련시설 해체

북한은 합의서가 정식으로 서명된 날로부터 한 달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후, 기존 핵 시설의 활동을 전면 동결하기로 하였으며, 경수로 건설 공정단계에 맞추어 관련시설 일체를 해체하기로 하였다.

즉 북한은 5MW 원자로에 연료를 재 장전하지 않으며 50MW 및 200MW 원자로의 건설을 중단하는 한편, 방사화학실험실이라 불리는 재처리 시설을 폐쇄한 뒤, 이 모든 시설들을 IAEA의 감시 하에 두기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궁극적으로 이들 시설 일체를 경수로 가동 전에 해체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만약 50MW와 200MW 원자로가 완공되어 가동될 경우, 북한은 핵무기를 대량생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갖게 된다. 이 경우 북한의 핵 위협 제거는 더욱 어렵게 되는 것이므로 동 문제는 미래의 북한 핵 문제 해결에서 관건이 되는 사항인 것이다.

이와 관련, 북한의 핵 활동 동결이나 해체조치가 국제적 의무사항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핵발전소의 보유나 운영과 같은 평화적 핵 활동은 북한에게도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허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 문제의 전반적 해결이라는 구도 속에서 이러한 합법적인 핵 시설과 활동의 동결 및 해체조치를 수락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가 단순히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는 차원을 넘어서 앞으로의 핵 개발 가능성 그 자체를 원천 봉쇄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자못 크다고 해야 한다.

### 사용 후 연료봉 처리

북한이 경수로 건설기간 중 사용 후 연료봉을 재처리하지 않고 안전하게 북한 내에 보관하고 궁극적으로 제3국으로 이전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 미국과 북한은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동 연료봉의 안전보관 문제와 궁극적 처리문제를 협의하기로 하였다.

사용 후 연료봉의 제3국 이전시기와 관련, 미국이 북한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양보했다고 보는 시각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한·미 양국은 이 문제에 관하여 사용 후 연료봉을 재처리하지 않고, 또 북한내 재처리시설에 대한 폐쇄조치가 확실히 보장되기만 한다면 동 연료봉의 제3국 이전 시기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신축적일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대처하여 왔다.

#### IAEA에 의한 감시 보장

북한의 흑연 감속로 및 관련시설의 동결 등에 있어서 IAEA가 철저히 감시하고, 또 이에 대해 북한이 전적인 협력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의 현재 및 미래의 핵 활동에 대해서는 IAEA에 의한 철저한 감시 보장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 NPT 지위문제

NPT 지위 문제와 관련, 북한은 합의서에서 NPT 당사국임을 공식확인함으로써 NPT 지위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였다. 특별사찰 문제로 NPT 탈퇴선언까지 한 북한이 특별사찰을 수락하면서 NPT에 완전복귀까지 한 것은 금번 회담의 핵심적인 성과 중의 하나이다.

## 경수로 지원

미국은 북한에 대해 약 2,000MW용량의 경수로를 제공키로 하였다. 여기서 2,000MW 경수로는 1,000MW 원자로 2기를 의미하며, 이는 현재 건설중인 울진 3·4호기를 의미한다는 것이 한·미간의 확고한 입장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미·북 간에도 충분한 양해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문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에 제공할 경수로의 재원조달 및 공급을 담당할 국제콘소시엄을 구성하고 콘소시엄을 대표하여 합의문 서명 후 6개월 이내에 북한과 경수로 제공을 위한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되어 있다.

대북 경수로 제공은 북한의 핵개발 계획을 원천봉쇄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농축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수로는, 첫째 농축우라늄 수출국에 의해서 그 투명성이 확보되고, 둘째 추출된 플루토늄이 무기제조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으며, 세째 사용후 연료봉은 재처리하지 않고 반영구적인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대체에너지 제공

미국은 북한에 대해 5MW 원자로 가동과 50MW 및 200MW 원자로 건설을 동결하는데 따르는 대체에너지로서 중유를 초기에 5만톤에서 시작하여 경수로 제공시까지 최대 연 50만톤까지 공급키로 하였다.

북한에 제공하는 50만톤의 중유는 미·북 간에 아무 근거도 없이 합의된 것이 아니라 5MW 원자로 가동 및 50MW 및 200MW 원자로의 건설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에너지 손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적 검토를 기초로 한 것이며, 또한 중유는 군사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순수한 에너지 발전용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 남북대화 재개

합의문에서 북한은 "①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일관성있게 취하며, ② 본 기본합의문이 대화를 촉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남북대화에 착수키로 한다."라고 약속하였다.

북한은 당초 남북대화의 개최원칙 자체를 합의문에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한 미국측의 확고한 입장 견지로 북측은 결국 남북대화를 합의문에 포함시키는 것에 동의한 것이다.

남북대화의 재개 시점은 미·북 합의이행을 위한 각 요소와 상호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는 미·북 합의 이행과정에서 남북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를 추진해 나아갈 방침으로 있다.

## 미·북 관계개선

미·북 관계개선문제와 관련, 합의문상으로는 합의 후 3개월 내에 일부 무역 및 경제 제재를 완화하기 시작하며, 향후 전문가급회의를 통해 영사 및 기술적 문제가 해결된 후에 쌍방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궁극적으로 대사급 관계까지 격상시켜 나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한·미 양국은 남북대화와 미·북 관계개선이 상호 보조를 맞추어 나아가도록 제반 상황을 관리해 나아간다는데 완전한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 미·북한 간 연락사무소 교환 설치 는 합의문 상에 특정한 설치시한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미·북 전문가회의에서 제반 기술적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술적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미·북 관계개선과 남북한 관계의 진전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락사무소 개설 시기를 현 단계에서 예단하기는 어렵다.

더 나아가 궁극적인 미·북 수교를 위해서는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과 함께 미·북한 간의 제반 현안문제, 즉 미사일 문제, 화학무기 문제, 인권문제 등에 대한 해결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한·미 양국의 확고한 입장이다.

## 미·북 합의의 의의

미·북 합의의 가장 큰 의의는 북한 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있다.

뿐만 아니라 금번 합의는 핵문제 해결의 차원을 넘어서 한반도에서의 긴장고조를 방지하고 안정과 평화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초를 마련한 것이다. 만일 금번 회담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북한은 협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5MW 원자로에 연료봉을 재장전하거나 이미 추출된 사용 후 연료봉의 재처리를 강행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미·북대화의 기초는 파괴되고 북한 핵문제는 다시 안보리에 회부되면서 대북 제재 논의가 재개되고 또 다시 한반도에서는 지난 5월과 같은 긴장고조 상황이 재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다시 대화국면으로 복귀하더라도 문제 해결은 더욱 복잡해지고 어려워졌을 것이다.

또한 금번 합의는 남북 협력과 북한의 개방 여건 조성에도 기여하였다. 핵문제는 그간 남북관계에 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왔다. 따라서, 이제는 이러한 부담이 경감되는 계기를 통하여 남북한간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수로 지원사업에서 우리가 중심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우리 주도로 우리의 인적·물적 자원의 북한 내 유입 확대를 통해 북한의 개방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는 이를 토대로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성원으로 이끌어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3. 미·북 합의 이후 동향

미·북 합의가 타결된 다음 날인 10월 18일, 정부는 이홍구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주재로 제16차 통일관계장관회의를 갖고,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토대가 마련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환영하였다.

또한 미·북한 간 합의가 그동안 확고한 원칙과 목표에 입각하여 한·미 양국이 기울여온 공동노력의 결실임을 확인하면서, 북한이 미·북 합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한반도 안정과 평화유지에 기여토록 촉구하였다.

다음은 같은 날 외무부 대변인이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미·북한 핵협상이 10월 17일 제네바에서 타결되었다. 금번 미·북 합의는 대화에 의한 핵문제 해결이라는 기본 목표에 입각하여 그동안 한·미 양국이 기울여 온 공동노력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의 결과이며, 북한 핵문제의 근원적인 해결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한·미 양국은 협상의 전과정을 통해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왔으며, 핵문제의 철저하고 광범위한 해결이라는 기본입장에 입각하여 모든 협상과정에서 목표와 원칙을 견지하였다.

정부는 북한이 금번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여 핵의혹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은 물론, 남북관계에도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금번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계속 긴밀히 협조해 나아갈 것이다.

북한은 10월 21일 미·북회담에서의 기본합의문 서명 직후 수석대표인 강석주의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문이 '역사적인 문건'이며 '북한측의 입장과 방도가 구체적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좋게 생각한다면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한편, 북한은 또한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보낸 담보서한에서 '김정일 각하'라는 경칭을 쓴 것은 '최고 지도자이신 김정일 동지가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한 후계자로 세계에 공인되어 높은 존경을 받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1994년 11월 4일 미·북 합의와 관련한 의장성명을 채택하고, "이번 합의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와 안보유지에 긍정적인 조치로서 만족한다."며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미·북한 간 기본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지지하였다.

안보리는 미·북 합의당사국의 경수로 전환, 정치관계정상화, 평화 및 안보협력, NPT체제 강화 노력 등과 NPT 완전복귀, IAEA 안전조치 전면 이행 등의 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에 의미를 두었다. 특히 안보리는 북한의 핵활동 동결 결정이 NPT와 IAEA 안전조치협정의 범위를 넘는 자발적 조치라고 평가하고, 이에 대한 IAEA의 감시활동이 안전조치협정의 검증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IAEA에 추가적 권한을 부여하였다.

다음은 유엔 안보리의 의장성명 전문이다.

안전보장이사회는 1993년 4월 8일자 의장성명(S/25562), 1994년 3월 31일자 의장성명(S/PRST/1994/13), 1994년 5월 30일자 의장성명(S/PRST/1994/28) 및 관련결의를 상기한 이사회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이행함에 있어서 IAEA의 안전조치가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며, 핵무기확산 방지에서의 진전이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기여하고 있음을 재확인한다.

이사회는 1994년 10월 21일자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기본합의가 한반도 비핵화 및 한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전유지에 긍정적인 조치로서 이에 만족을 표명한다.

이사회는 기본합의문의 양 당사자가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흑연감속로 및 관련시설의 경수로발전소로의 전환에 상호 협력하고, (2) 정치·경제관계의 완전 정상화를 향해 나아가기로 하며, (3) 비핵화된 한반도에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4) 국제 핵확산금지체제의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할 것이라고 결정한테 대해 유의한다.

이사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기본합의문에서 NPT회원국으로 계속 잔류할 것이며, 이와 함께 IAEA 안전조치협정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겠다고 결정한테 대해 유념한다.

이사회는 IAEA 안전조치협정이 계속 유효함을 강조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후 지체 없이 동 협정을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

이사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완전한 안전조치협정 이행을 검증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의 모든 핵물질에 대한 최초 보고서의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한 검증과 관련하여 IAEA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간 협의를 진행한 후, IAEA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제반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이사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흑연감속로 및 관련시설 동결결정이 NPT와 IAEA 안전조치협정에서 요구되는 수준을 넘어선 자발적 조치로서 이를 평가한다.

이사회는 IAEA 사무총장으로부터 구두보고를 받았는 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발적 핵동결조치에 대한 IAEA의 감시활동이 안전조치협정의 검증 범위 내에 있음을 주목한다.

이사회는 IAEA에 대해 기본합의의 후속조치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활동 동결을 감시하기 위해 기본합의문에 의거 필요하다고 여기는 제반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이사회는 이와 함께 IAEA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완전한 안전조치협정이행 및 특정 관련시설에 대한 핵동결 감시활동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이사회는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동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며, 기본합의가 남북대화를 촉진시키는 분위기의 조성에도움을 주기 때문에 남북대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결정한테 대해 이를 환영한다.

본건은 계속하여 이사회에 계류될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1994년 11월 5일 다음과 같은 외무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안보리 의장성명에 대해 환영을 표시하였다.

유엔안보보장이사회는 11.4(금) 의장성명을 채택, 미·북 제네바 합의에 만족을 표명하고, 특히 북한의 IAEA 사찰의무의 완전한 이행과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는 바, 정부는 이를 적절한 조치로 평가하며 환영한다.

유엔 안보리의 이번 성명은 특히 미·북 합의사항 중 IAEA의 핵동결 감시활동에 대하여 안보리가 IAEA에 추가적 권한을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한다.

정부는 앞으로 북한이 미·북 합의를 충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남북대화의 재개와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IAEA는 1994년 11월 11일 특별이사회에서 의장요약을 채택하고 북한의 핵활동 동결을 이행하기 위한 감시활동에 착수하기로 결정하였다.

IAEA는 미·북 합의가 북한에 대해 안전조치협정의 조속한 이행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하면서 북한에 대해 관련사항의 이행을 위해 IAEA에 전면 협조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북한은 IAEA의 촉구에 앞서 1994년 11월 1일 미·북합의문에 따른 핵활동 동결을 대내외에 선언한 바 있다.

IAEA는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가동중인 핵시설을 동결시키고 이를 감시할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IAEA는 안보리로부터 정치적·국제법적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대북 핵감시 활동을 하고 이를 안보리에 충실히 보고할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갖게 된 것이다.

한편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 참석키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김영삼 대통령은 클린턴 미국 대통령, 무라야마 도미이치 일본 총리와 11월 14일 정상회담을 갖고 '남북대화 재개 등 남북관계 개선이 미·북합의 이행에 필수적'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공동 발표문을 발표하였다.

다음은 한·미·일 3개국 정상들의 이날 회동 결과에 대한 공동발표문 전문이다.

대한민국의 김영삼대통령, 일본의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 및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은 자카르타에서 회동하여 동북아시아의 안보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3국 정상은 한반도의 안정이 역내 안정과 번영에 필수적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 지역의 안보를 확고히 함에 있어 미국의 지속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3국 정상은 또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전략을 논의했으며 핵문제해결을 위한 미·북합의가 역내 안정과 번영증대를 향한 새로운 시대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 합의에 대해 강력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김대통령은 우리의 대북경협 방침과 남북관계 개선전망에 대해 두 정상에게 설명했다.

3국 정상은 남북대화의 재개 및 남북한 관계개선이 미·북합의의 완전한 이행에 필수적임을 재확인했다.

3국 정상들은 미·북합의의 성공적 이행이 대단히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계속 긴밀히 연락을 취하면서 미·북합의 이행의 모든 측면과 각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충분히 협의해 나아가기로 합의했다.

부록

1. 분야별 남북회담 일지 종합

남북체육회담(34회)

□ 남북탁구협회 회의 : 4회

-제35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1979. 4. 25~5. 5. 평양)

남북단일팀 구성·출진문제 협의

○ 회담일지(중감위회의실)

제1차 1979. 2. 27. 제3차 1979. 3. 9.

제2차 1979. 3. 5. 제4차 1979. 3. 12.

○ 대표명단

남	북
채영철, 이종하 천영석, 정주년	김득준, 박무성 김덕기, 김선일

□ 1984 LA올림픽 단일팀 구성·참가 관련 남북체육회담 : 3회

-제23회 LA올림픽 경기대회 및 기타 국제경기대회에 단일팀 구성·참가문제 협의

○ 회담일지(중감위회의실)

제1차 1984. 4. 9. 제3차 1984. 5. 25.

제2차 1984. 4. 30.

○ 대표명단

남	북
김종규, 김종하, 이종하 임태순, 남정문	김득준, 박무성, 김세진 서명호, 석태호

□ IOC 주제 로잔느 남북체육회담 : 4회

-제24회 서울올림픽 공동 개최문제 협의

○ 회담일지(로잔느 IOC본부)

제1차 1985. 10. 8.~9. 제3차 1986. 6. 10.~11.

제2차 1985. 1. 8.~9. 제4차 1987. 7. 14.~15.

○ 대표명단

남	북
김중하, 장충식, 최만립 이중하, 임태순, 남정문	김유순, 진충국, 한장은 안복만, 조명환, 장 옹

□ 1990 북경아시아경기대회 단일팀 구성·참가 관련 남북체육회담 : 15회  
-1990 북경 아시아 경기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참가문제와 이에 수반되는 남북 체육교류 실현 문제 협의

○ 회담일지(회담장소: 홀수차 평화의 집, 짝수차 통일각, 실무대표접촉 중감위회의실)

제1차 회담 1989. 3. 9.	제6차 회담 1989. 12. 22.
제2차 회담 1989. 3. 28.	제4차 실무대표접촉 1990. 1. 10.
제3차 회담 1989. 10. 20.	제5차 실무대표접촉 1990. 1. 15.
제4차 회담 1989. 11. 16.	제7차 회담 1990. 1. 18.
제5차 회담 1989. 11. 24.	제6차 실무대표접촉 1990. 1. 22.
제1차 실무대표접촉 1989. 12. 1.	제8차 회담 1990. 1. 29.
제2차 실무대표접촉 1989. 12. 6.	제9차 회담 1990. 2. 7.
제3차 실무대표접촉 1989. 12. 15	

○ 대표명단(밑줄은 실무대표접촉 대표)

남	북
장충식, 이학래, 임태순	김형진, 장 옹, 김세진
장병조(조영승, 3차~), 박수창	허혁필, 김상부

□ 주요 국제경기대회 단일팀 구성·참가 관련 남북체육회담 : 4회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참가에 관한 합의서 채택

○ 회담일지(회담장소:홀수차 통일각, 짝수차 평화의 집)

제1차 1990. 11. 29.	제3차 1991. 1. 30.
제2차 1991. 1. 15.	제4차 1991. 2. 12.

○ 대표명단

남	북
장충식, 이학래, 임태순	김형진, 장 옹, 김정식
김사홍, 박수창	김상부, 김영석

□ 탁구단일팀 실무위원회 : 2회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참가에 따른 실무문제 협의

○ 회담일지

제1차 1991. 2. 21. 통일각	제2차 1991. 2. 27. 평화의 집
----------------------	------------------------

○대표명단

남	북
박성인, 김창제, 박수창 박도천, 방광일	장 옹, 김상부, 김희진 강영삼, 박시남

□ 축구단일팀 실무위원회 : 2회

-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참가에 따른 실무문제 협의

○ 회담일지

제1차 1991. 2. 22. 평화의 집 제2차 1991. 2. 26. 통일각

○ 대표명단

남	북
오완건, 유인갑, 임태순, 이낙원, 오지철	김세진, 김정식, 이명성, 김광호, 윤윤홍

남북적십자회담(111회)

□ 남북적십자 파견원 접촉 : 5회

- 남북적십자 예비회담 절차합의 및 대표명단 교환

○ 회담일지(중감위회의실)

제1차 1971. 8. 20.            제4차 1971. 9. 3.  
제2차 1971. 8. 26.            제5차 1971. 9. 16.  
제3차 1971. 8. 30.

○ 파견원명단

남	북
이창렬, 윤여훈	서성철, 럽종련

□ 남북적십자 예비회담 : 25회

- 남북적십자 본회담 진행절차와 일시에 관한 합의문 채택

○ 회담일지(중감위회의실)

제 1차 1971. 9. 20.            제14차 1972. 1. 10.  
제 2차 1971. 9. 29.            제15차 1972. 1. 19.  
제 3차 1971. 10. 6.            제16차 1972. 1. 28.  
제 4차 1971. 10. 13.           제17차 1972. 2. 3.  
제 5차 1971. 10. 20.           제18차 1972. 2. 10.  
제 6차 1971. 10. 27.           제19차 1972. 2. 17.  
제 7차 1971. 11. 3.            제20차 1972. 6. 16.  
제 8차 1971. 11. 11.           제21차 1972. 7. 10.  
제 9차 1971. 11. 19.           제22차 1972. 7. 14.  
제10차 1971. 11. 24.           제23차 1972. 7. 19.  
제11차 1971. 12. 3.            제24차 1972. 7. 26.  
제12차 1971. 12. 10.           제25차 1972. 8. 11.  
제13차 1971. 12. 17.

○ 대표명단

남	북
김연주, 박선규, 정홍진, 정희경, 정주년	김태희, 김덕현, 조명일, 리중학, 서성철

□ 본회담 의제 문안정리를 위한 실무회담 : 13회

- 제19차 예비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본회담 의제문안 협의 및 정리

○ 회담일지(중감위회의실)

제1차 1972. 2. 21.            제 8차 1972. 4. 17.

- 제2차 1972. 2. 24.      제 9차 1972. 5. 9.
- 제3차 1972. 2. 28.      제10차 1972. 5. 12.
- 제4차 1972. 3. 6.      제11차 1972. 5. 19.
- 제5차 1972. 3. 10.      제12차 1972. 5. 22.
- 제6차 1972. 3. 17.      제13차 1972. 6. 5.
- 제7차 1972. 3. 24.

○ 대표명단

남	북
정홍진, 정주년	조명일, 리종학

- 본회담 진행절차 협의를 위한 실무회의 : 3회
  - 제24차 예비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본회담 진행절차 문제협의

○ 회담일지(중감위회의실)

- 제1차 1972. 7. 27.      제3차 1972. 8. 9.
- 제2차 1972. 8. 3.

○ 대표명단

남	북
정주년	리종학

- 남북적십자 본회담 : 10회

○ 회담일지

- 제 1차 1972. 8. 29.~9. 2. 평양
  - 의제 5개항의 확인 채택
  - 7·4공동성명 정신과 적십자 원칙에 기초하여 이산가족의 고통을 풀어 주고 통일의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데 합의
- 제 2차 1972. 9. 12.~9. 16. 서울
  - 의제해결에 민주주의 원칙과 자유로운 원칙, 남북공동성명 정신과 동포애 그리고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구현 합의
- 제 3차 1972. 10. 23.~10. 26. 평양
  - 의제 제1항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 토의 개시
- 제 4차 1972. 11. 22.~11. 24. 서울
  - 남북적십자 공동위원회와 남북적십자 판문점 공동사업소 설치에 합의



제 5차 1973. 3. 20.~3. 23. 평양

제 6차 1973. 5. 8.~5. 11. 서울

제 7차 1973. 7. 10.~7. 13. 평양

제 8차 1985. 5. 27.~5. 30. 서울

- 이산가족고향방문단 예술공연단 교환방문 실시에 합의

제 9차 1985. 8. 26.~8. 29. 평양

제10차 1985. 12. 2.~12. 5. 서울

○ 대표명단

남		북	
1~7차	8~10차	1~7차	8~10차
이범석	이영덕	김태희	이종률
김연주	조철화	주창준	서성철
김달술	송영대	조명일(서성철 2·3차)	한연수
박선규(김유갑 5차~)	이병호	궁상호(김련주 6차~)	박영수
정희경(이병호 5차~)	정용석	리청일	김완수
정주년	이준희	한시혁	박동춘
서영훈(최문현 5차~)	이병용	김수철	김창현

○ 자문위원명단

남		북	
1~7차	8~10차	1~7차	8~10차
김준엽(박봉석 5차~)	조덕송	윤기복	강석송
양홍모(김진복 5차~)	김동환	김성류	김석준
박준규(고영복 5차~)	이경숙	강장수	최희준
구범모(손재석 5차~)	정시성	김길현(박재로 6차~)	림춘길
조덕송	안병준	백남준	김영남
송건호(이중하 5차~)	이상우	오광택	김창용
이상렬	한승주	김병식(김주철 6차~)	박재로

□ 남북적십자 대표회의 : 7회

-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개최문제 협의

○ 회담일지(중감위회의실)

제1차 1973. 11. 28. 제5차 1974. 4. 29.

제2차 1974. 2. 25. 제6차 1974. 5. 22.

제3차 1974. 3. 11. 제7차 1974. 5. 29.

제4차 1974. 4. 3.

○ 대표명단

남	북
김달술	조명일

□ 남북적십자 실무회의 : 25회

- 남북적십자 제7차 대표회의(1974. 5. 29)에서의 합의에 따라,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개최 문제 등 협의

○ 회담일지(중감위회의실)

제 1차 1974. 7. 10.	제14차 1975. 11. 28.
제 2차 1974. 7. 24.	제15차 1976. 2. 12.
제 3차 1974. 8. 28.	제16차 1976. 4. 10.
제 4차 1974. 9. 25.	제17차 1976. 6. 9.
제 5차 1974. 11. 5.	제18차 1976. 8. 20.
제 6차 1974. 11. 29.	제19차 1976. 10. 19.
제 7차 1975. 1. 24.	제20차 1976. 12. 10.
제 8차 1975. 2. 28.	제21차 1977. 2. 11.
제 9차 1975. 3. 26.	제22차 1977. 4. 28.
제10차 1975. 5. 8.	제23차 1977. 7. 15.
제11차 1975. 7. 21.	제24차 1977. 10. 14.
제12차 1975. 8. 22.	제25차 1977. 12. 9.
제13차 1975. 10. 23.	

○ 대표명단

남	북
김연주, 김달술, 정주년	주창준, 조명일, 김련주

\* 북측대표 조명일→서성철(7차~)→정재일(17차~)로 교체, 김련주는 20차 회의 이후 불참

□ 수재물자 인도·인수관련 실무접촉

- 북한측의 수재물자 인도·인수 절차문제 협의(1984. 9. 18, 중감위회의실)

○ 대표명단

남	북
이영덕, 조철화, 송영대, 최은범, 이준희	한용식, 최원석, 최기봉, 백영호, 리남인

□ 남북적십자 본회담 재개를 위한 예비접촉

-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재개문제 협의(1984. 11. 20, 중감위회의실)

○ 대표명단

남	북
조철화, 송영대, 최은범	서성철, 박영수, 박동춘

-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 교환 관련 실무대표접촉 : 3회
  -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에 관한 합의서 채택

○ 회담일지(중감위회의실)

제1차 1985. 7. 15.      제3차 1985. 8. 22.  
제2차 1985. 7. 19.

○ 대표명단

남	북
송영대, 이준희, 이병웅	박영수, 김완수, 박동춘

- 적십자 본회담 재개 및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교환 관련 실무대표접촉 : 10회

- 1985년 12월 10차 본회담 이후 중단된 남북적십자 본회담 재개와 제2차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 문제 협의

○ 회담일지(중감위회의실)

제1차 1989. 9. 27.      제6차                      1989. 11. 21.  
제2차 1989. 10. 6.      제7차                      1989. 11. 27.  
제3차 1989. 10. 16.      수석대표 단독접촉 1989. 12. 4.  
제4차 1989. 11. 8.      수석대표 단독접촉 1990. 11. 7.  
제5차 1989. 11. 13.      제8차                      1990. 11. 8.

○ 대표명단

남	북
송영대, 이준희, 이병웅	박영수, 김광수, 정덕기

- 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교환 관련 실무대표접촉 : 8회

-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1992년 8.15광복절을 계기로 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교환문제 협의

○ 회담일지(중감위회의실)

제1차 1992. 6. 5.      제5차 1992. 7. 14.  
제2차 1992. 6. 12.      제6차 1992. 7. 20.  
제3차 1992. 6. 22.      제7차 1992. 7. 25.  
제4차 1992. 7. 8.      제8차 1992. 8. 7.

○ 대표명단

남	북
이병웅, 이준구, 이정용	박영수, 김광수, 신원철

남북조절위원회 회의(22회)

-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회의 : 3회
  -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채택

- 회담일지
  - 제1차 1972. 10. 12. 자유의 집            제3차 1972. 11. 30. 서울
  - 제2차 1972. 11. 2.~11. 4. 평양

○ 대표명단

남			북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이후락	이후락	이후락	박성철	박성철	박성철
김치열	장기영	장기영	류장식	류장식	류장식
정홍진	최규하	최규하	김덕현	이경석	리완기
	강인덕	강인덕		한웅식	한웅식
	정홍진	정홍진		김덕현	김덕현

\* 대변인(남:이동복, 북:전금철)

- 남북조절위원회 본회담 : 3회

- 회담일지
  - 제1차 1972. 11. 30.~12. 2                    제3차 1973. 6. 12.~6.14.
  - 제2차 1973. 3. 14.~3. 16.

○ 대표명단

남	북
이후락, 장기영, 최규하, 강인덕, 정홍진	박성철, 류장식, 리완기, 한웅식, 김덕현

\* 대변인(남:이동복, 북:전금철)

- 남북조절위원회 간사회의 : 3회
  - 남북조절위원회 운영세칙 등 3개 합의문건 문안협의

- 회담일지
  - 제1차 1973. 3. 10. 판문각                    제3차 1973. 5. 23. 판문각
  - 제2차 1973. 4. 24. 자유의 집

○ 대표명단

남	북
정홍진, 이동복, 백천일	김덕현, 전금철, 허필국

- 남북조절위원회 부위원장회의 : 10회

○ 회담일지(회담장소 : 홀수차 판문각, 짝수차 자유의 집)

- 제1차 1973. 12. 5.      제 6차 1974. 4. 24.
- 제2차 1973. 12. 19.    제 7차 1974. 6. 28.
- 제3차 1974. 1. 30.      제 8차 1974. 9. 21.
- 제4차 1974. 2. 27.      제 9차 1975. 1. 8.
- 제5차 1974. 3. 27.      제10차 1975. 3. 14.

○ 대표명단

남	북
장기영	류장식(조명일 9차~)

□ 변칙대좌 : 3회

-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대표와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간의 대표접촉

○ 회담일지(중감위회의실)

- 제1차 1979. 2. 17.      제3차 1979. 3. 14.
- 제2차 1979. 3. 7.

○ 대표명단

남	북
민관식, 함병춘, 정홍진, 이동복	권민준, 이창선, 김석준, 백준혁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실무대표접촉(10회)

- 남북 총리회담 실무절차문제 협의

○ 회담일지(회담장소 : 1차 중감위회의실, 이후 홀수차 자유의 집, 짝수차 판문각)

- 제1차 1980. 2. 6.      제 6차 1980. 4. 18.
- 제2차 1980. 2. 19.    제 7차 1980. 5. 6.
- 제3차 1980. 3. 4.      제 8차 1980. 5. 22.
- 제4차 1980. 3. 18.    제 9차 1980. 6. 24.
- 제5차 1980. 4. 1.      제10차 1980. 8. 20.

○ 대표명단

남	북
김영주, 정종식, 이동복	현준극, 림준길, 백준혁

남북경제회담(5회)

○ 회담일지(중감위회의실)

- 제1차 1984. 11. 15.    제4차 1985. 9. 18.
- 제2차 1985. 5. 17.    제5차 1985. 11. 20.

제3차 1985. 6. 20.

○ 대표명단

남	북
김기환, 차상필(임인택 2차~), 구본태 신봉식, 김인준, 노진식, 임병석	리성록, 계형명, 백준혁(한영읍 2차~) 허항찬, 리진식, 손종철, 김해룡

남북국회회담(13회)

□ 예비접촉 : 2회

- 남북국회회담 본회담 의제 및 진행관련 제반문제 협의

○ 회담일지(중감위회의실)

제1차 1985. 7. 23. 제2차 1985. 9. 25.

○ 대표명단

남	북
권정달, 정시채, 신순범, 박관용, 강경식	전금철, 주창준, 최장룡, 럽국렬, 우달호

□ 준비접촉 : 11회

○ 회담일지

(회담장소 : 홀수차 통일각, 짝수차 평화의 집, 수석대표 단독접촉 평화의 집)

제1차	1988. 8. 19.	제 6차	1988. 11. 17.
제2차	1988. 8. 20.	제 7차	1988. 12. 29.
제3차	1988. 8. 22.	제 8차	1989. 10. 25.
수석대표 단독접촉	1988. 8. 24.	제 9차	1989. 11. 29.
제4차	1988. 8. 26.	제10차	1990. 1. 24.
제5차	1988. 10. 13.		

○ 대표명단

남	북
박준규(채문식 7차~), 이한동(김현욱 7차~), 김봉호 박관용, 김용환(이희일 8차~)	전금철, 안병수, 리동철 리주웅, 박문찬

남북고위급회담(112회)

□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 10회

- 남북고위급회담 개최에 관한 합의서 채택

○ 회담일지

(회담장소 : 홀수차 평화의 집, 짝수차 통일각, 실무대표접촉 중감위회의실)

- 제1차 예비회담 1989. 2. 8.            제6차 예비회담        1990. 1. 31.
- 제2차 예비회담 1989. 3. 2.            제7차 예비회담        1990. 7. 3.
- 제3차 예비회담 1989. 10. 12.        제1차 실무대표접촉 1990. 7. 6.
- 제4차 예비회담 1989. 11. 15.        제2차 실무대표접촉 1990. 7. 12.
- 제5차 예비회담 1989. 12. 20.        제8차 예비회담        1990. 7. 26.

○ 대표명단(밑줄은 실무대표접촉 대표)

남	북
송한호, 김삼훈(신성오 7차~), 용영일(박종권 3차~) 강근택(염홍철 3차, 최선의 7차~), 김보현	백남준, 유성철, 최우진 최성익, 김영철

□ 남북고위급회담 본회담 : 8회

○ 회담일지

- 제 1차 1990. 9. 4.~9. 7. 서울
  - 유엔가입문제 관련 남북실무대표접촉 개최와 적십자 본회담재개를 촉구하는데 합의
- 제 2차 1990. 10. 16.~10. 19. 평양
- 제 3차 1990. 12. 11.~12. 14. 서울
- 제 4차 1991. 10. 22.~10. 25. 평양
  - 합의서의 단일문건 채택, 명칭, 내용구성체계 등에 합의
- 제 5차 1991. 12. 10.~12. 13. 서울
  -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
- 제 6차 1992. 2. 18.~2. 21. 평양
  -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등 발표
  - 정치, 군사, 교류·협력 분과위원회, 핵통제공동위원회 등의 일정 합의 '공동발표문' 발표
- 제 7차 1992. 5. 5.~5. 8. 서울
  -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 채택·발효
  - 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 등 합의문 발표
- 제 8차 1992. 9. 15.~9. 18. 평양
  -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 등 기본 합의서 부속합의서 채택·발효
  - 화해, 군사, 경제·교류협력, 사회문화교류·협력 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일자 등 합의문 발표

○ 대표명단





○ 회담일지

제1차 1991.11.11. 통일각

제2차 1991.11.15. 평화의 집

제3차 1991.11.20. 통일각

제4차 1991.11.26. 평화의 집

○ 대표명단

남	북
송한호, 임동원, 이동복	백담준, 최우진, 김영철

핵문제 협의를 위한 대표접촉 : 3회

-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합의 · 가서명

○ 회담일지

제1차 1991.12.26. 통일각

제2차 1991.12.28. 평화의 집

제3차 1991.12.31. 통일각

○ 대표명단

남	북
임동원, 이동복, 김재섭	최우진, 김영철, 김수길
반기문, 박용옥	최한춘, 최영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문본교환을 위한 대표접촉 : 2회

○ 회담일지 (중감위 회의실)

제1차 1992.1.14.

제2차 1992.1.21.

○ 대표명단

남	북
임동원	최우진

분과위원회 구성 · 운영문제 협의를 위한 대표접촉 : 3회

-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 · 운영에 관한 합의서’ 합의 · 가서명

○ 회담일지

제1차 1992.1.23. 평화의 집

제2차 1992.1.29. 통일각

제3차 1992.2.7. 평화의 집

○ 대표명단

남	북
임동원, 이동복	최우진, 김영철

-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문제 협의를 위한 대표접촉 : 7회  
 -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합의·가서명

○ 회담일지 (회담장소 : 1차 평양, 이후 짝수차 통일각, 홀수차 평화의 집)

- |                |                |
|----------------|----------------|
| 제1차 1992.2.19. | 제5차 1992.3.6.  |
| 제2차 1992.2.27. | 제6차 1992.3.10. |
| 제3차 1992.3.3.  | 제7차 1992.3.14. |
| 제4차 1992.3.4.  |                |

○ 대표명단

남	북
임동원, 공로명	최우진, 김영철

- 남북정치분과위원회 : 15회  
 - 「기본합의서」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합의·가서명

○ 회담일지

(회담장소 : 홀수차 평화의 집, 짝수차 통일각, 위원접촉 중감위 회의실)

- |                       |                      |
|-----------------------|----------------------|
| 제1차 회의 1992. 3.9.     | 제2차 위원접촉 1992. 7.18. |
| 제2차 회의 1992. 3.27.    | 제3차 위원접촉 1992. 7.30. |
| 제3차 회의 1992. 4.23.    | 제4차 위원접촉 1992. 8.5.  |
| 제1차 위원접촉 1992. 4.29.  | 제5차 위원접촉 1992. 8.19. |
| 제4차 회의 1992. 5.19.    | 제7차 회의 1992. 8.28.   |
| 제5차 회의 1992. 6.9.     | 제2차 위원장접촉 1992. 9.4. |
| 제6차 회의 1992. 7.2.     | 제3차 위원장접촉 1992. 9.8. |
| 제1차 위원장접촉 1992. 7.10. |                      |

○ 대표명단(밑줄은 위원접촉 대표)

남	북
이동복, 민병석, 김달술	백남준, 김완수, 조상호
최규학, 강근택, 신광옥(김각영 7차)	최성익, 정영춘, 심태진
신정	조성대

- 남북군사분과위원회 : 12회  
 - 「기본합의서」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합의·가서명

○ 회담일지

(회담장소 : 홀수차 통일각, 짝수차 평화의 집, 위원접촉 중감위 회의실)

제1차 회의	1992. 3.13.	위원장 접촉	1992. 7.23.
제2차 회의	1992. 3.31.	제1차 위원접촉	1992. 8.3.
제3차 회의	1992. 4.30.	제2차 위원접촉	1992. 8.12
제4차 회의	1992. 5.25.	제3차 위원접촉	1992. 8.20
제5차 회의	1992. 6.9.	제7차 회의	1992. 8.26
제6차 회의	1992. 7.16.	제8차 회의	1992. 9.5

○ 대표명단(밑줄은 위원접촉 대표)

남	북
박용옥, 김희상, 임태순	김영철, 박홍수, 박성진
이영호, 김영진, 조상훈	이길청, 김민현, 박림수
채준석	원동연

□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 14회

- 「기본합의서」,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합의·가서명

○ 회담일지

(회담장소 : 홀수차 평화의 집, 짝수차 통일각, 위원접촉 중감위 회의실)

제1차 회의	1992. 3.18.	제4차 회의	1992. 5.30.
제1차 위원접촉	1992. 3.25.	제5차 회의	1992. 6.26.
제2차 위원접촉	1992. 4.2.	제6차 회의	1992. 7.28.
제3차 위원접촉	1992. 4.10.	제5차 위원접촉	1992. 8.10.
제2차 회의	1992. 4.18.	제6차 위원접촉	1992. 8.21.
제3차 회의	1992. 4.27.	제7차 회의	1992. 9.3.
제4차 위원접촉	1992. 4.28.	위원장 접촉	1992. 9.7.

○ 대표명단(밑줄은 위원접촉 대표)

남	북
임동원, 김인호(김태연 6차~), 송영대	김정우, 김채성, 손종철, 류창석
박운서, 유득환, 신현웅, 박수창	김이순(김령성 6차~), 정덕기, 김승국

□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 22회

- 남북 상호 핵사찰 규정 마련과 남북 상호 사찰 실시문제 협의

○ 회담일지

(회담장소 : 홀수차 통일각, 짝수차 평화의 집, 위원접촉 중감위 회의실, 위원장접촉 통일각)

제1차 회의	1992. 3.19.	제4차 위원접촉	1992. 9.19.
제2차 회의	1992. 4.1.	제5차 위원접촉	1992. 9.30.
제3차 회의	1992. 4.21.	제6차 위원접촉	1992.10.14.

제4차 회의	1992. 5.12.	제9차 회의	1992.10.22.
제1차 위원접촉	1992. 5.15.	제7차 위원접촉	1992.10.29..
제2차 위원접촉	1992. 5.20.	제10차 회의	1992.11.18.
제3차 위원접촉	1992. 5.23.	제11차 회의	1992.11.27.
제5차 회의	1992. 5.27.	제12차 회의	1992.12.10.
제6차 회의	1992. 6.30.	제8차 위원접촉	1992.12.14.
제7차 회의	1992. 7.21.	제13차 회의	1992.12.17.
제8차 회의	1992. 8.31.	위원장 접촉	1992. 1.25.

○ 대표명단(밑줄은 위원접촉 대표)

남	북
공로명, 반기문(정태익 7차~)	최우진, 박광원, 김경춘
정대규, 변종규, 이부직	장장천, 김수길, 최영관
이승구, 홍석범	김만길

이인모 문제와 이산가족 문제협의를 위한 대표접촉 : 2회

○ 회담일지

제1차 1992.10.1. 통일각

제2차 1992.10.5. 평화의 집

○ 대표명단

남	북
임동원, 이동복	안병수, 김정우

남북군사직통전화 설치·운영을 위한 통신실무자접촉

-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기본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가 발효(1992.9.17)됨에 따라 남북군사직통전화 설치·운영 문제 협의(1992.10.28. 중감위 회의실)

○ 대표명단

남	북
이영호, 허성, 송명호	탁우경, 조충환, 김명호
유종렬, 조홍영	김대식, 이영민

남북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접촉(8회)

- 남북 최고당국자의 특사교환 절차문제 협의

○ 회담일지 (회담장소 : 홀수차 통일각, 짝수차 평화의 집, )

제1차 1993.10.5.

제5차 1994. 3.9.

제2차 1993.10.15.

제6차 1993. 3.12.

제3차 1993.10.25.

제7차 1994. 3.16.

제4차 1994. 3.3.

제8차 1994. 3.19

○ 대표명단

남	북
송영대, 장재룡, 김일무	박영수, 최성익, 최승철

남북정상회담 예비접촉(5회)

남북정상회담 예비접촉

-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합의서 채택(1994.6.28. 평화의 집)

○ 대표명단

남	북
이홍구, 정중욱, 윤여준	김용순, 안병수, 백남준

남북정상회담 실무절차 협의를 위한 대표접촉

-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절차합의서 채택

○ 회담일지

제1차 1994.7.1. 통일각

제2차 1994.7.2. 평화의 집.

○ 대표명단

남	북
윤여준, 구본태, 엄익준	백남준, 최승철, 최성익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통신실무자접촉

-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절차 합의서에 따라 평양체류 기간중 통신문제 협의 (1994.7.7. 평화의 집)

○ 대표명단

남	북
유익현, 박영환, 정용대	김명호, 현명환, 리영립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경호실무자접촉

-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절차 합의서에 따라 평양체류기간중 경호문제 협의 (1994.7.8. 통일각)

○ 대표명단

남	북
김광주, 정한유, 정해창	최춘, 리재웅, 리금철

2. 「남북대화」 총 목차 (제1호~제60호)

제1호 (1973. 7. 4.)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관계 개관

(남북대화 주요 일지)

남북조절위원회 제3차 회의

① 회의의 경과

② 이후락 공동위원장 만찬연설

③ 이후락 공동위원장 기자회견

남북적십자 제6차 회담

① 회담의 경과

② 이범식 한적 수석대표 기자회견

기타

1. “북한은 이산가족 찾기를 원하는가”

(일본 「내외특신」 5월 1일자)

2. “조총련 단원이 본 북한”

(「동아일보」 5월 7일자)

제2호 (1973. 9 15.)

7·4 남북공동성명

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1부 남북관계의 새로운 국면

1. 북한의 대화 중단 선언

2. 이후락 위원장, 북한 성명 철회촉구

3. 북한의 진의는 무엇인가

4. 대화의 촉진을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

5. 남북대화의 전망은 어떠한가

[부록]

(1)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공동위원장 성명 (8.29.)

(2) 남북조절위원회 이후락 공동위원장 기자회견 내용

제2부 남북관계의 현안문제

1. 남북관계의 현안문제는 무엇인가
2.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의 정당성
3. 북한의 소위 '5대강령'의 허구성
4. 결론

제3호 (1973. 12. 24.)

1. 우리는 대화에서 무엇을 바라는가
2. 대화 부진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3. 8·28 김영주 성명의 진의는 무엇인가
4. 남북적십자회담은 왜 중단되고 있는가
5. 대화정상화의 전망은 어떠한가
6. '유엔'총회 '합의성명'의 의미는 무엇인가
7. 대화는 어떠한 조건 위에서 전진할 수 있는가

<자료편>

1. 6·23 평화통일 외교선언
2. 7·4 남북공동성명
3.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4. 28차 '유엔' 총회 '합의성명'
5. 남북관계 주요 일지(7·4 남북공동성명 이후)

제4호 (1974. 2. 25.)

7·4 남북공동성명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1부 대화정상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

1. 8·28 이후 남북의 정책동향
2. 남북조절위원회 부위원장 회의의 경과
3. 남북조절위원회 개편안 토의
4. 평양측 '개편안'의 정체
5. 남북적십자회담 실무대표 접촉

제2부 북한의 새로운 무력도발

1. 북한 포함, 공해에서 한국 어선 격침
2. 서울측 공동위원장의 1차 항의전문
3. 서울측 공동위원장의 2차 항의전문
4. 서울측 공동위원장의 3차 항의전문
5. 북적에 보낸 한적 전문

6. ICRC에 보낸 첫 번째 한적 전문
7. ICRC에 보낸 한적 서한
8. ICRC에 보낸 두 번째 한적 전문

### 제3부 한반도 평화의 제도적 보장

1. 박대통령 남북불가침협정 제의
2. 북한관 ‘평화협정’ 주장의 허구

## 제5호 (1974. 7. 20.)

### 제1부 남북대화의 역사적 배경

1. 한반도의 분단
2. 6·25사변 - 북한의 무력남침
3. 한반도의 새로운 긴장
4. 한국, 북한과의 대화 제의

### 제2부 남북대화

1. 대화의 개요
2. 대화의 교착과 그 원인
  - 가. 기본입장의 차이
  - 나. 남북한 경제발전 격차의 인식(평화공존의 거부)
3. 대화의 현장
4. 제29차 UN총회와 한국 문제

### 제3부 부록

1. 7·4 남북공동성명
2.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3. 6·23 선언에 즈음한 대통령 담화
4. 6·23 선언 1주년에 즈음한 대통령 담화

## 제6호 (1974. 10. 15.)

### 7·4 남북공동성명

###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 7개 항목

### 제1부 북한의 새 만행 - 대통령 암살기도

1. 8·15 저격사건 - 그 전모
  2. 거둬드는 폭력도발 - 요인 암살 음모
- ※자료 : 장기영 부위원장의 회의발언



제2부 박대통령의 광복절 제29주년 경축사  
한국,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 제시(박대통령의 경축사 전문)

제3부 남북조절위원회 제8차 부위원장회의  
서울측, 위원회 운영의 즉각 정상화 요구  
※자료 : 장기영 부위원장의 회의 발언

제4부 남북적십자 실무회의  
한적, 본 회담 속개일자 거둬 제의

제7호 (1974. 12. 24.)  
남북공동성명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평화통일 외교정책 7개 항목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

제1부 노출된 무력남침 기도  
1. 북한, 휴전선에 '남침땅굴' 구축  
2. 북한, 땅굴 공동조사를 거부  
※땅굴관계 자료

제2부 남북조절위 제9차 부위원장회의 유산  
1. 평양측, 회의연기를 또 다시 제의  
2. 서울측, 회의의 거둬진 연기에 반대  
3. 제9차 부위원장회의 1월 8일로 연기  
※회의 연기에 즈음한 서울측 대변인 성명

제3부 남북적십자 실무회의  
한적, '노부모사업' 구체안 제시  
※제6차 실무회의에서의 한적대표 발언문

제4부 1974년도 남북대화 일지

제8호(1975. 3. 28)

제1부 남북조절위원회 부위원장회의  
1. 평양측, 부위원장을 교체  
2. 서울측, 북한의 각종 대남도발을 규탄

3. 제2의 비무장지대 지하터널 발견
4. 서울측, 북한의 거듭되는 대남비방 반박

제2부 남북적십자회담 실무회의  
한적, 노부모 '사진교환'을 제의

제3부 박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  
"북한은 혁명노선을 버리고 대화에 호응하라"

제4부 자료편

- 남북공동성명
-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 평화통일외교선언 7개 항목
-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
- 제29차 유엔총회 한국문제결의안(전문)

제9호(1975. 12. 1)

제1부 박대통령, 대화재개를 촉구

1. 남북공동성명 3주년 특별담화
2. 제30주년 광복절 경축사

제2부 남북대화의 현황

1. 남북관계 1975년의 개황
2. 남북조절위원회 부위원장회의의 중단
3. 남북적십자회담 실무회담 경과

제3부 유엔의 한국문제토의와 한국의 기본입장

1. 정치위원회에서의 김동조 외무부장관 연설문

제10호(1976. 3. 20)

제1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통일

1. 박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
2. 「독매신문」 질문에 대한 박대통령의 답변

제2부 남북대화 소식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평양에 새해 첫 전화통지문  
서울측, 평양에 위원교체를 통고

<남북적십자회담>

제15차 실무회의 판문점서 개최

제3부 그 밖의 남북관계 소식

- 조총련계 재일동포 모국성묘방문
- 외지에 비친 김일성우상화
- 외국인들이 본 북한의 외교 행각

제11호(1976. 11. 25)

제1부 평화와 통일에의 대도

박대통령의 광복 31주년 경축사  
박외무의 6·23 선언 3주년 성명

제2부 남북대화 소식

개황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남북의 고미술품 교환전시를 제의  
서울측, 공동위원장의 7·4 4주년 성명

<남북적십자회담>

한적측, 수석대표 면담을 제의  
실무회의의 경과

제3부 그 밖의 남북관계 소식

북한판 도끼외교의 좌초  
계속되는 조총련계 재일동포의 모국성묘 방문

제4부 자료

남북대화 주요 일지  
북한의 주요 정전협정위반사건 일지

제12호(1977. 5. 15)

제1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  
- 박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

제2부 남북대화 소식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남북불가침협정체결 절차 토의를 제의  
서울측, 위원교체를 발표  
장기영 서울측 공동위원장대리 서거

<남북적십자회담>

한적, 식량원조제의 수락을 촉구  
제21차 실무회의의 경과

제3부 그 밖의 남북관계 소식

북한, 상투적 위장평화공세 재연  
※'남북정치협상회의' 제의 속셈  
조총련계 재일동포 모국성묘방문

제13호(1977. 7. 30)

제1부 평화적 통일의 의지  
박외무부장관의 6·23 선언 4주년 성명

제2부 남북대화 소식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공동위원장대리 임명 발표  
서울측, 7·4 성명 5주년에 즈음하여 성명 발표

<남북적십자회담>

제22차 실무회의의 경과

제3부 그 밖의 남북관계 소식

조총련계 재일동포 모국방문  
남북조절위 서울측, 7·4 성명 5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개최

제14호(1977. 10. 15)

제1부 평화정착의 길  
박대통령의 광복절 제32주년 경축사

제2부 남북대화 소식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북한의 '2백해리 경제수역' 선포에 따른 성명 발표

<남북적십자회담>  
제23차 실무회의의 경과  
대한적십자사 총재, '8·12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6주년 맞아 담화 발표

제3부 기타 남북관계 소식  
남북직통전화 불통 1년  
남북대화의 진로

제15호(1977 12. 15)

제1부 평화적 통일에의 지향  
박대통령, 불란서 「르·몽드」 지와 회견

제2부 남북대화 소식  
제24차 남북적십자 실무회의의 경과

제3부 그 밖의 남북관계 소식  
1. 조총련계 제일동포 모국성묘방문  
2. 재이북 부조 합동경모대회 개최  
3. 남북한 이질화 '심포지움' 개최

제16호(1978. 4. 15)

제1부 평화정착과 통일의 의지  
1. 박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  
2. 박대통령, 일본 「후지」 TV와 회견

제2부 남북대화 소식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대화 정상화 촉구 성명 발표

<남북적십자회담>

제25차 실무회의의 경과

제3부 그 밖의 남북관계 소식

1. 조총련계 재일동포 모국성묘방문

2. 북한, 적화망상 선전을 재연

--- 외무부, 북한의 '비망록' 발표를 반박

3. 남북한 이질화 '심포지움'의 주제논문

○ 전통과 정치체제(차기벽)

○ 민족동질성과 이질화문제(손재석)

○ 문화와 성격구조의 이질화(고영복)

○ 이질화의 극복과 민족주의(황성모)

제17호(1978. 7. 31)

제1부 평화정착의 현실적 접근노력

박대통령, 6·23 5주년 특별담화

제2부 남북대화 소식

<남북적십자회담>

제26차 남북적십자 실무회의 유산

한적, 민족적 차원의 대화와 교류 촉구

제3부 그 밖의 남북관계 소식

1. 조총련계 재일동포 모국방문

제18호(1978. 10. 10)

제1부 평화와 번영의 길

박대통령, 제33주년 광복절 경축사

제2부 남북대화 소식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7·4 성명 6주년에 즈음하여 성명발표

<남북적십자회담>

한적, 남북적십자 총재회담을 제의

제3부 그 밖의 남북관계 소식

조절위 서울측, 제2회 학술 '세미나' 개최  
한적, 이산가족 수기집 '망향기' 출간

제19호(1978. 12. 20)

제1부 민족적 화해가 통일의 길

박대통령, 불란서 「르·피가로」 지와 회견

제2부 남북대화의 중단과 그 요인

1. 남북대화 중단의 경위
2. 남북대화의 중단요인

제3부 대한민국의 대화재개 노력

1. 대한민국의 평화통일 노력
2. 대한민국의 남북대화 재개노력

제4부 최근의 남북관계 소식

1. 대한사격연맹, 북한의 서울대회 참가를 촉구
2. 북한의 제3의 '남침땅굴' 발견

제20호(1979. 6. 30)

제1부 대한민국의 대화재개 노력

1. '1·19' 대북제의
2. 대한민국의 대화추구와 북한측 반응
3. 남북대화에 임하는 대한민국의 입장

제2부 남북간의 판문점 변칙접촉

1. 변칙대좌의 성립
2. 변칙대좌의 경과
  - 가. 2. 17 변칙대좌
  - 나. 3. 7 변칙대좌
  - 다. 3. 14 변칙대좌
3. 남북당국 실무대표회담의 유산
4. '조국전선'·'전민족대회'의 정체

제3부 남북한 탁구협회 회의

1. 남북한 탁구협회 회의의 성립
2. 남북한 탁구협회 회의의 경과

- 가. 2. 27. 회의
- 나. 3. 5. 회의
- 다. 3. 9. 회의
- 라. 3. 12. 회의
- 3. 북한측 '단일팀' 구성 주장의 허구성

#### 제4부 남북대화 주요 일지

제21호(1979. 8. 31)

- 1. '1·19 제의'와 남북대화의 좌표(김학준)
- 2. 주변정세의 변화와 남북대화의 새 국면(안병준)
- 3. 공산주의자와의 협상과 남북대화(한배호)
- 4. 남북 대화와 한반도의 평화통일(박봉식)

제22호(1979. 10. 31)

#### 제1부 평화통일의 진로

- 1. 박대통령, 광복절 제34주년 경축사
- 2. 외무부, '6·23 선언' 6주년 성명

#### 제2부 '3당국회의'의 제의와 내용

- 1. '3당국회의' 제의의 배경
- 2. '3당국회의' 제의의 내용과 의의
- 3. 북한측의 거부반응과 저의
- 4. '3당국회의'와 '3자회담'의 차이
  - 가. '4자회담'과 '6자회담'
  - 나. '3자회담'의 대두
  - 다. '3당국회의'와 '3자회담'

#### 제3부 남북대화 소식

<남북조절위원회>

- 1. 서울측, 7·4 성명 7주년 성명

<남북적십자회담>

- 2. 한적, '8·12 제의' 8주년 맞아 총재 성명
- 3. 한적, 적십자회담 대표·자문위원 개편
- 4. 북적, 한적의 대화재개 촉구를 또다시 외면

#### 제4부 자료편



남북적십자회담의 경과

제23호(1980. 6. 30)

제1부 남북실무대표 접촉의 성립

1. 실무대표 접촉의 성립과정
  - 가. '모스크바 올림픽'관계 서한왕래
  - 나. 북한측, 직통전화 변칙개통 기도
  - 다. 북한측의 대남 '편지' 접수
  - 라. 실무대표 접촉의 성립과 대표단 구성
2. 남북총리회담과 대한민국 입장

제2부 남북실무대표 접촉의 경과

1. 제1차 접촉
2. 제2차 접촉
3. 제3차 접촉
4. 제4차 접촉
5. 제5차 접촉
6. 제6차 접촉
7. 제7차 접촉
8. 제8차 접촉

제24호(1980. 11. 30)

제1부 제5공화국의 평화통일 의지

1. 새 헌법의 평화통일 관련 조항
2. 전대통령, 평화통일 의지 피력

제2부 남북실무대표 접촉의 경과

1. 제9차 접촉
2. 제10차 접촉
3. 제11차 접촉의 유산

제3부 북한측의 남북실무대표 접촉 중단과 국내 반응

1. 북한측의 실무대표 접촉 거부와 우리측의 재개 촉구
2. 북한측의 접촉기피와 실무대표 접촉의 난항
3. 북한의 일방적 대화 중단과 국내 반응

제4부 남북대화 소식

<남북조절위원회>

1. 서울측, 7·4 성명 8주년에 즈음하여 성명발표
2. 북한측의 대남 비방방송 재개에 서울측 성명발표
3.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 운운에 서울측 성명발표

<남북적십자회담>

4. 한적 총재, '8·12 제의' 9주년 맞아 성명 발표
5. 한적 총재, 북적에 서한 전달  
해왕호·남진호 남북경위 및 송환교섭 경과
6. 북적, 한적의 남북적십자회담 재개 촉구를 또다시 외면

제5부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 비판

1.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의 내용
2.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의 허구성
3. 북한이 '연방제'를 주장하는 의도
4. 결론

제6부 자료편

1. '남북연방제' 주장의 연혁
2. 남북대화 주요 일지

제25호(1981. 3. 30)

제1부 평화통일을 향한 새로운 출발

1.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상호 방문' 제의
2. '1·12 제의'의 목적과 동기
3. '1·12 제의'의 의의

제2부 '1·12 제의'에 대한 국내외 반응

1. 국내 반응
2. 해외 반응
3. 한·미정상 '1·12 제의' 실현에 공동보조
4. 유엔사무총장 '1·12 제의' 실현에 협력약속

제3부 '1·12 제의'에 대한 북한 반응

1.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2. 북한의 '1·12 제의' 거부의 저의
3. 북한의 '1·12 제의' 거부에 대한 국내반응

제26호(1981. 7. 31)

제1부 평화통일을 위한 범국민적 합의기반 구축

1. '6·5' 대북제의
2.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발족

제2부 '6·5' 대북제외에 대한 국내외 반응

1. 국내 반응
2. 해외 반응
3. 북한측의 '6·5' 대북제의 거부의 저의

제3부 '아세안'이 공감한 우리의 평화통일 의지

1. '아세안' 정상들, 한국의 통일노력 지지
2. 평화통일예의 강렬한 의지

제4부 남북관계 소식

1. '남북한 체육교류 및 국제경기 단일팀 구성' 제의
2. 남북공동성명 발표 9주년에 즈음한 남북조절위 서울측 성명

제27호(1981. 11. 30)

제1부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범국민적 의지

1. 민족통일중앙협의회 대북 성명
2. 북한측의 '8·6 정당·사회단체 연합성명'
3. 각계의 반응

제2부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10주년

1.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10주년에 즈음한 대한적십자사 총재 성명
2. 남북적십자회담 주요 일지

제28호(1982. 2. 28)

제1부 전두환 대통령,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천명

1.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천명
2.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내용
3.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발표목적 및 주요 특징
4. 기존 통일방안과의 관계
5. 남북한 통일방안의 차이

제2부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에 대한 국내외 반응

1. 국내 반응
2. 해외 반응

3. 북한반응
4. 민족통일중앙협의회의 성명

제3부 민족화합, 민주통일을 위한 시범적 실천사업 20개항 제의

1. 국토통일원장관의 대북시범 실천사업 제의
2. 각계 반응

부록 : 통일문제에 관한 남북한 주요 제의 일지

제29호(1982. 10. 20)

제1부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실현을 위한 남북대화 재개 촉구

1. '남북한 고위대표회담' 개최 제의
2. '남북한 고위대표회담' 수락 촉구 성명
3.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의 통일결의문

제2부 북한측의 위장된 대화 제의

1. '남북한 정치인연합회의' 소집 주장
2. '남북한 정치인연합회의' 소집 주장의 저의

제3부 7·4남북공동성명 발표 10주년

1.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공동위원장대리의 대북성명
2. 남북공동성명의 합의사항과 북한의 유린 실태
3. 남북공동성명 정신과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제30호(1982. 12. 10)

제1부 민족화합을 앞당기기 위한 사회개방

1. '북한 및 공산권 거주동포의 모국 자유내왕 보장' 천명
2. '북한 및 공산권 거주동포의 모국 자유내왕 보장'에 대한 각계반응

제2부 '아프리카'에도 뿌리내린 민족화합 민주통일의 의지

1. 전두환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의 의의
2. '아프리카' 정상들, 대한민국의 통일노력 지지

제3부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11주년

1. 대한적십자사총재의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11주년에 즈음한 성명
2. '이산가족의 날' 제정 시행

제31호(1983. 3. 30)

제1부 통일대화의 활로를 열기 위한 지속적 노력

1. 전두환 대통령,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 개최 재촉구
2. 국토통일원장관, '남북한 당국 및 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 제의
3. 각계의 반응
4. 북한측의 반응

제2부 남북한 이산가족들의 비원과 재회추진운동

1. '1천만 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발족

제32호(1983. 7. 30)

제1부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개최

1. 전두환 대통령 개회사
  -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 수락 재촉구 및 국제의회연맹 서울총회에 북한대표 참가 환영표명
2. 각계 대표의 정책토론
3. 각계의 반응
4. 북한측의 반응

제2부 '남북한 당국 및 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 수락 재촉구

1. 손재식 국토통일원장관 성명 내용
2. '민족통일 중앙협의회' 의장 성명내용
3. 각계의 반응
4. 북한측의 반응

제33호(1983. 10. 31)

제1부 민족화합 민주통일로의 꾸준한 전진

1. 전두환 대통령, 광복 제38주년 경축사
  - 평화통일 의지와 자신감 표명
2. 손재식 국토통일원장관, 북한측에 대화호응 촉구
3. '7·4남북공동성명' 발표 11주년에 즈음한 남북조절위 서울측 성명
4. 국내반응

제2부 남북한 이산가족 재회추진운동의 새 국면

1. 이산가족찾기 운동과 관련한 대한적십자사 총재 담화문
2. 제2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
3. 1천만 이산가족 재회추진대회
4. 북한의 반응

제34호(1984. 4. 30)

제1부 일관된 평화통일예의 집념 재확인

1. 전두환 대통령 1984년도 국정연설
  - 폭력에 의하지 않는 민족통일 강조
2. 전두환 대통령의 국정연설과 우리 민족의 평화에 대한 신념
3. 국내주요반응

제2부 남북한 당사자간 대화 촉구

1. 손재식 국토통일원장관, 대북성명 발표
2. 북한측의 이른바 '3자회담' 제의
3. 국내외 주요반응

제3부 국무총리의 대북서한 전달 및 대북성명 발표

1. 배경
2. 진의중 국무총리, 북한의 정무원총리에게 보내는 서한 전달
3. 진의중 국무총리, 남북한 직접대화를 재촉구하는 성명 발표
4. 국내주요반응

제35호(1984. 8. 25)

제1부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제1차 지역회의 개최

1. 전두환 대통령 치사
  - 평화통일의 활로를 열기 위한 지속적 노력 재천명
2. 국내주요반응

제2부 남북체육회담

1. 남북체육회담의 성립
2. 남북체육회담과 우리의 입장
3. 남북체육회담의 경과
  - 가. 제1차 회담
  - 나. 제2차 회담
  - 다. 제3차 회담
  - 라. 남북체육회담의 전망
4. 회담에서 보인 북한측의 태도
5. 국내외 반응

제3부 자료편

- 남북체육회담 일지

제36호(1984. 11. 30)

제1부 민족화합과 공동번영의 길

1. 전두환 대통령 '8.20' 기자회견
  - 남북한물자교역 및 경제협력 제의
2. 국내주요반응
3. 북한측의 반응

제2부 수재물자 인도·인수와 관련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1.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의 성립
2. 남북적십자 실무접촉과 대한적십자사의 입장
3. 남북적십자 실무접촉과 그 이후의 경과
4. 국내외 반응

제3부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1. 남북경제회담 제의
2. 남북적십자회담 재개 제의
3. 제4차 남북체육회담 개최 제의
4. '7·4남북공동성명' 발표 12주년에 즈음한 성명 발표

제37호(1985. 3. 10)

제1부 남북한 관계개선의 전기 마련을 위한 지속적 노력

1. 전두환 대통령 1985년도 국정연설
  - 남북한 정상회담 재촉구
2. 국내주요반응

제2부 남북경제회담과 남북적십자 본회담 예비 접촉

1. 회담 성립의 배경
2. 회담의 경과
  - 가. 제1차 남북경제회담
  - 나. 남북적십자 본회담 예비접촉

제3부 북한측의 일방적 회담연기

1. 북한측의 회담 연기 통보
2. 북한측 태도의 부당성
3. 우리의 대화 재개 노력
4. 국내외 주요반응

제38호(1985. 8. 10)

제1부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제3차 전체회의

1. 전두환 대통령, '남북한당국최고책임자회담' 수락 재촉구

-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제3차 전체회의 개최사

2. 국내주요반응

제2부 이세기 국토통일원장관, '제2의 남북대화시대' 주도를 제창

- 크리스찬 아카데미 주최 국제심포지움 연설

제3부 남북대화의 진행

1. 남북경제회담

가. 회담의 재개

나. 경과

다. 국내외 주요반응

2.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가. 성립배경

나. 경과

다. 성과

라. 국내외 주요반응

3. 남북국회회담 관련 동향

가. 경과

나. 남북국회회담과 우리의 입장

다. 국내 주요반응

제39호(1985. 11. 15)

제1부 평화통일예의 일관된 의지 재천명

1. 진두환 대통령 광복 제40주년 경축사

- 합의사항의 존중과 실천의지 강조

2. 국내 주요 반응

제2부 남북대화의 진행

1. 제9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2. 제4차 남북경제회담

3.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

제3부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 실현

1. 성립배경

2. 교환방문 실현

3.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

4. 국내외 주요 반응

제40호(1986. 3. 25)



제1부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문제 해결을 위한 일관된 노력

1. 전두환 대통령 1986년도 국정연설
  - 전쟁공포의 제거를 강조
2. 박동진 국토통일원장관, 북한측의 성실한 대화자세 촉구
  -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발표 4주년 기념 학술회의 치사

제2부 남북대화의 진행

1. 남북대화의 경과
  - 가. 제5차 남북경제회담
  - 나. 제10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2. 남북대화의 중단
  - 가. 대화중단의 배경
  - 나. 북한측 태도의 부당성
  - 다. 국내의 주요 반응

제3부 IOC 주재하의 남북체육회담

1. 성립배경
2. 경과
  - 가. 제1차 회담
  - 나. 제2차 회담
3. 국내외 주요 반응

부록 : 남북대화일지(1981.1~1986.1)

제41호(1986. 8. 25)

제1부 민족화합과 평화통일예의 일관된 의지

1. 전두환 대통령,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제2차 지역회의 치사
  - 남북대화 재개 및 86·88 양대제전에의 북한측 참가를 촉구
2. 박동진 국토통일원장관, 분단극복을 위한 한민족의 일관된 의지 표명
  - 분단국 문제에 관한 한·독 국제학술회의 기조 연설

제2부 남북한 관계동향

1. 우리측의 남북대화 재개 노력
2. 북한측의 '3자 군사회담' 제의
  - 가. 북측의 제의
  - 나. 우리측의 대북회신
  - 다. 국내의 주요반응

제3부 IOC 주재하의 남북체육회담

1. 제3차 회담

- 가. 제1일 회의
- 나. 제2일 회의
- 2. 그 이후의 경과
- 3. 국내외 주요반응

제42호(1987. 4. 30)

제1부 통일·대화에의 일관된 의지

- 1. 전두환 대통령 1987년도 국정연설
  - 북한측에 남북대화 호응을 거듭 촉구

제2부 남북총리회담 제의

- 1. 제의의 배경
- 2. 남북총리회담 제의
- 3. 남북총리회담 제의와 우리의 입장
- 4. 주요반응

제3부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 관련동향

- 1. 관련동향
- 2. 북한측 태도의 부당성
- 3. 주요반응

제43호(1987. 9. 30)

제1부 평화통일에의 일관된 의지 재확인

- 1. 전두환 대통령,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회담' 수락 재촉구
  -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제4차 전체회의 개최사

제2부 남북외무장관회담 제의

- 1. 제의의 배경
- 2. 남북외무장관회담 제의
- 3. 남북외무장관회담 제의와 우리의 입장
- 4. 국내외 주요반응

제3부 IOC 주재하의 남북체육회담

- 1. 제4차 회담
- 2. 그 이후의 경과
- 3. 국내외 주요반응

제44호(1988. 7. 20)

제1부 민족공동번영과 평화통일을 위한 새로운 방향 모색

1. 남북협력시대 선언과 실천의지 표명
2. 통일문제에 대한 정부입장 천명
  - 통일논의 개방과 대북접촉 창구의 일원화

제2부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제의

1. 제의 내용
2. 제의 배경 및 취지
3. 북한반응 및 평가
  - 가. 북한반응 요지
  - 나. 북한의 대화기피 저의 분석

자료편

- 한국의 통일정책
  - 이홍구 국토통일원장관 국방대학원 강연 전문
- 1980년대 주요 대북제의 일지

제45호(1988. 10. 10)

제1부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7·7대통령 특별선언'

1. 특별선언의 배경과 내용
2. 특별선언의 의의
3. 6개항 정책선언의 의미
4. 국내외 주요반응
5. 북한 반응

제2부 '7·7대통령 특별선언' 구현을 위한 실천조치

1. '남북적십자 실무회의' 개최 제의
2. '남북교육당국회담' 제의
3. 진향적 대북 외교시책의 선언
4. 대북 비난방송 중지
5. 남·월북작가의 해방전 문학작품 출판허용
6. 북한 및 공산권자료 공개

제3부 남북정상회담 개최 제의

1. 제의내용
2. 제의의 의미
3. 국내외 반응
4. 북한 반응

제4부 남북국회회담 준비 접촉

1. 성립배경
2. 남북 쌍방의 기본입장
3. 회담진행 경과
4. 중간결산
5. 국내외 반응

제46호(1988. 12. 15)

제1부 남북화해와 국제협력의 선도

1. 대통령 국정연설
  - 가. 배경과 의의
  - 나. 관련 주요내용의 의미
  - 다. 국내외 반응
  - 라. 북한 반응
2. 대통령 UN총회 연설
  - 가. UN총회 연설의 의미
  - 나. 주요내용의 배경과 특징
  - 다. 국내외 반응
  - 라. 북한반응

제2부 '7·7특별선언'의 지속적 후속 실천조치 강구

1. 대북한 경제개방 조치
  - 가. 조치의 배경과 의미
  - 나. 항목별 주요 내용
2. 남·월북작가의 음악·미술작품 규제해제

제3부 남북국회회담 준비 접촉

1. 제5차 준비접촉
2. 제6차 준비접촉

제47호(1989. 5. 15)

제1부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1. 국정운영 기초
2. 통일·대화 관련 주요내용

제2부 남북간의 다양한 대화 전개

1.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예비 회담
  - 가. 성립배경
  - 나. 제1차 예비회담

- 다. 제2차 예비회담
- 2. 남북체육회담
  - 가. 성립배경
  - 나. 제1차 회담
  - 다. 제2차 회담
- 3.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 가. 경과개요
  - 나. 제7차 준비접촉
  - 다. 북한측의 회담중단

제3부 남북대화 관련 동향

- 1. '남북대학생 교류회담' 제의
  - 가. 제의내용과 취지
  - 나. 제의배경
  - 다. '전대협'과 북한측의 반응
  - 라.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진의 성격
- 2. 북한측의 '남북정치협상회의' 제의
  - 가. 제의내용 및 평가
  - 나. 문익환씨의 불법입북문제
- 3. 북한측의 '범민족대회' 실무대표접촉 제의
  - 가. 제의내용 및 추진경과
  - 나. 북한측 태도 평가
- 4. 북한의 일방적 회담연기 선언

제48호(1989. 12. 8)

제1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1. 통일접근의 새 구상 ; 제44주년 광복절 경축사  
가. 배경  
나. 주요내용 및 의의
2.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천명  
가. 국민적 합의를 위한 노력  
나. 통일방안의 내용  
다. 주요특징  
라. 통일방안에 대한 반응

제2부 남북대화의 재개

1. 배경
2.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가. 성립배경  
나. 제1차 실무대표접촉  
다. 제2차 실무대표접촉  
라. 제3차 실무대표접촉  
마. 제4차 실무대표접촉
3.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예비회담  
가. 경과개요  
나. 제3차 예비회담
4. 남북체육회담  
가. 경과개요  
나. 제3차 회담
5.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가. 경과개요  
나. 제8차 준비접촉

제3부 남북관계 주요동향

1.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설치·운영  
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성격과 기능  
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성과
2. 임수경·문규현 불법입북 문제  
가. 경과  
나. 입북후 행적과 판문점을 통한 귀환  
다. 남북쌍방의 주요동향
3. 북한측의 ‘민족통일협상회의’ 제의  
가. 제의내용  
나. 북한측의 태도 평가

제49호(1990. 4. 21.)

제1부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1. 국정운영 기초
2. 관련 주요내용

제2부 남북대화의 진행

1.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예비회담
  - 가. 제4차 예비회담
  - 나. 제5차 예비회담
  - 다. 제6차 예비회담
2.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 가. 제9차 준비접촉
  - 나. 제10차 준비접촉
3.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 가. 제5차 실무대표접촉
  - 나. 제6차 실무대표접촉
  - 다. 제7차 실무대표접촉
  - 라. 쌍방 수석대표 개별접촉
  - 마. 수석대표 개별접촉 이후 동향
4. 남북체육회담
  - 가. 제4차 회담
  - 나. 제5차 회담
  - 다. 제1차 실무대표접촉
  - 라. 제2차 실무대표접촉
  - 마. 제3차 실무대표접촉
  - 바. 제6차 회담
  - 사. 제4차 실무대표접촉
  - 아. 제5차 실무대표접촉
  - 자. 제7차 회담
  - 차. 제6차 실무대표접촉
  - 카. 제8차 회담
  - 타. 제9차 회담
  - 파. 남북체육회담 결렬 이후 관련 동향

제3부 남북관계 주요동향

1. 남북대화의 중단
  - 가. 북한측의 일방적 회담연기
  - 나. 우리측의 남북대화 재개촉구
2. '남북당국·정당협상회의' 관련동향

- 가. 김일성 신년사 발표
- 나. 북한의 '남북당국·정당협상회의'제의
- 다. 북한의 '콘크리트장벽 참관단'초청제의
- 3. 북한 'IPU총회 남북단일대표단' 참가제의
- 4. 북한의 제4남침용땅굴 발견 관련동향

<부록>남북대화 관련 주요동향 일지

제50호(1990. 8. 29.)

제1부 7·20 '민족대교류 선언'과 관련동향

- 1. '민족대교류'를 위한 대통령 특별발표
- 2. 3부장관 합동 기자회견
- 3. 방북신청자 명단 접수
- 4. 특정단체소속인원의 방북허용
- 5. 북한의 '구속자 위문단'과견제의

제2부 '범민족대회'와 관련 동향

- 1. '범민족대회'문제의 제기배경
- 2. 통일원장관의 '범민족대회'수용 용의 표명
- 3. 북한의 제2차 예비회의 불참
- 4. '범민족대회' 제3차 예비회의 관련사항
- 5. 8·15 '범민족대회'의 개최

<부록>

- 1. 관련 주요문건
- 2. 관련 주요동향 일지

제51호(1990. 12. 21.)

제1부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의 진행

- 1. 예비회담의 재개배경
- 2. 제7차 예비회담
- 3. 실무대표접촉
  - 가. 제1차 실무대표접촉
  - 나. 제2차 실무대표접촉
- 4. 제8차 예비회담

제2부 남북고위급회담의 진행

- 1.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
  - 가. 책임연락관 접촉



- 나. 회담진행 개요
- 다. 제1일 회의
- 라. 제2일 회의
- 2.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
  - 가. 책임연락관 접촉
  - 나. 회담진행 개요
  - 다. 제1일 회의
  - 라. 제2일 회의
- 3. 유엔가입문제와 관련한 실무대표접촉
  - 가. 제1차 실무대표접촉
  - 나. 제2차 실무대표접촉
  - 다. 제3차 실무대표접촉
- 4.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대표접촉
  - 가. 성립배경
  - 나. 제1차 실무대표접촉
  - 다. 제2차 실무대표접촉
  - 라. 제3차 실무대표접촉

제52호(1991. 4. 30.)

제1부 남북고위급회담의 진행

- 1.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
  - 가. 책임연락관 접촉
  - 나. 회담 진행 개요
  - 다. 제1일 회의
  - 라. 제2일 회의
- 2.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의 연기
  - 가. 북측대표단의 연기성명
  - 나. 회담재개촉구와 북한측 반응
  - 다. 북한의 관련동향

제2부 남북체육회담의 진행

- 1. 성립배경
- 2. 제1차 회담
- 3. 제2차 회담
- 4. 제3차 회담
- 5. 제4차 회담
- 6. 실무위원회
  - 가. 탁구단일팀 실무위원회
  - 나. 축구단일팀 실무위원회

제53호(1991. 11. 30.)

제1부 남북고위급회담

1.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 이후의 경과
  - 가. 회담재개 촉구와 북한측 반응
  - 나.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대표 접촉
  - 다.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의 재연기
2.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의 진행
  - 가. 책임연락관 접촉
  - 나. 회담 진행 개요
  - 다. 제1일 회의
  - 라. 제2일 회의

제2부 남북체육회담

1. 남북단일팀 구성참가
2. 남북체육회담의 재개 촉구

제3부 남북적십자회담

1. 제8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 접촉
2. 남북 이산가족 재회를 위한 국회결의문 채택
3. 남북적십자회담 재개 촉구

제4부 남북관계 주요동향

1. '통일대행진'제의
  - 가. '통일대행진'추진을 위한 대북성명 발표
  - 나. 제의 배경 및 의의
  - 다. 행사 세부내용
  - 라. 국내 반응
  - 마. 북한측 반응 및 관련 후속조치

<부록>

1. 노태우 대통령 제46차 유엔총회 연설(1991. 9. 24.)
2. 남북대화 관련 주요동향 일지

제54호(1992. 3. 30.)

제1부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1.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준비를 위한 대표접촉
2.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의 진행

제2부 한반도 핵문제 협의를 위한 대표접촉

1. 제1차 대표접촉
2. 제2차 대표접촉
3. 제3차 대표접촉

제3부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문제 협의를 위한 대표접촉

1. 제1차 대표접촉
2. 제2차 대표접촉
3. 제3차 대표접촉

제4부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

1. 책임연락관 접촉
2.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의 진행

제5부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문제 협의를 위한 대표접촉

1. 제1차 대표접촉
2. 제2차 대표접촉
3. 제3차 대표접촉
4. 제4차 대표접촉
5. 제5차 대표접촉
6. 제6차 대표접촉
7. 제7차 대표접촉

<부록>

1. 1991년 11월 8일 노태우 대통령의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
2. 1991년 12월 18일 노태우 대통령의 ‘한반도의 비핵화와 관련한 발표문’
3. 1992년 2월 19일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기본합의서 발효에 즈음한 특별담화문’
4. 1992년 2월 20일 김일성 주석의 담화문

제55호(1992. 6. 30.)

제1부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1. 책임연락관 접촉
2.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의 진행

제2부 남북정치분과위원회

1. 제1차 회의
2. 제2차 회의
3. 제3차 회의

제3부 남북군사분과위원회

1. 제1차 회의

2. 제2차 회의
3. 제3차 회의

제4부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1. 제1차 회의
2. 제2차 회의
3. 제3차 회의

제5부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1. 제1차 회의
2. 제2차 회의
3. 제3차 회의
4. 제4차 회의
5. 제5차 회의

제56호(1992. 10. 3.)

제1부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

1. 책임연락관 접촉
2. 회담 진행 개요
3. 제1일 회의 : 기초연설 교환
4. 제2일 회의 : 3개 부속합의서 및 화해공동위 구성·운영합의서 채택·발효

제2부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1. 남북정치분과위원회
2. 남북군사분과위원회
3.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제3부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1. 제6차 회의
2. 제7차 회의
3. 제8차 회의

제4부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1. 제1차 접촉
2. 제2차 접촉
3. 제3차 접촉
4. 제4차 접촉
5. 제5차 접촉
6. 제6차 접촉
7. 제7차 접촉

8. 제8차 접촉

제57호(1993. 4. 20.)

제1부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 이후 남북관계

1. 이산가족문제 협의를 위한 고위급회담 대표접촉
2. 북한의 남북대화 거부
  - 가. 군사직통전화 설치를 위한 통신실무자 접촉 중단
  - 나. 북한측의 제11차 남북적십자 회담 재개 거부
  - 다. 분야별 공동위원회 개최 무산
  - 라. 제9차 남북고위급회담의 무기 연기
  - 마. 북한측의 남북대화 전면 거부
3. 간첩단사건과 북한측의 남북합의서 위반
4. 한국의 새 정부 출범과 이인모 노인 방북 허용

제2부 북한의 핵문제

1.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의 진행
  - 가. 제9차 회의
  - 나. 제10차 회의
  - 다. 제11차 회의
  - 라. 제12차 회의
  - 마. 위원 접촉
  - 바. 제13차 회의
  - 사. 위원장 접촉
2. 상호 핵사찰규정 관련 쌍방 주요 쟁점사항
  - 가. 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합의서 채택 여부
  - 나. 사찰원칙 : 상호주의 원칙 채택 여부
  - 다. 사찰대상 : 협의가 있는 군사기지 포함 여부
  - 라. 사찰방법 : 특별사찰제도 채택 여부
3. 북한에 대한 국제 핵사찰의 진행
  - 가. 국제원자력기구의 임시사찰 진행
  - 나.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사찰 결의
4. 북한의 핵비확산조약 탈퇴선언 및 국내외 반응
5. 북한 핵문제 관련 주요일지

부록

1. 김영삼 대통령 취임사
2. 김일성 주석 신년사

제58호(1993. 9. 28.)

제1부 김영삼 정부의 3단계 3기조 통일정책

1. 3단계 통일방안
  - 가. 화해·협력 단계
  - 나. 남북연합 단계
  - 다. 통일국가 : 1민족 1국가 단계
2. 통일정책 3대기조
  - 가. 민주적 국민합의
  - 나. 공존공영
  - 다. 민족복리

제2부 새 정부의 남북대화 재개 노력

1. 남북고위급회담 대표접촉 제의
2. 북한측의 특사교환 역제의
3. 남북간 전화통지문 교환
4. 북한측의 대화 거부와 우리측의 대화 촉구
5. 남북핵통제공동위 개최 제의 및 북한측의 거부
6. 우리측의 특사교환 제의
  - 가. 북한측의 특사교환 수정 발표
  - 나. 우리측의 특사교환 제의
  - 다. 북한측의 대화 전제조건 제시
7. 부속합의서 발효 1주년 관련 성명 발표

제3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1. UN안보리 의장 성명과 결의안 채택
2. 주요국가 관련 동향
3. 미·북한 고위급 접촉
  - 가. 제1단계 접촉(6.2~6.11, 뉴욕)
  - 나. 제2단계 접촉(7.14~7.19, 제네바)

<부록>

1. 남북대화 일지(1992. 1.~1993. 9.)
2. 한완상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방송기자클럽 정책토론회 발표자료(7.9.)

제59호(1994. 5. 20.)

제1부 1단계 실무대표접촉

1. 성립배경
2. 제1차 실무대표접촉
3. 제2차 실무대표접촉
4. 제3차 실무대표접촉
5. 실무대표접촉 중단

제2부 2단계 실무대표접촉

1. 재개경위
  - 가. 북한 핵 관련 국제사회의 노력
  - 나. 우리측의 실무대표접촉 재개 제의
2. 제4차 실무대표접촉
3. 제5차 실무대표접촉
4. 제6차 실무대표접촉
5. 제7차 실무대표접촉
6. 제8차 실무대표접촉

제3부 남북특사교환 무산 이후 관련 동향

1. 북한 핵사찰 관련 국제사회 동향
2. 정부의 '4·15 조치' 발표

<부록>남북대화 일지(1993.5.20.~1994.4.15.)

제60호(1994. 10. 10.)

제1부 남북정상회담 예비접촉

1. 성립배경
2. 예비접촉
3. 성과와 의의
4. 실무절차 협의를 위한 제1차 대표접촉
5. 실무절차 협의를 위한 제2차 대표접촉
6. 통신 및 경호관계 실무자 접촉
7. 정상회담 연기

제2부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1. 배경
2. 통일조국의 미래상
3.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4. 의의와 특징

제3부 미·북 3단계 고위급회담

1. 북한의 연료봉 교체와 IAEA탈퇴
2. 미·북 3단계 고위급회담



2. 최근 남북관계 일지(1994. 9. 16~11. 30)

9월

- 9. 16. 북한 외교부대변인 특별사찰 거부 기자회견
  -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이고, 반공화국 압살 정책의 일환
- 9. 25. 북한 외교부대변인, IAEA총회의 사찰 촉구 결의안 거부 담화
- 9. 25. 북한 정당·사회단체, 대남 편지 국제우편으로 발송
  - 단군릉 준공식에 남한인사 74명 초청
- 9. 27. 북한 인민무력부 대변인 "미 항공모함 동해배치" 비난 담화
- 9. 30. 북한 단군릉 복구위원회 대변인 담화
  - 남한 인사의 평양방문 환영

10월

- 10. 3. 강영훈 한적총재, 북한지역 콜레라 공동방역조치 제의 대북성명
  - 북한지역의 콜레라 퇴치와 방역을 위해 남과 북이 공동대처
  - 우리는 1차적으로 필요한 의약품을 제공할 것
- 10. 3. 한승주 외무부장관, 제49차 UN총회 연설
  -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면 남북 공동번영의 정신아래 북한의 본격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기술과 자본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음.
- 10. 3. 북한 단군릉 복구위원회 대변인 기자회견
  - 기 초청한 남한인사의 도착 지연으로 단군릉 준공식 연기
- 10. 5. 김영삼 대통령, 기자회견시, 남북정상회담 제의 유효 언명
  - 북측이 내부사정을 이유로 연기 요청한 만큼 북측의 선제외교가 순리임.
  - 회담장소 등 구체적 사항을 새로 협의해야 할 것
- 10. 5. 북한방송 우리측의 콜레라 공동방역 조치 제의 거부 논평
- 10. 8. 김영삼 대통령, 기자회견시 미·북회담에서 북한핵 미타결시는 안보리에 회부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
- 10. 11. 대통령 주재 안보관계장관 조찬 간담회
  - 북핵 해결을 위해서는 특별사찰과 함께 한국형 경수로가 채택돼야 한다는 한·미 간 원칙 준수 확인
- 10. 11. 북한 단군릉 개건 준공식(평양시 강동군 대악산)
  - \* 김정일, 오진우 불참, 강성산 정무원 총리 준공사 낭독
- 10. 14. 이홍구 통일부총리 국감답변시 북한 핵문제 해결 5개원칙 제시
  - 북한 핵개발 중지·동결
  - 한반도 전쟁 재발 예방과 대화·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 비핵화공동선언 이행을 포함한 남북대화 재개
  - 북핵의 과거·현재·미래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IAEA의 기준·판단을 중시
  - 대북경수로 지원은 반드시 한국이 중심이 되어야 함.
- 10. 16. 북한, 김일성 사망 100일 중앙추모회 거행

-----\* 김정일 참석(88일만에 공식 등장)

10. 18. 한승주 외무장관 기자회견

- 미·북 제네바회담 합의는 한반도 평화기초 마련으로 평가

10. 18. 북적 이성호 위원장 대리 미전향장기수 김인서·함세환·김영태 송환 요구

10. 21. 한·미 국방장관회담, "94 T/S훈련 중단 합의"

10. 21. 미·북한, 미·북 기본합의서 발표

- 북한의 흑연감속로와 연관시설의 경수로 발전소로의 교체

- 정치·경제 관계의 완전정상화 추구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전을 위한 공동노력

- 북한의 NPT 잔류 등 국제적 핵전파방지 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노력

\* 북한 외교부 강석주 부부장 "역사적 문건으로 평가" 기자회견

10. 25. 북적 이성호 위원장 대리 미전향장기수 3명 송환 요구 대남 편지 국제 우편으로 발송

10. 25. 북한 오진우 인민무력부장, 신병치료차 프랑스 도착

10. 31. 김영삼 대통령, 중국 이봉 총리와 회담(서울)

- 남북간의 실질적인 조속한 대화 촉구

## 11월

11. 1. 이홍구 통일부총리 '핵·경협연계정책' 단계적 완화 검토

11. 1. 북한 외교부대변인, 미·북 기본합의문의 이행에 착수했다고 발표

- 흑연로 건설중단, 연구용원자로 핵연료봉 철수를 미국에 통보

11. 1. 북한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논문 발표

- 사회주의는 기회주의에 의해 일시곡절을 겪지만 중국적 승리를 이룩함.

11. 4. 이홍구 통일부총리, '에너지 공동개발 남북협약체' 필요성 언급

11. 7. 김영삼 대통령, 핵·경협연계 해제 방침 표명

- 기업인 방북허용 등 남북경제협력사업을 활성화하는 단계적 조치를 취할 것임.

11. 7. 북한 외교부대변인 미·북 전문가회담 개최 일정 발표

- 폐연료봉 관련 회담 : 11. 12. - 19, 평양

- 경수로 관련 회담 : 11. 30, 북경

- 연락사무소 관련 회담 : 12. 6. - 10, 워싱턴

11. 9. 이홍구 통일부총리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 발표

-----\* 11. 8. 제17차 통일관계장관회의시 심의·의결

- 기업인 방북, 북한경제인 초청 허용 등 남북경제인사 상호 방문 추진

- 국내기업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 허용

- 제3국에서 북한인력 고용 및 제3국 합작 투자허용 등

11. 9. 북한, 중대방송 예고후 김정일 군최고사령관 명령 제51호 발표

- 평양시 청류다리 2단계 및 금릉 2동굴 건설 명령

11. 10. 조평통 대변인 담화 "남북경협안 거부"

11. 11. 한승주 외무장관, 북한 APEC 가입 후원 용의 표명

11. 11. IAEA 특별이사회, 북핵동결 이행감시 착수 결정

- 11. 14.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11. 14. 미·북 폐연료봉 처리 관련 전문가 협상 개최(평양, 11.18까지)
- 11. 14. 조평통, 북한주민 유인·납치 살해 주장 경고장 발표
- 11. 15. 북한 미전향장기수 송환 촉구 평양시 군중집회
- 11. 17. 한·미 경수로 지원 관련 실무협의 (워싱턴)
- \* 최동진 경수로 기획단장, 갈루치 핵담당대사 참석
- 11. 18. 북한 외교부 대변인, '핵동결 조치로 비핵화공동선언 이행' 주장
- 11. 18. 한·미·일 KEDO구성 운영 문제 관련 실무협의
- \* 최동진 경수로 기획단장, 갈루치 핵담당대사, 야나이순지 외무성 총괄 국장
- 11. 18. 폐연료봉 처리 관련 전문가회담 종료
- 11. 24. 제25차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남북경제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심의·발표
- 11. 28. IAEA와 북한 원자력 총국, 북한의 핵동결 및 대미합의 이행 확인 발표
- 11. 29. 일본 연립여당 대표단 방북계획 취소 발표
  - 북한측이 일본 대표단 선발대 방문을 거부함에 따라 대표단 방북계획을 취소
- 11. 29. 정부, 북경 미·북 경수로 전문가 회담 관련 실무 대표단 4명 파견.
- 11. 30. 정부, 미군으로부터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 11. 30. 미·북 경수로 전문가 회담 개시(북경)

# **남북대화 제62호**

(1994. 12. ~ 1995. 7)

# < 목 차 >

I. 우리 정부의 대북 제의 .....	3
1. 8·15 공동경축 행사 및 현안문제 협의를 위한 차관급 회담 제의 .....	3
2. 고위당국자 회담 제의 .....	11
II. 대북 곡물제공을 위한 북경접촉 .....	14
1. 접촉배경 .....	14
2. 합의 내용 .....	16
III. 북한, 일본군위안부문제 아시아 연대회의 불참 .....	18
1. 북한측 참가에 대한 정부 입장 .....	18
2. 북한 대표단의 회의 불참 .....	19
3. 북한측의 불참성명 내용 .....	20
4. 북한측 불참의 실질적 배경 .....	21
IV. 팔라룸푸르 미·북 준고위급회담 .....	22
1. 제네바 미·북합의의 기본구도 .....	22
2. 회담 경과 .....	25
3. 회담 내용 .....	28
4. 의의 및 평가 .....	32
V. 한반도에너지 개발기구 설립 .....	34
1. 협정의 체결 .....	34
2. 협정의 주요내용 .....	36
부록 .....	39
1. 남북관계 일지(1994.12.1.-1995.6.30.) .....	39
2. 한반도에너지 개발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	52

## I. 우리 정부의 대북 제의

### 1. 8·15 공동경축 행사 및 현안문제 협의를 위한 차관급 회담 제의

북한은 1995년 1월 24일 개최된 '정당·단체연합회의'에서 금년 8·15를 계기로 남·북·해외동포들이 해방 50주년을 공동으로 성대히 경축하고 이를 계기로 남·북·해외의 각당·각파·각계 각층 동포들이 모여 '대민족회의'를 개최하여 '민족공동의 조국통일 방도'를 협의·확정하자고 제의 하였다.

또한 북한은 동 연합회의에서 '남조선·해외의 정당·단체, 각계층 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하였다.

동 호소문에서 북한은 '대축전'과 '대민족회의'를 금년 8월 15일에 판문점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면서 이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극소수 분열세력의 파썬, 매국, 반통일행위를 단호히 짓부시자'고 선동하였다.

북한이 '정당·단체 연합회의'에서 제기한 대민족회의 개최 제의는 북한의 상투적 통일전선전술의 일환으로서 몇 가지 숨은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광복 50주년 '공동경축행사'와 '8·15대민족회의'를 연계하여 개최하자고 제의한 것은, 금년이 광복 50주년이자 분단 50주년이 되는 정치적 상징성을 부각시킴으로써 당면하고 있는 체제내적 위기를 통일의 열기로 희석시켜 보려는 저의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둘째, 북한의 제의 내용이, 종래 북한이 상투적으로 반복해 왔던 이른바 '정치협상회의', '연석회의', '민족대회' 등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는 김일성이 생전에 줄곧 호언하던 조국통일 과업을 유훈으로 선전함으로써 이를 김정일이 대를 이어 충실히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북한 주민들에게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셋째, 우리 정부 당국을 '반통일·반민족·분열세력'으로 매도하면서 '공동경축행사'와, '대민족회의'에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과 연초부터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조문파동 이래 계속해 온 대남강경 입장을 계속 고수하면서 남한 당국과는 당분간 대화를 기피하려는 저의를 드러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이 우리 정부 당국 배제를 분명히 하는 한편, '정부타도'와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적극 선동한 것이라든가, 제의 실현을 위한 예비접촉 또는 준비위원회 구성 제의가 없다는 사실 등으로 볼 때, 북한의 이번 제의는 애초부터 실현 내지 성사보다는 정치선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다음은 이른바 '정치협상회의', '연석회의', '민족대회' 등 1970년대 이후 북한이 우리측에 취해 온 통일전선차원의 정치 공세를 요약한 것이다.

### 1973. 6. 23. 김일성, '조국통일 5대강령'발표시 '대민족회의'소집 제의

- 남과 북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를 소집, 통일 문제를 광범위하게 협의·해결

### 1977. 1. 25.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남북정치협상회의'소집 제의 대남 편지

- 평화적 통일을 실현할 데 대한 모든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 남과 북의 제정당·사회단체 대

표들과 각계각층 대표들로 구성되는 '전민족대회'소집 회의

1979. 1. 23. '조국전선'중앙위, '전민족대회'소집 회의 성명

- 남과 북의 모든 정당, 단체들의 대표, 각계각층 인사 및 해외동포 조직의 대표 또는 개별적 인사들이 참가하는 '전민족대회' 소집 회의
- 남북을 통한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포함하여 정치·경제·문화·군사의 모든 분야에 걸친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현할 데 대한 문제들과 통일문제 해결에 나서는 제반 문제들을 광범위 토의

1981. 8. 6. 정당·사회단체들, '민족통일촉진대회'소집 회의 연합성명

-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남과 북의 정당·단체 대표들과 해외동포 대표들로 '민족통일촉진대회' 소집 회의
- '고려연방제'창립 방안을 비롯한 모든 통일방안, 남북 사이의 각 방면에 걸쳐 합작 교류를 실현할 데 대한 문제, 갈라져 사는 혈육들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한 인도적인 문제들 협의

1982. 2. 10. '조평통', '남북정치인 100인 연합회의'소집 회의 성명

- 조국통일을 위한 협상 기구로서 남과 북, 해외 '정치인 연합회의'소집 회의
- 해외 인사들을 포함하여 남과 북에서 각각 50명, 도합 100명으로 구성
- 고려 연방제 창립 방안을 포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모든 통일방안, 남북 사이의 합작·교류를 실현하기 위한 문제 협의

1983. 1. 18. 정당·사회단체, '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소집 회의 연합 성명

- 남한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거족적 애국 운동을 호소하면서 이 절박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남과 북의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소집 회의

1989. 1. 1. 김일성, '남북정치협상회의'소집 회의

- 연방제 통일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가까운 시일 안에 평양에서 남과 북의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지도급 인사들로 '남북정치협상회의'소집 회의

1989. 9. 28. 당국·정당·단체 연석회의, 「민족통일협상회의」소집 회의 대남 편지

- 민족의 요구와 의사를 반영한 하나의 통일 방안을 정립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남과 북의

당국과 각당·각파·각계각층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공동의 통일 방도를 확정하기 위한 '민족 통일협상회의'소집 제의

1990. 1. 1. 김일성, '남북 당국·정당수뇌협상회의'소집 제의

- 남북간 자유 왕래와 전면 개방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 최고위급이 참가하는 당국과 각 정당 수뇌들이 협상회의 소집을 제의

1991. 1. 1. 김일성,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소집 제의

- 조국 통일 방도에 대한 전민족적 협의를 이룩하기 위해 빠른 시일 안으로 남과 북의 당국과 정당, 단체 대표들의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소집 제의

1991. 5. 29. 정치·학자·언론인 토론회, '남북정치인·학자·언론인 대토론회'개최 제의

- 남과 북의 정치인, 학자, 언론인들까지라도 먼저 모여 앉아 통일 방도를 모색하고 뜻을 합치기 위해 7월 하순이나 8월초 대토론회를 진행할 것을 제의

1995. 1. 24. 정당·단체 연합회의, '대민족회의'제의

- 북·남·해외의 각당·각파·각계각층 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공동으로 조국 해방 50돌을 경축 할 것과 조국통일 방도를 확정하기 위한 대민족회의를 소집할 것을 제의

우리 정부는 1995년 1월 25일 송영대 통일원차관의 대북성명을 통해, 북한의 대민족회의 제의가 남북 관계의 실질적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한편, 광복 50주년을 공동으로 경축하자고 제의한 점에 대해서는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송영대 차관은 이같은 광복절 공동경축행사 개최를 포함한 남북간 현안 문제 협의를 위해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에 따라 책임 있는 당국간 대화를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를 위해 쌍방 당국의 차관급을 수석 대표로 하는 3명의 대표가 조속한 시일 내에 마주앉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구체적 날짜와 장소는 북한측에게 일임하였다.

다음은 대북성명 전문이다.

북한은 어제(1.24.) 이른바 정당·단체 연합 회의를 개최하여 대민족회의를 개최할 것과 광복 50주년을 공동으로 경축할 것을 제의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번 북한의 제의가 김일성 사망 이후로는 처음 있는 대화와 접촉 제의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북한의 대민족회의 개최 제의는 우리가 그 동안 누차 밝혀 온 바와 같이 남북 관계의 실질적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자 합니다.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협력을 원한다면 대민족회의와 같은 군중집회식 행사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책임 있는 당국간의 대화에 응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둘째, 그러나 우리는 북한측이 광복 50주년을 공동으로 경축하자고 제의해 온 것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분단 50주년이 되는 올해를 기점으로 대결과 반목의 시대를 마감하고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광복 50주년 공동경축행사는 이같은 민족사의 요청에 부응하여 온 겨레의 결의를 다지는 뜻깊은 행사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7천만 겨레가 대표성을 갖고 참여, 경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이같은 광복절 공동경축행사 개최를 포함한 남북간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 남북 기본합의서 정신에 따라 책임 있는 당국간 대화를 개최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를 위해 쌍방 당국의 차관급을 수석 대표로 하는 3명의 대표가 조속한 시일 내에 마주 앉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며,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는 북한측이 정하여 우리측에 알려주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측의 제의에 대해 북한측의 성의 있는 호응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적 총의를 바탕으로 남북 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측의 대북 제의에 대해 북한은 1995년 1월 27일 로동신문 논평을 통해 이를 거부하였다.

이는 북한의 대민족회의 개최 제의가 광복절 공동경축행사 및 통일 방도 확정이라는 대외적 명분과는 달리 우리 정부와 국민을 이간시키고 우리 사회의 국론 분열을 기도하려는 저의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한편 북한은 1995년 1월 24일 정당·단체연합회의에서 조국해방 50돌 경축 대축전과 대민족회의 개최를 제의한 이래, 지금까지 우리측 4개 정당 및 각종 단체, 개인 77명에게 편지를 보내어 동 제의에 대한 호응촉구와 함께 통일대축전 준비문제 협의를 위한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하면서 우리 사회의 갈등조장과 국론분열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급 대화와 접촉을 시도해 오고 있다.

1995년 3월 7일 민족통일대축전 북측 준비위원회가 결성됨에 따라 이전은 각종 정당·단체 명의로, 결성 이후는 북측 준비위원회 명의로 단일화하여 발송해 오고 있다.

이와 관련한 북한의 편지공세 현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 1995. 2. 1.

-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 위원장 김병식→민주당 대표 이기택
-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민자당, 신민당, 새한국당

○ 1995. 2. 3.

-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장 전영률→한국역사연구회장 안병욱(전 회장)
-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 서기장 강관선→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한명숙, 이영숙, 이미향

- 조선문화예술총동맹 중앙위 위원장 백인준→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이사장 염무웅

○ 1995. 2. 6.

-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 의장 정두환→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공동의장 천영세, 윤영규
-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 위원장 주성일→전국노동조합협의회 위원장 양규현
-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 위원장 최성숙→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윤정석
- 조선학생위원회 위원장 박명철→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임시의장 정태홍

○ 1995. 2. 7

-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 위원장 주성일→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장 권영길
-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 서기장 강관선→한국부인회 회장 임명순
- 조선기독교연맹 중앙위 위원장 강영섭, 이천민 서기장→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오충일, 총무 김동완
- 조선종교인협의회→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 공동의장 함세웅
- 조선교육문화일꾼직업동맹 중앙위 위원장 남춘희→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정해숙
- 조선기자동맹 중앙위 제1부위원장 최영삼→한국기자협회 회장 안재휘

○ 1995 2. 8.

-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 의장 정두환→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 김승균
-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 의장 정두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서경석
- 조선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중앙위 위원장 최용해→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의장 유기홍
- 조선천주교인협회중앙위→천주교중앙협의회상임위원회 의장 김수환
-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 위원장 박태호→전국불교운동연합 상임의장 최지선

○1995. 2. 9.

- 조선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 의장 정두환→통일문제연구소장 백기완
- 조선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 의장 정두환→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 공동대표 김근태
-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 위원장 주성일→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박종근
-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 위원장 최성숙→전국농민단체협의회 회장 강춘성
-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 위원장 박태호→조국평화통일추진불교인 협의회 회장 송월주
- 조선기독교도연맹 중앙위 서기장 이천민→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사무총장 강문규
- 조선교육문화일꾼직업동맹 중앙위 위원장 남순희→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김진균, 장이문

○1995. 2.10.

-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 의장 정두환→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공동상임의장 이창복, 김상근, 박순경
-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 의장 정두환→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 서경순
-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 의장 정두환→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최종현
- 조선천도교회중앙지도위 위원장 유미영→천도교중앙총부 교령 김재중
- 조선천도교회중앙지도위 위원장 유미영→단군대종교 총전교 안호상
-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대책위 부위원장 박명옥→한국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이효재, 윤정옥, 김희원

○1995. 2. 21.

-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김용순→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 이사장 김대중
- 조선기자동맹 중앙위 제1부위원장 최영삼→민주언론운동협의회 회장 정동익
- 조선작가동맹 중앙위 위원장 김병훈→민족문학작가회의 회장 송기숙

·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 위원장 박태호→불교인권위 위원장 박진관

※1995. 3. 7 민족통일대축전 북측 준비위원회가 결성된 이후부터는 동 위원회 명의로 단일화 하여 발송

○1995. 3.17.

·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상임의장 이창복

○1995. 3.29.

· 전 국무총리 이회창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상임고문이며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고문 신창균

· 국회의원 이우정

·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 공동대표이며 전국불교운동연합 상임의장 최지선

○1995. 3.30.

· 민주당 고문 김상현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위원장 이현재

· 서울대 교수 백낙청

· 통일맞이 7천만겨레모임 이사장 박용길

· 한국기독교장로회의장 박형규

○1995. 4. 4.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 강희남

· 민주당 상임고문 이종찬

·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문규현 신부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공동의장 이소선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한완상

○1995. 4. 5.

·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상임고문 계훈제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고문 김성훈

· 국회의원 박찬중

·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집행위원장 이해학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공동대표 홍근수

· 한겨레신문 사장 김종배

·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김 선

· 잡지 「말」 발행인 겸 편집인 노향기

· 주간 「노동자신문」 주필 겸 발행인 이태복

· 전 체육부장관 정동성

○1995. 4.11.

· 시인 고은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고문 신도성

· 신민당 대표 김복동

· 민예총 공동의장 강윤균

## 2. 고위당국자 회담 제의

정부는 1995년 2월 3일 김덕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명의의 대북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는 북한이 주장하는 대민족회의가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1월 25일 제의한 차관급 회담에 아무런 조건없이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정부는 동 성명에서 남과 북이 쉽게 실천할 수 있고, 남북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다음 3개항의 사업들을 공동 추진할 것을 제의하였다.

①이산가족들의 4월 평양축전 참관 및 가족상봉 허용

②남북 언론인들의 비정치적 분야에서 자유로운 상호 방문 취재 허용

③우리 기업인들의 판문점 경유 방북 허용

정부는 이와 함께 상기 3개항의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 남북고위당국자 회담 개최를 제의하고, 고위당국자의 수준, 회담 개최 시기, 장소를 정하는 문제는 북한측에 일임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대북성명 전문이다.

올해는 광복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민족간에 지난 반세기에 걸친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고 평화통일의 새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것은 온 겨레의 절실하고도 한결같은 염원입니다.

온 세계가 냉전의 낡은 굴레를 벗고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는 마당에 같은 민족인 남과 북이 반세기가 다하도록 반복과 대결을 지속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제 온 겨레의 염원에 비추어 보나, 세계사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남과 북은 광복 50주년이라는 민족사의 중대한 고비를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남과 북 사이에는 이미 '남북기본합의서'가 마련되어 있으며, 누차 밝힌 바 있듯이 남과 북에 제기되고 있는 모든 현안문제는 쌍방 당국이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지난 1월 25일 광복 50주년 공동경축행사 개최를 포함한 남북간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한 당국간 대화를 개최할 것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남북간의 합의를 외면하면서 최근 우리 정당과 정치인들에 대한 편지 공세를 펴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측이 주장하는 대민족회의 개최가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미 명백히 한 바 있습니다.

이제 남과 북은 광복 50주년이 되는 올해를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는 데 뜻과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북측이 지금이라도 1월 25일자 우리측 제의에 호응해 올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남과 북이 쉽게 실천할 수 있고 또 남과 북에 다같이 도움이 되는 다음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북측에 제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분단의 가장 큰 고통이자 인도적 과제인 일천만 이산가족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이산가족들이 아직까지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북한 당국이 오는 4월 개최 예정인 평양 국제 체육문화축전에 해외 동포들만이 아니라 남쪽의 이산가족들도 함께 참관케 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이산가족 상봉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중심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남과 북에 흩어진 이산가족들이 필요한 생활물자 등을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쌍방 당국이 함께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재일조총련 동포들의 경우에도 그들이 자유롭게 고국을 방문, 그 가족들과 마음놓고 상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방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밝혀 둡니다.

둘째, 남북 언론인들의 자유로운 상호 방문취재를 허용하는 문제입니다.

남북간에 인적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은 화해와 협력의 단계로 진입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중에서도 쌍방 언론인들의 상대측 지역에 대한 자유로운 취재활동이 허용될 경우 상대측에 대해 갖고 있는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북측이 4월 평양 축전 개최준비와 관련하여 다수의 외국 언론인들을 초청한 바 있음에 유의하면서, 빠른 시일 안에 한국 언론들의 비정치적 분야에 대한 방북 취재활동을 전면 허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우리측 기업인들의 방북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작년 11. 8 발표된 우리 정부의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에 따라 현재 우리 기업인들이 남북 경협 추진문제와 곡물, 원료 등 필요한 물품의 교역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방문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인들은 몇시간 거리의 가까운 통로인 판문점을 이용하지 못하고 제3국을 경유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이 판문점을 통해 남북을 쉽게 왕래할 수 있도록 편의를 보장해 줄 것을 북측에 촉구합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경제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나진·선봉지역만이 아니라 그 어느 지역도 방문할 수 있는 긍정적 조치가 뒤따르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상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하기 위해 남북의 책임있는 고위당국자들이 서울·평양·판문점 등 어디서든 빠른 시일내에 마주 앉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고위당국자의 수준과 회담개최 시기 및 장소의 선정문제는 북측에 일임코자 합니다.

북측도 광복 50주년이 남북간에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새 장을 여는 의미있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측의 이같은 제의에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의 2·3 대북제외의 '의의'에 대해, 국내 언론은 '교류활성화를 통해 북의 변화를 유도하겠

다는 의지가 실려있다.',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는 등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대북제외의 '성격'에 대해서도 '시기적으로나 제안형태로 보나 신축성을 보이려 노력하였다.'는 평가와 함께 '당국간 회담이 전제되지 않더라도 언론인 방북·이산가족 방문 등을 허용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특히 북한당국에 대해서도 '평양축전이 김정일 체제의 출범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면 정책도 새롭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정부의 제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촉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왕 개최하는 축전에 관광객·해외동포 뿐만 아니라 이산가족도 초청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이며, '평양축전이 민족의 제전으로 뜻이 있는 것이라면 남쪽 동포들도 자의적으로 참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1995년 2월 6일 노동신문 논평 등을 통해 대민족회의 소집을 재차 강조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2·3제외'에 대해서는 조문사과 및 국가보안법 문제 등의 전제조건을 거론함으로써 거부 입장을 취하였다.

이에 대해 통일원 대변인은 같은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논평을 발표하였다.

오늘(2.6) 노동신문 기명 논평에서 '남한이 평양 국제체육·문화축전에 이산가족 참관, 언론인 취재 등을 놓고 평화 목적의 국제적 행사에 끼어들어 보려는 것은 상식 이하의 무례한 행동'이라고 비난한 것은 아직까지는 비난자체일 뿐, 공식적인 북한당국 차원의 거부 의사로는 볼 수 없다.

북한측은 2·3부총리 대북성명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제의를 하루빨리 받아들여, 한 사람의 이산가족이라도 더 만나게 하려는 우리의 인도주의적 조치에 호응해 오길 바란다.

또한 남북사이에 자유로운 취재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남북간의 경직된 분위기를 부드럽게하고, 장벽을 허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금번 정부의 '2·3대북제외'는 광복 50주년이자 분단 반세기가 되는 올해를 기점으로 남북관계가 화해·협력의 실천단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는 국민적 염원과 정부의 의지를 바탕으로 취해진 것이었다.

특히 금번 2·3제외는 북한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북한이 받아들여더라도 별 부담이 없고 상호 이익이 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조금이라도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다면, 호응해 나오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었다.

비록 북한이 내부사정으로 거부반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북한의 성의있는 자세변화를 촉구해 나갈 것이다.



## II. 대북 곡물제공을 위한 북경접촉

### 1. 접촉배경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해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민족의 복리 증진을 남북 관계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역설하고, 북한의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동족으로서 할 수 있는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또한 유럽 순방 중이던 금년 3월 7일에는 베를린 연설을 통해 "우리는 북한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그 어떤 분야에서도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북한에 곡물을 비롯한 원료와 물자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선언하였다.

이어서 5월 15일에는 '국제언론인협회(IPI)' 서울총회 연설을 통해서 "북한이 당장 필요로 하는 곡물을 비롯한 원료와 물자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라고 재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 정부가 대북 물자지원 용의를 여러차례 표명한데 대해, 북한측은 지난 5월 26일 일본을 방문 중인 이성록 '국제무역촉진위원회'위원장을 통해, "한국 쌀도 전제조건이 없으면 받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우리 정부에 전해 왔다.

이에 대해 같은 날인 5월 26일 나옹배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은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정치적 부대조건 없이 북한에 곡물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그 방법과 절차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쌍방당국 대표들이 만날 것을 제의하였다.

다음은 나옹배 통일부총리의 발표문 전문이다.

그간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그 어떤 분야에서도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누차 밝혀 온 바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북측이 한국쌀을 받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 정부는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정치적 부대조건 없이 북측이 필요로 하는 곡물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북측에 제공할 곡물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인도시기, 수송 및 운반수단 등 절차문제에 대해 남북간에 협의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정부는 북측과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쌍방 당국대표들이 북측이 원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만날 것을 제의합니다.

북측의 긍정적인 회답을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5월 27일에는 이홍구 국무총리주재의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북 쌀 지원은 남북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부의 원칙을 확인하였다.

뒤이어 5월 29일에는 '대북 쌀 제공문제 관련 통일원 차관 주재 실무대책회의'를 열어, 올해 연말기준으로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2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대북 곡물지원 방안을 강구기로 하였다.

또한 6월 6일에는 대북 곡물지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북한이 직접 우리측이 제의한 당국자 접촉에 호응해 올 것을 촉구하였다.

이렇게 거듭된 정부의 대북 곡물지원 의지 표명에 북한측은 6월 9일, 우리측 '대한무역진흥공사'와 북한측 '삼천리총회사'가 6월 13일 북경에서 만나 이 문제를 협의할 것을 제의해 왔다.

이에 따라 '대한무역진흥공사'는 6월 13일부터 6월 16일까지 북한 '삼천리총회사'와 북경에서 접촉을 갖고, 남북 당국간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통보하였으며, 북한측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남북한 당국의 차관급을 대표로 하는 북경회담이 개최되게 된 것이다.

## 2. 합의 내용

우리 정부가 북한에 쌀 지원을 위한 절차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쌍방 당국간의 접촉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데 대해, 북한측이 이를 수락해옴으로써 1995년 6월 17일부터 북경에서 대북 곡물 제공을 위한 남북한 당국간의 회담이 개최되게 되었다.

이 회담에 우리측에서는 이석재 재정경제원 차관 겸 남북경제 공동위원회 남측위원장이, 북한측에서는 정무원 산하 '대외경제협력 추진위원회' 고문 겸 '남북화해공동위원회' 북측위원장 전금철이 각각 대표로 참석하였다.

회담은 사안의 민감성과 곡물제공 문제가 타결될 때까지 협상 사실을 대외에 공표하지 않는다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6월 17일부터 6월 21일까지 북경에서 회담장소를 바꾸어 가며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양측의 회담성사를 위한 노력으로 6월 21일 대북 곡물제공 문제는 합의에 이르렀으며, 남북 양측은 동 합의내용을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발표기로 하였다.

우리측은 쌍방합의에 따라 6월 21일 나옹배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이 대북 곡물제공 합의에 관한 발표를 하였다.

이날 발표된 나옹배 통일부총리의 발표문은 다음과 같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동포애적 차원에서 북한의 식량난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 8. 15 광복절 경축사, 금년 3월 7일 베를린 선언, 5월 15일 IPI총회연설 등을 통해 대북 곡물지원을 수 차례의한 바 있습니다.

이어 정부는 지난 5월 26일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명의로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북한이 필요로 하는 곡물을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고, 절차문제 협의를 위한 쌍방 당국간 접촉을 제의하였습니다.

그후 북한측의 제의로 우리측의 대한무역진흥공사와 북한 대외경제위원회 산하 삼천리 총회사 간에 6월 13일부터 6월 16일까지 북경에서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측은 쌀제공 문제는 남북 당국간 접촉을 통해 협의해야 한다는 점을 통보하였으며, 북한측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남북당국간 북경접촉이 진행되었습니다.

쌍방 당국은 이번 접촉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 ① 우리측은 북한측에 1차로 쌀 15만톤을 인도하며, 이 1차분은 전량 무상으로 제공한다.
- ② 우리측은 본 합의서를 서명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첫 선박을 출항시킨다. 우리측은 상기 1차분을 해상을 통해 우리측 선박으로 청진, 나진항 등에 인도한다.
- ③ 북한측에 1차분으로 인도되는 쌀은 정미 40kg단위 PP포대로 포장하며, 일체 표기를 하지 않는다.
- ④ 본 합의서에 명시된 합의사항을 실행에 옮기는 쌍방 상사는 우리측에서는 대한무역진흥공사와 북한측에서는 조선삼천리 총회사로 한다.
- ⑤ 남과 북은 쌀 인도·인수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필요한 모든 협조를 보장한다.

⑥ 남과 북은 1995년 7월 중순에 제2차 회담을 개최한다.

⑦ 이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본 대표단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 본 합의서에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당국자가 서명하였다.

지난 1984년 9월 우리측 수재시 북측으로부터 쌀과 시멘트 등을 지원받은 후 11년만에 이루어진 북한에 대한 이번 쌀 제공은 남북간에 화해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당국간의 협의를 거쳐 동족간에 서로 돕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이번 합의는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북한의 어려운 식량사정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 위한 순수한 동포애 차원의 조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북한 당국과 합의한 사항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아갈 것입니다.

정부는 이 민족적인 사업에 전국민이 참여한다는 뜻에서 도정 및 포장재 공장과 선적항구 등을 전국적으로 고르게 배정할 것입니다.

도정공장은 전국의 정부미 도정공장 190개소가 동시 가동하게 되며 포장재제작 역시 전국의 30개 공장이 참여하게 됩니다.

지원미를 선적할 전국의 주요항구는 동해·포항·울산·부산·진해·마산·광양·목포·군산·인천 등이며 지원미 2천톤을 실은 첫번째 수송선은 금주 내에 강원도 동해항을 출발할 예정입니다.

지원미의 첫 선적지를 동해항으로 결정한 것은 동해항이 북한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항구로서 북한의 요구대로 최단 시일내에 쌀을 보내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금명간 통일원 차관 주재의 대북 곡물실무 대책회의에 이어 통일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범정부 차원의 후속 지원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III. 북한, 일본군위안부문제 아시아 연대회의 불참

#### 1. 북한측 참가에 대한 정부 입장

활발한 남북왕래와 인적 교류는 남북간의 신뢰와 동질성 회복에 도움이 되며, 비록 당국간에 회담이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순수한 민간차원의 교류는 질서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정부는 지난 1995년 2월 3일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대북성명을 통해 우리 기업인의 판문점을 통한 방북허용을 북한측에 촉구했으며, 남북간의 왕래도 판문점을 통해 직접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천명한 바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기본적 입장에서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북한측 대표단 초청을 승인한 바 있다.

즉 정부는 1995년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에 북한측 대표단 참가문제 협의를 위해 '북한주민 접촉승인신청'의 승인 요청과 그에 따른 출입절차 문제, 신변 안전에 관한 문제, 판문점 통과 문제 등을 정대협이 승인 요청해 온 데 대해 아무런 조건이 없이 승인하였다.

정부가 이처럼 북한 대표단의 회의 참가에 아무런 조건없이 승인한 배경에는 이 행사가 민간 차원에서 연례적으로 개최되어 온 국제회의인 데다가, 이미 우리측 지역에서 개최된 바 있는 UNDP회의 등에 북측 대표단이 참가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배경아래 북한측 '중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 대책위원회'는 1995년 2월 8일 정신대 문제 서울 회의 참가를 선언 하였고, 2월 20일에는 북한 대표단의 명단을, 2월 25일에는 서울회의에서 북한측이 발표할 주제와 발표자 명단을 '정대협'에 통보하기에 이르렀다. 사실상 북측 대표단의 서울 회의 참가에 따른 모든 절차와 준비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 2. 북한 대표단의 회의 불참

북한의 제3차 '일본군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 참석이 확정되고, 대표단의 입경 일자가 '정대협'에 통보됨에 따라 국내외 언론의 관심은 북한 대표단의 서울 방문에 집중되었다.

그것은, 지난해 8월 이후 남북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져있고 핵문제로 북한이 대남비방에 열을 올리는 등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대표단을 서울에 보내는 것 그 자체를 남북관계의 새로운 변화 조짐으로 보려는 시각이 컸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북한측은 서울에 오기로 되어 있던 2월 26일 아침, 돌연 대표단의 서울 회의 불참성명을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을 통하여 발표하였다. 이때는 정대협의 북측대표 영접단과 내외기자 50여명이 막 북한 대표단을 맞이하기 위해 판문점을 출발하려는 시각이었다.

북한이 '중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보상 대책위원회'의 명의로 발표한 성명내용은 "남조선 당국의 방해책동으로 서울 회의에 참석 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우리가 요청한 바도 없는데 남조선 당국이 우리의 판문점 통과 문제, 신변안전보장 문제 등을 가지고 나서서 이 문제를 주관하려 하면서 중뿔나게 복잡성을 조성하였다.

▷ 관례에 따라 신변안전보장 각서를 주최측에 발급해 주어야 하는데도 엉뚱하게 방문증명서를 떼 주어 우리 대표단에 주라고 하였다.

▷ 협조를 요청한 판문점 남측 적십자 관계자들은 우리의 협조제의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대표단이 판문점을 통과할 시간이 임박한 지금까지도 어떠한 공식적인 답변도 보내 오지 않고 있다.

북한측 성명은 "남조선 당국이 겉으로는 우리 대표단의 회의 참가를 허용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실지로는 우리 대표단의 신변안전 담보각서 문제를 가지고 다른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고 우리 대표단이 이번 회의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회의불참에 대한 책임을 우리 정부에 전가하고 있다.

### 3. 북한측의 불참성명 내용

북한이 발표한 성명의 내용을 보면 전혀 타당성이 없고 부당한 논리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북한이 불참 이유로 들고 있는 이른바 "남조선 당국이 우리가 요청한 바도 없는데 우리의 판문점 통과 문제, 신변안전보장 문제등을 가지고 나서서 이 문제를 주관하려 하면서 중빨나게 복잡성을 조성하였다."라는 주장은 사실 왜곡에 불과하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측은 2월 23일 남북연락사무소 남측 사무소장의 명의로 대북전화통지문을 보내 이 회의에 참가할 북측 대표단은 >판문점 통과 문제 협의 >서울 체류기간 편의제공 문제 협의 >신변안전 각서 수교 등을 위해 2월 26일 오전 9시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쌍방 연락관접촉을 갖자는 전화통지문을 북한측 연락사무소에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지난해 8월 이후 우리측의 전화통지문 접수를 거부하던 것과는 다르게, 아무런 이의없이 이를 접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2월 25일 정오에는 남북간의 전화를 통해 "2월 26일 오전 9시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2명의 연락원을 내보내겠다. 남측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주길 바란다."며 우리측 제의에 이의없이 동의해 왔었다.

북한측이 정신대문제 서울 회의에 참석할 자기측 대표단의 판문점 통과문제에 대해 우리측 제의에 순순히 응해 나온 것은, 우리측의 요구가 남북간의 왕래문제에 있어서 20년이 넘게 지속되어 온 관례적 절차임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북한측이 내세운 '남한 당국의 복잡성 조성론'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이다.

둘째, 신변안전보장각서 발급문제와 관련, 북한측은 "남조선 당국이 주최측에 신변안전보장각서를 주어야 하는 데도 엉뚱하게 방문 증명서를 떼주려 했다"고 주장하였다.

남북간의 왕래문제가 결정되면 왕래 직전에 신변안전보장각서를 수교하는 것은 1971년 이후 지금까지 남북간에 통용되어온 관례로서 전혀 어떤 새로운 문제나 이유가 발생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북한측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신변안전보장각서를 2월 26일 넘겨주겠다고 하였던 것이며, 북측도 이에 동의하여 연락원을 내보내겠다고 했던 것이다.

또한 정부가 방문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었다. 이미 UNDP 서울 회의에 참가한 북측 대표단에게 발급된 전례가 있으며, 이번 경우에도 북한측 인원들의 서울 체류기간중 사용케 하기 위하여 방문증을 발급하여 주최측인 '정대협'에 전달하였던 것이다.

사실상 이 방문증명서는 서울을 방문하는 북한측 대표단에게 안전을 보장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보장책이므로, 북한측이 이를 회의 참석을 거부하는 구실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북한의 불참 성명과 관련, 우리 언론들은 "이번 회의의 주최측인 '정대협'도 준비 과정에서 보인 우리 정부의 태도에 대해 거의 불만을 나타내지 않았다.", "정부가 이번 회의에 대한 대응은 1992년 8월 제1차 회의 때 북측 대표단의 참가 불허에 비한다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라고 논평하고 있다.

#### 4. 북한측 불참의 실질적 배경

북한이 서울에서 개최되는 일본군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에 불참할 수 밖에 없었던 실질적 이유는, 표면상 내세운 것과는 달리 북한 내부문제 때문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다.

우선 우리 정부와 '정대협'간의 갈등을 조장함으로써 국론분열을 겨냥한 대남 통일전선전술을 구사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이 불참성명 발표 전일 서울 회의에서 발표할 주제와 주제발표자 명단을 '정대협'에 보내 왔었다는 사실은 주제발표자 명단을 보내온 시점인 2월 25일까지는 북한측이 서울 회의에 참가하려 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2월 26일 아침 갑자기 25일자로 된 불참 성명을 발표할 수 밖에 없는 내부사정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동안 회의 참가를 위한 준비과정에서 보인 행동과는 다르게, 터무니 없는 날조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우리 신문들은 이와 같은 북한의 행태를 보면서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 북한이 대표단의 신변안전문제 협의를 위해 연락관 접촉을 갖자는 정부의 전통문을 종전 과 달리 순순히 접수하고 불참 선언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실제 불참 이유는 어떤 형식으로든 남한 당국과 상대하지 않겠다는 당국 배제 전략에 있는 것 같다. 북한 대표단은 25일 저녁 7시경 일본을 통해 북한측 발표자 명단을 보내왔다. 따라서 이번 회의 불참 결정은 25일 저녁 7시부터 아침 9시 사이임을 알 수 있으며, 이 결정은 대표단 보다 워선에서 나온 것으로 유추된다. (경향)
- 북한측 입장에서 보면 대표단이 서울에 오기 위해 연락관접촉을 갖는 것도 당국간 대화임이 분명하다. 북한측이 연락관접촉을 가질 경우 '당국간 대화 원칙'에 균열이 생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이같은 득실 사이에 결국 참가 거부로 일관성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동아)
- 북측 대표단의 불참 결정 배경은 '당국간 대화 원칙 거부', 내부 사정 등으로 분석된다. 또 오진우 장례행사와 연관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조선)
- 북한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는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뭔가 내부사정이 있거나 대표 파견을 놓고 내부 이견이 발생한게 아닌가 추측이 된다.(한겨레)



#### IV. 팔라룸푸르 미·북 준고위급회담

##### 1. 제네바 미·북합의의 기본구도

미·북 양측은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기본 합의문(Agreed Framework)을 채택하였다.

북한이 1993년 3월 12일 NPT(핵비확산조약) 탈퇴를 선언한 이후, 이의 해결을 위한 미·북회담이 시작된 이래, 1년 7개월 여의 협상을 마무리짓고, 드디어 3단계 회담 2차회의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의 포괄적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미·북 기본합의를 요약하면, 미국이 북한에 대해 경수로 및 대체에너지 제공과 미·북관계 개선을 약속하는 대가로, 북한은 핵동결 및 핵무기 제조 우려가 있는 핵개발 계획을 궁극적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미국이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과 북한이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 북한의 이행 의무 사항

- ① 경수로 관련 핵심 부품이 북한에 인도되기 전에 IAE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특별사찰 등 모든 조치를 포함한 IAEA의 안전조치 의무를 전면 이행함으로써 과거 핵의혹을 해소
- ② 기존 핵시설의 활동 전면동결 및 경수로 건설 공정 단계에 맞추어 핵관련 시설 일체를 해체
  - 5MWe 원자로 연료봉 재장전 포기, 추후 해체
  - 50MWe 및 200MWe 원자로 건설 중단, 추후 해체
  - 방사화학실험실 즉시 폐쇄
- ③ 사용후 연료봉을 경수로 건설기간 중 재처리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관하였다가 추후 제3국으로 이전
- ④ NPT 완전복귀, IAEA의 임시·일반사찰 수용
- ⑤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이행하는 등 남북한 관계 진전에 성의를 보일 것

##### 미국의 이행 의무 사항

- ① 북한에 대한 2,000MWe 경수로의 재원 조달과 공급을 담당할 국제건설사업 구성, 북한측과 경수로 제공을 위한 공급계약 체결
- ② 5MWe 원자로 가동과 흑연원자로(50MWe 및 200MWe) 건설 중단에 따른 대체 에너지로 중

유 제공

— 초기 5만t에서 시작, 경수로 제공시까지 최대 연 50만t까지 공급

③ 대북 무역 및 투자 제한 완화 및 미·북 외교 관계 정상화

— 전문가급 협의를 통해 영사 및 여타 기술적 문제가 해결된 후에 쌍방의 수도에 연락사무소 개설

—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양국 관계를 대사급으로 격상

이러한 미·북 양측의 의무 사항들은 전면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한쪽이 이것을 해야만 다른 쪽은 저것을 한다'는 식으로 쌍방간에 단계적 보장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미·북 합의의 이행 과정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는 합의문 서명 이후부터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까지, 2단계는 협정체결 이후부터 주요 핵심부품의 인도까지, 그리고 3단계는 주요 핵심부품의 인도일부터 경수로 완공일까지로 나누어진다.

1단계에서는 북한이 '현재의 핵활동'을 전면중지하며 미국은 대체에너지 제공(3개월 이내 중유 5만t) 및 대북한 경제제재 등을 일부 해제하는 조치들을 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북한의 현재 핵활동 전면중지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5MWe 실험용 원자로의 가동 중지 ▷50MWe 및 200MWe 원자로 건설 중지 ▷방사화학실험실의 폐쇄 ▷사용후 핵연료의 안전한 보관 등이다.

북한은 1994년 11월 1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북 합의 이행을 위해 기존 핵시설의 동결과 새로운 원자로 건설중단 등 핵활동 동결조치를 개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도 북한에 대해 대체에너지 1차 공급분인 중유 5만t을 제공(1995.1.17.)함과 아울러,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발표(1995.1.21.)하는 등 합의일정에 따라 이행조치를 밟고 있다.

또한 국제컨소시엄, 즉,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도 예정대로 1995년 3월 9일 공식 출범함으로써 대북 경수로 제공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2단계는 북한이 '미래의 핵활동'을 동결하고, 국제컨소시엄 즉 KEDO의 경수로 건설이 본격화되는 시기이다.

북한의 후연료 및 관련시설의 동결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IAEA의 임시·일반 사찰이 실시되는 한편, 그 대가로 북한은 대체에너지의 제공(1년이내 중유 10만톤, 이후 매년 50만톤)을 받게 된다. 3단계에서는 북한이 보관중인 사용후 핵연료를 제3국으로 이전하고 기존의 핵시설을 완전 해체해야 한다.

물론 북한은 경수로와 관련된 주요 핵심 부품 인도시기에 맞추어 과거 핵활동에 대한 IAEA의 특별사찰을 받도록 되어 있다.

미-북 합의 기본구도

제 내 바 음 의 94.10.21	1단계 비핵화 달성	중급단계 체결	2단계 핵실험 실시	핵심부분 인도	3단계 핵실험 해체	완공 2005
핵무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연료 및 관련시설 종결</li> <li>- 94.10.21 합의 및 최종전 종지</li> <li>- 90+200Mwe 건설중단</li> <li>- 방사선편환시설 복원</li> <li>• IAEA 안전조차 계획일 유지</li> <li>• 사형수 핵연료의 안전성 보장</li> <li>▶ 관련기타물(사형수, 핵연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연료 및 관련시설 종결(중요)</li> <li>• IAEA 일시·일련 시행</li> <li>• 사형수 핵연료의 안전성 보장(COPAC)</li> <li>• IAEA 특별사찰 실시</li> <li>• 사형수 핵연료의 제3국 이전</li> <li>- 1호기 완성시 까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시설 해체: 1호기 완성</li> <li>- 육안모(2기)해체</li> <li>- 방사선편환시설 해체</li> </ul>			
경수로 전반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지원보장</li> <li>• 경수로 공급관련 협상개시</li> <li>- 국제원자력기구 구성</li> <li>• 대북에너지 지원</li> <li>- 3개월 이내 총유 60만톤</li> <li>▶ 전문기타당</li> <li>(경수로 및 대북에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수로 건설 지원</li> <li>- 건설관련의 상당부분 완료</li> <li>• 대북에너지 지원(계속)</li> <li>- 1년0월 중유 10만톤</li> <li>- 이후 매년 중유 50만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수로 완공</li> <li>- 핵심부품(4500톤)인도</li> <li>- 1호(2001-2)-2호기(2003)</li> <li>• 대북에너지 지원</li> <li>- 1호기 완성시 까지</li> </ul>			
이북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환경 관계 정상화</li> <li>- 연학사무소 개설 협의</li> <li>- 무역·투자 관련 협상(3개월 이내)</li> <li>▶ 전문기타당(연학사무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환경 관계 정상화(계속)</li> <li>- 연학사무소 개설·다사금 거래(연말분과 직전시)</li> <li>- 대북 에너지 및 상품 보장</li> <li>- 대·북 에너지 협력사업 체결(필요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환경 관계 정상화(계속)</li> <li>- 연학사무소 개설·다사금 거래(연말분과 직전시)</li> <li>- 대북 에너지 및 상품 보장</li> <li>- 대·북 에너지 협력사업 체결(필요시)</li> </ul>			

## 2. 회담 경과

우리 정부는 대북 경수로 지원 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한국 표준형 경수로의 채택과 한국의 중심적 역할 수행'이라는 확고한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 4가지 원칙을 정하고 한·미·일 간에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해 왔다.

▷ 경수로 지원 과정에서 한국의 중심적 역할 수행

▷ 경수로 지원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궁극적으로 남북합의서 이행 체계의 틀 안으로 유도

▷ 미·북 간에 합의된 제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추진

▷ 국민적 합의와 이해를 바탕으로 추진

1993년 7월 미·북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경수로지원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이래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민족공존공영의 차원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특히 김영삼 대통령은 199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민족발전공동 계획의 첫 사업으로 북한의 경수로 건설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대북 경수로 지원 용의를 표명한 것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반대급부 차원에서 고려된 것이 아니라 민족공동체의 장기적 발전과 21세기 한반도의 에너지 수급 상황을 고려한 것이었다.

즉 우리 정부의 대북 경수로 지원은 북한이 우려하는 것처럼 흡수 통일의 수단이거나 '트로이의 목마'로 삼으려는 의도는 처음부터 없었으며, 다만 미·북합의의 바탕 위에서 민족의 복리증진이라는 장기적 계획에서 접근되었던 것이다.

한편 제네바 미·북합의(1994. 10. 21.)에 따라 대북 경수로 지원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미·북 전문가회담이 북경과 베를린 등 장소를 옮기면서 개최되었다.

▷ 대북 경수로 제공 문제 관련 미·북 전문가회담

제1차 회담	1994. 11. 30. — 12. 2. 북경
제2차 회담	1995. 1. 28. — 2. 1. 베를린
제3차 회담 제1차 회의	1995. 3. 25. — 3. 27. 베를린
제3차 회담 제2차 회의	1995. 4. 12. — 4. 14. 베를린
제3차 회담 제3차 회의	1995. 4. 18. — 4. 20. 베를린

미 국	북 한
Gary Samore 국무부 부과장	김정우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북한은 미·북회담 과정에서 한국형 경수로 및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불인정하면서, ▷미국 설

계 원자로 ▷미국 기업 주도 합작회사(Joint Venture)가 주계약자가 될 것 등을 주장하였다.

다만 경수로 지원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한국에 대해서는 일부 설계, 제작의 대부분, 전체 시공을 담당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를 완강하게 거부함으로써 베를린 회담은 결렬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6개월 이내에 경수로 제공을 위한 공급계약 체결'이라는 제네바 미·북합의가 위협받는 상황에 도달하였다. 이와 관련 북한은 동 기간내에 공급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원자로 재장전 등 핵활동 재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리 정부와 미국은 4월 21일이 경수로 공급 협정 체결을 위한 법적 시한(Deadline)이 아니라 목표 일자(Target Date)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북한이 만일 핵활동을 재개할 경우, 이를 제네바 합의의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 안보리 제재 등 대응 조치가 불가피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한 1995년 4월 22일 외무부 대변인 논평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베를린 경수로 전문가 회담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끝남에 따라 경수로 문제 관련 미·북한간 협상이 심각한 교착 상태에 처하게 된 것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한·미 양국으로서는 한국형 경수로와 한국의 중심적 역할이라는 기본원칙의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융통성을 가지고 북한의 입장을 수용코자 하였으나, 북한이 이러한 우리의 성의를 끝내 무시하고 자신의 불합리한 주장만을 거듭하였다.

북한은 제네바 미·북 합의에서 남북대화 재개 및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에 관해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바, 우리는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를 거부하는 것도 이러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며, 이를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우리는 4.21이 경수로 공급 협정 체결 목표 일자에 불과하다고 보며, 따라서 북한이 스스로 설정한 시한에 구애되어 일방적으로 핵동결을 해제할 경우 초래할 심각한 결과를 고려하여 성의를 가지고 협상에 계속 임하기를 촉구한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핵동결을 유지하는 한 언제든지 북한과의 협상 문호는 열려 있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베를린 회담 결렬 후 미국은 경수로 문제 타결을 위해 갈루치-강석주 회담을 제안하였으며, 북한은 여전히 핵활동재개 위협을 가하면서도 원자로 재장전 등 제네바 미·북합의를 파기하는 행동으로의 이행은 보이지 않음으로 해서 미·북협상의 여지는 남겨 두었다.

북한이 갈루치·강석주 회담을 거부한 이후 미·북 양측은 우여곡절 끝에 미·북 준고위급 회담을 말레이시아 팔라렘푸르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팔라렘푸르 회담은 허바드 미 국무부 부차관보와 김계관 북한외교부 부부장을 수석대표로 수석대표회담, 전체회의 등 회담의 형식을 달리해 가면서 5월 19일부터 6월 12일까지 근 1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회담 초기 북한은 한국형 경수로의 실체는 인정하되 미국형을 나타내는 경수로 명칭, 미국 기업에 의한 최종설계 등을 집요하게 요구하여 회담 전망을 어둡게 하였다. 그러나 회담 석상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문제 등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는 등 경수로 문제 타결에 대한 집념을 보여주었다.

미국은 한·미간 사전 협의 결과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문안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북한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는데 주력하였다.

회담 중반기 이후 북한은 경수로 명칭과 관련 미국형 주장을 철회하고 KEDO의 주계약자 선정, KEDO—주계약자 간 상업계약 체결 등 경수로 명칭과 사업 구조 등에 관해 미국측 입장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이러한 양보의 대가로 경수로 공급범위 등에 있어 미국측의 양보를 요

구하였다.

또한 북한은 미국 주도의 합작회사(Joint Venture)가 주계약자가 되어야 한다는 종래의 주장을 포기하면서도 설계에 있어 미국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입장을 보였다.

북한은 결국 설계에 있어서도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 미국 기업에 의한 최종 설계 ▷공급 범위 등에 대한 미국측의 양보 등 협상의 장애가 되었던 주장들을 철회하면서 향후 KEDO—북한간 공급협상시 경수로 사업의 미결 문제를 논의한다는 원칙에 동의해 왔다.

다만 북한은 자신의 체면을 내세워 참조 발전소와 주계약자의 구체적 역할에 대한 명기는 완강히 거부하였다.

한·미 양국은 갈루치 대사 방한시 한국 표준형 및 한국의 중심적 역할이 모호하지 않게 드러나도록 하되 북한의 체면도 고려한 문안과 향후 조치 계획에 관해 협의를 끝낸 후 미·북 합의문을 발표키로 하였다.

### 3. 회담 내용

미·북 양측은 1995년 6월 12일 공동 언론 발표문안에 합의하고 6월 13일 18:00(서울 시간) 팔라뎀푸르 현지에서 아래 내용의 발표문을 공동 발표하였다.

- ▷ 제네바 미·북 기본합의문 이행 의지 재확인
- ▷ 북한에 제공될 경수로 노형은 KEDO가 선정
- ▷ KEDO와 북한(대외경제위원회)간 공급 협정 체결
- ▷ 경수로 공급 협정 미해결 문제 협의를 위해 KEDO와 북한간 조속한 시일내 협상 개시
- ▷ 6월중 중유전용 방지문제 협의를 위한 미·북 전문가회담 개최
- ▷ 사용후 연료봉 처리를 위한 미 전문가 팀의 6월중 방북

다음은 팔라뎀푸르 미·북 공동 언론 발표문 전문이다.

미국 대표단과 북한 대표단은 팔라뎀푸르에서 1995년 5월 19일부터 6월 12일까지 1994년 10월 21일의 미·북 기본합의문의 이행과 관련한 회담을 가졌다.

양측은 미·북 기본합의문의 이행에 관한 정치적 약속을 재확인하였으며, 특히 동 합의문에 입각한 경수로 사업의 원활한 이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I. 미국은 경수로 및 대체에너지 제공에 관한 1994년 10월 20일자 미 대통령의 보장 서한이 계속 유효함을 재확인한다.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는 미국 주도하에 미·북 기본합의문에 입각하여 북한에 제공될 경수로 사업의 재정 조달 및 공급을 담당한다. 합의문에 명기되어 있는 바에 따라 미국은 경수로 사업에 있어서 북한과의 주접촉선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관련, 미국 국민이 필요에 따라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KEDO 대표단 및 작업반의 대표가 된다.

II. 경수로 사업은 각각 두 개의 냉각재 유로를 가진 약 1,000MWe의 발전 용량의 가압 경수로 2기로 구성된다. KEDO가 선정하는 경수로의 노형은 미국의 원설계와 기술로부터 개발되어 현재 생산중인 개량형으로 한다.

III. 북한 정부를 대표한 대외경제위원회와 KEDO가 북한에 경수로를 턴키 베이스로 제공하기 위한 공급 협정을 가능한 최단 시일내에 체결한다. 이 발표문에 기초하여 북한은 경수로 공급 협정에 관한 현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KEDO와 회동한다.

KEDO는 경수로 사업의 건설과 운전에 필요한 요건들을 확인하기 위해 부지 조사를 실시한다. 동 부지 조사와 부지 준비에 소요되는 경비는 경수로 사업의 공급 범위에 포함된다.

KEDO는 경수로 사업을 수행할 주계약자를 선정한다. 경수로 사업의 전반적 이행에 관하여

KEDO의 감리업무를 보조할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미국 기업이 담당하며, KEDO는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를 선정한다. 북한 기업은 경수로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에 따라 이행에 관련된 계약에 참여한다.

IV. 경수로 사업에 추가하여 양측은 기본합의문의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양측의 전문가들은 기본합의에 따른 중유의 단계적 공급을 위한 일정과 제반 협력 조치에 합의하기 위해 6월중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북한에서 만난다. KEDO는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중유의 일차분 공급을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한다.

1995년 1월 20일자 사용후 연료봉의 안전한 보관에 관한 미·북한간 회담 기록은 신속하게 실천에 옮겨진다. 이와 관련, 동 이행을 위해 미국 전문가들이 6월중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북한을 방문한다.

동 발표문에 앞서 1995년 6월 13일 아침 클린턴 미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 앞으로 미·북합의와 관련하여 친서를 전달해 왔다.

클린턴 대통령 친서 전달과 관련한 윤여준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팔라룸푸르에서 개최되고 있는 미·북 경수로 회담과 관련하여, 지난 6월 8일 양국 정상간 전화 협의를 한데 이어, 오늘 6월 13일 김대통령 앞으로 친서를 송부하여 왔다.

클린턴 대통령은 친서에서 북한에 제공될 경수로는 KEDO설립 협정에 명기된 한국 표준형 원자력 발전소 모델이 될 것이며 참조 발전소는 울진 3, 4호가 될 것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클린턴 대통령은 주계약자는 한국 회사가 될 것이며, 동 회사는 설계, 제작, 시공, 사업 관리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 있어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경수로 사업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회사는 주계약자인 한국 기업의 하청을 맡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어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과 제네바 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서는 남북대화 의 재개가 필수 불가결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였다.

한편 1995년 6월 13일 17:00 서울에서 한·미·일 3국 대표가 참석하는 KEDO 집행이사회가 개최되었으며, 동 이사회는 북한에 제공될 경수호가 한국 표준형 원자로 2기로 구성되며, 울진 3, 4호기를 참조 발전소로 결정한다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동 결의문은 또한 KEDO가 한국 회사를 설계, 제작, 시공 및 사업관리등을 포함한 경수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주계약자로 선정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다.



다음은 KEDO 집행이사회가 발표한 공동 언론 발표문 전문이다.

한국·미국 및 일본의 KEDO 집행이사회 대표들은 6월 13일 서울에서 제3차 집행이사회를 갖고 대북 경수로 사업과 관련한 제반 사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금번 회의에는 한·미·일 3국의 KEDO 집행이사회 대표인 최동진 대사, 로버트 갈루치 대사 및 앤도 테쓰야 대사가 각각 참석하였다.

집행이사회는 1995년 5월 19일부터 6월 13일까지 팔라룸푸르에서 열린 협상이 한·미·일간의 긴밀한 협조하에 이루어졌음에 유의하였다. 동 회담에서는 경수로 사업 이행을 위한 기본원칙 즉 한국 표준형 원자로 제공과 한국의 중심적 역할이 확인되었다.

집행이사회는 경수로 공급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는 것이 미·북 기본합의문의 이행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에 유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KEDO와 북한간에 공급 협정을 체결하고 필요한 제반 관련 조치를 위한 논의가 즉시 개시되어야 할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집행이사회는 팔라룸푸르 회담과 관련하여 북한에 제공될 경수로로는 KEDO 설립협정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한국 표준형 원자로로 하고, 그 참조 발전소는 울진 3, 4호로 할 것을 결정하였다. 집행이사회는 주계약과 관련 한국전력주식회사와 협의를 시작토록 KEDO에 지시하였다.

집행이사회는 북한내 부지 조사와 경수로 공급 협정에 관한 KEDO와 북한간의 협상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도록 KEDO에 지시하였다. 집행이사회는 KEDO대표단과 작업반이 KEDO 원회원국 전문가들을 포함하도록 결정하였다.

또한 집행이사회는 북한에 제공될 중유 인도 일정과 협력조치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또한 사용후 연료의 안전한 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대로 중유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한편 집행이사회는 가급적 조기에 뉴욕에서 KEDO 총회를 개최기로 결정하였다.

우리 정부는 팔라룸푸르 미·북 합의를 통해 미국과 북한이 대북경수로 지원 사업을 이행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에 합의한 것은 향후 사업 진행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서 이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하며 지지한다는 내용의 외무부 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금번 합의를 계기로 대북 경수로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됨으로써 북한 핵문제의 완전 해결을 가져오게 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1995년 6월 13일 발표된 외무부 성명 전문이다.

미국과 북한은 금번 팔라룸푸르 미·북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제네바 미·북합의에 따른 대북 경수로 지원 사업을 이행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에 합의하였다. 이는 향후 사업 진행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서, 우리 정부는 이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하며 지지하는 바이다.

금번 합의에 따라 한국형 경수로 제공 및 한국의 중심적 역할이라는 우리 정부의 대북 경수로 지원 사업과 관련한 2대 원칙이 관철되게 되었다. 또한, 금일 오후 개최된 KEDO집행이사회는 결의를 통해 KEDO 설립 협정에 명기된 한국 표준형 원자력 발전소 모델인 울진 3, 4호기를 참조 발전소로 선정하고, 한전을 경수로 사업의 설계, 제작, 시공 및 사업관리를 담당할 주계약자로 선정함으로써 동 사업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첫 단계 조치를 취하였다.

금번 합의로써 경수로 사업과 관련한 미·북한 회담은 종결되고, 앞으로 대북협상은 KEDO로 이관되게 되었다. KEDO의 원회원국인 우리는 경수로 부지 조사, 대북 공급협정 결 등 향후 북한과의 경수로 사업 협상에 직접 참여하여 동 사업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방침이다.

우리는 금번 합의를 계기로 KEDO와 북한간 공급 협정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이에 따라 대북 경수로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됨으로써, 궁극적으로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가져오게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 정부는 대북경수로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제네바 합의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남북대화의 조속한 재개가 필수 불가결하다고 믿으며,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하는 바이다.

#### 4. 의의 및 평가

콜라롬푸르 미·북합의의 의의는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1994년 10월 21일 약속한 제네바 기본합의문에 대한 미·북 양측의 계속적 이행 의지를 확인하였다.

즉 제네바 미·북합의에 따른 북한의 의무사항으로서 ▷핵동결 유지 ▷사용후 연료봉 처리 협조 문제와, 이에 대한 미국의 약속사항으로서 ▷경수로 사업이행 ▷대북 중유 제공문제 등에 대하여 미·북 양측이 그 이행을 재차 확인하였다.

둘째, 대북 경수로 지원 사업의 기본골격에 합의하였다.

그동안 쟁점사항으로 되어 있던 한국형 경수로 제공과 경수로 사업에 있어 한국의 중심적 역할 수행 등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였다.

셋째, KEDO의 역할부각 및 한국의 참여 토대를 마련하였다.

▷KEDO-북한 대외경제위원회간 공급협정 체결 ▷KEDO-북한간 직접협상 개시 ▷KEDO에 의한 부지조사 실시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그동안 KEDO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던 북한으로 하여금 KEDO를 협상 파트너로 인정케 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은 KEDO를 통해 실질적인 참여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한국형 경수로 제공 원칙 확인

한국형 경수로 제공 원칙은 ▷KEDO에 의한 경수로 노형 선정 ▷경수로 노형의 기술적 표현에 의한 한국형 경수로 지칭 등 2가지를 통해 그 원칙이 관철되었다.

첫째, KEDO가 경수로 노형을 선정한다는 것은 북한에 제공될 경수로가 한국 표준형 원자로이며, 참조 발전소는 울진 3, 4호기가 될 것임을 명백히 의미하고 있다.

이는 KEDO의 설립 협정이 1,000MWe 용량의 한국 표준형 원자력 발전소형 2기를 북한에 제공하는 것을 KEDO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데에서도 잘 알 수 있다.

\* KEDO 설립 협정 제2조, 기구의 목적 중(1)

기구와 북한간에 체결될 공급협정에 따라 각각 1,000MWe 용량의 2개의 한국표준형 원자로로 구성되는 북한에서의 경수로 사업의 재원조달과 공급

둘째, 경수로 노형의 기술적 표현으로 간접적인 한국형 경수로를 지칭하고 있는데, 두 개의 냉각제 유로를 가진 1,000MWe 가압 경수로 2기, 현재 건설중에 있는 것 등의 표현은 한국 표준형 원자로의 제원을 나타내는 것이며, 단지 한국 표준형 원자력 발전소(KNSP)라는 용어만 사용치

않았을 뿐이다.

#### 한국의 중심적 역할 수행원칙 확인

북한은 KEDO가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경수로 사업을 수행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는데, 이는 한국의 중심적 역할 수행원칙에 대해 간접적으로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KEDO협정 당사국인 한·미·일 3국 간에는 한국 표준형 원자로 제공사업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국기업이 주계약자가 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고, 동 계약자가 설계·제작·시공 및 사업관리를 포함한 경수로 사업을 전반적으로 수행해 나간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 KEDO-북한간 직접협상 원칙 합의

KEDO-북한간 공급협정 체결 및 이를 위한 양자간 직접협상 개시 원칙에 미·북 양측이 합의함으로써 향후 KEDO에 의한 사업이행의 골격을 마련하였다.

이는 형식상 비록 미국인이 KEDO 협상팀 및 부지조사단을 이끌게 되어 있으나 내용면에서는 한국의 주도적 역할하에 한·미·일 3국이 향후 대북협상을 진행시켜 나가게된 것을 의미한다.

#### 북한의 사용후 연료봉 처리 협조 확보

사용후 연료봉 처리를 위한 미국 대표단의 6월중 방북에 합의함으로써 사용후 연료봉의 안전한 보관 및 궁극적으로 제3국으로의 반출과정에 대한 추진 작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향후 북한이 사용후 연료봉의 부식을 핑계로 핵활동 동결해제를 위협해 올 가능성에 대한 효과적인 차단책을 마련한 것이라 하겠다.

#### 북한의 중유전용 방지방안 확보

북한에 제공되는 중유의 전력용외 사용 방지문제 및 중유제공 일정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미·북간 전문가회의를 6월중에 개최기로 합의함으로써 북한에 제공할 중유의 산업·군사용으로의 전용방지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또한 미·북 양측은 중유 전용방지 장치가 마련된 이후에만 비로서 대북 추가 중유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북한이 동의한 협력조치(Cooperative Measure)는 일반적으로 미·소간 군축협상시 검증장치(Monitoring Arrangement)를 의미하는 단어로써 북한도 이와같은 의미를 확실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동의한 것이다.

## V. 한반도에너지 개발기구 설립

### 1. 협정의 체결

한·미·일 3국은 미·북 제네바 합의의 이행, 특히 대북경수로 지원 사업의 수행을 위한 기구를 발족시키기 위하여 수차례의 고위 및 실무급 회의를 개최, 이 문제를 논의한 끝에 1995년 3월 9일 뉴욕에서 「한반도에너지 개발기구」(Korean Peninsular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 약칭 KEDO)의 설립을 위한 협정에 서명하였다.

KEDO의 주목적은 북한에 제공할 전기 출력 약 1,000MWe급 한국 표준형 경수로 2기의 조달과 공급, 제1호 경수호가 완성될 때까지의 대체에너지 제공 문제를 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수로의 핵심 부품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체결한 전면안전조치협정을 이행한 후 제공될 것이며, 핵공급국그룹(NSG)의 국제원자력수출통제지침(London Guideline)에 적합하게 이루어 질 것이다.

또한 KEDO는 1994년 10월 21일 체결된 미·북 기본합의문 (Agreed Framework)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제네바 합의가 완전하게 이행되면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흑연감속로를 해체하고, 국제 핵비확산체제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 핵문제가 해소되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이행하고 남북대화에 응하는 것과 핵확산방지조약(NPT)의 회원국으로서 전면안전조치협정 등의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제네바 합의 이행의 필수적인 내용인 것이다.

한·미·일 3국은 협정서명에 앞서 3월 8일 뉴욕의 UN주재 미대표부에서 동 기구의 설립준비를 위한 국제회의를 공동으로 주관하였다.

이 회의에는 호주, 바레인, 부루나이,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인도네시아, 이태리,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화란, 뉴질랜드, 필리핀, 카타르, 러시아, 싱가포르, 태국, 아랍도후국연방(UAE), 영국 등 20개국 정부 대표들과 유럽연합(EU)대표가 참가하였다.

준비회의 다음날인 3월 9일 한·미·일 3국은 KEDO의 원회원국으로서 동기구 설립을 위한 협정서명식을 가졌다.

최동진 경수로 기획단장, 갈루치(Robert. L. Gallucci)미국무부 북핵 담당대사, 엔도(Endo Tetsuya) 일본외무성 본부대사가 각기 자국 정부를 대표하여 동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국제법에 의거한 국제기구로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가 공식 발족하게 되었다.

우리 정부는 KEDO의 활성화를 위해 ▷ KEDO 가입국 확보 노력 적극 전개 ▷사무국 조기 가동을 위한 미·일과의 실무협의 ▷ KEDO의 대북협상에 대비한 사전준비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 ▷ KEDO 설립을 위한 한·미·일 협의 과정

- 1994.11.18 - 19 한·미·일 협의 (워싱턴)

\* KEDO문호개방 조기 구성, 한국의 중심적 역할 수행 합의

- 1994.12.15 - 16 한·미·일 고위협의 (워싱턴)

\* KEDO소재지 (뉴욕)확정 및 2월중 KEDO 설립원칙 합의

- 1995.1. 9 - 12 한·미·일 실무협의 (워싱턴)
- 1995.1.19 - 20 한·미·일 실무협의 (동경)
- 1995.2.27 - 28 한·미·일 실무협의 (워싱턴)
- 1995.3. 2 - 3 한·미·일 고위협의 (워싱턴)
- 1995.3. 7 - 9 KEDO 설립 준비회의 및 서명 (뉴욕)
- 1995.3. 9 KEDO 1차 집행이사회 (서울)
- 1995.4. 7 KEDO 2차 집행이사회 (서울)
- 1995.6.13 KEDO 3차 집행이사회 (서울)

## 2. 협정의 주요내용

KEDO 설립협정은 설립목적과 기능 및 원칙, 구성과 조직, 그리고 재정운영 및 법적 지위 등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전문과 15조로 구성되어 있다.

### KEDO의 목적·기능 및 원칙

KEDO는 북한과 경수로 공급협정을 체결하게 되며, 이에 따라 KEDO는 주계약자를 선정하여 주계약자와 경수로 건설을 위한 상업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협정에 의하면 KEDO의 설립목적은 약 1,000MWe 용량의 한국 표준형 경수로 2기로 구성되는 대북한 경수로 지원 사업과 관련한 자원 조달과 공급, 그리고 대북한 대체에너지 공급 및 이러한 목적 달성이나 미·북한 기본합의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타 조치의 이행을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 제공되는 경수로 2기가 한국 표준형임이 명문으로 확실히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KEDO는 어디까지나 북한측이 미·북 기본합의문상의 의무 사항을 완전히 이행토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를 기구의 목적으로 수행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 협정은 이어 이러한 목적 추진을 위하여 KEDO가 수행하여야 할 제반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KEDO의 기능에는 KEDO 사업의 평가 및 관리, 회원국으로부터의 자금수령, 북한으로부터의 상환, 관련 협정 및 계약의 체결 등이 포함된다.

또한, KEDO의 활동과 관련하여, 이 협정은 북한이 KEDO와 체결한 협정을 준수할 것과 미·북 기본합의문에 일치하는 방법으로 행동할 것을 그 조건으로 삼고 있다.

또한 북한에 이전되는 핵물질, 장비 및 기술이 전적으로 경수로 사업을 위해서만 그리고 평화적 목적으로만 안전하게 이용되도록 북한으로부터 공식적인 보장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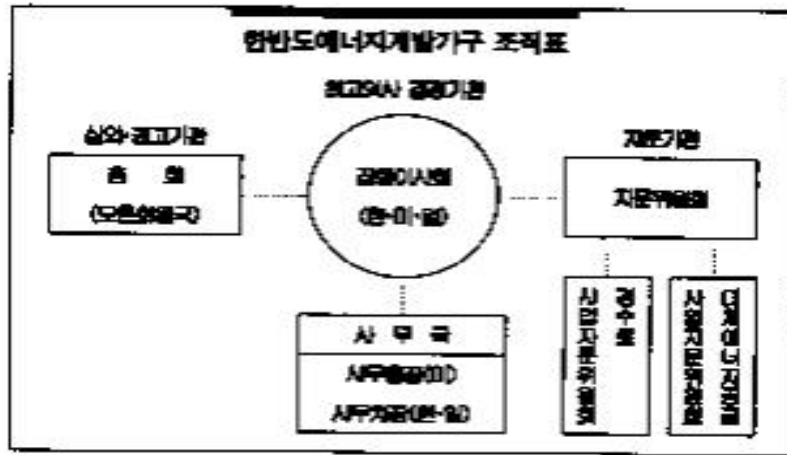
### KEDO의 구성 및 조직

우선 KEDO는 원회원국과 일반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원회원국은 한·미·일 3국으로, 일반 회원국은 KEDO에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로서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국가로 구성된다.

KEDO의 조직은 집행이사회, 총회, 사무총장, 사무차장 등 직원 및 자문위원회로 구성되며, 이중 가장 중요한 기관은 최고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집행이사회라고 할 수 있다.

집행이사회는 원회원국인 한·미·일의 대표 각 1명으로 구성되며, 이들 3명의 대표중에서 2년 임기의 의장을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집행이사회의 모든 결정은 전원 합의(Consensus)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한·미·일 3국 모두의 협조없이는 KEDO의 정상적 운영이 수행될 수 없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다.



총회는 전 회원국 대표들로 구성된다. 총회의 회의는 연례보고서 심의를 위하여 년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집행이사회가 제출한 사안을 토의하기 위해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된다.

총회는 의사결정권은 없으며, 연례보고서의 심의와 집행이사회에 권고 사항을 제출하는 등의 심의·권고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사무총장은 KEDO의 최고책임자로서, 집행이사회 의 지휘·감독하에 KEDO본부 및 직원의 조직과 지휘, 연례예산안의 준비, 자원조달, 그리고 계약의 승인, 작성 및 집행 등 집행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일반행정업무를 수행한다.

사무총장 및 사무총장을 보좌할 2명의 사무차장은 집행이사회에서 2년 임기로 선출되는 데, 이들은 한·미·일 3국의 국민중에서 선출되어 임명된다.

단, 초대 사무총장은 미국인사가 되는 것으로 3국간에 양해되어 있다. 결국 집행이사회와 사무국 고위직은 한·미·일 3국이 맡게 될 것이며, 따라서 KEDO는 이들 3국의 주도하에 운영될 것이다.

자문위원회는 경수사업자문위원회, 대체에너지 공급사업자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되는 데 각자문위원회는 소관업무를 지원하는 회원국 대표들로 구성되며, 집행이사회와 사무총장에 대한 권고기능을 수행한다.

#### KEDO의 재정운영 및 법적 지위

KEDO의 재정운영 등에 대하여 이 협정에서는 주로 원칙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으며 자원조달 등 세부적인 운영방안은 앞으로 KEDO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KEDO는 계약의 체결, 부동산의 차용 및 임대 취득 및 처분 그리고 소송 제기능력등 KEDO가 각 회원국, 특히 소재국인 미국에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법인격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떤 회원국도 회원국으로서의 지위 때문에 KEDO의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함으로써 KEDO가 회원국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권리, 의무 능력을 가짐을 분명히 하였다.



## 협정 발효 가입 및 탈퇴

KEDO협정은 원회원국들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한다. 또한 집행이사회가 회원국 가입을 승인한 국가는 사무총장에게 협정수락서를 제출함으로써 회원국이 될 수 있다.

KEDO협정은 원회원국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으며, 원회원국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회원국은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탈퇴 통보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이 기구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부록

1. 남북관계 일지(1994.12.1.-1995.6.30.)

1994년 12월

12. 1. 한국,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11.30. 경수로 제공 문제 관련 미·북 전문가회담(북경)

~12. 2. \* Gary Samore(미 국무부 부과장), 김정우(북 대외경제위 부위원장)

12. 6. 연락사무소 개설 관련 미·북 전문가회담(워싱턴)

~9 \* Lynn Turk(미 국무부 부과장)-박석균(북 외교부 부국장)

12.10. 정부, 남북 경협활성화 조치에 따라 국내기업 방북 승인

- 럭키금성, 삼성, 현대, 쌍용, 영신무역, 대동화학 등 6개 기업

12.15. 군정위 중국군 대표단 판문점에서 완전 철수

12.15. UN총회, '핵안전협정 이행 및 IAEA사찰 수용 촉구 대북 결의안' 채택

- 북한에 대하여 더 이상 지체함이 없이 안전조치협정의 완전 이행을 통해 IAEA에 협조할 것과,

-모든 안전조치 관련 정보·장소에 대한 IAEA의 접근허용을 촉구

12.15. KEDO 설립 관련 한·미·일 고위협의(워싱턴)

~16. \* 최동진 경수로기획단장, 갈루치 미 국무부 핵담당대사, 엔도 일 외무부 대사

12.16. 국회, 남북한 거래는 민족내부 거래임을 명시한 'WTO협정 이행 특별법안' 통과

- 남북한간의 거래는 민족내부 거래이므로, 협정에 의한 국가간의 거래로 보지 아니함.(WTO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안 제6조)

12.17. 북한, DMZ 북측 지역에서 주한미군 헬기 격추 발표

12.17. 한미연합사, 미군 헬기 격추 관련 군정위 소집 요구

12.17. 클린턴 미대통령, 미군 헬기 추락 관련 조종사 송환 촉구 성명

12.20. 미·북, 미군 헬기 불시착 관련 군정위 실무접촉(판문점)

\* 힐러리 미군 중령, 유영철 북한군 중좌

12.22. 북한, 미군 헬기 조종사 「데이비드 하일만」 준위 유해 송환

-방북중이던 「빌 리처드슨」 미하원의원과 함께 판문점 통과

12.30. 미군 헬기 조종사 「보비 홀」 준위 판문점 통과 귀환

1995년 1월

1. 1. 김영삼 대통령 신년사

-남과 북은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함.

1. 1. 북한 신년사 대신 당보·군보·청년보 공동사설 게재

\*'위대한 당의 영도를 높이 받들어 새해 진군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자'

1. 6. 김대통령 연두기자 회견

-통일은 세계화의 목표이자 수단임.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에 정상이 나타났을 때, 자연스럽게 북한이 얘기해 오는게 순서임.

1. 7. 김수환 추기경, 방북 용의 표명

-남북통일에 도움이 된다면 올해 안에 북한을 방문하겠음.

1. 9. KEDO 설립 관련 한·미·일 실무협약(워싱턴)

~12.

-KEDO 설립협정 문안 조정

1.12. 통일원, 북한내 이산가족에게 제3국을 통한 소액송금 가능 확인

1.12. 통일원, 국내기업 방북 추가 승인

-한화그룹·동양그룹·신원·대우그룹 등 4개 기업

1.15. 미국, 대체에너지 중유 5만톤(1차분) 북한에 제공

-호남정유 수주, 제3국 공해상을 통한 남북 직수송

1.16. 북한 외교부 대변인, 경수로 공급 계약서에 한국형 명기 거부

1.18. 폐연료봉 처리 관련, 미·북 전문가회담(평양)

~23. \* Norman Wulf(미 군축처 부처장), 이상근(북 방사화학연구소장)

1.19. KEDO 설립 관련 한·미·일 실무협약(동경)

~20. \* 조창범 외무부 연구관, 허버드 미 국무부 부차관보, 다게우찌 일 아주국 심의관

1.20. 미국무부, 대북 경제제재완화조치 발표

1.23.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발족

-통일관계장관회의 산하기구로서, 대북경수로사업 지원관련 실무전담

1.24. 북한 정당·단체 연합회의, 8·15 공동경축 및 대민족회의 개최 제의

-남조선과 해외의 정당·단체 각계각층 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채택

1.24. 북한 외교부 대변인, 미국측의 기본합의문 이행조치 관련 '보도' 발표

-미국의 대체에너지 중유 5만톤 제공과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사실 보도

1.25. 송영대 통일원차관, 8·15공동경축행사 및 남북현안문제협의를 위한 차관급 접촉제의

1.25. 미 공화당, '미·북 합의 이행 결의안' 의회 제출

1.27. 북한, 노동신문을 통해 우리측의 차관급 접촉 제의 거부

-남한 당국이 8·15공동경축행사는 지지하면서 대민족회의를 통일전선방식이라며 반대하는 것은 공동경축 자체를 부정하는 자가당착의 논리임.

1.28. 이기택 민주당 대표, 방북의사 표명

-대화단절 상황에서 야당대표라도 나서서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 국익을 위해 시의적절한 일임.

1.28. 경수로 제공문제 협의를 위한 미·북 전문가회담(베를린)

~2. 1.

1.30. 조평통 서기국, IAEA의 '굴업도' 핵폐기물 처리장 계속 추진 권고 비난 담화

1.31. 연락사무소 개설 관련 미·북 전문가회담(평양)

~2. 4.

1995년 2월

2. 1. 조국전선 중앙위, 우리측 민자당·신민당·새한국당에 편지 발송

2. 1. 사회민주당 김병식 위원장, 민주당 이기택 대표에게 정당회담 제의 편지 발송

-'8·15통일대축전'과 '대민족회의' 실현을 위해 남과 북의 정치인들이 하루빨리 만나야 함.

2. 3. 김덕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제의 대북 성명

-이산가족 평양축전 참관, 언론인 방북 취재활동 허용, 기업인의 판문점 통과 남북왕래 보장 등을 협의·해결하기 위한 회담 제의

2. 3. 북한, 대민족회의 소집 관련 우리측 단체들에 편지 공세

-한국민족예술인연합 업무옹 이사장 등 3개 단체 5명

2. 6. 국제선명회, 30만톤의 양곡을 북한에 기증 예정 발표

-국제선명회 이윤구 부총재와 북한 고려민족산업발전협의회 이상록 회장·조선 삼천리총회 사 김봉익 사장간 북경에서 합의

2. 6. 북한, 노동신문을 통해 김덕 부총리의 남북고위당국자 회담제의를 거부

2. 6. 한·미 외무장관,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 관련 합의(워싱턴)

-미·북 간 연락사무소 교환 개설 시기를 남북대화를 포함한 미·북 핵합의의 제반 조치 이행 경과를 종합검토 후 결정

-남북대화 재개를 연락사무소 개설의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기로 함.

2. 6. 북한,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을 통해 김정일 생일(2. 16.)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발표

2. 6. 북한, 대민족회의 소집 관련 우리측 단체들에 편지 공세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천영세 공동의장 등 4개 단체 5명

2. 7. 북한, 대민족회의 소집 관련 우리측 단체들에 편지 공세

- '전국업종노동조합회' 권영길 의장 등 6개 단체 7명

2. 7. 북한, 대민족회의 소집 관련 우리측 단체들에 편지 공세

-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이창복 공동의장 등 6개 단체 10명

2. 8. 북한, 대민족회의 소집 관련 우리측 단체들에 편지 공세

- '남북민간교류협의회' 김승균 이사장 등 5개 단체 5명

2. 8. 북한,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 대변인, 종군위안부문제 아시아 연대회의 참가 관련 담화 발표

-서울회의 참가에 따른 실무절차문제 협의를 위한 접촉제의

2. 9. 통일원 대변인, 북한의 종군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 참석 용의 표명 관련 논평

-정부는 북측대표단의 참석 허용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중임.

2. 9. 북한, 대민족회의 소집 관련 우리측 단체들에 편지 공세

-통일문제연구소 백기완 소장 등 7개 단체 8명

2.11. 한·일 외무장관, 대북경수로 지원문제 관련 합의

-한국형 경수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미·북 합의가 원점으로 회귀하는 것이 불가 피함.

2.15. 북한 외교부대변인, 한국형 경수로 강요 뎀 미·북 합의 '과기' 위협

-미국이 무조건 한국형이라는 이름까지 강요하려는 것은 불순한 정치적 목적이 있음.

2.20. 북한중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 중군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 참가  
통보

-2.26. 10:00, 판문점 통과에 따른 신변안전보장각서를 속히 보내주기 바람.

2.21. 이홍구 국무총리 대북경수로 지원문제 관련 보고(임시국회)

-우리의 중심적 역할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경수로 지원은 불가함.

2.21. 북한, 대민족회의 소집 관련 우리측 단체들에 편지공세

-아시아 태평양평화재단 김대중 이사장 등 4개 단체 4명

2.22. 아태재단, 북한 아태평화위원회의 접촉 제의 거부

2.22. 통일원, 제3차 일본군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 관련 북한측 참가자들의 남한방문  
승인

2.23. 한·미 양국, 미·북 합의 이행문제 관련 고위실무회의

\*이재춘 외무부 차관보, 로드 미국무부 차관보

2.24. 외무부 대변인, 폴란드 중감위 철수문제 관련 논평

-북한측의 행위는 정전협정 자체는 물론 평화상태로 전환될 때까지 현 정전협정의 준수를 명시한 기본합의서의 정신에 정면 위배되는 것임.

2.24. 북한 외교부 대변인, 평화보장체계 수립문제 관련 담화

-조선반도에서 정전협정을 대신하는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문제는 우리와 미국 사이에 해결할 문제임.

-미국이 자기의 책임을 계속 회피한다면 우리는 이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더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임.

2.25. 북한, 인민무력부장 오진우 사망 발표

\*당 중앙위·당 중앙군사위·국방위 공동명의

2.25. 국방부 대변인, 1995 T/S훈련 중단 발표

-정부는 북한의 미·북 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대하에서 3월중 실시예정인 T/S훈련은 실시하지 않기로 하였음.

2.26. 북한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 대표단, 종군위안부문제 아시아 연대회의 불참 관련 성명

2.26. 통일원 대변인, 북측대표단 일본군 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 불참 관련 논평

-북측이 모처럼 마련된 민간교류 행사에 사실과 다른 이유를 들어 방문을 취소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임.

2.27. KEDO 설립 관련 한·미·일 실무협약(워싱턴)

2.28. 외무부 대변인, 북한의 평화보장체계 수립요구 관련 성명

-북한 주장은 법적·현실적 측면에서 정진협정의 당사자인 우리의 지위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으로 타당성이 없음.

-정부는 남북한 사이에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며,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는 현 정진협정을 준수해 나갈 것임.

2.28. 중립국감독위원회 폴란드 대표단, 북한 강요로 철수

1995년 3월

3. 2. KEDO 설립 관련 한·미·일 고위협약(워싱턴)

~3.

3. 4. 북한 남조선의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대책위원회, 유엔과 세계 각국 정부·정당·단체들에 보내는 고발장 발표

3. 7. 북한 외교부 대변인, 한국형 경수로 거부입장 재표명

-경수로 제공협정이 조·미 사이에 합의된 4. 21.까지 체결될 수 있겠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경수로 협정이 합의된 기간내 체결되지 못하면 부득불 그에 상응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음.

3. 7. 김영삼 대통령, 대북 곡물·원자재 제공 용의 천명(베를린)

-북한이 필요하고 원하는 그 어떤 분야에서도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

-북한에 곡물을 비롯한 필요한 원료와 물자를 장기 저리로 제공할 용의가 있음.

3. 7. 북한, 민족통일대축전 북측 준비위원회 결성

3. 9.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공식 발족

\*한국 최동진 경수로 기획단장, 미국 갈루치 국무부 핵대사, 일본 엔도대사 서명

\*KEDO 제1차 집행이사회

3. 9. 최동진 경수로 기획단장 기자회견

-한국형 채택이란 한국이 경수로 공급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 기업이 설계·제작·건설을 담당해야 하는 것임.

3. 9. 갈루치 미국무부 핵대사 기자회견

-미·북합의문에는 경수로 공급협정을 4.21.까지 체결토록 밝히고 있으나, 이는 목표 일자 이지 최종시한은 아님.

3.10. 북한, 김대통령의 대북 물자지원 제의 거부

3.11. 북한 외교부 대변인, 한국형 경수로 수용 거부 및 KEDO와의 협상거부 입장표명

3.13. 통일원, 남북경협추진 국내기업 방북 추가 승인

-해태익스프레스, 산수음료, 대호건설, 기아인터트레이드, 효성물산, 제일제당, 연흥해외유한공사, 한국특수선 등 8개 기업

3.15. 통일원, 북한 1994년도 하반기 북한 경제동향 발표

-북한경제 5년째 마이너스 성장기록

3.15. 북한 조평통 서기국장 백남준, 굴업도 핵폐기물 처리장 확정 관련 기자회견

-남조선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중지하지 않을 경우 모든 남북합의서가 전면 백지화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함.

3.17. 북한, 대민족소집 관련 우리측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상임의장 이창복에게 편지

3.20. 통일원 대변인, 북한의 핵폐기물 처분장 중상모략 관련 성명

-굴업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임.



3.22. 김대통령, 북한의 핵합의 불이행시 세계의 응징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육사 임관식 치사)

-북한이 만약 핵합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시대에 역행하는 선택을 한다면 전세계의 응징을 면치 못할 것임.

3.23. 한·미 고위협의회(워싱턴)

~24.

-북한에 제공될 경수로 기종을 한국형으로 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

-북한이 현재의 핵동결 상태를 깨고 연변 원자로를 재가동할 경우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는데 합의

3. 25. 경수로 제공문제 관련 미·북 전문가회담(베를린)

~27.

3. 29. 북한, 대민족회의 소집 관련 우리측 단체들에 편지 공세

-이회창 전 국무총리 등 4개 단체 4명

3. 30. 정부, 한국표준형 채택 입장 재확인(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 한국표준형을 채택하고 설계, 제작, 건설 등에 중심적 역할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함.

- 한국의 실질적·중심적 참여 불가시 상당부분의 재정부담을 질 이유가 없음.

1995년 4월

4. 1. 8·15 민족통일대축전 북측 준비위 대변인, 우리측 정당·단체들에 접촉 제의 호응 촉구 담화

4. 1. 남북기독교인, 광복절 관문점 공동예배 합의

\* 한국기독교협의회 오충일 회장, 조선기독교연맹 강영섭 위원장

- 남북한 교회가 관문점에서 8·15희년 공동예배를 진행키로 합의

4. 4. 8·15 민족통일대축전 북측 준비위, 우리측 단체들에 편지공세

- 민주당 이종찬 고문 등 5개 단체 5명

4. 4. 8·15 민족통일대축전 북측 준비위, 우리측 단체들에 편지공세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고문 계훈제 등 10개 단체 10명

4. 6. 공로명 외무장관, 한국형 경수로 채택 관련 정부 입장 재확인(국회 통일외무위)

- 한국형이 배제되고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대북 경수로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
- 북한이 핵동결 의무를 파기할 경우 유엔 안보리 제재를 포함한 대북 제재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임.

4. 7. KEDO 제2차 집행이사회

4. 8. 나옹배 통일부총리, 북한측에 울진원자로 공개 용의 표명  
(울진 3호기 원자로 설치식 격려사)

- 정부는 북한측에게 울진의 한국표준형 경수로 참관을 허용할 용의가 있음.

4. 10. 미국, 북한과 직통전화 개설

4. 11. 8·15 민족통일대축전 준비위, 우리측 단체들에 편지공세

- 김복동 신민당 대표 등 4명

4. 11. 통일원, 대중교 안호상 총선교의 방북관련 입장 발표

- 정부의 사전승인 없이 방북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함.

4. 12. 경수로 제공 문제 관련 미·북 전문가회담(베를린)

~14.

4. 14. 정부, 방북 안호상 일행 사법처리 방침 확인(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의 처리가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선례가 된다는 점과 법적용의 형평성을 감안, 남북교류 협력법에 따른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음.

4. 16. 방북 대중교 안호상 총선교 일행, 판문점 통과 귀환

4. 18. 경수로 제공 문제 관련 미·북 전문가회담(베를린)

~20.

4. 22. 외무부 대변인, 미·북 베를린 전문가회담 결렬 관련 논평

- 정부는 4. 21이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 목표 일자에 불과하다고 보며, 따라서 북한이 스스로 설정한 시한에 구애되어 핵동결을 해제할 경우 초래할 심각한 결과를 고려, 성의를 가지고 협상에 계속 임하기를 촉구함.

4. 22. 북한 외교부 대변인, 미·북 베를린 전문가회담 결렬 관련 기자회견

- 미국이 부당하게도 있지도 않은 한국형 경수로를 마지막까지 내려 먹이려 한 것으로 해서 협상은 끝내 아무런 합의도 이룩될 수 없었음.

4. 27. 국방부, 북한의 의도적 정전협정 위반 대북 경고문 발송

- 북한군의 최근 남측지역 침범과 관련 정전협정 위반이 재발될 경우 북한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의 대북경고문을 유엔사를 통해 북한에 발송했음.

4. 28. 북한, 평화를 위한 평양 국제체육 및 문화축전 개최  
~29.

1995년 5월

5. 1. 번스 미국무부 대변인, 북한의 미·북 고위급회담 수락 사실발표

- 강석주 부부장이 갈루치 핵대사에게 보낸 회신을 접수했으며, 북한이 전제조건 없이 고위 회담 개최에 동의 했음.

5. 1. 허바드 미국무부 부차관보,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 방침 언급

- 연락사무소 개설이 경수로 협상, 남북대화 등 여타 요소들과 직접 연계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면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것임.

5. 2. 외무부, 북한의 고위급회담 수락 관련 논평

- 북한이 미국의 고위급회담 제의에 전제조건 없이 동의해 온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회담개최 시기, 장소 등은 미·북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임.

5. 3.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중립국 감독위원회 사무실 폐쇄 성명

- 판문점 중감위 사무실과 휴게실, 오락실 완전 봉쇄
- 미군측 성원들과 기자들, 중감위 성원들이 허가없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북측 지역으로 넘어오는 것을 일체금지

5. 4. 통일원 대변인, 북한의 중감위 사무실 폐쇄 관련 논평

- 북측의 이번 조치는 현 정전협정을 무효화시키고 그들이 말하는 평화보장체계를 미·북간에 교섭해 보려는 의도를 나타낸 것임.

5. 8. 한스 블릭스 IAEA 사무총장, 북핵문제 관련 유엔 안보리 서면 보고

- 북한측의 거부로 5MWe 실험용 원자로에서 인출한 사용 후 폐연료봉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5. 11. NPT연장회의, NPT조약 무기한 연장 결정

5. 15. 김대통령, 북한에 곡물·물자 제공 용의 표명(IPI 제44차 총회 개최식)

- 북한이 필요로 하는 곡물을 비롯한 원료와 물자를 장기 저리로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거듭 밝히는 바임.

5. 15. 북한 '조평통',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 비난 성명

- 남조선 당국자가 우리와 대화를 하려면 대화를 부정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론을 자기 입으로 취소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와의 대화에 대하여 꿈도 꾸지 말아야 함.
- 남조선 당국자가 감히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을 꿈꾸고 국제공조체제와 국가보안법에 매어달리면서 분별없이 반공화국 소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역행하고 온 겨레를 재난 속에 밀어넣는 용납못할 민족반역행위임.
- 남조선 당국자들은 대화의 재개를 누구에게 청탁할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 나라의 통일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들을 스스로 풀어야 함.

5. 15. 번스 미국무부 대변인, 미·북 준고위급회담 개최 공식 발표

5. 16. 정부, 판문점 공동행사 불허 방침 발표(통일관계장관회의)

\* 대북접촉·교류 허용기준

- ▷논의내용이 정치성이 배제된 순수한 목적일 것 ▷해당 단체의 대표성이 인정될 것 ▷제반 국내법 질서를 존중할 것 ▷실질적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

\* 민간 통일 논의·행사 추진 기준

- ▷정치성 행사 불허 ▷전국 규모 옥외행사 불허 ▷판문점 공동행사 불허

5. 17. 국제언론인협회(IPI), 북한의 개방·언론자유 촉구 결의문 채택(제44차 연례총회)

- IPI는 북한정부에 대해 ▷사회를 개방, 모든 언론인의 자유로운 출·입국과 여행보장 ▷언론과 의사소통의 자유허용 ▷이산가족간 공개적인 교신보장을 강력히 촉구 함.

5. 19. 미·북 준고위급회담 개최, (말레이시아 칼라룸푸르)

-6.12.

- \* 허바드 미국무부 차관보, 김계관 북외교부 부부장
- 5. 26. 북한, 일본에 쌀 공급 공식 요청
  - \* 이성록 북한 국제무역촉진위원장, 와타나베 일본 연립여당 방북대표단 대표
  - 일본의 남은 쌀을 일정량, 일정기간 대여해 줄 것을 요청
  - 남한으로부터도 아무런 전제와 정치적 조건없이 쌀을 원조하거나 대여한다는 제의가 있다면 검토하겠음.
- 5. 26. 나옹배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대북 곡물지원 제의
  - 우리 정부는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정치적 부대조건없이 북측이 필요로 하는 곡물을 제공할 용의가 있음.
- 5. 27. 정부, 대북 곡물지원 관련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개최
- 5. 29. 정부, 대북 곡물지원 관련 통일원차관 주재 유관부처 실무회의 개최
- 5. 30. 국방부, '제86 우성호' 북한에 의해 나포 발표
- 5. 31. 강영훈 한적총재, '제86 우성호'와 승선어부 송환요구 대북 방송통지문 발표

1995년 6월

- 6. 1. 나옹배 통일부총리, 남북직교역 확대 추진 방침 표명
- 6. 6. 송영대 통일원차관, 대북 쌀 제공 관련 북한측의 직접호응 촉구
  - 아무런 조건없이 쌀과 다른 식량을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재확인함.
  - 북한이 직접 우리의 제의에 호응해 주기를 바람.
- 6. 8. 나옹배 통일부총리, 대북 쌀 제공 관련 일본측에 신중대처 촉구
  - 남북 당국 사이에 직접 접촉에 의해 우리의 대북 곡물 지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일본측이 신중히 대처해 주기를 강력히 요망함.
- 6. 8. 미·북 준고위급회담 관련 한·미·일 실무협의
  - \* 장재룡 주미공사, 허바드 미국무부 부차관보, 다케우치 일 외무성 심의관
- 6. 12. IAEA 정기이사회 개최(빈)
  - 북핵 동결 감시상황 및 IAEA 관련 조치사항 논의
- 6. 13. 강영훈 한적총재, 대북 방송통지문 발송

- '제86 우성호' 선원들의 신상자료와 가족들의 호소문 전달을 위해 6. 15., 10:00 판문점에 2명의 연락관을 내 보낼것임.

- 6. 13. 미·북 팔라룸푸르 준고위급회담 타결, 공동언론발표문 발표
- 6. 13. KEDO 제3차 집행이사회(서울)
- 6. 15. 강영훈 한적총재, 대북 성명 발표

- '제86 우성호' 선원의 송환 촉구, 피납 선원들의 신상자료와 가족 호소문의 공개

- 6. 15. 미, 중유 전용 감시 협상팀 파북
- 6. 17. 대북 쌀 제공 문제 관련 남북 차관급회담(북경)
  - \* 이석채 재정경제원차관, 전금철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고문
- 6. 18. 미, 폐연료봉 처리 기술진 파북
- 6. 23. 김영삼 대통령, 김정일 주석직 승계후 남북정상회담 재추진 시사
- 6. 23. 일·북, 쌀 제공 문제 관련 협상(동경)
  - \* 호리 일 자민당 정조회장 대리, 이종혁 북 아·태평화위부위원장
- 6. 24. 남북한, 대북 쌀 제공 계약서 합의(북경)
  - \* 대한무역진흥공사 박용도 사장, 조선 삼천리총회사 김봉익 총회장
- 6. 25. 대북 쌀 제공 2천톤 선적 '씨아팩스호'출항(동해항)
- 6. 28. 고 문익환 목사 부인 박용길 밀입북
- 6. 29. 정부, 북측의 '씨아팩스호' 인공기 계양사건 관련 북한 당국의 공식사과 없으면 쌀지원 중단결정
- 7. 1. 북한 당국, '씨아팩스호' 인공기 계양사건 관련 대남 공식사과
  - \* 6. 30. 대외경제협력추진위 고문 전금철 명의 대남전통문

## 2. 한반도에너지 개발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 일본국 정부 및 미합중국 정부는,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서명된 미합중국과 북한과의 기본합의문(이하 '기본합의문'이라 한다)에 명시된 북한 핵문제의 전반적 해결이라는 목적을 확인하고,

기본합의문의 이행조건으로 기본합의문에 명시된 북한이 취하여야 할 비확산 및 기타 조치의 결정적인 중요성을 인식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유지의 최상의 중요성에 유념하고,

국제 연합헌장,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 규약과 부합하여, 기본합의문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협력하기를 희망하며,

기본합의문에 상정된 바와 같이 관련국간 협력을 조정하고 기본합의문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의 재원조달과 수행을 촉진하기 위한 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확신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제1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는 다음에 명시된 규정 및 조건에 따라 설립된다.

### 제2조

가. 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기구와 북한간의 체결될 공급협정에 따라 각각 약 1,000메가와트 용량의 2개의 한국표준형 원자로로 구성되는 북한에서의 경수로 사업의 재원조달과 공급

(2) 제1호 경수로가 건설될 때까지 북한의 흑연감속로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대신하는 대체에너지의 공급

(3)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또는 기본합의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타조치의 이행

나. 기구는 기본합의문에 명시된 북한의 의무사항의 완전한 이행확보를 목표로 하여 그 목적을 수행한다.

### 제3조

상기 목적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기구는 다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가. 기구의 목적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의 평가 및 관리

나. 기구의 목적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기구의 회원국 또는 기타 국가나 단

체로부터의 자금 수령, 그러한 자금의 관리와 지출 및 동 자기에 대한 이자의 기구의 목적을 위한 보유

다. 기구의 목적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을 위하여 기구의 회원국 또는 기타 국가나 단체로부터의 현물기여의 수령

라. 기구가 제공하는 경수로사업과 기타 재화 및 용역의 상환으로서 북한이 제공하는 자금 및 기타 보상의 수령

마. 기구가 수령하거나 기구의 사업을 위하여 지정된 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합의된 바에 따라 적합한 금융기관과 협력하거나 협정, 계약 또는 기타 약정의 체결

바. 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시설, 장비 또는 재화의 취득

사. 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가, 국제기구 또는 기타 적절한 단체와의 차관협정을 포함한 협정, 계약, 또는 기타 약정의 체결

아. 원자력 안전성 증진활동을 포함하여 기구의 목적을 추진하는 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국가, 지방당국 및 기타 공공단체, 국내 및 국제기관 그리고 사적 당사자 등과의 조정과 이들에 대한 지원

자. 기구의 수령액·자금·계정 또는 기타 자산의 처분 및 이로 인한 수익의 기구의 재정적 의무에 따른 분배, 그리고 기구의 결정에 따른 잔여 자산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기구의 각 회원국 기여정도에 상응하는 균등한 방식의 분배

차. 이 협정과 일치하는 범위내에서 기구의 목적과 기능 수행에 필요한 기타 권한의 행사

#### 제4조

가. 기구의 활동은 국제연합헌장,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및 국제원자력기구 규약과 일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나. 기구의 활동은 북한이 북한과 기구간의 모든 협정 규정을 준수하고 기본합의문과 일치하는 방법으로 행동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기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기구는 기구가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되어 북한에 이전되는 핵물질, 장비 또는 기술이 전적으로 동 사업을 위해서만,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것임을 북한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 제5조



가. 기구의 원회원국은 대한민국, 일본국 및 미합중국(이하 “원회원국” 이라 한다)이다.

나. 기구의 목적을 지지하고 자금, 재화 또는 용역과 같은 지원을 기구에 제공하는 기타 국가도 집행이사회 승인을 받아 제14조 나항의 절차에 따라 기구의 회원국(이하 원회원국과 함께 “회원국” 이라 한다)이 될 수 있다.

#### 제6조

가. 기구의 기능을 수행하는 권한은 집행이사회에 있다.

나. 집행이사회는 각 원회원국의 1명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다. 집행이사회는 집행이사회 대표들 중에서 2년 임기의 의장을 선출한다.

라. 집행이사회는 집행이사회가 채택한 의사규칙에 의거하여 집행이사회 의장, 사무총장 또는 집행이사회 대표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필요한 경우 소집된다.

마. 집행이사회 결정은 모든 원회원국 대표들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바. 집행이사회는 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거나 적합한 규칙과 규정을 승인할 수 있다.

사. 집행이사회는 기구의 기능에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

가. 총회는 모든 회원국 대표들로 구성된다.

나. 총회는 제12조에 규정된 연례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된다.

다. 총회의 임시회의는 집행이사회가 제출한 사안을 토의하기 위하여 집행이사회 지침에 따라 개최된다.

라. 총회는 권고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집행이사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받을 수 있다.

#### 제8조

가. 기구의 직원은 사무총장이 대표한다. 사무총장은 이 협정이 발효된 후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이사회에 의하여 임명된다.

나. 사무총장은 기구의 최고행정책임자로서 집행이사회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사무총장은 집행

이사회가 위임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며, 본부 및 직원의 조직과 지휘, 연례 예산안의 준비, 재원 조달 그리고 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약의 승인, 작성 및 집행을 포함한 기구의 일상적인 업무수행을 담당한다.

사무총장은 상기 권한을 그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집행이사회가 승인한 모든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자신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 사무총장은 2명의 사무차장으로부터 보좌를 받는다. 2명의 사무차장은 집행이사회에 의하여 임명된다.

라.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은 2년의 임기로 임명되며, 재임명될 수 있다. 이들은 원회원국의 국민이어야 한다. 급여를 포함한 이들의 고용조건은 집행이사회에 의하여 결정된다.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은 집행이사회에 의하여 그들의 임기만료 이전에 해고될 수 있다.

마. 사무총장은 집행이사회가 채택한 지침과 승인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구를 대신하여 사업을 승인하고 계약을 작성하며 기타 재정적 의무를 부담할 권한을 가진다. 단, 그러한 사업·계약 및 재정적 의무가 기구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필요성에 기초하여 집행이사회가 결정할 특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행이사회에 사전 승인을 받는다.

바. 사무총장은 집행이사회에 직원의 직책과 급여를 포함한 고용조건을 수립한다. 사무총장은 집행이사회가 승인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유자격자를 그러한 직책에 임명하고 필요한 경우 직원을 해고한다. 사무총장은 최상수준의 성실성, 효율성 및 기술적 능력 확보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원회원국 국민들이 공평하게 채용될 수 있도록 직원을 임명한다.

사. 사무총장은 집행이사회 및 총회에 기구의 활동과 재정에 관하여 보고한다. 사무총장은 집행이사회에 조치를 요하는 사안은 집행이사회가 즉시 주지하도록 한다.

아. 사무총장은 사무차장의 조언을 받아 이 협정과 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규칙 및 규정을 준비한다. 규칙 및 규정은 시행 이전에 집행이사회에 승인을 위하여 제출한다.

자. 사무총장과 직원은 그들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느 정부나 또는 기구 이외의 어떠한 기관의 지시도 구하거나 받지 아니한다. 그들은 오로지 기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국제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손상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삼가야 한다. 각회원국은 사무총장과 직원의 직무의 국제적 성격을 존중하고 그들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한다.

## 제9조

가. 집행이사회는 기구가 수행 중이거나 수행하도록 제의된 특정사업에 대하여 사무총장과 집행이사회에 적절한 조언을 제공할 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자문위원회는 경수로 사업, 대체에너지의 공급사업 및 집행이사회가 결정하는 기타 사업을 위하여 설치된다.

나. 각 자문위원회는 동 위원회의 설립목적이 되는 사업을 지원하는 원회원국과 다른 회원국 대

표들을 포함한다.

다. 자문위원회의 소집시기는 각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라. 사무총장은 각 자문위원회가 소관사업에 관련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며, 집행이 사회와 사무총장은 자문위원회의 권고에 유념한다.

#### 제10조

가. 각 회계년도의 예산은 사무총장이 준비하며 집행이사회에 승인을 받는다. 기구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나. 각 회원국은 자국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자금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기구에 자발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여는 기구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나 기구의 계약자에 대한 지불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기여는 현금예치, 조건부 증서, 신용장, 약속어음, 또는 기구와 기여자간 합의하는 기타 법적 수단과 통화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다. 기구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공공 또는 사적 재원에서의 기여를 구할 수 있다.

라. 기구는 회원국이나 기타 재원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계정을 설치한다. 동 계정은 특정사업과 기구운영을 위하여 확보된 자금을 위한 독립계정을 포함한다. 그러한 계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은 기구의 활동을 위하여 재투자된다. 잉여자금은 제3 조 자항에 규정된대로 분배된다.

#### 제11조

가. 회원국은 기구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화·용역·장비 및 시설을 기구나 기구의 계약자가 이용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나. 기구는 자신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화·용역·장비 및 시설을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공공 또는 사적 재원으로부터 수령할 수 있다.

다. 사무총장은 기구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현물기여의 가치산정 업무를 담당한다. 회원국은 현물기여에 관한 정기보고서 제출과 동 기여의 가치확인에 필요한 기록에 대한 접근 허용 등을 통하여 가치산정 과정에서 사무총장과 협조한다.

라. 현물기여의 가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집행이사회가 사안을 심의하고 결정을 내린다.

#### 제12조

사무총장은 기구의 활동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집행이사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는다.  
동 보고서는 경수로 사업 및 기타 사업의 현황에 관한 기술, 활동계획과 집행실적의 비교, 기구의 계정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포함한다.

사무총장은 집행이사회 승인을 얻어 회원국들에게 연례보고서를 배포한다.

사무총장은 집행이사회가 요구하는 기타 보고서를 집행이사회에 제출한다.

### 제13조

가. 기구는 그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적 능력, 특히 (1)계약의 체결 (2)부동산의 차용과 임차 (3)동산의 취득과 처분 및 (4)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회원국은 자국의 법령에 따라 기구가 그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적 능력을 기구에 부여할 수 있다.

나. 어떤 회원국도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나 기구참여를 이유로 기구의 작위, 부작위 또는 의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 회원국이 기구에 제공하는 정보는 전적으로 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동 회원국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는 공개되지 아니한다.

라. 회원국 영역에서의 이 협정의 이행은 각 회원국의 예산배정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다.

### 제14조

가. 이 협정은 원회원국들이 서명함과 동시에 발효한다.

나. 제5조 나항에 따라 집행이사회가 회원국 가입을 승인한 국가는 사무총장에게 이 협정 수락을 제출함으로써 회원국이 될 수 있다. 이 수락서는 사무총장의 접수일자에 발효 한다.

다. 이 협정은 원회원국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라. 이 협정은 원회원국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종료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 제15조

회원국은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탈퇴통보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이 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사무총장이 탈퇴통보를 접수한 지 90일 후부터 유효하다.

1995년 3월 9일 뉴욕에서 영어로 3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_\_\_\_\_

일본국 정부를 위하여 \_\_\_\_\_

미합중국 정부를 위하여 \_\_\_\_\_

# **남북대화 제63호**

(1995. 7. ~ 1995. 12)

# < 목 차 >

I. 북경회담과 대북 쌀 지원 .....	3
1. 추진배경 .....	3
2. 제1차 북경회담 .....	5
3. 대북 쌀 지원 .....	12
4. 제2차 북경회담 .....	18
5. 삼선비너스호 억류사건 관련 실무접촉 .....	20
6. 제3차 북경회담 .....	21
7. 대북 쌀 지원 결산 .....	22
II. 우성호 피랍과 송환 노력 .....	24
1. 피랍경과 .....	24
2. 송환노력 .....	25
3. 북한의 태도 .....	30
4. 국내언론의 반응 .....	32
III. 대북 수재지원 .....	33
IV.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기본원칙 .....	37
V. 대북 경수로 지원을 위한 KEDO의 활동 .....	39
1. 쿼라룸푸르합의(1995. 6. 13) .....	39
2. KEDO의 본격가동 .....	41
3. 경수로 건설 부지조사 .....	42
4. 경수로 공급협정의 타결 .....	43
5. 향후 전망과 과제 .....	60
부록 .....	61
□ 남북관계 일지(1995. 7. 1.~1995. 12. 15.) .....	61

## I. 북경회담과 대북 쌀 지원

### 1. 추진배경

북한이 식량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모순에서 비롯된 비효율적인 영농구조와 '다락밭'개간정책의 실패 및 비료·농약 부족과 홍수·가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흉작이 계속 되는데 그 원인이 있다.

이와 같은 식량사정의 악화는 특히 1992년이래 매년 약200만톤 이상의 부족량을 메우기 위해 해외에서 수입하여 일부 보충하는 한편, 북한주민에게 궁핍생활을 강요함으로써 해결을 모색해 왔으나 외화 부족이 가중되어 곡물 수입도 해마다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우기 북한에 대한 최대 곡물지원국인 중국마저도 최근에 들어서는 식량 교역에 대해서도 경화결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나마 중국 남부지역의 홍수로 인하여 동북3성지역의 곡물수출을 금지함으로써, 1994년 8월 이후 중국의 대북한 곡물 수출은 크게 감소하였다.

북한이 식량수입을 추진하는 국가로는 중국 이외에도 태국·말레이시아·호주·미국·캐나다 등을 들 수 있으나, 외화 부족으로 이미 수입한 대금도 갚지 못하고 있어 이마저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북한의 어려운 식량사정에 대하여 김영삼 대통령은 1995년 3월 7일 유럽 순방 중 베를린에서 가진 독일 외교 3단체 초청 연설에서 "우리는 북한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그 어떤 분야에서도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북한에 곡물을 비롯한 필요한 원료와 물자를 장기저리로 제공할 용의가 있다."라고 천명한 바 있다. 또 95년 5월 15일 'IPI 서울총회'에서는 "북한체제의 안정과 질서있는 변화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북한이 당장 필요로 하는 곡물을 비롯한 원료와 물자를 장기 저리로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우리 정부가 대북 곡물제공 용의를 여러 차례 밝힌데 대해 북한 국제무역촉진위원장 이성록은 1995년 5월 26일 일본으로부터 쌀을 대여 받기 위해 도쿄를 방문하여 일본 「와타나베」 전부총리 등 연립여당대표들과의 회담석상에서 북한의 식량난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한국 쌀도 전제조건이 없으면 받겠다."라고 말하고, 이러한 그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우리 정부에 전해왔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같은 날인 5월 26일 나웅배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의 '대북발표'를 통해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동포들이 현실적 곤경을 벗어날 수 있도록 민족복리차원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정치적 부대조건 없이 북한에 곡물을 지원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지원방법과 절차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쌍방 당국대표들의 접촉을 제의하였다.

다음은 나웅배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의 대북발표 전문이다.

#### 대북곡물 지원에 관한 통일 부총리 발표문(1995. 5. 26.)

그간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그 어떤 분야에도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누차 밝혀 온 바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북측이 한국쌀을 받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 정부는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정치적 부대조건 없이 북측이 필요로 하는 곡물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북측에 제공할 곡물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인도시기, 수송 및 운반수단 등 절차문제에 대해 남북간에 협의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정부는 북측과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쌍방 당국대표들이 북측이 원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만날 것을 제의합니다.

북측의 긍정적인 회답을 기대합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입장을 밝힌데 이어 5월 27일에는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대북 쌀지원 문제는 민족 내부 문제이므로 민족 내부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소망스러우며, 국제사회에서의 대북지원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절차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신중히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정리하였다.

또한 5월 29일에는 통일원차관 주재로 대북 쌀 제공문제 관련 실무대책회의를 열어 1995년 연말 기준으로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2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대북 곡물지원 방안을 강구기로 하였으며, 6월 6일에는 대북 곡물지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북한이 직접 우리측이 제의한 당국자 접촉에 호응해 올 것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제의에 대해 북한은 10여일이 넘게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6월 9일 북한측의 대외경제위원회 산하 조선삼천리총회사와 우리측의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가 6월 13일 북경(北京)에서 만나 이 문제를 협의할 것을 제의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한무역진흥공사로 하여금 정부의 '선남북 당국간 협의 후민간상사간 접촉'의 기본 입장을 북한측에 전달케 하였으며,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북한측이 받아들임으로써 남북한 당국의 차관급을 대표로 하는 북경회담이 성사되게 된 것이다.

## 2. 제1차 북경회담

### 가. 회담 진행 경과

대북곡물지원을 위한 제1차 회담은 1995년 6월 17일부터 6월21일까지 중국 북경(北京)에서 진행되었다.

이 회담에 우리측은 이석채 재정경제원 차관을 수석대표로, 김용환 국무총리 보좌관·추준석 대통령비서실 경제비서관·김형기 통일원 통일정책실 제1정책관 등이 대표로 참가하였으며, 북한측에서는 조선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고문 전금철을 단장으로 하여 조선삼천리총회사 총사장 김봉익,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참사 김영진·리성덕 등이 대표로 나왔다.

우리측 이석채 수석대표는 회담 모두에서 "어려울 때 서로 협력한다는 차원에서 순수한 동포애와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에서 쌀거래 문제를 성사시키려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 회담에서의 합의를 바탕으로 교역관련 당사들 간에 기술적·실무적 문제들을 실현시키도록 하며, 쌍방 당국이 실행을 보장하는 문제들을 협의해 나아갈 것"을 제의하였다.

북한측 대표단장 전금철은, 쌍방이 쌀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①사상·제도적 차이를 떠나 민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민족대단결 원칙에서 해결 ②아무런 조건없는 순수한 정신·입장에서 효율적으로 운영 ③속결 원칙으로 집중토의를 통해 단시일내 결속 ④쌀문제에 충실하며 다른 문제와 혼성·혼탕 금지 등을 내세우면서 먼저 총량 규모부터 협의할 것을 주장하였다.

우리측은 북한동포의 식량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최대한 협력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면서 1차분 쌀지원 규모를 5만톤으로 제시하고, 추가지원 문제는 향후 쌍방 당국간에 경험에 대한 보다 폭넓은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 전금철 단장은 "총 규모 5만톤으로는 돌아가서 보고도 할 수 없다."고 난색을 표명하고, 우리측에 "전체 총량 규모는 언급치 않더라도 1차 지원량만이라도 늘려 줄 것"을 간청하면서 쌀제공과 관련한 거래조건·계약회사·수송문제·포장단위·하역항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내놓았다.

특히 거래조건과 관련해서는 북한측은 사실상 '무상'쪽에 더 비중을 두고 타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일부 물량은 '20년 거치 5년 상환'조건으로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쌍방이 대외적으로 명분을 살리면서 실질적으로 북측에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을 고려해 보겠다는 입장을 개진하였다.

우리측은 쌀수송선의 국적 표시문제와 관련, 북한측이 작성한 합의서(안) 가운데 "수송을 위해 북측 지역에 들어가는 남측 선박은 국적 표시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 항목의 삭제를 요구하였다.

양측은 결국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절충하여, "남측 쌀 수송선박이 북의 항구에 입항시 쌍방 국기 모두를 게양치 않는다"라는 '구두 양해사항'으로 합의하였다.

제1차 북경회담에서 쌍방간에 합의 도출이 어려웠던 최대의 쟁점사항은 쌀지원 총량문제였다. 우리측은, "총량 규모부터 먼저 정하자"는 북한측 주장에 대해 1차로 쌀 5만톤을 제공하고, 추가로 증량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대응하였으나, 북한측은 "단계로 10월말까지 쌀 20만톤 제공"을 끈질기게 요구하였다.

또한 합의서 서명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반드시 쌍방 당국자의 직명으로 서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리측 명의로는 '대한민국 재정경제원 차관'으로, 북한측은 전금철 대표단장의 당 직함을 사용토록 할 것을 종용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이 전단장의 당·정 직함 사용을 완강히 거부하므로

양측은 이 문제 토론에 장시간을 소모하였다.

결국 북한측 대표단장의 직함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위원회 위임에 의하여 조선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고문 전금철"로 한다는 절충안으로 합의를 이루었다.

이와 같이 대북 쌀지원을 위한 남북간의 회담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양측대표가 합의서에 서명하게 되었다.

우리측은 북경회담에 임함에 있어 김대통령이 "북한의 식량난을 감안하여 동포애 차원에서 아무런 조건없이 곡물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힌 바와 같이 조건없이 '북한측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토록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 나. 합의서 발표

남북 양측은 5일간의 협상 끝에 6월 21일 합의서에 서명했다. 우리측은 6월 21일 나옹배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이 대북 곡물제공합의에 관한 발표를 하였다.

이날 발표된 나옹배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의 발표문은 다음과 같다.

### 대북 곡물제공 합의에 관한 발표문(1995. 6. 21.)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동포애적 차원에서 북한의 식량난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 8·15 광복절 경축사, 금년 3월 7일 베를린 선언, 5월 15일 IPI총회 연설 등을 통해 대북 곡물 지원을 수차 제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는 지난 5월 26일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명의로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북한이 필요로 하는 곡물을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고, 절차문제 협의를 위한 쌍방 당국간 접촉을 제의하였습니다.

그후 북한측의 제의로 우리측의 대한무역진흥공사와 북한 대외경제위원회 산하 삼천리총회사 간에 6월 13일부터 6월 16일까지 북경에서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측은 쌀제공 문제는 남북 당국간 접촉을 통해 협의해야 한다는 점을 통보하였으며, 북한측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남북 당국간 북경접촉이 진행되었습니다.

쌍방 당국은 이번 접촉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 합의서요지

- ① 우리측은 북한측에 1차로 쌀 15만톤을 인도하며, 이 1차분은 전량 무상으로 제공한다.
- ② 우리측은 본 합의서를 서명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첫 선박을 출항시킨다.  
우리측은 상기 1차분을 해상을 통해 우리측 선박으로 청진·나진항 등에 인도한다.
- ③ 북한측에 1차분으로 인도되는 쌀은 정미 40Kg 단위 PP포대로 포장하며, 일체 표기를 하지 않는다.
- ④ 본 합의서에 명시된 합의사항을 실행에 옮기는 쌍방 상사는 우리측에서 대한무역진흥공사와 북한측에서는 조선삼천리총회사로 한다.
- ⑤ 남과 북은 쌀 인도·인수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필요한 모든 협조를 보장한다.
- ⑥ 남과 북은 1995년 7월 중순에 제2차 회담을 개최한다.
- ⑦ 이 합의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본 대표단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 본 합의서에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자가 서명하였다.

지난 1984년 9월 우리측 수재시 북측으로부터 쌀과 시멘트 등을 지원받은 후 이루어진 북한에 대한 이번 쌀 제공은 남북간에 화해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책임있는 당국간의 협의를 거쳐 동족간에 서로 돕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이번 합의는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북한의 어려운 식량사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순수한 동포애 차원의 조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북한 당국과 합의한 사항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아갈 것입니다.

정부는 이 민족적인 사업에 전국민이 참여한다는 뜻에서 도정 및 포장재 공장과 선적항구 등을 전국적으로 고르게 배정할 것입니다.

도정공장은 전국의 정부미 도정공장 190개소가 동시 가동하게 되며 포장재 제작 역시 전국의 30개 공장이 참여하게 됩니다.

지원미를 선적할 전국의 주요항구는 동해·포항·울산·부산·진해·마산·광양·목포·군산·인천 등이며 지원미 2천톤을 실은 첫 번째 수송선은 금주내에 강원도 동해항을 출발할 예정입니다.

지원미의 첫 선적지를 동해항으로 결정한 것은 동해항이 북한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항구로서 북한의 요구대로 최단시일내에 쌀을 보내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금명간 통일원차관 주재의 대북 곡물실무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범정부 차원의 후속 지원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 쌀 제공 계약서 체결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을 위한 남북간 합의내용이 발표되고, 합의사항의 이행에 들어감에 따라, 쌍방 당국에 의해 쌀 인도·인수의 실행주체로 정해진 우리측의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와 북한측의 조선삼천리총회사간의 실무협의를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북경(北京)에서 진행하고 '쌀 제공 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 계약서

대한무역진흥공사(아래부터 '남'이라 한다)와 조선삼천리총회사(아래부터 '북'이라 한다)는 1995년 6월 21일 베이징에서 서명된 남북 대표단간의 쌀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약을 맺었다.

#### 1. 거래조건

- '남'은 1995년 6월 21일 남북 대표단간에 서명된 합의서에 따라 쌀 15만톤을 '북'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동 합의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첫선박을 출항시킨다. '남'은 나머지 잔량을 1995년 8월 10일 내에 '북'에게 제공한다.
- 동 계약서 서명일에 '남'은 첫 선박을 출항시킨다.

#### 2. 포장

- 포장은 정미 40Kg 단위 PP포대로 하며, 포장에는 일체 표시를 하지 않는다.
- '남'은 선적과 하역시 파손되는 포대 보충을 위하여 매선적마다 포대수의 2%에 해당하는 상표 표시가 없는 빈포대를 제공한다.

#### 3. 품질

- 습 도 : 15.0%이하
- 파쇄율 : 5.0%이하
- 잡 질 : 0.0%이하

#### 4. 수송 조건

- '남'은 5천톤급 이상의 남측 선박으로 수송하며, 청진항, 나진항 등에서 '북'에게 인도한다. '남'은 필요에 의하여 제3국 선박도 이용할 수 있다.

- '남'은 운임, 보험료 등 하역항 도착시까지 수송선박에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며, '북'은 하역항에서 발생하는 항만비용과 하역비용을 부담한다. 하선항에서의 체선/조출료는 '남'과 '북'사이에서 협의 해결한다.
- '남'은 수송선박의 제원, 선적수량, 선원명단, 출항예정일을 출항 5일 전에 '북'에게 통보하고, '북'은 출항 2일 전까지 하역항과 하역 준비 상태를 '남'에게 통보한다.
- '북'은 용선계약 체결에 필요한 하역항의 홀수선, 하선능력, 작업시간 등 하역에 필요한 자료를 '남'에게 6월 28일까지 보낸다.
- 북측 해역내에서의 남측 선박과 선주회사간의 통신은 '북'의 국내법에 따른다.
- '북'은 하역기간에 남측선박의 선원들에 대한 신변안전과 선박의 무사귀환을 보장하며, 필요에 따라 편의도 보장할 수 있다.
- 그밖의 수송에 관한 사항은 국제화물해상운송 규약에 따른다.

#### 5. 선적 서류

- '남'은 매 선적시마다 다음의 서류를 '북'에게 보낸다.
  - 무사고 선하증권(Clean B/L) 한 조
  - 품질 및 수량 증명서 3부
  - 위생검사서 3부
  - 원산지 증명서 3부

#### 6. 검사 조건

- '남'은 선적항에서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으며, '북'은 하역항에서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고, 만일 품질과 수량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북'은 해당기관이 발행한 검사보고서를 '남'에게 보내며, '남'은 이에 대한 필요한 대책을 세운다.

#### 7. 쌀 인수 통보

- '북'은 매 선박별 인수확인서를 하역완료 7일 이내에 팩스로 '남'에게 보낸다.

#### 8. 통신

- 쌍방간의 통신은 '북'의 제3국 대표부를 통해서 한다.
- 이 계약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1995년 6월 21일 베이징에서 합의서에 서명한 쌍방 대표단이 협의해 해결한다.
- 이 계약서는 1995년 6월 25일 베이징에서 원본 2부를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원본 2부는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 계약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1995년 6월 25일



### 3. 대북 쌀 지원

정부는 남북한 당국간 북경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대북 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범 정부적 차원의 노력을 전개하였다.

우선 통일관계장관회의,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실무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대북 쌀지원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통일원에 '대북 쌀 지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였다.

또한 농림수산부, 건설교통부, 국방부, 해운항만청, 해양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대북 쌀 지원의 실행기관인 대한무역진흥공사 등에서도 상황실을 설치·운영하면서, 대북 쌀 지원이 통일원의 종합 상황실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정부양곡 중 적정량을 도정하여 북한에 지원하기로 하고, 북한동포를 돕는 민족적인 사업에 전국민의 따뜻한 동포의 정을 실어 보낸다는 뜻에서 도정공장 및 선적항구 등을 지역별로 고려하여 배정하였다.

이러한 준비작업을 거쳐 대북 지원미 2,000톤을 실은 첫 선박인 「씨 아펙스호」가 남북한이 합의한 첫 지원일자인 6월 25일 이홍구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출항식에 이어 동해항을 출항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민의 통일열망을 신고 출항한 첫 선박인 「씨 아펙스호」가 청진항에 입항하는 과정에서, 북한측은 쌀 수송선에 양측 모두의 국기를 달지 않기로 한 북경회담에서의 구두 합의사항을 어기고 강압적으로 「씨 아펙스호」에 인공기를 게양케 하는 뜻밖의 사건을 일으켰다.

정부는 북한측의 이러한 행위는 북경회담 합의사항에 대한 심각한 위반행위라고 규정하고 6월 29일 밤 늦게 북한으로 향하고 있던 3척의 선박을 즉시 회항토록 조치하는 한편, 6월 30일 오전 통일부총리의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당국의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보장이 없는 한 우리 쌀의 대북수송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측은 6월 30일과 7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북경회담의 북측대표 단장인 전금철 명의의 전문을 우리측 수석대표인 이석채 재정경제원 차관에게 보내, 사과와 함께 앞으로의 재발방지를 약속하였다.

정부는 북한측이 사과전문을 보내움에 따라 북한측에 요구했던 북한당국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대북 쌀 지원을 계속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장마와 태풍, 그리고 고온다습한 여름 날씨로 인해 대북 쌀 지원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쌀 지원과정에 참여한 각계의 노력으로 7월말까지 총 7만여톤의 쌀이 북한측에 인도되었다.

그런데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던 대북 쌀 지원 사업은 북한이 8월 2일 쌀 수송선인 「삼선 비너스호」 일등항해사의 청진항 사진촬영 사건을 빌미로 선박과 선원을 억류함으로써 또다시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

북한측은 「삼선 비너스호」 일등항해사를 강제연행·조사한 후, 8월 8일자 전금철 명의의 전문을 통해 "이번 사진촬영 행위는 개인적인 실책에 의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남측의 반복 대결정책에서 나온 계획적인 도발행위임이 일등항해사의 자백을 통해 밝혀졌다."고 주장하면서 우리측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및 이미 합의된 쌀 수송을 성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쌀 제공을 계속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8월 9일 당초 북한 당국이 쌀 수송선박과 선원의 안전보장을 확약하였고, 또한 쌀 제공 계약서 제4조에서도 선원들의 신변안전과 선박의 무사귀환에 대해 남북한이 합의하였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우리 선원 전원과 선박을 지체없이 돌려보낼 것을 북한측에 강력히 촉구

하면서 남북대표간에 이 문제를 협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우리 정부의 요구에 따라 8월 10일 남북실무접촉이 이루어졌다. 북경에서의 남북간 실무접촉에서는 남북한 쌍방의 입장차이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결국 우리측은 이석채 북경회담 수석대표 명의로 이번 사건에 대한 유감표시와 재발방지 대책 강구, 그리고 제공키로 합의된 쌀의 잔여분 수송 약속을 밝히고 북한측은 「삼선 비너스호」의 선원 전원과 선박의 무사귀환을 보장한다는 선에서 절충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삼선 비너스호」는 8월13일 청진항을 출발하여 8월 14일 오후 포항항에 무사히 귀환하였다.

「삼선 비너스호」사건이 해결되자, 정부는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였으며, 마지막 쌀 수송선박인 「코렉스 부산호」가 청진항에서 하역을 마치고 10월 10일 부산항에 입항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쌀 15만톤 지원사업은 남북한 당국간 북경합의가 이루어진 지 112일만에 완료되었다.

## 가. 추진현황

대북 쌀 지원사업은 정부의 책임하에 추진하되, 남북간 합의에 따라 대한무역진흥공사가 실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대한무역진흥공사는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조선삼천리총회사와 쌀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정부양곡을 구매하며 대한통운과 육상·해상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등 쌀 지원과 관련한 제반 실무를 담당하였다.

북한에 대한 쌀 제공은 정부양곡 보관창고에서 출고된 벼를 도정, 포장하여 선적항으로 내륙운송·선적한 후 북한으로 해상운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단기간에 많은 물량을 지원해야 했던 관계로 대규모의 인원과 장비가 투입되었다.

북한에 지원된 쌀 15만톤은 정부보유 양곡 중 비교적 질이 좋은 1993년산 78,000톤, 1992년산 28,800톤, 1989년산 43,200톤이었으며, 소요경비는 양곡대금 약 1,755억원과 부대경비 약 90억원 등 약 1,845억원이었다.

정부는 6월 29일 제29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대한무역진흥공사로부터 보조금 지급신청을 받아 소요경비 일체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남북간에 이와 같은 선례가 없었던 관계로 지원과정에서 약간의 실무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수송과정에서 변질미와 손실미가 일부 발생하여 인도량과 인수량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는 바, 남북한은 실무협의를 통해 우리 선적항에서 국제공인 검수기관이 물량을 검수·확인한 후 발급한 적하목록(B/L)의 수량대로 북한측이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북한이 인수항으로 청진항과 나진항만을 지정하여 수송기간과 비용 등 해상수송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북한에 인수항의 추가지정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북한이 흥남항, 원산항, 남포항, 해주항 등 4개항을 추가로 개방하기도 하였다.

나. 도정·포장·내륙운송·선적

쌀 15만톤은 부산·광주를 포함 전국 8개도의 1,406개 정부양곡 보관창고에서 출고한 벼 20만 8천톤을 도정하였으며, 전국에 산재한 209개 도정공장이 참여하였다. 포장은 남북간 합의에 따라 40Kg용 무표시 PP포대로 포장하였으며 19개 업체가 포장재 제작에 참여하였다.

전국에 산재한 정부양곡 보관창고들에서 도정공장으로 벼를 수송하는 데는 10톤급 트럭 18,900여대가, 도정된 쌀 15만톤을 도정공장에서 10개 선적항구로 수송하는 데는 10톤급 트럭 13,600여대가 동원되었다.

선적은 도정공장에서 항만까지의 수송거리 등을 감안하여 동해, 포항, 울산, 부산, 마산, 광양, 목포, 군산, 인천 등 10개 항구에서 이루어졌으며, 연인원 13,500명이 동원되었다.

대북 지원쌀 출고·도정현황

(단위 : 톤)

시·도	보관창고(개소)	원료비				도정공장(개소)	정곡			
		1989년산	1992년산	1993년산	계		1989년산	1992년산	1993년산	계
부산	2	-	-	1,389	1,389	2	-	-	1,000	1,000
광주	13	-	-	2,778	2,778	2	-	-	2,000	2,000
경기	54	-	-	10,139	10,139	10	-	-	7,300	7,300
강원	13	-	-	3,194	3,194	7	-	-	2,300	2,300
충북	88	-	2,778	10,417	13,195	17	-	2,000	7,500	9,500
충남	159	9,722	-	9,722	19,444	14	7,000	-	7,000	14,000
전북	231	4,167	6,944	18,056	29,167	23	3,000	5,000	13,000	21,000
전남	434	-	24,028	34,722	58,750	55	-	17,300	25,000	42,300
경북	234	15,278	6,250	13,056	34,584	47	11,000	4,500	9,400	24,900
경남	178	30,833	-	4,861	35,694	32	22,200	-	3,500	25,700
계	1,408	60,000	40,000	108,334	208,334	209	43,200	28,800	78,000	150,000

#### 다. 해상운송 및 선원방북

우리 항구에서 선적된 쌀은 선박에 의해 북한의 청진·나진·홍남·원산·남포·해주항구로 수송되었다.

쌀 15만톤은 18척의 선박으로 총 28회에 걸쳐 북한으로 해상운송 되었으며, 국내의 「대보해운」 등 9개 선사가 이에 참여하였다.

18척의 선박중 「제이루비호」(1회), 「스카이문호」(1회)를 제외한 16척(26회)의 선박은 우리 국적 선박이었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제3국적 선박이 사용된 이유는 우리 국적선들이 이미 다른 운항에 취항중이어서 선박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선박의 크기는 적재중량 최소 3천톤에서 최대 2만 5천톤까지 다양하였으나, 주로 6~7천톤급이 투입되었다. 선박 1척으로는 최소 2,000톤에서 최대 10,000톤까지 평균 5,357톤의 쌀을 수송하였으나, 5,000톤을 수송한 것이 16척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쌀 수송선박과 국내선사간의 연락은 북한의 항구에 입항하기 전까지는 무선에 의한 직접교신이 이루어졌으나, 북한 항구 입항 후에는 북한의 외국선박사업회사(KOSA)와 북한이 지정한 싱가포르 선박대리점(DAYI SHIPPING)의 중계에 의한 간접적인 통신만이 이루어졌다.

또한, 기간 중 쌀의 해상운송과 함께 연인원 399명의 우리 선원들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쌀 해상운송 현황

순번	수송기간	선박명	수송량(톤)	항로	방북인원
1	6.25~6.30	씨아펙스호	2,000	동해→청진→부산	14
2	7.4~7.8	들진호	2,000	마산→동해→청진→포항	12
3	7.4~7.10	이스턴벤처어호	3,500	목포→부산→청진→울산	13
4	7.4~7.10	행진호	2,500	군산→목포→청진→포항	12
5	7.12~7.18	광양33호	5,000	진해→원산→목포	11
6	7.12~7.19	삼선배너호	8,000	군산→남포→마산	19
7	7.13~7.30	선계바리호	6,900	목포→청진→러시아→인천	17
8	7.13~7.21	삼선바루호	8,100	광양→청진→동해	20
9	7.13~7.20	제이루비호	7,000	포항→나진→동해	1
		(파나마국적)			(외국인 25명)
10	7.12~7.17	삼선첼린저호	5,000	인천→해주→군산	19
11	7.16~7.25	이스턴벤처어호	5,000	울산→청진→부산	11
12	7.17~7.22	두양에 메탈드호	5,000	마산→원산→부산	20
13	7.19~7.23	스카이문호	5,000	부산→홍남→부산	4
		(파나마국적)			(외국인 16명)
14	7.24~7.28	뉴콩코드호	5,000	군산→해주→목포	19
15	7.31~8.14	삼선비너스호	5,000	포항→청진→포항	21
16	8.13~8.19	두양브레이브호	10,000	광양→남포→부산	22
17	8.27~8.31	광양33호	5,000	광양→원산→동해	11
18	8.30~9.4	이스턴벤처어호	5,000	목포→해주→인천	11
19	9.1~9.6	두양에 메탈드호	5,000	군산→남포→부산→옥계	19
20	9.2~9.19	선계바라호	7,500	마산→남포→중국→부산	17
21	9.12~9.18	두양브레이브호	10,000	광양→남포→부산	21
22	9.16~9.21	광양33호	5,000	광양→남포→광양	11
23	9.19~9.24	이스턴벤처어호	5,000	마산→남포→군산	10
24	9.22~9.27	우양하니호	5,000	군산→남포→광양	15
25	9.25~9.28	두양오팔호	5,000	목포→남포→일본	18
26	9.25~10.4	광양33호	5,000	광양→남포→목호	10
27	10.1~11.2	이스턴벤처어호	5,000	군산→남포→중국→인천	10
28	10.7~10.11	코렉스부산호	2,500	동해→청진→부산	11
총계			150,000		399 (외국인41명)

북한 도착항별 인도물량

(단위 : 톤)

도착항	남 포	청 진	원 산	해 주	나 진	흥 남
인도량	70,500	37,500	15,000	15,000	7,000	5,000

#### 4. 제2차 북경회담

제2차 북경회담은 북한측의 쌀 수송선 인공기 강제계양 사건, 우성호선원 억류상태의 장기화, 정전협정 파기 운운 등 남북관계의 악재가 연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외의 비상한 관심을 끄는 가운데 7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우리측 대표단에는 유광석 외무부 외교정책기획실 제3심의관이 새로이 대표로 참가하였으며, 북한측에서도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부위원장 임태덕이 대표단에 합류하는 등 일부 대표의 교체가 있었다.

우리측 이석재 수석대표는 첫 발언을 통해 '6.21. 합의'는 남북의 공동번영과 상호 신뢰회복을 위한 김영삼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 이뤄진 것임을 강조하면서 그 동안 우리 정부가 대북 쌀 지원에 대한 국민여론 악화 등 상당한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강구한데 대해, 북한측은 현안문제 해결에 아무런 성의도 보이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국민정서에 비추어 쌀 추가 지원은 고사하고 1차분 15만톤의 잔여분 인도마저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따라서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북한측이 조속한 시일 내에 '성의있는 조치'를 취해 줄 것과, 북한측의 식량문제를 장기적·안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번 회담에서 농업·경공업·에너지 분야에서 쌍방이 서로 협력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을 제의하였다.

북한측 전금철 단장은 남북간의 쌀 협력이 동족간에 상부상조하는 좋은 선례가 되었다는 점과 우리측의 합의사항 이행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하면서도 쌍방이 1차 회담의 합의정신에 입각해서 쌀 협력문제 논의에 다른 문제들을 혼탕시키지 말 것, 우리측의 쌀 제공량이 다른 나라보다 적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요구하면서 우리측이 쌀 추가제공 규모 및 제공 시기를 제시해 주어야 다른 현안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인공기 강제 계양 사건과 관련하여 청진항에서 있었던 북측 관계자들의 합의사항 위반행동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 북측의 무례하고 도발적인 행동에 대한 우리측의 악화된 국민 여론을 상기시킴과 동시에 북한측이 인도적·동포애적 차원에서 최단 시일 내에 우성호 송환과 같은 상응조치를 취할 것 등을 촉구하는 한편, 남북경협 문제는 북한측의 식량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보다 광범한 지원 방안으로서 결코 '혼탕' 시키려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였다.

북한측은 인공기 사건은 결코 북측의 고의(故意)가 아니었다는 점과 우성호선원 송환문제도 북측의 관계당국과 수차 협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등을 구구하게 해명하는 가운데 이번 회담에서 쌀 문제만 논의하고 다른 문제를 혼탕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임을 반복하였으며, 쌀 지원문제를 중심으로 먼저 추가제공 규모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면서 이와 관련되는 경협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북한측은 우리측이 우성호선원 송환이나 비방중지 문제 등을 제기하는 것은 쌀 문제 협의를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우리측이 내세우는 이른바 '국민감정'이란 남측의 전체 여론이 아니라 민족간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려는 일부 강경 세력의 주장일 뿐이며, 우리측이 쌀을 제공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UR협정을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철시켰듯이 쌀 문제도 국민들을 설득해서 계속 밀고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북한측이 우리의 악화된 '국민감정'을 일부 강경 세력의 책략으로 본다면 그것은 중대한 오판(誤判)이라는 점과 우리 국민들은 쌀을 가져간 우리 선박이 인공기 강제계양사건과 같은 어려움을 겪은데 대해 분개하고 있다는 점, 북한측이 우성호선원들을 인도주의적 차원

에서 즉각 돌려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등을 설명하면서 이 문제가 결코 쌀 지원문제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다.

결국 2차 회담에서는 쌀 추가지원 총량 규모의 제시를 요구하는 북한측 입장과 우성호 송환, 대남비방 중지 등 상응조치를 요구하는 우리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쌍방은 회담진행 결과를 ① 쌀 추가지원 미합의, 경협관련 의견교환, ② 우성호선원의 조속한 송환, ③ 쌀 제공에 필요한 조치 보완, ④ 제3차 회담을 8월 10일 북경에서 개최하여 쌀문제와 남북간 경협문제를 협의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언론에 발표하기로 합의하고 4일간의 회담을 마쳤다.



## 5. 삼선비너스호 억류사건 관련 실무접촉

1995년 6월 25일을 기점으로 북한에 보내기로 한 쌀 15만톤에 대한 수송작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북한측은 7월 31일 포항항을 출발, 8월 2일 청진항에 도착한 우리측의 쌀 수송선 「삼선비너스호」 선원(1등항해사 이양천)이 청진항 항내에서 기념사진 몇 장 찍은 것을 '정탐행위'로 몰아 선박과 선원들을 청진항에 억류시키는 한편, 8월 8일 우리측에 전문을 보내, "8월 10일 개최 예정이던 제3차 북경회담을 무기 연기"하는 일방적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우리 정부는 "쌀 수송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는 쌍방 대표단 간에 협의·해결한다."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김형기 대표를 북경에 파견, 「삼선비너스호」 선원의 청진항 사진촬영 사건에 대한 진상을 파악토록 하는 한편, 북한측에 대하여 이 사건의 조속한 해결 및 제3차 북경회담 개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대표접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쌍방 당국 대표간 직접접촉을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측 실무대표들은 1차 북경회담 합의사항의 실무적 이행기관인 대한무역진흥공사 - 조선삼천리총회사간의 채널을 통하여 북한측과 간접적으로 접촉하여 쌍방 당국간의 의사교환 및 공식 입장을 타진하였다. 이 같은 과정에서 우리측의 대한무역진흥공사는 정부지침에 따른 대북 접촉창구 역할을 수행하였다.

북한측은 대한무역진흥공사 - 조선삼천리총회사간의 접촉과정에서 「삼선비너스호」 선원이 청진항을 촬영한 것은 우리측 기관의 사주 아래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정탐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우리측이 '정탐행위'를 시인하고 정식으로 사죄해야 하며, 앞으로 유사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과 잔여분 쌀 수송의 성실한 이행 및 쌀 협력사업의 계속 추진 등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단지 선상(船上)에서 항구의 외양을 찍은데 불과한 행동을 '정탐행위'로 규정하는 북한측의 주장은 상식의 궤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측 쌀 수송선 선원에 대한 북한측의 신변안전보장각서에도 위배되는 것임을 지적, 강력히 항의하면서 북한측의 '정탐행위 시인' 주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무엇보다도 선원들의 신변안전과 조속 귀환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 "북한측의 법을 위반하고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유감의 뜻을 담은 전문을 8월 12일 북한측에 전달함으로써 「삼선비너스호」 선박과 선원 전원(21명)의 신변안전 및 조속 귀환에 합의하였으며, 9월 하순경 제3차 북경회담을 재개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 6. 제3차 북경회담

제3차 회담은 1995년 9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북경에서 진행되었다.

이 회담에 우리측 대표단의 대표 일부가 교체되었다. 정세현 대통령비서실 통일비서관·구본태 통일원 통일정책실장·신언상 통일원 남북회담사무국 운영 2부장 등이 새로이 회담대표로 참가하였으며, 북한측은 2차 회담시 대표단이 그대로 나왔다.

우리측의 이석채 수석대표는 대북 쌀 지원을 계기로 남북간 상호 신뢰회복 및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했었으나 북한측의 무성의로 남북관계는 쌀 제공 이전보다 더 악화되었다고 개탄하였다.

특히 이 수석대표는 남북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국민적 지지 분위기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 남북대화의 정상화, △ 남북협력 사업의 보완조치 마련 등이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북한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첫째, 북한측은 우성호 송환, 대남 비방 중상 중지 등 현안문제 해결에 대한 약속을 이행치 않는 것과, 안승운 목사 납치사건, 김용순 당비서의 쌀 제공 비하 발언 등 협력 분위기를 해치는 사건들을 야기시킨데 대한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둘째, '회담장소' 문제와 관련, 제3국에서 남북의 당국대표가 만나 상호 협력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앞으로의 회담은 한반도내의 서울, 평양 또는 판문점에서 개최하도록 해야 하며, 쌍방의 대표가 당국의 신임장을 교환하는 등 대표자격을 보다 확실히 함으로써 정상적인 당국간 대화의 모양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향후 협력사업의 보완장치 마련을 위해 이번 쌀 수송과정에서 돌출된 사건과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북한측이 이미 약속한 바 있는 선박 - 선사간 통신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삼선비너스호」 사건을 거울 삼아 향후 남북간 왕래 인원의 신변안전보장 장치를 보다 철저히 보완해야 한다.

우리측은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북한측의 '상응한 조치'가 없을 경우 우리 국민의 악화된 감정을 되돌리기 어려우며, 이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 정부가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싶어도 한 치도 움직일 수 없다는 점을 역설하면서 특히 우성호선원 송환은 북한측의 '의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번 회담 중 반드시 송환하거나 아니면 송환 날짜를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우성호의 범법행위 자체는 사실이며, 북측 법에 의해서 단속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고, 송환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부상자들의 치료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변명하면서 이 회담 대표단의 기본사명은 쌀협력 문제인 만큼 여타 현안문제는 다른 회담의 장(場)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였다.

또 회담장소를 한반도 내로 옮기는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측은 북경회담이 현 남북관계의 여건상 '쌀지원'이라는 특수문제로, 특수시기에 나온 특수접촉이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동 문제가 단지 일 내에 결정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과 북측 대표단이 이에 관한 아무런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과제로 안고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3차 회담 역시 쌀 추가지원 규모에 대한 우선적 협의를 주장하는 북측 입장과 우성호 문제, 회담장소 변경문제 등 현안에 대한 북한측의 태도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이 대치하는 가운데, 별다른 합치점을 찾지 못했으나 한반도내 회담 개최에 대한 북한측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북한측이 원하는 시기와 장소(서울, 평양 또는 판문점)에서 다시 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남겨두고 종료되었다.

## 7. 대북 쌀 지원 결산

6월 21일 정부가 대북 쌀 15만톤 제공 합의 사실을 발표하자 대부분의 언론은 분단 50년만에 극심한 식량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북녘동포를 동포애적 차원에서 돕게 됨을 호뭇하고 가슴 벅찬 일이라는 논조를 펴면서도, 쌀의 원산지 표시도, 육로수송도 포기하는 등 지나치게 북한측 입장을 세워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따랐다.

그러나 대북 쌀 지원은 김일성 조문과동 이후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남북관계를 어떻게 해서든 풀어보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결단으로 이루어 졌으며,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의를 남겼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남북한간 화해·협력정신을 바탕으로 남북문제를 책임있는 당국간의 협의를 거쳐 풀어 나간다면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풀 수 있다는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

둘째로, 지난 1984년 9월 우리측 수재시 북측으로부터 쌀과 시멘트 등을 지원 받은 후 11년만에 이루어진 이번 곡물 제공은 남북간의 화해와 신뢰를 쌓는데 큰 디딤돌을 놓았다.

셋째, 이 합의는 우리 정부가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정치적 부대조건 없이 북한동포를 돕겠다는 동포애적인 순수성을 북한측이 체면을 무릅쓰고 일단 수용함으로써 인도적 차원의 남북협력이 가능할 수 있다는 사례로 기록되었다.

넷째, 정부의 대북 곡물제공은 남북간의 경직된 교착국면을 타개하고 나아가 남북한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관계개선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여 주었다.

이흥구 국무총리는 1995년 6월 25일 동해항에서 개최된 쌀 수송선 첫 출항식에서 "남과 북은 이제 화해와 협력의 바탕 위에서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민족복리를 함께 증진해 가는 새로운 장을 열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정부입장은 대북 지원에 따른 제반문제에 대해서도 노력과 정성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의 식량 사정을 감안하여 단시일 내에 지원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정부는 대북 쌀 지원을 위한 상황실을 설치, 도정·수송 등에 대규모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는 한편, 지원쌀도 정부보유 양곡 중 양질의 쌀을 보낸다는 방침을 정하여 실시하였다.

우리 정부와 국민의 노력과 정성이 담긴 동포애로 가득했던 쌀 지원 사업은 남과 북이 어려울 때 서로 돕고, 또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분단역사에 획기적인 대 사건으로 평가했으나 북한의 관영언론매체들은 우리측이 분주하게 돌아가는 것과 다르게 쌀 지원 사실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

북한이 우리측의 쌀 수송 과정에서 일으킨 일련의 도발적인 사건들은 참으로 부당하고 반민족적이고 반이성적인 행동이었다.

북한이 저지른 일련의 대남 도발행동은 남북관계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첫 번째 사건은 쌀 수송선 「시아펙스호」에 인공기를 강제 게양케 한 것이다. 이는 북경에서는 합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쌀 하역후 귀환한 「시아펙스호」 선장과 선원들도 당시의 상황을 "신변에 크게 위협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두 번째 사건은 안승훈 목사의 강제 납북이다. 이 사건은 쌀 수송이 한창 진행 중이던 7월 9일에 일어났다는 점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세 번째 사건은 「삼선 비너스호」 1등 항해사 이양천씨의 사진촬영을 정탐행위로 몰아 선박과

선원을 억류시킨 사건이다. 1등 항해사가 사진을 찍었다는 지역이 첫 수송선인 「시아팩스호」 선원들이 이미 기념사진을 찍어온 배경의 범위를 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북측의 저의를 의심케 하는 사건이었다.

네 번째 사건은 김용순의 망언이다. 그는 북한 노동당 비서이며, 쌀을 인수하는 책임적 위치에 있는 자로서 일본이 북한에 쌀을 주는 것은 '조공'이며, 남한측은 일본이 쌀을 주니 덩달아 쌀을 준다면 "서해 망둥이가 뛰니 빗자루도 뿔다"고 표현하였다.

다섯 번째 사건은 우리측이 지원쌀을 단시일내에 보낸다는 목표아래 밤낮으로 수송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 시기에 북한은 무장간첩을 남파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10월 24일 충남 부여에서 검거한 무장간첩 김동식(33세, 본명 이승철)에 의해서 확실하게 밝혀졌다.

그밖에 86우성호는 북경회담에서 곧 송환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우리측에게 약속하고도 아직 까지도 송환을 하지 않고 있으며, 1차 회담시 중단을 약속했던 '대남비방 중상 중지'는 지금 더욱더 악에 받친 소리를 계속해 대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태도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과 감정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이러한 국민 감정은 8월 16일 국회 통일외무위원회에서 온종일 정부에 대한 성토로 대변된다. 의원들은 "북한으로부터 온갖 수모를 당해가면서 쌀을 계속 주는 이유가 무엇이나"고 따지면서 대북 쌀 제공을 당장 중단할 것과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언론은 언론대로 북한의 배덕을 성토하는 한편 정부에 대한 비판의 필봉을 늦추지 않았다. 대다수의 언론이 요구하는 것은 북한이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질질 끌려 다니는 유화책은 쓰지 말라는 것과 남북관계 개선을 서두르지 말라는 것이었다. 언론들은 대북 쌀 지원의 완료와 관련한 기사에서 "대북 쌀 지원은 당초 기대했던 효과는 전혀 거두지 못하고 남북관계는 오히려 악화되었다."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온갖 시련과 수모에도 불구하고, 일단 인내와 성실로써 조건없이 제공하기로 한 15만 톤의 대북 쌀 지원 약속을 이행하였다.

이것은 우리 정부가 어떤 경우에도 합의사항은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존중한 것이며 남북간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번 대북 쌀지원은 정부가 5월 26일 나웅배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의 성명에서 밝힌 것처럼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정치적 부대조건 없이 순수하게 동포에 차원의 지원"이었다.

앞으로 남북관계를 개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측은 상호주의적 원칙에 따라 남북대화에 성실히 임해 나서야 하며 그동안의 모든 남북간 합의도 충실히 지켜야 하는 것이다. 북한측은 북경 회담에서 약속대로 우성호를 즉각 송환하고 대남비방중상도 중지해야 한다. 동시에 안승운 납치 사건에 대한 해명과 원상회복에 협조해야 하고 김용순 당비서의 망언도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우리측이 만든 호의적 계기를 앞으로 남북한 관계를 공존공영을 바탕으로 한 협력관계, 나아가서는 평화적 통일로 이어져가는 길임을 북한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 II. 우성호 피랍과 송환 노력

### 1. 피랍경과

1995년 5월 30일 국방부 대변인은 '언론발표'를 통해 인천선적 저인망어선 '제86우성호'(103톤)가 서해 북방한계선 북쪽 28.8km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으로부터 피격을 당한 뒤 북으로 피랍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 배의 소속회사인 인천 '우성수산'측은 8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제86우성호가 30일 낮 12시 40분경 장산곶 북서방 20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때 이 배의 선장(김부곤,35세)이 "북한 경비정이 총격을 가해오고 있다. 선원 1명이 총상을 입었고, 북한 경비정이 포를 발사하며 배 옆까지 접근했다."라고 긴급 타전을 하고는 더 이상의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다.

우성수산측 관계자는 86우성호는 5월 27일 모선인 제85우성호와 함께 중국 산둥반도 동남방 13마일 지점에서 어로작업을 하다 제85우성호가 중국 어로통제선에 의해 불법어로 혐의로 나포돼, 자선인 86우성호만 인천 어업무선국과 해안경찰대의 유도를 받아 인천으로 돌아오는 중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우성수산측은 86우성호는 항범장치를 갖춘 모선 85우성호와 달리 나침반 등 원시적 항해장비 밖에 없었고, 안개가 짙게 끼는 등 해상 항해 기상조건이 극히 불량한 상태에서 귀환 중에 항로를 잘못잡아 북한측 수역으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하고, 북한측이 비무장 민간어선에 무차별 총격을 가한 행위에 대해 분개를 표명하였다. 우성호가 항로착오 했음은 우리측 관계기관에 의해서 확인되었다.

한편 북한은 같은날인 5월 30일 하오 5시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86우성호'를 나포했음을 시인하였다. 그들은 "조선인민군 해군경비정이 우리나라 서해 영해 깊이 불법침입한 정체 불명의 선박을 나포했다."고 말하면서 "해군경비정은 단속에 응하지 않는 정체 불명의 선박에 대하여 강력한 자위적 조치로 예고사격과 함께 결정적 조치로써 나포했다. 지금 해당기관에서 이 선박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제86우성호가 북한 경비정의 총격을 받고 끌려간 지점, 즉 북한측이 "우리나라 서해 영해 깊이 불법 침입한"이라고 발표한 '영해 깊이'이라는 지점은 북방한계선 북쪽 15마일, 백령도 북서방 25마일 해상임이 밝혀졌다. 이 지점은 우리측은 공해로 보고 있는 반면 북한은 일방적으로 '군사경계수역'으로 주장해오고 있는 해상이다.

북한은 이러한 해상에서 그것도 대낮에 100톤이 넘는 어선에 대하여 무차별 사격을 가하여 인명까지 살상시키고도 "정체불명 선박에 대하여 자위적 조치"를 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 2. 송환노력

우리정부는 5월 31일 86우성호와 선원의 송환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피랍 다음날인 5월 31일에는 대한적십자사 총재명의로 북한 적십자회중앙위원회 위원장에게 대북 방송통지문을 통해 '86우성호'와 선원이 즉각 송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외무부는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중국·러시아 등지 주재대사들에게 주재국 정부에 우성호 송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였다.

또,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1995년 6월 5일 홍콩에 주재하고 있는 국제적십자위원회 동아시아 대표부를 방문하여 송환협조를 구하는 등, 북한측에 영향력과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동원하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다음은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대북방송통지문이다.

한적 총재 대북 방송통지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성호 귀하

우리측 관계당국에 의하면 1995년 5월 30일 하오 12시 50분경 백령도 북서방 25마일 지점 해상에서 우리측 민간 어선 「86 우성호」가 귀측의 경비정에 의해 나포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선장 김부곤 외 7명의 어부들이 중국 산둥성 영성항에서 인천항으로 귀환하는 도중 항로착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인은 귀 적십자회가 적십자 인도주의와 동포애에 입각하여 「86 우성호」와 그 승선어부들이 즉각 송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귀하의 긍정적인 회답을 기대합니다.

1995년 5월 31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강영훈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가족들의 애타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주일이 다 되도록 송환에 대한 언질은 고사하고 사망자의 신원 및 전체선원들의 생사여부 조차 확인해 주지않는 등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에 대한적십자사는 1995년 6월 13일 북한적십자회에 다시 방송통지문을 보냈다.

강영훈 총재는 이 통지문을 통해 1995년 6월 15일 오전 10시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남북적십자사 연락관 접촉을 갖자고 제의하고, 이 접촉에서는 '제86 우성호'선원들이 순수민간 어부임을 알 수 있는 신상자료와 선원가족들이 북한 적십자회중앙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전달하겠다고 하였다.

다음은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대북 방송통지문이다.

한적총재 대북 방송통지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성호 귀하

본인은 지난 5월 31일 귀하에게 보내는 방송통지문을 통해 「제86 우성호」와 그 선원들이 즉각 송환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은 「제86 우성호」 선원들이 순수한 민간 어부들을 알 수 있는 이들의 신상자료와 그 선원가족들이 귀하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전달하기 위하여 우리측 적십자 연락관 2명을 1995년 6월 15일 오전 10시에 관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내보낼 것입니다.

귀측의 상응하는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1995. 6. 13

대한적십자사 총재 강영훈

그러나 북한은 이 제의에도 무반응으로 묵살하였다. 이에 따라서 강영훈 총재는 6월 15일 대북성명 발표를 하였다.

강영훈 총재는 성명에서 북한측이 5월 30일 나포한 '제86 우성호'는 민간어선으로서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의 입장에서 지체없이 송환되어야 함은 물론, 나포과정에서 발생된 사상자의 신원통보와 시신을 가족들에게 즉시 인도하는 것은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강총재는 북한측이 6월 15일 관문점에서 전달하려 했던 선원들의 신상자료와 가족들의 호소문 접수마저 거부하였다며, 피랍 선원들이 순수민간인임을 알 수 있는 신상자료와 호소문을 공개하면서 북한 적십자회측의 긍정적인 조치를 촉구하였다.

다음은 이날 강영훈 총재가 발표한 성명서와 이 성명을 통해 공개한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에 보내려던 강영훈총재의 편지, 피랍선원의 '신상자료', '선원가족들의 호소문'이다.

한적 총재 대북성명

잘 알려진 바와같이 북한측은 지난 5월 30일 중국 영성항에서 어부 8명이 승선하고 인천항으로 귀환 도중에 있는 우리측 어선 「제86우성호」를 나포하였습니다.

본인은 사건 발생 직후인 5월 31일 북한적십자회 앞으로 보내는 방송통지문을 통해 북한적십자회가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의 입장에서 제86우성호와 그 선원들이 조속히 송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우리측 제86우성호가 민간어선으로서 방향착오로 항로를 잘못 들어선 것이므로 북한측은 인도적 견지에서 지체없이 선원들과 선체를 송환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나포과정에서 총격으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했다면 그 신원을 신속히 알려주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이며 시신 또한 가족들에게 인도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은 이같은 취지에서 제86우성호와 그 선원들의 송환을 위해 북한적십자회측이 협조해 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 하고자 합니다.

북한측은 제86우성호가 나포된지 두 주일이 지나도록 선체와 선원들을 송환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5월 31일 본인의 방송통지문에 대해서도 아무런 회답을 보내 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측은 본인이 오늘 판문점에서 전달하려 했던 선원들의 신상자료와 선원가족들의 호소문마저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인은 제86우성호 선원들이 순수한 민간어부들임을 알 수 있는 이들의 신상자료와 가족 호소문을 공개하면서 북한적십자회측이 긍정적인 조치를 조속히 취해 줄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첨부 : 제86우성호 피납선원 신상자료 및 가족호소문

1995. 6. 15

대한적십자사 총재 강영훈

북한 적십자회에 보내는 강영훈 총재 편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성호 귀하

1995. 5. 30. 귀측 당국에 의해 나포된 「제86 우성호」 선원들의 신상자료와 귀하 앞으로 보내는 선원 가족들의 호소문을 보내드립니다.

1995. 6. 15

대한적십자사 총재 강영훈

「제86 우성호」 피납선원 신상자료

성명	직책	생년월일	주소	가족사항
김부곤	선장	61. 4. 27.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48	부, 모, 남동생1, 여동생1
이병소	기관장	57. 1. 11.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79-18	모, 형1, 누나1, 남동생4
박재열	선원	51. 9. 17.	인천 중구 중앙2가 17	형1, 남동생1, 여동생2
심재경	선원	60. 6. 15.	전남 여수시 남산동 350	형2, 누나2, 여동생1
윤경순	선원	64. 1. 5.	인천 남구 학익1동 91-1	처
신흥광	선원	58. 1. 20.	인천 중구 중앙 2-17	부, 모, 형1, 누나3, 남동생1
이일용	선원	36. 3. 20.	경남 마산시 합포구 산호2동334	딸1, 누나1, 남동생1, 여동생2
김우석	선원	59. 10. 1.	경남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611	모, 형2, 누나3, 여동생1

“북한 적십자회 이성호 위원장님께 드리는 호소문”

우리들은 지난 5월 30일 백령도 서북방에서 북한 경비정에 피랍된 '제86우성호' 선원 가족입니다.



제86 우성호는 중국 산둥성 영성항에서 인천항으로 귀환하는 도중에 항로착오로 인해 길을 잘못 들어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86 우성호가 피랍된 사실만으로도 큰 충격인데 선원 8명 가운데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했다는 보도를 접한 우리 가족들은 망연자실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사망자는 누구이고 부상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나머지 선원들은 모두 건강하게 살아있는지 비탄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제86 우성호 선원들은 고기잡이를 생업으로 하고 있는 순수하고 소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이런 순수 민간 어부들에게 어떻게 충격을 가하면서까지 나포했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오니 위원장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먼저 사상자가 누구인지 밝혀주시고 나머지 선원들은 무사한지 알려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애타는 심정을 이해하시어 그들이 하루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사망자가 있다면 가족들이 장례를 치를수 있도록 시신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도움으로 우리들의 이 같은 간청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1995년 6월 8일

제86 우성호 선원 이병소의 남동생 이병철  
제86 우성호 선원 김부곤의 부 김공수  
제86 우성호 선원 박재열의 여동생 박정희  
제86 우성호 선원 심재경의 누나 심일심  
제86 우성호 선원 윤경순의 처 박금석  
제86 우성호 선원 신흥광의 누나 신지순  
제86 우성호 선원 이일용의 남동생 이정청  
제86 우성호 선원 김우석의 여동생 김민자

한편, 우성호 송환 노력은 '북경회담'에서도 전개되었다. 1995년 6월 17일과 7월 15일부터 3~4일간씩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제 1~2차 대북 곡물지원을 위한 남북한 회담에서 우리측 대표단은 우성호 송환은 인도주의 차원의 문제인 만큼 최단시일내에 송환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우성호 송환문제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충분히 인식한 만큼 돌아가서 가능한 빨리 송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할 것임을 약속하는 등 송환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북한은 9월 27일부터 열린 제3차 북경회담시까지도 송환을 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측은 강력하게 즉시 송환을 재촉하였다. 북한측 대표단장 전금철은 내외신기자회견에서 우성호 송환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선장과 기관장이 충돌을 맞아 중상을 입고 입원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 우성호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조치를 외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송환 노력은 중단 할 수 없다.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총재 및 동 아시아 대표,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총재 등에게 대북 성명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 요청서한을 발송하는 등 다방면으로의 송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다음은 ICRC에 보낸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서한이다.

한적 총재, ICRC 총재앞 서한  
May 31, 1995

Mr. Cornelio Sommaruga  
President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19, avenue de la paix  
CH 1202 Geneva  
Switzerland

Dear Mr. President,

I am writing to request your urgent assistance for the repatriation of a South Korean fishing vessel captured yesterday by a North Korean patrol boat.

According to sources within our government, a South Korean fishing vessel, the 103-ton 86 Woosungho, was fired upon and then apprehended by a North Korean patrol boat in the Western Sea about 25 miles northwest of Paengnyong island.

It is believed that the vessel with its fishermen of eight headed by its captain, Boo-Kon kim, inadvertently strayed into North Korean waters while on route to the South Korean port of Inchon from Youngsung port in Sandong Province, China.

This morning at 10:00 a.m. I sent a radio message to the North Korean Red Cross asking for their humanitarian help for the immediate repatriation of the vessel and the eight fishermen.

I would therefore like to ask for your compassionate intervention with a view to securing the release of the vessel and its fishermen as soon as possible, so they may be returned to their family members without delay.

I would be truly grateful for your most kind concern and cooperation in this matter.

Sincerely yours,  
Yung - Hoon Kang  
President

### 3. 북한의 태도

북한은 5월 30일 우성호 납북사실을 방송으로 확인한 이래 가족들의 애타는 호소와 정부의 직간접적인 송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피납 4개월이 다 되어서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최초로 공식 보도를 하였다.

이 통신은 선박이 파손되고 일부사상자가 났음을 밝히면서 사건의 책임은 북한측 영해를 침범한 86우성호와 불법행위를 지휘한 남조선 당국에 있다고 주장하고 86우성호 문제는 공화국 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통일원 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내어 북한측이 우리의 순수한 민간어선을 나포하고, 특히 나포과정에서 무고한 어부들을 살상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북측은 이제라도 우리 선원과 선박이 하루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논평에는 귀기울이지 않았다. 나포에서부터 '조선중앙통신'보도까지 3개월 20여일 동안 자기 측이 조작한 계획대로 우성호 사건에 대한 전말왜곡과 선원들을 대남비방 선전선동에 내세우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1995년 9월 25일 밤 10시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86우성호'선원의 요청에 따라 기자회견을 하게됐다고 하면서 선원들의 목소리를 내보내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 방송 내용을 보면 우성호의 선장이 김부근에서 선원 박재열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박재열은 내가 우성호 선장이라고 자처하면서 거의 전 방송시간을 혼자서 소비하였다.

그는 "우리는 공화국 영해 깊숙히 불법 침입하는 죄를 범했다. 이러한 불법침입은 이남 당국의 지령에 따른 것이다. 인민군 경비병은 우리 배를 사고 없이 단속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 공화국은 대죄를 저지른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고 동포애의 아량으로 대해주어 속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총상을 입은 사람에게 현대적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돈 한푼 받지 않고 성심껏 치료하여 완치시켜 주었다. 이 모든 것은 김정일이 베푼 은덕이란 것을 느끼게 된다. 항해사와 갑판장이 나포과정에서 사망했다. 사망책임은 이남 당국과 자신에게 있다. 선원 한 명은 지병으로 사망했다. 앞으로 조국통일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하였다.

우성수산측과 정부 당국은 86우성호가 북한측에 피납·억류되면서 선장이 김부근에서 박재열로 바뀐데 대해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선장이라고 자처하는 박재열의 언급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신뢰를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분단 이후 북한이 저지른 수많은 어선 납북사건에서와 같이 상투적으로 반복되는 형태의 조작극이기 때문이다.

그 중에 눈에 띄는 대목 한가지만 짚어보더라도 전반의 내용은 조작극임이 분명해진다. 9월 25일 기자회견을 자처한 박재열은 "총상을 입은 사람을 공화국에서 '완치' 시켜주었다."며 건강한 목소리로 방송까지 했다. 그런데 9월 27일 북경에서 개최된 대북 곡물 제공을 위한 제3차 회담에 참가한 북한측 대표단장 전금철은 내외기자회견에서 "우성호 송환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선장과 기관장이 총을 맞아 중상으로 입원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박재열의 언급은 북한당국에 의해서 조작된 강제증언임이 명약관화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우성호 선원의 기자회견에 이어 대남 비방과 선전을 계속하였다.

10월 7일 평양방송은 심야프로에서 남측이 86우성호 선원들에 대한 석방이니 뭐니 열토당토않은 소리를 한다면 선원들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그들의 범죄행위가 남측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 저질러지게 되었음을 인정하였으므로 86우성호는 북한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또 다시 주장하였다.

이밖에도 11월 3일에는 박재열이 다시 담화를 발표하여 "우리 선원들은 범죄 당사자로서 마땅히 이북 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그럼에도 북한 당국이 동포애와 인도주의 정신에서 불편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은 인덕정치로 참 세상을 펼치는 김정일 장군의 높은 뜻에 따른 것임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남의 동포·국민들이 우성호 문제와 관련된 당국의 온당치 못한 처사에 규탄해 나서라"고 선동하였다.

또 11월 6일 중앙방송은 우성호 선원들의 좌담회를 열어 남측이 우성호 문제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고 있다며 영해침범은 우성호에도 책임이 있지만 이남 당국에도 있다고 하고 이남 당국은 마땅히 북한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성호(103톤)같은 작은 배가 원양어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대통령령 13333호 '어구사용금지구역에 관한'규정 때문이라는 등 모략중상을 일삼았다.

이어서 11월 7일 아침에는 전국선원 노조연맹에 편지를 보내 "우성호를 빌미 삼아 남북대결을 격화시키려는 남한당국의 행패를 그만 두도록 노조연맹이 목소리를 높여달라"고 선동하고 11월 7일 중방은 이러한 요구들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논평을 내는 등 관련 각본에 의한 대남 날조 선전선동을 계속하였다.

#### 4. 국내언론의 반응

분단 이후 북한이 우리 민간어선을 불법 납치하여 납북된 어부는 우성호 외에도 3,662명이나 된다. 이중에 415명은 아직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으며 그 가족들은 지금도 애타게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고대하고 있다.

북한은 이들 선박을 간첩행위를 했다는 등으로 날조하여 그때그때 정치적인 선전목적에 이용해 왔다. 지금 86우성호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성호가 피랍 되자 국내 대부분의 신문방송은 전례를 상기시키고 "북한이 군정위 체제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라면서 일제히 북한의 우성호 총격 나포행위를 비난했다.

언론은 "육안으로도 구분할 수 있는 100톤이 넘는 민간어선에 대하여 총격을 가해 사상자를 내면서 과잉단속에 이은 나포행위를 한 것은 지금 북한이 미국과 단독적인 군사 대좌의 기회, 즉 미·북 장성급 접촉 명분 축적을 위한 의도적인 나포행위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언론들의 분석·보도에 대해 대체적으로 동의하면서 북한의 행위를 규탄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이 우성호를 나포해간 의도가 언론이 분석한 대로가 아니길 바란다. 순수한 민간어선을 나포하여 이를 영똥하게 이용하려 한다면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

한가지 북한측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순수한 어부들을 강요하여 대남 적대정책 강화에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오직 어획고를 올리는 데에만 정신을 집중하고 살아온 어부들에게 무슨 "대통령령 13333호 규정 때문에 우리는 작은 배로 원양어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대남 비방 방송문을 낭독케 하는 행위로 북한 주민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국민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바다에 나가는 어떤 어부도 '대통령령 몇 호' 까지 머리 속에 넣고 다니며 고기잡이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나를 보면 전체를 알 수 있다. 북한은 86우성호 선원들을 불순한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하루빨리 그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 보내야 한다.

### Ⅲ. 대북 수재지원

북한은 1995년 8월 18일 중앙방송을 통해 평양을 비롯한 모든 지방들에서 '무더기 비'(집중호우)가 내려 강하천이 크게 불어나는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보도하여 북한지역에 큰 홍수가 발생했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8월 23일 북한은 UN대표부를 통해 UN인도적지원국(DHA) 뉴욕사무실에 긴급구호 요청을 신청하였고, 8월 25일 UN주재 북한 대표부 1등 서기관 현학봉이 미국 「국제기업경영 자문회사」 대표에게 수재지원 요청서한을 접수시켰다.

이에 따라 UN인도적지원국은 직원들을 평양에 보내 수해상황 파악에 나섰으며, 8월 29일 북한이 보내온 수해피해 보고 내역을 우리 나라를 포함한 UN회원국들에 통보해 왔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 7월 26일부터 8월 18일 사이 주로 평안남북도와 강원도지역에 집중호우 발생
- 이 집중호우로 12개 도 145개 군 약 520만 명이 영향을 받았음
- 북한당국이 조사한 초기 총 피해 규모는 150억 달러임

북한 수재지원 문제에 대하여 8월 30일 나웅배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은 정부의 북한 수재지원 여부를 묻는 김종호 민자당 정책위 의장의 문의에 대해 정부로서는 북한 수재를 지원할 계획이 없음을 처음으로 밝혔고, 9월 5일 제3차 북경회담 개최일정을 발표하면서 북한 수재지원 문제는 북측의 피해에 대한 국제기구의 조사와 북측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그때 가서 논의하는 것이 합당한 순서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어서 9월 6일 통일원 대변인은 대북 수재지원 문제는 북한이 공식지원을 요청하거나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을 요청해오면 그때 가서 검토한다는 입장은 불변이지만 국제기구를 통한 몇 만불 단위의 지원은 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을 발표하였으며, 9월 11일 나웅배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은 고위당정회의 보고를 통해 현시점에서 대북 수재지원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으나, 다만 국제기구로부터의 참여요청이 있고, 북측으로부터 공식요청이 있을 시에는 그때 가서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한편 북한 수해피해에 대한 UN의 종합평가 보고가 9월 12일 제네바에서 발표되었으며, 주요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총 필요액은 1,571만 2,250\$임.
- 피해지역은 120개 군 1,391개 리, 피해주민은 520만 6천명, 이중 집을 잃은 주민은 48만 1,740명임.
- 이재민 50만 명에게 3개월 동안 지원할 쌀 2만 250톤과 식용유 675t 등 총 725만 달러가 소요될 것임.

\*이 보고서는 UN DHA,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보건기구(WHO), 엔아동기금 (UNICEF), 세

계식량계획(WFP), 식량농업기구(FAO)의 대표들이 8. 29~9. 9까지 북한을 방문 후 작성하였음.

북한은 UN의 북한수해 종합평가 보고와 함께 이철 주 제네바 북한대사가 각국 외교단에 수재 지원을 요청하였고, 김봉익 북한 조선삼천리 총회사사장은 한국 선명회에 의약, 의류 등 구호물품 보다는 식량이 가장 필요하다는 긴급지원 요청서한을 보내왔다.

이와 함께 9월 12일 UN 인도적지원국(DHA) 북한수해평가단 「올라 랑그랜」 단장은 북한 수재 지원을 위해 1,500만\$ 상당의 구호금품의 제공을 국제사회에 호소하였고, 9월 14일 국제적십자사 연맹은 각국 적십자사에 현금 150만\$, 담요·누비이불·쌀·수송차량 등 구호물품 250만\$상당 등 400만\$의 북한 수재지원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북한당국과 국제기구의 북한 수재지원 요청에 따라 9월 14일 나옹배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은 ▷우선 대한적십자사 자체재정으로 5만\$의 의약품, 의류, 모포 등 생필품을 적당한 통로를 통해 북한측에 전달 ▷국내 민간차원의 구호물자 지원은 대한적십자사로 창구를 일원화 ▷북한의 공식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시기와 규모, 방법에 대해 신중히 검토한 후 당·정간의 협의를 거쳐 지원할 것이라고 대북 수재지원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강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9월 15일 오전 9시 30분 북한적십자회 이성호 위원장대리 앞으로 수재물자 제공을 제의하는 대북 전화통지문을 발송하려 했으나, 북한측에서 수신을 거부한 관계로 이날 오전 10시 KBS 제1라디오를 통해 발송하였다.

이날 발송한 한적 총재 대북 전화통지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대북 수재물자 제공을 제의하는 대한적십자사 총재 전화통지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성호 귀하

국제적십자사연맹은 9월 13일 귀측의 수해가 극심한 상황임을 각국 적십자사에 알리면서 우리 측에게도 귀측 수재민을 위한 원조를 호소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한적십자사는 비록 우리 국민들이 수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북녘 동포들도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서 의약품과 모포를 귀측에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대한적십자사는 우리 국민들이 귀측의 수재민을 돕기 위한 물품전달을 요청해올 경우 이를 모아 귀 적십자회 앞으로 보내고자 합니다.

귀 적십자회는 우리측의 물품을 귀측에 보내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조속히 알려주기 바랍니다.

1995년 9월 15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강 영 훈

또한 강영훈 한적 총재는 이날 오전 10시 대북 수재물자 제공제의와 관련한 대국민 성명도 발표하였다. 강영훈 한적 총재는 성명문을 통해 ▷그 동안 우리 수재민들의 피해복구에 동참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북한에 수재물자를 보내려는 대한적십자사의 입장을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국민들이 북한의 수재민을 돕기 위한 물품이나 현금 전달을

대한적십자사에 의뢰하는 경우 이를 모아 북한 적십자회측에 보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강영훈 한적 총재의 대국민 성명문 전문이다.

대북 수재물자 제공 제의와 관련한  
대한적십자사 총재 성명문

지난 8월 전국에 걸쳐 수일간 계속된 폭우로 말미암아 우리는 귀중한 인명 손실과 농작물 유실 등 적지 않은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재해발생시 긴급구호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는 구호물품을 신속히 방출하여 수재민들을 위한 구호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지금까지도 함께 힘을 모아 수해복구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지방에도 많은 비가 내려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여 최근 북한당국이 유엔과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 원조를 호소하였다는 보도가 계속되어 그동안 대한적십자사는 국제적십자사연맹의 조사결과 통보를 기다리면서 인도적 견지에서 수해를 당한 북한 주민들을 위해 의약품과 모포 등의 물품 지원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왔습니다.

이 같은 시점에서 유엔 인도적지원국(UN DHA)은 9월 12일 북한이 이번 비로 500여만 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하고 150억불에 이르는 재산피해가 있었다고 발표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국제적십자사연맹도 9월 13일 북한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임을 각국 적십자사에 알리면서 수재민을 위한 원조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비록 우리 국민들이 수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북한 주민들도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서 의약품과 모포를 북한에 지원하기로 하고 오늘 북한 적십자회측에 방송통지문으로 수재물자 제공을 제의하였습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그동안 우리 수재민들의 피해복구에 동참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북한에 수재물자를 보내려는 대한적십자사의 입장을 널리 이해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본인은 국민여러분이 북한의 수재민을 돕기 위한 물품이나 현금 전달을 대한적십자사에 의뢰하는 경우 이를 모아 북한적십자회측에 보낼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1995년 9월 15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강 영 훈

이와 같은 대북 수재물자 제공제의에 대해 북한적십자회의 회신이 없어 9월 23일 대한적십자사는 1차분 담요 5천장(1억 2천 1백 만원 상당)을 국제적십자사연맹을 통해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민간차원의 구호물자 지원은 대한적십자사로 창구를 일원화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는 민간, 사회, 종교단체 또는 개인의 자발적인 성금을 접수하여 11월 20일 현재 1억 1천 6백 만원의 성금을 모금하였으며, 이 성금 중 6천 2백 만원과 한적 자체 예산 5천 9백 만원 등 1억 2천 1백 만원으로 담요 5천장을 북한에 지원하였다. 대한적십자사는 인천항에서 남포항으로 수송된 모포가 11월 23일 국제적십자사연맹 요원에게 인수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12월 9일 대한적십자사는 2차분 담요 3천장(7천 만원 상당)을 북한 남포항으로 수송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북한에 지원된 구호물자는 담요 8천장(1억 9천 1백 만원 상당)이며, 이에 따른 예



산은 대한적십자사에 접수된 북한 수재구호 성금 1억 5천 6백여 만원(12월 23일 현재) 중 1억 2천 5백 만원과 한적 자체예산 6천 6백 만원 등 총 1억 9천 1백 만원이 소요되었다.

#### IV.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기본원칙

김영삼 대통령은 1995년 8월 15일 제5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다음과 같은 민족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3대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반드시 남북 당사자간에 협의·해결되어야 한다.

둘째,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관련 국가들의 협조와 뒷받침도 필요하다.

셋째, 남북 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비롯한 모든 남북간의 합의사항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 3대 기본원칙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내외에 천명하고,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간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 체계화하여 재천명한 것이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기본원칙’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첫째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반드시 남북 당사자간에 협의·해결되어야 한다.

이는 두말 할 것도 없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책임은 궁극적으로 남북한 당사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문제는 1953년 이후 정전체제로 유지되고 있으며 155마일 전선은 전적으로 남북한 군대가 대치해 오고 있다. 비록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가 유엔군 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전협정의 실질당사자는 분명 한국이며 또 실제 정전상태를 유지해 온 것은 100만이 넘는 남북한 군사력이다.

이제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남북한 당사자의 협의하에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1992년 2월에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도 그 전문에서 "...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라고 명시하였던 것은 한반도 평화의 주인은 바로 남북한임을 같이 인식하고 기본합의서도 이러한 정신 밑에서 산출된 것이었다.

기본합의서 제5조는 "남과 북은 현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가 이룩될 때까지 현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라고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남북한 당사자 해결원칙을 뒷받침하고 있다.

여기서 남북한은 현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당사자로서의 노력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 평화상태란 바로 정전체제에 대치하는 평화체제의 구축을 의미하고 있다. 게다가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재의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북한의 주장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엄연한 위반이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남북당사자 원칙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반증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기본합의서 제9조에서 제14조에 이르기까지 '무력사용 및 무력침략 금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 '불가침 경계선 획정'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평화체제 문제가 남북한이 당사자라는 데 사실상 인식을 같이한 것이며, 미국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는 남북한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둘째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관련 국가들의 협조와 뒷받침도 필요하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가 우리민족의 공존공영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와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의 중심지역이며, 세계평화에 직결되고 있는 무력충돌이 잠재하고 있는 지역으로 남북한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

북한이 남북회담장에 나와서까지 '서울 불바다'를 공공연하게 떠들었던 데서도 그 위험 수위를 실감할 수 있었다.

비록 북한이 6·25 전쟁을 '민족해방전쟁'이라고 표방하고 나왔을지라도 결국 중·소와 유엔 16개국이 참전하는 국제전화했던 사실을 보더라도 한반도의 국제적 이해관계가 아주 예민하게 작용하고 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고려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무엇보다 남북당사자가 확고한 민족자존의 입장에서 공동으로 대처해 나아가면서 주변 국가의 협조와 지원도 얻어내야 할 것이다.

김일성도 1993년 1월 신년사에서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이 주체가 되어 해결하여야 할 민족적 문제인 동시에 유관국들도 책임을 느끼고 적극 협력하여야 할 국제적 문제"라고 실토한 바 있다.

한반도 평화나 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의 문제로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어 자주적으로 풀어가야 하며 주변 유관국들은 오직 협조자요 지원자일 뿐이다.

셋째로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비롯한 모든 남북간의 합의사항은 존중되어야 한다.

평화의 기초는 남북한의 신뢰구축이며 신뢰는 남북간에 합의한 내용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남북한은 '기본합의서'에서 '화해와 협력', '남북불가침', '남북교류·협력'을 구체적으로 합의하였고, 이의 이행·준수를 위해 위 3개 분야의 부속합의서를 발효시켰던 것이다. 또한 이 합의서의 구체적 이행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하기 위해 4개의 남북공동위원회도 가동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북한의 기피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남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핵무기 개발을 금지한다는 선언을 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의혹은 아직도 분명하게 풀리지 않고 있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 공동선언의 투명한 이행을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책임있는 남북한 당국이 합의하고 발효시킨 바 있는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비롯한 모든 남북간의 합의사항은 반드시 존중되고 하루라도 빨리 이행·실천되어야 한다. 진정으로 남북관계가 남북기본합의서 체제로 진입될 때 남북간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은 보장되고 평화통일의 길도 탄탄하게 닦아지게 될 것이다.

## V. 대북 경수로 지원을 위한 KEDO의 활동

### 1. 팔라룸푸르합의(1995. 6. 13)

제네바 기본합의 서명시(1994. 10. 21.) 경수로제공을 위한 공급협정을 6개월 내에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한 약속에 따라, 미·북간 전문가회의가 3차례 개최되었다.

미-북 전문가회의 (1차) 북 경 1994. 11. 30-12. 2.

(2차) 베를린 1995. 1. 28-2. 1.

(3차) 베를린 1995. 3. 25-4. 20.

이들 회의에서는 경수로 노형과 경수로 제공에 있어서 중심역할(주계약자)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 미국은 정치적·재정적·기술적으로 한국의 중심역할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이를 강력히 거부하면서 한국형 경수로가 북한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트로이 목마'라고 비난하였다.

제네바기본합의 후 6개월 경과 시점인 1995. 4. 21.에 이르도록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자, 북한은 특유의 벼랑끝 전술로 협상결렬을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핵동결 해제를 위협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미·북 준고위급회담을 열게 되었고, 북한은 여기서 현실적으로 한국표준형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1995. 5. 19-6. 12. 말레이시아 팔라룸푸르에서 개최된 미·북 준고위급회담에서, 양측은 제네바 기본합의에 관한 정치적 약속을 확인하고 그간의 주요 쟁점들을 일단 해소하였다.

팔라룸푸르합의 (공동언론발표문 요지, 1995. 6. 13.)

- ① 경수로사업은 KEDO가 담당하며 미국이 북한과의 주접촉선 역할을 수행
- ② 두 개의 냉각재 유로를 가진 1,000MWe 발전용량의 가압경수로 2기로 구성되며, 경수로의 노형은 KEDO가 선정
- ③ KEDO-북한간 공급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

팔라룸푸르합의는 노형선정과 주계약자문제를 둘러싼 그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가 KEDO 대표의 일원으로 대북협상에 직접 나서게 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노형과 주계약자를 KEDO가 선정한다는 데 합의함으로써 북한은 한국기업(주계약자)이 건설하는 한국표준형 경수로를 제공받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한편 북한과 협상을 벌였던 미국은 공동발표에 앞서 클린턴 대통령의 친서(6. 13)형식으로, 북한에 제공될 경수로는 한국표준형으로서 참조발전소는 울진 3, 4호기가 될 것이며, 한국기업이 주계약자로 설계·제작·시공 및 사업관리 등 경수로사업 전체를 책임질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팔라룸푸르합의 발표 당일, KEDO는 서울에서 집행이사회를 긴급 개최하고, 동 합의가 경수로사업 이행의 기본원칙인 한국표준형 경수로의 제공과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KEDO집행이사회는 북한에 제공될 경수로는 KEDO설립협정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한국표준형 경수로로 하고, 그 참조발전소는 울진 3, 4호기로 할 것과 주계약자와 관련하여 한전과 협의를 시작할 것을 결정하였다.

\* KEDO 설립협정은 북한에 제공될 경수로 노형을 한국표준형으로 명시(제2조)

## 2. KEDO의 본격가동

KEDO가 정식 설립(1995. 3. 9)된 이후 상당기간 동안 KEDO사무국은 총장단만 내정된 상태로 실무조직이 없어 사실상 설립협정의 기구에 불과하였다. KEDO사무국이 본격활동을 위한 준비를 서두른 계기는 물론 팔라룸푸르 합의였다.

1995. 7. 5-11. 보스워스 KEDO 사무총장은 부임인사를 겸해 한국을 방문하여 KEDO사무국 발족과 대북협상 준비문제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한국표준형원자로 건설현장인 울진 원자력단지를 시찰하였다.

곧이어 KEDO는 1995. 7. 20. 뉴욕에 본부 사무실을 개설, 한국과 일본의 사무차장들이 부임하여 보스워스 사무총장과 합류함으로써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KEDO의 기관으로는 집행이사회·사무국·총회 및 자문위원회가 있으며,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집행이사회는 한·미·일 대표 각 1명으로 구성되는데 의사결정은 전원합의로 이루어진다.

사무국의 최고위직인 사무총장단은 집행이사회에서 2년 임기로 선출되며 현재 최영진 차장과 일본인 우메즈 차장이 보스워스 총장과 함께 총장단을 구성하고 있다. 총장단은 집행이사회의 지휘·감독하에 KEDO 사무국의 조직·인사·예산 등을 관장하고 대북협상 및 계약업무 등을 수행한다.

사무국의 하부구조는 정책기획, 계약·사업관리, 예산·재정 및 행정담당의 4개 부서로 조직되어 있으며, 최영진 차장이 정책기획, 계약·사업관리 2개 부서를 담당하고 우메즈 차장이 나머지 부서를 맡고 있다.

KEDO의 운영경비는 집행이사국간 1/3씩 분담키로 합의한 바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5년도 KEDO 운영비 542만불중 180만불을 납입하였으며 이는 주로 직원보수와 사무실 운영, 대북협상 경비 등에 충당되게 된다.

KEDO사무국은 집행이사국인 한·미·일 3국 정부 협조하에 KEDO 활동의 본격 준비 일환으로 1995. 7. 31-8. 1. 뉴욕에서 첫 KEDO 총회와 경수로사업, 대체에너지, 사용 후 연료의 3개 분야별 자문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KEDO의 주요 기관을 모두 구성하였다.

한·미·일 등 32개국과 유럽연합(EU)대표가 참석한 총회는 북핵문제 특히, 경수로사업에 대한 국제공조 여건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듯 팔라룸푸르합의 이후 본격 구성된 KEDO는 제네바 합의에 규정된 바대로 대북 경수로사업의 재정과 공급을 담당하는 국제기구로서 북한과의 경수로협상과 부지조사 활동은 물론 우리측 '한전'과의 경수로 상업계약 체결 교섭 등 경수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

### 3. 경수로 건설 부지조사

콜라룸푸르 합의에 따라 KEDO의 제1차 부지조사단이 1995. 8. 15-22. 북경을 경유하여 평양 및 경수로건설 예정지인 신포지역을 방문하였다.

로젠 단장을 포함하여 전문가 10명과 용역회사 직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신포지역이 부지로 적합한지를 육안조사하고, 러시아가 이미 조사해서 작성해 놓은 자료를 확인·검토함과 동시에 토양·수질에 관한 간단한 표본 조사도 실시하였다. 또한 신포와 평양에서 북한의 전문가들과 실무적인 협의를 가졌다.

조사단 일행은 방북활동을 마치고 1995. 8. 23-25. 서울에서 조사 결과의 분석과 보고서초안 작성을 위한 공동작업을 수행하였다.

1차 부지조사결과 신포지역이 대체로 경수로부지로서 일반적 요건은 충족하고 있다고 평가되었으며 추가적인 보완조사를 위해 2차 부지조사단이 1995. 10. 24-11. 4. 재차 방북하였다.

2차 조사단은 로젠 단장을 포함하여 전문가 14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질·지진, 환경 및 인허가, 시공성 등 3개 분야별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2차 조사에서는 적정후보지 도출을 위해 몇 개 후보지점을 대상으로 지진계측기를 설치하는 등 안전성을 집중 조사하고 건설 용이성을 비교·검토하는 한편, 1차 조사 때 입수하지 못한 관련 기본자료를 확인·검증하였다.

KEDO는 1-2차 부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포지역내 적정 후보지에 대한 시추 작업 등 본격적인 세부 조사를 위해 '한진' 등 우리 기술진을 주축으로 한 3차 부지조사단(1995. 12. 14-1996. 1. 16.)을 추가 파견하였다.

#### 4. 경수로 공급협정의 타결

##### 가. KEDO-북한간 경수로협상(1차)

팔라렘푸르 합의에 따라 공급협정 체결을 위한 KEDO와 북한간 1차 회담이 1995. 9. 11-15. 팔라렘푸르에서 개최되었다.

KEDO측에서는 보스워스 사무총장을 수석대표로 14명이, 북한측은 허종 외교부 순회대사를 단장으로 11명의 대표가 참석했다.

KEDO측 대표에는 최영진 차장 등 KEDO 직원 외에 정부대표로 경수로기획단 관계자가 포함되어, 남북한 당국의 대표가 처음으로 협상 자리에 마주 앉게 되었다.

그동안 대북 핵 협상 또는 경수로 협상이 미·북 양자 협상 형태로 이루어진 관계로 우리의 입장을 미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반영할 수 밖에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주목되는 진전이라 할 수 있다.

양측은 상견례를 겸해 전체회의를 가진후 1995. 9. 11-12. 고위급회의를 개최하고 이어서 1995. 9. 13-15. 전문가급 실무회의를 진행하였다.

KEDO의 총장단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진행된 고위급회의에서 북한단장 허종은 제네바 합의 1주년이 되는 1995. 10. 21.이전까지는 공급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면서 인위적인 협상시한을 설정코자 시도하는 한편, 공급범위와 상환조건 등에 대한 기존입장을 반복하면서 정치적 해결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KEDO측은 인위적 협상시한 설정과 공급범위 확대 및 상환조건 등 무리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면서, 북측에 '부담분담원칙(Burden Sharing)'을 강조하고 상환 원칙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하였다.

1995.9. 13-15. 고위급에 이은 전문가 실무협상에서는 양측이 마련한 협정문안을 서로 대조하고 포함될 내용들에 대해 항목별로 상호 입장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핵심 쟁점으로 대두된 공급범위와 상환조건 문제는 고위급 회의에서 다루고 나머지 문제는 전문가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1995. 9. 30.과 1995. 10. 16.에 각각 전문가회의와 고위급회의를 뉴욕에서 속개하기로 하였다.



## 나. KEDO-북한간 경수로협상(2차)

KEDO는 북한과의 2차협상 재개에 앞서 한·미·일의 전문가들과 1995. 9. 27-28. 뉴욕에서 실무협의를 갖고 공급협정안의 전반적인 내용과 조항별 협상 대책을 점검하였다. 우리측에서는 경수로기획단 관계자 외에 한전, 원자력연구소, 원자력안전연구원 전문가들이 참가하였다.

KEDO-북한간 2차 경수로협상은 먼저 1995. 9. 30.부터 전문가회의를 갖고 1995. 10. 16.부터 고위급회의와 전문가회의를 병행하면서 진행되었다. 전문가회의에서는 공급협정의 기술적·법적인 사항에 대한 토의를 통해 상호 의견차를 좁혀 나아가고, 고위급회의에서는 공급범위와 상환조건 등 핵심쟁점을 토의하였다.

두 달여 넘게 진행된 협상에서 KEDO측은 수차에 걸친 북한 특유의 벼랑끝 전술에 원칙에 입각하여 확고히 대처함은 물론, 북한이 KEDO와의 협상틀을 깨고 대미협상으로 가는 빌미를 주지 않도록 하면서, 협상 기본전략으로 포괄적 해결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였다.

\* 포괄적 해결원칙이란 북한의 무리한 요구, 특히 불완전 합의를 통해 추가양보 요구를 반복하는 소위 분할접근전술(Salami Tactics)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의 협상목표가 완전히 드러나고 협상의 모든 쟁점에 합의할 때까지 아무 것도 합의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1995.10.16.부터 고위급과 전문가급 회의를 병행하면서 진행된 협상에서 양측은 공급범위나 상환조건 이외에 기술기준, 인도일정, 통행로 등 많은 쟁점 상황에 대해 서로 지루하게 대립하던 끝에 1995.12.15.경수로 사업의 실질적 주도자인 우리측 입장이 대부분 관철된 공급협정 문안에 대해 합의하게 되었다.

KEDO-북한간 협상에서 북한은 더 이상 한국형과 한국의 중심적 역할 수행에 시비를 걸지 않고 경제적이고 실리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협상의 막바지까지 송배전시설, 핵연료 성형공장, 항만 부두개선 등의 추가공급과 흑연료 기투자분 당감 등 불합리한 요구를 집요하게 하였으나, KEDO 측 특히 통상적인 원전건설 관례와 울진 3, 4호기에 기준한다는 우리측의 확고한 원칙에 따라 결국은 철회하게 되었다.

공급협정이 국제법적 성격을 가짐에 따라 북한의 핵활동 동결 및 해체 등 제네바 기본합의의 정치적 약속을 법적 의무로 전환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며, 장기간에 걸친 경수로 사업기간 중 건설 인원 및 장비의 남북한 왕래 등 남북 교류협력대 및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다. 경수로 공급협정의 주요 성과 및 내용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을 위한 KEDO와 북한간 협상에서는 '한국표준형' 원전 공급과 '한국의 중심적 역할' 수행이라는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추구해 온 핵심 원칙이 재확인 되었다.

특히 북한의 불요불급하거나 비현실적인 요구를 배제한 대신 접촉·통신·통행, 신변안전, 핵사고 책임부담 등 경수로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직결된 사항이 경수로 사업의 실질적 주체인 우리측 요구에 따라 확보됨으로써, 향후 경수로사업이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남북간의 교류협력의 증대 등 남북 관계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다.

KEDO와 북한간에 체결된 경수로 공급협정은 국제법적인 조약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공급범위

○ 우리측은 경수로 원전건설과 이에 필수불가결한 사항에 한해 부담

- 부지준비, 부지내의 공사용 도로, 공업용수, 공사 관련 인원 숙소 등 건설개시에 필요한 공사
- 냉각수 취·배수용시설, 방지선 물양장, 수중보를 포함한 양수시설 등 원전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
- 기타 모의훈련대 등 원전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 ② 상환조건

○ 각 호기별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무이자)

##### ③ 한국표준형과 직결된 사항

○ 기술기준

- KEDO선정 노형(한국표준형)에 적용된 기술기준 인정

○ 인·허가 절차

- 발전소 기초 굴착전 건설허가(예비 안전 심사분석보고서에 기초)
- 최초 연료 장입이전 시운전허가(최종 안전심사분석보고서에 기초)

##### ④ 사업진행에 긴요한 사항

○ 통신·통행, 사무소 설치 문제

- 통행로는 북측이 지정하되 "KEDO와의 합의"가 필요
  - 부지에 대한 저해 받지 않는 통행 보장
  - '적절하고 효율적인' 통행로 지정(해·공로 등)
- 기존 통신시설에 대한 방해받지 않는 이용 보장과 KEDO 및 KEDO측 사업자의 독자적 보안통신 수단 설치 허용
- 현장사무소 외에 공항 등 직접 관련 지역에 추가로 사무소설치 가능
- 사업자간 접촉
  -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모든 사업 참여자간의 효율적 접촉과 협력 도모
- 각종 허가 발급 및 면세
  - 북한은 경수로사업 완공에 필요한 모든 허가신청을 신속하게 무료로 처리
  - KEDO, 계약자 및 그 임직원에게 대해 세금, 관세 면제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원칙 확보
  - 미·북 합의시 의무와 원자력 이용에 대한 NSG Guide Line 준수 보장
  - 핵물질 및 시설의 평화적 이용, 재처리 및 농축 금지, 제3국 무단 반출 금지, IAEA 안전조치 적용 등
  - KEDO에 대한 보장 외에 필요시 KEDO 회원국에 대한 양자 차원의 추가 보장
- 신변보장 및 영사보호
  -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관계자에 대한 신변보장 및 영사보호
- 핵사고시 배상 원칙
  - 원전운영자의 핵사고 무과실 책임원칙, 배상협정, 핵사고에 대비한 책임보험 가입 등
- ⑤ 핵활동 관련 의무사항

○ 미·북 기본합의문상의 제반 의무이행 포함

- NPT 잔류, 핵동결 및 해체, 폐연료봉 국외반출, IAEA 임시·일반사찰 재개, 안전조치 전면 이행 등
- 정치적 합의에 의한 북측 의무사항을 국제법적인 의무사항으로 재확인하는 효과
- 임시·일반사찰은 공급협정 서명 후 재개(IAEA와의 협의 후)

다음은 KEDO와 북한간에 체결된 경수로 공급협정 전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수로사업의 공급에 관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간의 협정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이하 'KEDO'라 한다.)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이하 '북한'이라 한다.)는,

KEDO가 1994년 10월 21일의 미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간의 기본합의문(이하 '미·북 기본합의문'이라 한다.)에 규정된 북한에 대한 경수로사업(이하 '경수로사업'이라 한다.)의 재원조달과 공급을 위한 국제기구임을 인식하고,

미·북 기본합의문과 1995년 6월 13일의 미·북 공동언론발표문은 미국이 경수로사업과 관련하여 북한과 주접촉선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음을 인식하며,

북한은 미·북 기본합의문의 관련 규정에 따른 제반의무를 이행하며, 1995년 6월 13일의 미·북 공동언론발표문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경수로사업을 수락한다는 것을 재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공급범위

1. KEDO는 북한에 2개의 냉각재유로를 가진 약 1,000메가와트 용량의 가압경수로 2기로 구성되는 경수로사업을 일괄 도급방식으로 제공한다. 노형은 KEDO가 선정하며 미국의 원설계와 기술로 부터 개발된 개량형으로 현재 생산 중인 것으로 한다.
2. KEDO는 협정 제1부속서에 명시된 경수로 사업의 공급범위를 부담한다. 북한은 협정 제2부속서에 명시된 제반 임무 및 품목으로 구성되는 경수로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기타사항을 부담한다.
3. 경수로 사업은 국제원자력기구와 미국의 규제 및 기술기준에 상당하며, 이 조 1항에 언급된 노형에 적용된 규제 및 기술기준에 따라 수행된다. 이러한 규제 및 기술기준은 경수로 발전소의 설계, 제작, 시공, 시험, 시운전, 운전 및 유지 보수뿐만 아니라 안전, 물리적 방호, 환경보호 및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과 처리에도 적용된다.

## 제 2 조 상환조건

1. KEDO는 협정 제1부속서에 규정된 임무 및 품목의 비용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며 북한은 이 비용을 장기, 무이자 방식으로 상환한다.
2. 북한의 상환금액은 KEDO와 북한이 공동으로 결정하되, 이러한 결정은 경수로사업의 상업 공급계약(주계약)에 명시된 경수로사업의 기술명세서, 경수로사업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 그리고 협정 제1부속서에 규정된 임무 및 품목과 관련한 공급계약에 따라 KEDO가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계약금액에 대한 양측의 검토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협정 제1부속서에 명시된 임무 및 품목에 대해 북한은 추가비용의 책임이 없으나, 북한의 작위 또는 귀책 사유있는 부작위로 야기된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북한이 책임지며, 이 경우 경수로사업에 관하여 KEDO가 지불하여야 할 실제 추가비용에 근거하여 KEDO와 북한이 공동으로 결정하는 금액만큼 상환금액이 증액된다.
3. 북한은 KEDO에 각 경수로 발전소 완공 후 3년 거치기간 포함, 20년간 무이자로 연 2회 균등분할 상환한다. 북한은 KEDO에 현금, 현금에 상당하는 기타 수단, 또는 재화의 이전을 통하여 상환할 수 있다. 북한이 현금에 상당하는 기타 수단 또는 재화로 상환(그러한 상환은 이하 '현물상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현물 상환의 가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 산출을 위해 합의된 방식에 근거하여 KEDO와 북한이 공동으로 결정한다.
4. 상환금액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은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 제 3 조 인도일정

1. KEDO는 2003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경수로사업의 인도일정을 수립한다. 북한이 제3부속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미·북 기본합의문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관련조치의 일정은 이러한 조치가 2003년까지 이행되고 경수로 사업이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경수로사업 인도일정에 포함된다. 경수로사업의 제공과 제3부속서에 규정된 조치의 이행은 미·북 기본합의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호 조건부이다.
2. 이 협정의 목적상 경수로 발전소의 '완공'이라 함은 제1조 3항에 규정된 규제 및 기술기준에 부합되는 성능시험의 완료를 말한다. 각 발전소 완공시에 북한은 KEDO에 대해 각 발전소별로 인수증을 발급한다.
3. 경수로사업의 인도 및 협정 제3부속서에 규정된 조치의 이행일정에 관한 상세사항과, 필요한 일정조정을 위한 상호합의된 절차 및 협정 제4부속서에 규정된 경수로사업의 상당부분의 완료에 관한 상세사항은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 제 4 조 이행 구조

1. 북한은 하나의 북한기업을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기업에게 경수로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이행구조에 참여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2. KEDO는 경수로사업을 수행할 주계약자를 선정하며, 이 주계약자와 상업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하나의 미국기업이 프로그램코디네이터로서 KEDO가 경수로사업의 전반적 이행을 감리하는 것을 보좌한다. 이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는 KEDO가 선정한다.
3. KEDO와 북한은 경수로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수로사업 참여자들 사이의 효율적인 접촉과 협력을 포함하여 양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촉진한다.
4. 이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서면 교신은 영어와 한국어로 할 수 있으며, 기존 문서 및 자료는 원래의 언어로 사용 또는 전달될 수 있다.
5.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는 사업현장 외에, 경수로사업의 진전에 따라 필요한 경우, KEDO와 북한이 합의하는 바에 따라 인근 항구 또는 공항과 같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부지와 다른 지역에도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다.
6. 북한은 KEDO의 독립된 법적지위를 인정하고 KEDO 및 그 직원에게 KEDO에 위임된 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북한 영역내에서의 특권 및 면제를 부여한다. KEDO의 법적지위와 특권 및 면제는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7. 북한은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가 북한에 파견한 모든 인원의 신변과 재산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한다. 이들 모든 인원에 대하여 확립된 국제관행에 따른 적절한 영사보호가 허용된다. 필요한 영사보호 조치는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8. KEDO는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가 북한에 파견한 모든 인원은 KEDO와 북한간에 별도로 합의될 내용에 따라 북한의 관련법을 존중하며, 아울러 항상 품위를 지키고 전문가적인 태도로 행동하도록 한다.
9. 북한은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가 경수로사업과 관련된 건설장비 및 잔여물자를 통관절차에 따라 재반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10. 북한은 이 협정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또는 이 협정 및 이 협정에 따른 의정서, 기타 계약과 직접 관련하여 KEDO와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의 작위, 부작위, 부채 또는 의무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있을 경우, 오로지 KEDO의 재산과 자산에 대하여만 변제를 추구한다.

#### 제 5 조 부지 선정 및 조사

1. KEDO는 부지가 KEDO와 북한이 합의하는 적합한 부지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하부구조 개선사항을 포함한 경수로 발전소의 시공과 운전을 위한 제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

선적으로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 금호리 일원 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2. 이 조사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북한은 KEDO와 협조하고 동지역을 대상으로 기 수행된 조사결과를 포함한 관련정보를 KEDO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KEDO는 추가적인 정보획득 또는 필요한 부지조사 수행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3. 부지접근과 부지사용에 관한 상세사항은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 제 6 조 품질보장 및 보증

1. KEDO는 제1조 3항에 규정된 규제 및 기술기준에 따라 품질보장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품질보장계획은 설계, 자재, 장비와 부품의 제작 및 조립, 그리고 시공품질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포함한다.
2. KEDO는 북한에 품질보장계획을 적절히 문서로 제공하며, 북한은 적절한 검사와 시험, 시운전,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북한측 검토가 포함될 품질보장계획의 이행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KEDO는 경수로 발전소 각호기가 제3조 2항에 규정된 대로 완공되는 시점에서 그 발전용량이 약 1,000메가와트가 되도록 보장한다. KEDO는 관련 계약자와 하청계약자가 제공하는 주요부품이 신품이며, 완공후 2년 동안 그러나 당해 주요부품의 선적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설계·제작기술·자재면에서 결함이 없다는 것을 보증한다. 각 경수로발전소의 최초장전을 위한 경수로 연료는 원자력업계의 기준관행에 따라 보장된다. KEDO는 경수로사업의 토목공사가 설계·제작기술·자재면에서 결함이 없음을 완공후 2년간 보증한다.
4. 상기 언급된 사항과 보증서의 내용 및 그 발급과 수령에 관한 절차는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 제 7 조 훈련

1. KEDO는 북한의 경수로발전소의 운전 및 유지보수를 위해 원자력업계의 기준관행에 따라 포괄적인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동 훈련은 상호 합의하는 장소에서 가급적 조기에 실시된다. 북한은 동 훈련계획을 위해 충분한 숫자의 자격있는 후보자를 제공하는 것을 책임한다.
2. 훈련계획에 관한 상세 사항은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 제8조 운전 및 유지 보수

1. KEDO는 경수로 발전소의 사용 가능한 수명기간 동안 북한이 선호하는 공급자와의 상업계약을 통하여 협정 제1부속서에 따른 제공분을 제외한 경수로 연료를 북한이 구득하는 것을 지원한다.
2. KEDO는 경수로 발전소의 사용 가능한 수명기간 동안 북한이 선호하는 공급자와의 상업계약을 통하여 협정 제1부속서에 따른 제공분을 제외한 예비부품, 마모성부품, 소모성 자재, 특수공구와 경수로 발전소의 운전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술 용역을 북한이 구득하는 것을 지원한다.
3. KEDO와 북한은 경수로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 연료의 안전한 보관 및 처리를 보장하는데 협력한다. KEDO의 요구가 있는 경우 북한은 경수로의 사용후 연료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며, 적절한 상업계약을 통해 동 사용후 연료의 인출후,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 조속히, 이를 북한 밖으로 이전하는데 동의한다.
4. 경수로 사용후 연료의 북한 밖으로의 이전을 위한 필요 조치는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 제9조 서비스

1. 북한은 경수로 사업의 완공에 필요한 모든 신청에 대한 승인을 신속히, 그리고 무료로 처리한다. 이러한 승인에는 북한의 원자력 통제 당국이 발급하는 모든 허가, 통관, 입국 및 기타 허가, 각종 면허, 부지접근권 및 부지인도 협정이 포함된다. 이러한 승인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 이상으로 지체되거나 거부될 경우 북한은 KEDO에 그 이유를 즉각적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경수로 사업의 일정 및 비용은 적절히 조정될 수 있다.
2. KEDO, 계약자, 하청 계약자 및 그 인원은, 경수로 사업과 관련하여, 북한의 조세, 관세 및 KEDO와 북한이 합의하는 각종 부과금과 수수료를 면제받으며 수용 조치로부터도 면제된다.
3. KEDO, 계약자 및 하청 계약자가 북한에 파견하는 모든 인원은 사업현장에 방해받지 않는 접근이 허용되며, 사업 현장으로의 출입을 위해 항공로와 해로를 포함하여 북한이 지정하고 KEDO와 북한이 합의하는 적절하고 효율적인 통행로가 허용 된다. 경수로 사업의 진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 통행로가 고려된다.
4. 북한은 KEDO, 계약자 및 하청 계약자가 북한에 파견하는 인원이 항만서비스, 수송, 노동력, 식수, 음식, 부지 밖 숙박시설 및 사무실, 통신, 연료, 전력, 자재, 의료 서비스, 환전 및 여타 금융 서비스, 기타 생활 및 작업에 필요한 편의 설비를 공정한 가격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5. KEDO, 계약자 및 하청 계약자와 이들이 파견하는 인원은 북한내의 이용 가능한 통신수단에



대한 방해받지 않는 이용이 허용된다. 이에 부가하여, KEDO, 계약자 및 하청 계약자는 각 장비설치 요청에 대한 신속한 사안별 검토를 거쳐 북한의 통신관련 규정에 따라 사무소에 보안이 유지되는 독자적인 통신수단을 설치할 수 있다.

6. 상기 서비스 관련 상세사항은,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별도의 의정서에서 적절히 정한다.

#### 제10조 핵안전 및 규제

1. KEDO는 경수로 발전소의 설계, 제작, 시공, 시험과 시운전이 제1조 3항에 규정된 핵안전 규제 및 기술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책임을 진다.
2. 북한은 부지조사 완료시 KEDO에 부지 인도증을 발급한다. 북한의 원자력 통제당국은 예비 안전성 분석보고서 및 부지조사에 대한 검토와 경수로 발전소가 제1조 3항의 핵안전 규제 및 기술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기초하여 발전소 기초 굴착작업 이전에 KEDO에 건설허가를 발급한다. 북한의 원자력 통제당국은 경수로 발전소의 최종설계가 포함된 최종 안전성 분석보고서 검토와 핵연료 장입전 시운전 시험 결과에 기초하여 최초 연료 장전 이전에 KEDO에 시운전 허가를 발급한다. 발전소 운영자에 대한 운영허가 발급을 지원하기 위해 KEDO는 핵연료 장입후 시운전 시험 결과와 운전 요원에 대한 훈련 기록을 북한에 제공한다. KEDO는 안전성 분석 보고서, 규제 및 기술기준에 관한 정보 등 필요정보와 함께 이 협정상 요구되는 결정에 필요하다고 KEDO가 인정하는 기타 문서를 북한에 신속히 제공한다. 북한은 사업 일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이러한 허가를 적기에 발급하는 것을 보장한다.
3. 북한은 경수로 발전소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 보수, 적절한 물리적 방호, 환경보호, 그리고 제 8조 3항에 일치하는 사용후 연료를 포함한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보관 및 처리를 제1조 3항에 규정된 규제 및 기술 기준에 부합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은 경수로 발전소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 보수를 위하여 적절한 원자력 규제기준과 절차가 이행되는 것을 보장한다.
4. 핵연료 집합체 선적에 앞서 북한은 원자력 안전에 관한 협약(1994. 9. 20. 비엔나에서 채택), 핵사고의 조기 통보에 관한 협약(1986. 9. 26 비엔나에서 채택),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시 지원에 관한 협약(1986. 9. 26. 비엔나에서 채택) 및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1980. 3. 3. 비엔나 및 뉴욕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의 규정을 준수한다.
5. 경수로 발전소 완공 후 KEDO와 북한은 경수로 발전소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 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관련, 북한은 이러한 점검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이러한 점검 결과를 적절히 고려한다. 안전점검의 절차 및 일정에 관한 상세사항은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6. 핵 비상사태나 사고 발생시 북한은 KEDO, 계약자 또는 하청 계약자가 파견한 인원이 안전 우려 범위를 확정하고 안전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즉시 현장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을

히용해야 한다.

#### 제11조 핵사고 책임

1. 북한은 경수로 발전소와 관련된(1963년 5월 21일자 핵피해의 민사책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정의된) 핵사고로 인한 손해와 관련하여 북한 내에서 제기되는 배상청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법적·재정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을 보장한다. 이러한 법적 장치는 절대책임주의 원칙에 의거, 핵사고 발생시 운영자에게 책임이 부과되는 것을 포함한다. 북한은 운영자가 이러한 책임을 이행할 수 있음을 보장한다.
2. 경수로 발전소와 관련한 핵사고로 인해 북한 영역 내·외에서 핵피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여 제3자가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된 활동을 이유로 법원에 제기하는 배상청구로부터 KEDO와 그 계약자, 하청 계약자 및 그 인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북한은 핵연료 집합체의 선적에 앞서 KEDO와 배상협정을 체결하며, 핵사고 책임보험 또는 기타 재정적 보장장치를 확보한다. 배상협정, 보험 및 기타 재정적 보장장치에 관한 상세사항은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3. 북한은 핵피해 또는 손실과 관련하여 KEDO와 그 계약자, 하청 계약자 및 이들의 임직원에게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4. 이 조항은 어떤 특정한 법원의 재판 관할권을 인정하거나 어느 일방이 면책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 북한은 관련 핵피해가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피해인의 중과실에 기인하였거나, 피해인의 가해 의도에 따라 행한 작위나 부작위에 의한 것임을 운영자가 입증할 경우에는 피해인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로부터 운영자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면제시키도록 국내법에 규정할 수 있다. 운영자는 핵사고에 따른 피해가 고의성이 있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그러한 고의성 있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행한 개인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가진다. 이 항의 목적을 위하여 ‘자(者)’ 또는 ‘개인’ 이라 함은 핵피해의 민사책임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3년 5월 21일 비엔나에서 채택)에서의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 제12조 지적재산

1. 이 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양측은 상대방의 지적 재산과 관련된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받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정보와 동 정보를 포함하는 물건이나 문서(이하 함께 ‘지적 재산’ 이라 한다.)는 특허법 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에 귀속되며, 비밀이 보호된다. 양측은 상대방의 지적 재산에 대한 비밀을 보호하며, 협정에 규정된 경수로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만, 그리고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에 따른 관행을 포함한 국제규범에 따라 이를 이용한다는 데 합의한다.
2. 별도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 일방도 경수로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된 상대방의 장비나

기술을 복제, 복사 또는 재생산하지 아니한다.

### 제13조 보 장

1. 북한은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원자로, 기술, 핵물질(국제관행에 따라 정의됨) 및 이들에 사용되거나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생성되는 핵물질을 전적으로 평화적이고 핵폭발과 무관한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2. 북한은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원자로, 기술, 핵물질 및 이들에 사용되거나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생성되는 핵물질이 적절하게 그리고 전적으로 경수로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보장한다.
3. 북한은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원자로, 핵물질 및 이들에 사용되거나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생성되는 핵물질에 대하여 그러한 원자로와 핵물질의 유용 수명기간동안 국제기준에 따른 효과적인 물리적 방호를 제공한다.
4. 북한은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원자로, 핵물질 및 이들에 사용되거나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생성되는 핵물질에 대하여 그러한 원자로와 핵물질의 유용 수명기간 동안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를 적용한다.
5. 북한은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핵물질 또는 경수로 사업에 따라 이전되는 원자로나 핵물질에 이용되거나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생성되는 핵물질을 어떠한 경우에도 재처리하거나 그 농축도를 증가시켜서는 아니된다.
6. 북한은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핵장비나 기술, 핵물질 또는 이들에 사용되거나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생성되는 핵물질을 KEDO와 북한간에 별도로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북한 영역 밖으로 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8조 3항에 규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상기에 언급된 보장들은 해당 KEDO 회원국과 북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수로 사업을 위해 핵공급국 그룹의 수출통제 품목으로 규제되는 품목을 북한에 공급하는 KEDO 회원국에 대해 적절한 형태로 북한측의 보장으로 보완될 수 있다.

### 제14조 불가항력

어느 일방의 이행이 국제적으로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건에 의해 지연되는 경우 그러한 지연은 용납될 수 있는 것으로 양해한다. 그러한 사건을 이 협정에서 '불가항력' 적 사건이라고 규정한다. 불가항력적 사건에 의해 의무이행이 지연되는 측은 그러한 사건 발생후 지연 사실을 즉시 상대방에 통보하고 의무이행의 지연과 이로 인한 영향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양측은 이에 따른 대체 방안과 경수로 사업 일정의 조정이 필요한지의 여부 및 어느 측이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대방과 즉시 신의 성실에 입각하여 협의한다.

#### 제15조 분쟁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KEDO와 북한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KEDO와 북한은 협정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양측이 선정한 각 3명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2. 상기 방법으로 해결되지 아니한 모든 분쟁은 일방이 요청하고 타방이 동의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는 중재 재판소에 회부된다. KEDO와 북한은 각각 1인의 재판관을 임명하며 이 2인의 재판관은 재판장이 될 제3의 재판관 1인을 선정한다. 만일 중재에 관한 상호 합의 후 30일 내에 KEDO 또는 북한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KEDO 또는 북한은 국제사법 재판소 소장에게 재판관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2명의 재판관 선정 후 30일 내에 제3의 재판관이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된다. 중재 재판소의 의사 징족 수는 과반수이며, 모든 결정은 재판관 2명의 의견 일치로 필요하다. 중재 재판 절차는 재판소가 수립한다. 재판소의 결정은 KEDO와 북한을 기속한다. 양측은 자신이 선임한 재판관과 중재재판 참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 재판장의 임무수행 비용과 기타 중재 재판소 비용은 양측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 제16조 불이행시 조치

1. KEDO와 북한은 이 협정의 기본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각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2. 어느 일방이 이 협정에 명시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 상대방은 경수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불하게 되어 있는 금액 및 재정적 손실의 즉각적인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어느 일방이 이 협정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상대방에 대한 재정적 의무와 관련된 상환을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상대방은 벌칙금을 산정하여 이를 부과할 수 있다. 벌칙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상세사항은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 제17조 개정

1. 이 협정은 협정 당사자간의 서면 합의로 개정할 수 있다.
2. 협정의 개정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한다.

#### 제18조 발효

1. 이 협정은 KEDO와 북한간의 국제적 합의로서 국제법에 따라 양 당사자를 기속한다.
2. 이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3. 이 협정의 부속서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4. 이 협정에 따른 의정서는 각 의정서의 서명일에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5년 12월 15일 뉴욕에서 영어로 2부가 작성되었다.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를  
대표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 제1 부 속 서

KEDO가 제공하여야 할 이 협정 제1조에 언급된 경수로 발전소의 공급범위는 다음 임무 및 품목으로 구성된다.

1. 부지조사
2. 부지정리, 평토, 부지 내 공사에 필요한 전력 및 경수로 발전소 완공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 내 용수공급으로 이루어지는 부지준비
3. KEDO가 경수로 발전소 건설에 필수적이며 전적으로 이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으로 판단하는 하부구조. 이러한 하부구조는 부지 내 도로, 부지에서 부지 밖 도로까지의 연결도로, 바지선 하역시설, 바지선 하역시설과 부지간 도로, 수중보를 포함한 취수시설과 수로, KEDO, 계약자 및 하청 계약자를 위한 주거시설 및 관련시설로 구성된다.
4. 공사일정을 포함한 경수로 발전소의 운전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술문서
5. KEDO가 2기의 경수로 발전소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발전 체계, 시설, 건물, 구조물, 기기, 보조시설 외에 실험실, 측정기기, 공작기계실을 포함
6. 발전소 2기를 위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10년 저장 시설
7. 발전소 인수시까지 요구되는 모든 시험
8. 원자력업계 기준 관행에 따라 KEDO가 발전소를 2년간 운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비부품, 마모성 부품, 소모성자재 및 특수 공구
9. 초기 운전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연료봉을 포함한 각 경수로의 최초 장전용 핵연료

10. 완전한 범위의 모의 훈련대의 제공을 포함하여 KEDO와 계약자가 원자력 업계의 기준 관행에 따라 실시하는 경수로 발전소 운전과 유지를 위한 포괄적인 훈련계획
11. 원자력업계 기준 관행에 따라 경수로 발전소 1호기 완공후 1년간 이 발전소의 운전과 유지보수에 KEDO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지원서비스
12. 전반적인 사업관리

## 제2 부 속 서

북한이 그 책임을 지는 이 협정 제1조 2항에 언급된 임무 및 품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거주민 소개, 현존 구조물 및 시설의 이전을 포함한 경수로 사업용 부지(육지 및 해상)확보
2. 북한 내에서 이용 가능한, 경수로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정보 및 문서의 제공 또는 접근
3. 2기의 경수로 발전소의 시운전을 위해 북한 내에서 이용 가능한 전력의 안정적 공급
4. 경수로 사업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를 수송하기 위하여 북한이 지정하고 KEDO와 북한이 합의하는 부지에 인접한 기존의 항구, 철도 및 공항시설에 대한 접근
5. 골재 및 채석장 확보
6. 이 협정 제9조에 따라 가능한 범위까지의 경수로 부지로 연결하는 통신 선로
7. 시운전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KEDO가 훈련할 자질 있는 운전요원

### 제3 부속서

이 협정 제3조 1항에 명시된 대로 북한이 미·북 기본합의문에 따라 경수로사업의 제공과 관련하여 취해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은 미·북 기본합의문에 명시된 바 대로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의 당사국으로 잔류하며 동 조약에 따른 안전조치협정의 이행을 허용한다.
2. 북한은 흑연감속로 및 관련시설을 계속 동결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동결상태 감시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한다.
3. 북한은 새로운 흑연감속로 및 관련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한다.
4. 미국기업이 핵심부품을 공급하는 경우 북한과 미국은 이러한 부품의 인도 전에 원자력의 평화적 협력을 위한 양자협정을 체결한다. 이 양자협정은 협정의 제4 부속서에 명시된대로 경수로 사업의 상당부분이 완료된 후에 이행된다. 이 협정의 목적상 핵심부품이라함은 원자력공급국그룹 수출통제목록에 따라 규제되는 부품을 말한다.
5. 북한은 5메가와트 실험용 원자로에서 추출된 사용 후 연료의 안전한 보관 및 영구 처분을 위하여 계속 협조한다.
6. 북한은 이 협정이 서명되면 동결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하여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간의 안전조치협정에 따른 임시 및 일반사찰의 재개를 허용한다.
7. 북한은 경수로사업의 상당부분이 완료될 때, 그러나 핵심 핵부품의 인도 이전에, 국제원자력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협정을 전면 이행한다.
8. 경수로발전소 1호기가 완료되면 북한은 동결된 흑연감속로 및 관련시설의 해체를 시작하여 경수로 발전소 2호기 완료시까지 이러한 해체작업을 완료한다.
9. 경수로발전소 1호기의 핵심 핵부품이 인도되기 시작하면 5메가와트 실험용 원자로로부터 추출된 사용 후 연료의 영구처분을 위하여 이 연료의 북한으로부터의 이전이 시작되며, 이러한 작업은 경수로 발전소 1호기 완공 시까지 완료된다.

### 제4 부속서

이 협정의 제3조 3항에 언급된 ‘경수로사업의 상당부분’은 다음을 의미한다. 보다 상세한 정의는 제3조 3항에 언급된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1. 경수로 사업을 위한 계약의 체결

2. 부지준비 완료, 굴착, 경수로사업 건설지원에 필요한 시설의 완료
3. 선정된 부지에 대한 발전소 초기 설계의 완료
4. 사업 계획과 일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경수로발전소 1호기의 주요 원자로기기의 사양서 작성 및 제작
5. 사업계획과 일정에 따른 터빈과 발전기를 포함한 경수로 1호기의 주요 비핵부품 인도
6. 사업계획과 일정에 규정된 단계에 부합되는 경수로 1호기 터빈용 건물과 기타 부속건물의 건설
7. 핵증기공급 계통의 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단계까지의 경수로 1호기 원자로 건물과 격납 구조물의 건설
8. 사업공정에 따른 경수로 2호기의 토목공사와 기기제작 및 인도



## 5. 향후 전망과 과제

북한 핵문제 해결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경수로사업의 기본 골격이 되는 ‘공급협정’이 KEDO와 북한간에 체결됨으로써 일단은 힘들고 중요한 고비를 넘겼다고 할 수 있으며 이제부터 우리 기업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경수로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급협정 체결에 이어 경수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앞으로 행정적 협조절차, 법적지위, 영사보호, 상환절차, 구체적 공급일정 등 경수로사업 시행세칙을 위한 KEDO-북한간 10여 개 이상의 ‘별도약정’ 체결 협상과 본격적인 부지조사활동, 그리고 경수로 상업계약(주계약)체결을 위한 한전-KEDO간 교섭 등 무수히 많고 복잡한 사안이 아직도 남아 있다.

아울러, 공급협정체결 후 IAEA와의 협의를 거쳐 비동결 핵시설에 대한 IAEA 임시·일반사찰 재개와 기타 제네바 합의사항의 이행 등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순조로운 조치도 확보되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경수로지원 사업은 장차 남북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갈 수 있는 사업이며, 또한 우리 원자력 산업계의 능력과 역량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국제적으로 성가를 높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경수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국민적 합의와 신중한 접근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부록

□ 남북관계 일지(1995. 7. 1.~1995. 12. 15.)

1995년 7월

7. 3. 정부, 대북 쌀 지원 재개 발표

- 북한측의 회신내용 검토 결과, 공식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으로 봄.

7. 5. 나웅배 통일부총리 기자간담회

- 제2차 북경 쌀회담부터 남북관계 진전 노력을 병행할 것임.

7. 7. 대북 쌀 수송선 3척, 남북 국기 게양 없이 청진항 입항

- \* 돌진호(7. 5), 「이스턴벤처」호(7. 6), 행진호 (7. 7)

7. 9. 북한, 김일성 시신 공개

7. 13.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 관련 실무접촉(뉴욕)

- \* 터크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 한성렬 북 UN대표부 공사

7. 15. 제2차 북경 쌀회담

~19.

- 쌀 추가 지원에 대한 합의는 없었음.

- 제3차 당국간 회의는 8. 10 개최 (북경)

- 쌀 문제와 경협문제를 협의하기로 함.

7. 19. 일, 대북제공 쌀 8천톤 첫 출항

7. 21. 통일원 대변인, 8·15 판문점 민족공동행사 불허 발표

- 정부는 5. 16. 통일관계 장관회의에서 결정한 지침에 맞지 않으므로 접촉 승인을 불허

7. 22. 대우그룹 기술자 방북

- \* 생산 담당 7명, 설비 담당 6명

7. 27. 한·미 정상회담, ‘대북공동전략협의체’ 구성 합의(워싱턴)

- 기존의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는 별도로 차관급 이상의 ‘대북공동 전략고위협의체’를 구성기로 합의

- 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수립문제는 당사자 해결의 원칙에 따라 남북한간에 협의해

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재확인

- 7. 28. 북한 ‘조평통’ 대변인, 안승운 목사 의거 입북 주장 담화
- 7. 29. 제4차 폐연료봉 안전보관 처리 관련 미·북 전문가회담 종료 (7. 25~29. 평양)
- 7. 31. 밀입북 박용길 장로 판문점 통과 귀환 (6. 28. 입북)
- 7. 31. KEDO 총회 및 집행이사회 개최(뉴욕)

1995년 8월

- 8. 2. 대북 쌀 수송선, 「삼선비너스」 호 선원의 사진촬영 사건 발생

- 1등 항해사 이양천, 청진항 촬영 중 북한 당국에 적발, 억류

- 8. 4. KEDO, 대북 중유(병커C유) 4만톤 공급권자로 ‘유공’ 선정

- 8. 7. 한·미 고위정책협의회 개최(호놀룰루)

- ~8. \* 이재춘 외무부 1차관보, 로드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 8. 9. 송영대 통일원 차관, 「삼선비너스」 호 억류 관련 정부입장 발표

- 북한 당국의 선박안전과 무사귀환 보장 약속에 따라 조속히 선박과 선원을 송환해야 할 것임.

- 이양천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대표간 접촉을 제의.

- 필요할 경우, 외교적인 조치를 포함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아갈 것임.

- 8. 9. 이석채 재경원 차관, 쌀 수송선 억류 관련 남북대표 접촉 제의

-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합의사항 이행에 차질을 가져오고, 제3차 북경 회담마저 예정대로 개최되지 못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함.

- 8. 10. 대북 쌀 지원 관련 북경실무접촉

- ~14,

- 「삼선비너스」 호 귀환문제 및 제3차 북경회담 재개문제 협의

- 8. 12. 강영훈 한적총재, 남북적십자회담 조속재개 촉구 대북성명

- 남북 적십자인들은 이산가족들이 서로 소식을 교환하고 상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나아가야 할 것임.

- 8. 12. 이석채 재경원 차관, 북 쌀 수송선 억류 관련 대북전문

- 물의를 일으킨데 대한 유감표명과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임.
  - 제1차 협상에서 합의된 쌀 협력사업은 계속적으로 이행될 것임.
8. 13. 북한 전금철 고문, 「삼선비너스」 호 송환 대남전문
8. 13. 송영대 통일원차관, 삼선비너스호 및 선원 귀환 합의 발표
- 우리측은 이석채 재경원차관 명의로 유감을 표시하고 북한측은 억류선원과 선박의 무사 귀환을 보장기로 합의
8. 14. ‘범청학련’ 남측본부 대표 정민주·이혜정 밀입북(8. 14~10. 3)
8. 15. 김영삼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평화정착 기본원칙’ 제시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반드시 남북 당사자간에 협의·해결되어야 함.
  -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관련 국가들의 협조와 뒷받침도 필요함.
  -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비롯한 모든 남북간의 합의사항은 존중되어야 함.
8. 15. KEDO경수로 부지조사단 방북(8. 15~22)
- \* 솔로젠 미핵담당 대사실 담당관을 단장으로 한·미·일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
8. 15. UN 식량농업기구(FAO) 기술협력국장 「소카이에」 방북(8. 15~19)
8. 17. KEDO제공 중유 1차분 2만톤(중국선적 「웨이산후호」 울산항 출항
8. 19. 정부합동조사반, 「삼선비너스호」 억류사건 조사 결과 발표
- 이번 사건은 1등 항해사 이양천(33)씨 개인적 호기심에 의한 우발적 사진촬영을 북한이 정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빚어진 사건임.
8. 22. 소망교회 광선희 목사 방북  
~28.
- 친지 상봉 및 북한 교회 관계자들과 종교협력문제 논의
8. 22. 중국 공안당국, 안승운 목사 남북 잠정 결론
- 북한 특수요원 3명과 연변 조선족 3명 등 6명의 사전 계획에 의해 납치 확인.
8. 23. KDEO 경수로 부지조사단, 방북 결과 발표

- 예상부지는 신포시의 북쪽 5~6km, 해안에서 3km 떨어진 구릉지대임.
  - 용수와 냉각수를 7km 떨어진 북청 남대천에서 끌어다 쓰는 것이 문제.
8. 23. 북, 유엔에 수재 긴급 구호 요청(8. 29 서대원 외무부 대변인 확인)
- 북한은 유엔인도적지원국(DHA) 뉴욕사무실에 긴급구조 요청을 신청, DHA는 직원을 평양에 보내 수해상황 파악에 나섰음.
8. 29. 북, 유엔 인도적지원국(DHA) 대표단 평양 도착 발표.
8. 30. 제4차 세계여성회의 개막(북경)
- \* 남북한 등 세계 180여개국 4만여명 참가
8. 31. 파북 (주)대우 기술진 13명 중 6명 귀환(7. 22 방북)

1995년 9월

9. 1. 한·미 국방장관, ‘중장기 안보대화’ 신설 합의(하와이)
9. 2. UN의 3개 수해조사단 평양 도착
- \* 세계식량계획·유엔식량농업기구·유엔아동기금
9. 2. 제5차 폐연료 안전보관 관련 전문가회담 미 대표단 평양 도착
9. 4. 유엔인도적지원국(DHA), 북한 50만명 이재민 발생 발표
9. 4. UN 홍수피해조사단 방북
9. 4. 북한 적십자회, 국제적십자연맹(IFRX)에 수해 곡물 손실량 190만톤 보고서 제출
9. 5. 나옹배 통일부총리, 제3차 북경회담 개최 발표(기자간담회)
- 주의제는 남북경협 문제이나, 우성호 송환문제, 안승운 목사 사건, 비방중지 문제와 김용순 발언 등 현안문제도 분명히 할 것임.
  - 북측의 피해에 대한 국제기구의 조사가 있고, 북측의 의사표시도 있어야 수재지원 문제를 논의함이 합당한 순서임.
9. 6. 안승운 목사, 의거입북 주장 기자회견(인민문화궁전)
9. 7. 러 외무부 ‘조·소 조약’ 폐기 공식 발표
- 러시아는 북한에 지난 1961년 체결한 조·소 조약을 폐기하고 대신 새로운 우호 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
9. 7. 외무부 대변인, ‘조·소 조약’ 폐기 발표 관련 환영 논평
- 러시아 정부가 한·러 우호협력관계를 재확인하고 냉전시대의 잔재인 구소련과 북한간 군사동맹관계를 법적으로 완전히 청산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환영함.

- 9. 7. 미, 북한에 2만 5천\$ 수해지원 결정(미국무부 성명)
- 9. 11. KEDO-북한, 경수로공급협정 체결 관련 고위급회담(칼라룸푸르)
  - \* 보스워스 KEDO 사무총장, 최영진 사무차장, 우메스타르 사무차장, 허중 북 외교부본부대사 참석
- 9. 12. IAEA 협상대표단, 북핵동결 감시 협의차 방북
  - ~19. \* 단장 : 페리코스 사찰국장
- 9. 12. 유엔조사단, 북 수해 조사 결과 발표(제네바)
  - 수해지역이 전국토의 75%라는 북한보고는 사실로 판명
  - 수해복구를 위해 1천 5백만\$의 물자공급이 절실히 필요함.
- 9. 13. 강영훈 한적총재, 북한에 5만\$ 수해지원 언급
  - 국제적십자사연맹으로부터 대북 지원 요청이 오면 구호 물자와 함께 남북 공동 방역을 위해 의료진도 파견할 것임.
- 9. 13. KEDO-북한, 경수로공급협정 체결 관련 전문가회담(칼라룸푸르)
  - \* 세이모어 미국무부 핵대사, 이용호 북외교부 미주국부국장
- 9. 13. 통일원 대변인, 대북수재지원 보도 관련 정부입장 불변 언급
  - 국제기구의 공식 요청시 검토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
  - 3차 북경회담시 북한의 성의 있는 태도 변화를 지켜볼 것임.
- 9. 13. 북한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 공동보도문 발표
  - 빠른 시일 안에 경수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
- 9. 14. 나옹배 통일부총리, 북한에 5만\$ 수해지원 발표(기자간담회)
  - 민간차원의 구호물자지원은 대한적십자사로 창구를 일원화해 이루어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정리했음.
  - 북한의 공식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시기와 규모, 방법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한 후 당·정간의 협의를 거쳐 지원할 것임.
- 9. 14. KEDO 집행이사회(도쿄)
- 9. 14. 북한, 선명회에 식량 긴급지원 요청
- 9. 15. 강영훈 한적총재, 수재물자 제공 제의 대북 방송통지문 및 대국민 성명 발표

- 한적은 국민들이 북한의 수재민을 돕기 위한 물품 전달을 요청해 올 경우 북한 적십자회 앞으로 보내고자 함.
9. 18. 나옹배 통일부총리, 북한에 2백만\$ 수해지원 언급(기자간담회)
- 당·정 합의만 있으면 2백만 달러의 대북지원은 가능함.
9. 18. 미하원, 대북결의안 채택
9. 18. IAEA 사무총장, 북핵 검증활동 허용 촉구
9. 19. IAEA 협상대표단, 핵시설동결 관련 문제 토의 후 평양 출발
- 북핵시설 동결조치가 지켜지고 있다고 언급
9. 20. 북한 중앙통신보도, 우성호는 북한법에 따라 처리될 것
9. 21. 통일원 대변인, 우성호 즉각 송환 촉구 논평
- 우리의 순수 민간 어선을 나포하고, 특히 무고한 어부들을 살상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임.
9. 21. 북, 유엔군축포럼 가입(유엔군축포럼 전체회의 승인)
9. 22. IAEA, 대북 핵안전협정 이행촉구 결의안 채택(제39차 정기총회)
9. 22. 일 외무성, 북한에 50만\$ 수재지원 발표
9. 25.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 관련 전문가 회담(평양)
- \* 골드스타인 미국무부 북한담당관 참석
9. 25. 미·북, 임시 영사보호권 합의
-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때까지 임시 영사보호권을 인정, 미는 스웨덴이, 북은 주유엔 북한 대표부가 각각 행사하기로 합의
9. 26. 파북 (주)대우 기술진 13명 모두 귀환
- 지난 7. 22. 남포공단 가동 준비차 입북했던 (주)대우 기술진 13명 중 6명이 8. 31. 귀환한데 이어 나머지 7명도 귀환
9. 27. 제3차 북경회담(이석채 재경원 차관 회담 종료 기자회견)  
~30.
- 우리측은 제3국에서 열리는 회담에 대하여는 협의할 수도 없고 추진할 수도 없으며,
  - 회담의 장소 및 성격 등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음.

\* 다음 회담의 장소·날짜 등은 합의하지 않았음.

9. 28. 공로명 외무부 장관, 북한 인권보장 촉구(유엔총회 기조연설)

- 북한 당국은 개혁과 사회개방을 통해 인권보호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호소에 긍정적으로 호응해 줄 것을 촉구

9. 30. KEDO·북한, 경수로협정 체결 제2차 전문가회담 개막(뉴욕)

\* 미 세이모어 핵비확산담당관, 북 이용호 북외교부 미주국 부국장

9. 30. 북·일, 쌀추가지원 문제 협의 2차회담(9. 30~10. 3, 북경)

\* 일 다메스에 식량청업무부장, 북 김정기 국제무역촉진위 서기장

1995년 10월

10. 1. 김영삼 대통령, 향후 2~3년이 국가안보 고비 언급(국군의 날 치사)

- 북한은 '세계사적인 변화'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정부의 노력을 외면하고 있고, 북한의 식량과 에너지부족 등 심각한 경제난은 가까운 장래에 해소되기 어려운 실정으로 앞날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2~3년은 국가안보면에서 매우 중요한 고비가 될 것임.

10. 1. 이석채 북경회담 수석대표, 4차회담 개최언급(귀국 기자회견)

- 북한 대표들이 귀국해서 회담장소를 결정, 통보해 오는대로 양측이 시기를 협의하여 회담을 재개하게 될 것임.

10. 2. 북한 김정우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장, 나진·선봉에 증권거래소 설치 언급(방콕)

\* 교도통신 회견

10. 2. KEDO·북한, 경수로 협정 체결 관련 제2차 전문가회담 속개(뉴욕)

\* KEDO측 : 세이모어 미국무부 핵대사, 북측 : 이용호 북외교부 미주국 부국장

10. 3. 공로명 외무부장관, 우성호·안승운 목사사건 유엔통해 해결 모색 언급(뉴욕)

- 우성호와 안목사 납북사건에 대해서 국제인권 관계기관을 통해 국제적 관심을 확대시켜 나아갈 방침이며, UN인권고등판무관실의 활용도 고려하고 있음.

10. 3. 불법방북 정민주·이혜정, 판문점 통과 귀환

10. 3. 일·북, 대북쌀 20만톤 추가지원 합의(북경)

\* 북한 김정기 국제무역촉진위서기장, 일본 다메스에 식량청 업무부장

- 20만톤의 쌀을 10년 거치 20년 상환조건으로 유상공급하며, 연리는 첫 10년간은 2%, 그 후에는 3%씩 적용

10. 3. 국제구호단체 '국경없는 의사들' (MSF), 북한에 구호품 61톤 지원 발표



10. 4. 중국외교부, 대북 30억원 상당 긴급원조 제공 예정 발표
- 북한의 수해피해에 대해 3천만원(약 30억원)상당의 긴급원조를 물자형태로 제공
10. 4. 머코스키 미 상원의원, 대북 강경법안 상정
- 대북한 정치·경제 관계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 남북대화 진전 △ IAEA의 핵안전조치 이행 △ 실종미군 공동조사 등을 제시
10. 7. 대북 쌀지원 마지막 수송선 「코렉스호」 출항(동해항)
10. 8.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인민무력부장에 최광 임명
10. 9. 김영삼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논의 시기상조 언급(일 니혼게이자이신문 회견)
- “북한에 주석이 없으니 남북정상회담을 할 시기가 아님.”
10. 9. 이홍구 국무총리, 남북 언어 이질화 극복노력 강조(한글날 기념사)
- “민족의 동질성과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데 있어 우리의 말과 글이 기반이 된다는 사실을 깊이 되새겨 남북간 언어이질화를 극복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임.”
10. 10. 북한, 당창건 50주년 기념 열병식 및 100만 군중시위 진행
- \* 김정일 참석
10. 11. 나옹배 통일부총리, 남북 정상통로가 없는 한 경협확대 곤란 언급(기자간담회)
- 남북간 정상통로가 없는 한 일정규모 이상의 남북경협추진은 어려움
10. 11. 안기부, 북한군 상좌 1명 귀순 발표(국정감사 보고)
- 북한군 인민무력부 후방총국 소속 용성무역 합영부장 북한군 상좌 최주활이 최근 동남아 제3국을 통해 귀순
10. 11. 국제선명회, 북한에 밀가루 1천톤 상당 지원
-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대북 수재지원용 밀가루 5만포대(1천톤 상당)를 중국에서 신의주로 수송 완료했음.
10. 11. 북한 최수현 외교부 부부장, 미·북 평화협정 체결 주장(제50차 유엔총회 연설)
- 남북한간 평화보장체계 문제는 1991년 12월의 합의서 채택으로 사실상 문건으로는 마련된 것이나 다름없으며, 이제 남은 것은 미국과의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 것임.

10. 11. 번스 미국무부 대변인, 평양 연락사무소 곧 개설 언급(브리핑)
10. 12. 나웅배 통일부총리, 우성호 송환과 남북대화재개 노력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
10. 12. 김종위 환경부 장관, 남북환경장관회의 제의 계획 언급(국정감사)
- 적절한 기회에 북한에 한반도 환경공동체 구성과 남북한 환경장관회의를 제의할 계획임
10. 12. 국방부, '95 독수리연습' (10. 13.~11. 17.) 실시 발표
10. 13. 나웅배 통일부총리, 당분간 남북대화 성사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
- 북한은 남한을 위협적 존재로 상정, 사상통제와 내부 단결에 이용하고 있어 당분간 남북대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10. 13. 한스 블릭스 IAEA 사무총장, 북한의 폐연료봉 측정거부 언급
- 북한의 IAEA 핵사찰단이 영변원자로 폐연료봉의 플루토늄 수준을 측정하는 것을 거부했음. (UN 안보리 제출 북핵 보고서)
10. 14. 김영삼 대통령, 일·북 쌀교섭 통일 방해 언급(미 뉴욕타임즈지 회견)
- 일본은 한국의 어깨 너머로 북한과 쌀교섭을 하는 등 우리의 통일을 방해하는 자세를 취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등 망언을 거듭하고 있음
10. 14. 오명 건설교통부 장관, 남북고속도로·고속전철 연결추진 언급(국정감사)
-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 남북간 장거리 대량수송을 위해 고속도로 4개축과 고속철도 2개축을 북한과 연결 운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음
10. 16. 김영삼 대통령, 북한 현 지도체제와의 화해 비관적 언급
- 북한이 현 지도체제를 유지하는 한 북한과의 화해가능성은 비관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음. (캐나다 「글로브 앤 메일」 지 회견)
10. 16. KEDO-북한,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 관련 제2차 고위급회담개최(뉴욕)
- \* KEDO측 스티븐 보스워스 사무총장, 북측 허종 외교부 순회대사
10. 16. 김영삼 대통령, 남북경협 북 태도따라 확대 표명(국회시정연설)
- 남북간 경제협력의 활성화 조치들은 북한의 자세와 태도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

아가겠음.

10. 16. 하야시 일외무차관, 대북 쌀지원 한국과 밀접협의 언급

10. 17. 통합방위본부, 서부전선 무장공비 침투사건 발표

- 10. 17. 02:20경 경기도 파주군 임진강 하류 자유의 다리 남쪽 1.5km 지점에서 남측지역으로 침투하려던 무장 북한군 1명이 아군 경계병에 의해 사살됨.

10. 17. 국방부 대변인, 무장공비 침투관련 성명

- 이번 사건은 남북간 대화와 교류를 통한 민족적 화해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가 아닐 수 없으며, 또다시 이같은 도발행위를 자행할 경우에는 우리군의 강력한 응징이 있을 것임을 경고함.

10. 17. 김태지 주일대사, 야마사키 일본 자민당 정조회장에게 대북 수교협상 신중촉구

- 남북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일본이 북·일 국교 정상화 협상 재개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촉구.

10. 18. 북한, 유엔사의 무장공비 침투사건 항의서한 전달 수령 거부.

10. 18. 한·러 포럼, 남북대화과 정전체제 지지 ‘공동합의문’ 발표

- 한반도 문제해결은 남북한 당사자간의 접촉과 협의가 근간이 되어야 하며, 남북간의 새로운 평화체제가 마련될 때까지 현 정전체제가 유지되어야 함.

10. 19. 북한 노동자 1명 귀순

- 북한 수력기계공장 주물노동자 이원도씨, CIS지역으로 탈출 후 귀순

10. 20. 한·캐나다 정상회담, 북한개방 촉진 협력 합의(오타와)

- 캐나다·북한간 관계개선 노력이 북한의 대외개방 촉진과 남북 관계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긴밀히 협력키로 합의

10. 20. 이홍구 국무총리, 북 긍정적 자세 취할 때까지 대화 불제의 언급(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

10. 20. 나웅배 통일 부총리, 대북 수해지원 신중 결정 언급

- 대북 수해지원 문제는 북한측 태도를 지켜보며 신중히 결정할 예정임.

10. 20. 경수로기획단, KEDO 2차 경수로부지 조사단 10. 24. 방북예정 발표

10. 20. 갈루치 미 핵대사, 대북공급 중유비용 한·일부담 불요구 방침 시사(미·북 핵 합의 1주년 회견)
- 한국과 일본이 대북 경수로 공급사업에서 큰 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에 중유공급 재원문제는 미국을 비롯한 나머지 국제사회가 맡을 수 있기를 기대함.
10. 21. 노동신문, 우성호 송환 거부 논평
- “공화국의 영해 깊이 침범한 ‘86 우성호’의 범죄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공화국의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함”
10. 21. KEDO·북한,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 관련 고위급회담 진전발표(뉴욕)
- 고위급 및 전문가 회담을 내주에도 계속 개최하여 경수로 공급협정이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10. 21. (주)대우 기술진 5명 재입북
- 기술지도 등을 위해 북한에 머물다 9. 26. 귀환한 (주)대우 기술진 7명 중 5명 재입북
10. 22. 김영삼 대통령, 북체제 불안정 언급(캐나다 CBC-TV 회견)
- 북한은 현재 국제사회에서 가장 불안정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김일성 사망이래 지금까지 어떤 공식적 지도자 승계도 없음.
10. 24. 나옹배 통일 부총리, 대북 민간교류·경협확대 곤란 언급(기자 간담회)
- 북한은 남한 기업의 투자유치를 적극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만 북한 당국의 태도변화가 없어 현 단계에서 민간교류나 경협확대 곤란.
10. 24. 무장간첩 사건 발생
- 충남 부여 인근에서 무장간첩 2명 중 김동식(33세)체포, 박광남 도주
10. 24. 미국무부, 남파 무장간첩 사건 관련 논평
- 간첩들의 대남침투는 긴장완화를 바란다는 북한측의 기존 주장과 맞지 않는 도발행위임.
10. 24. KEDO 경수로 부지조사단, 평양도착
10. 24. 김영삼 대통령, 평화정착 기본입장 제시(미국 유엔협회 세계지도자상 수상 연설)

-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① 정전체제는 영구적인 평화체제로 대체될 때까지 확고히 유지, 준수되어야 ② 평화체제는 남북한 당사자간에 교섭되고, 합의되어야 ③ 남북한은 상호관계를 대화를 통해 정상화함으로써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해야 함
10. 25. 김영삼 대통령, 북 우성호 석방 약속이행 촉구(뉴욕, 기자 간담회)
10. 25. 김영삼 대통령, 남북관계 진전 기대(하와이, 교민리셉션)
10. 25. 미의회, KEDO 지원금 2,220만\$ 제공 승인 결정
10. 26. 안기부, 북한 오진우 친척 오영남 귀순 발표
- 오진우 전인민무력부장의 친척인 오영남(32)이 중국에 파견돼 외화벌이 사업을 하다 귀순
10. 26. 북한 비전향장기수 구원 대책 조선위원회 대변인, 김인서·김영태·함세환 송환 촉구 담화 발표
10. 27. 오인환 공보처 장관, 무장간첩 침투사건 관련 대북성명
- 정부는 북한의 무분별한 도발행위에 대해서 7천만 민족의 이름으로 엄중히 항의함.
10. 27. 도주 무장간첩 박광남 사살됨.
10. 30. 나옹배 통일부총리, 북핵 반드시 저지 언급(서울신문 국제포럼 기조연설)
-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지키기 위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반드시 저지되어야 함.
10. 30. 릴리 전 주한 미대사, 북한 핵폭탄 수개 보유 주장(서울신문 국제포럼)
- 북한은 핵폭탄 몇 개와 일본·한국 및 양국주둔 미국의 대부분을 강타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듯함.
10. 30. 하야시 일외무차관, 일·북수교협상 조건없이 추진 언급(기자회견)
- 한국과의 관계는 고려(사항) 가운데 하나이지만 국교정상화 협상을 한반도 전체에 대한 일본의 기존 기본정책에 따라 추진할 것이며, 한국의 이해를 더욱 구해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음.
10. 30. 북한 외교부 대변인, 일·북수교접촉 재개 용의 표명(기자회견)
- 조·일 두 나라 사이의 불미스런 관계를 청산하고 선린우호관계를 수립하려는 우리 공화국의 입장은 시종일관하며 확고함.
10. 31. 김영삼 대통령, 대북정책 신축성 필요 언급(「코리아타임즈」 회견)
- 북한이라는 상대가 대단히 까다롭고 내부정세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확실한 상태

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북정책은 신축성을 가져야 함.

- 새로운 평화보장체제에 대한 합의는 남북한당사자 입장에서 먼저 이루고, 주변 국가들이 새로운 체제에 협조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임.

#### 10. 31. 유엔총회, 북한의 핵안전조치 이행 촉구 결의 채택

- 북한의 안전조치 의무불이행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이 안전조치 이행을 위해 IAEA와 적극 협력하고 최초보고서의 검증과 관련되는 제반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

1995년 11월

#### 11. 2. 공로명 외무장관 · 페리 미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 발표

- 한 · 미 행정협정(SOFA) 1996. 1. 까지 개정기로 합의

#### 11. 2. 제27차 한 · 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발표 ~ 3.

- 과거 · 현재 · 미래의 북한 핵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NPT 및 IAEA 안전조치협정상의 의무들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
- 정전협정은 남북한간의 직접 협상에 기초한 영구적인 평화체제에 의해 대체될 때까지 유효하다는데 합의.

#### 11. 3. 남북 「86우성호」 선장 박재열, 남한 당국의 사과 촉구 담화(평양방송)

- “남한 당국은 사건을 일으켜 남북간의 대결을 더욱 격화시키고 정세를 긴장시킨데 대해 잘못을 느끼고 용서를 빌어야 함.”

#### 11. 4. KEDO 경수로 부지조사단, 방북 조사 후 귀국(10. 24. ~ 11. 4.)

#### 11. 5. 북한 중앙 · 평양방송, 재독 작곡가 윤이상 사망 발표

#### 11. 6. 대한적십자사, 북한 수해 12만 달러 상당 현물 지원 발표

- 북한에서 현지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는 국제적십자연맹의 요청에 따라 이미 확보된 지원금 12만\$를 현물(모포 5천장)로 선적해 인천항에서 남포항으로 수송기로 하였음.

#### 11. 6. 「86우성호」 선원들, 남한정부 사과촉구 좌담회(중앙방송)

- \* 참석자 : 기관장 김부곤, 조기장 이병수, 선원 김용하 · 윤경춘

#### 11. 7. 「86우성호」 선원들, 전국선원노조연맹에 송환투쟁 촉구 방송편지(평양방송)

11. 7. 2차 KEDO 부지조사단, 평양출발 보도(중앙방송)
11. 8. 한국,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피선
- 유엔총회에서 총 유효투표 177표 중 156표를 얻어 임기 2년(1996~1997)의 이사국으로 피선
11. 8. 송영대 통일원차관, 남북경협 여건개선 강조(남북경협 활성화조치 1주년 기념 세미나 축사)
- 북한은 우성호 선원의 송환을 비롯해 무장공비 남파 등 대남 도발행위를 즉각 중지고 남북 경협을 위한 여건을 개선해야 함.
11. 8. 주유엔대표부 북한 대사 박길연, 한국의 비상임이사국 진출 반대 입장표명(유엔 총회 의사발언)
11. 9. 김영삼 대통령, 유엔안보리 진출계기 한반도 문제 평화해결 노력 강조
- 정부는 우리의 유엔안보리 진출이 한반도 문제를 유엔헌장 정신에 따라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임
11. 9. 세계식량계획(WFP), 대북 880만\$ 수해원조 제공 협정 서명(평양)
11. 9. 미상원, 남북대화 촉구 대북결의안 채택
- 북한이 남북대화 진전을 위한 약속들을 존중토록 압력을 가할 것을 클린턴 행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 결의안 내용은 ▷ 결의안 발효 90일 후 남북관계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고 ▷ 그후 매 6개월마다 진전상황을 보고하도록 규정.
11. 10. 나진-부산간 정기선박운행 개통식(나진항)
11. 11. 클린턴 미대통령, 북핵 억제 위해 주한 미군 주둔 필수 강조(예비군의 날 연설, 알링턴 묘지)
- 미군의 확고한 한국주둔은 북한 핵위협을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 없어서는 안되는 요소임.
11. 14. 한·중 정상회담, 한반도 문제 남북당사자간 해결 의견일치
- 한반도 문제를 주변국의 이해와 협력하에 남북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풀어 나아가야 하며,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정전협정이 준수되어야 함.
- \* 강택민 중국 주석 방한(11. 13. ~ 17.)

11. 14.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 남북한 자주적 평화통일 희망 언급(국회연설)

- 중국은 남북쌍방이 접촉과 대화를 통하여 신뢰를 증진하고 관계를 개선하여, 민족의 화해와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할 것을 진심으로 희망함.

11. 15. 북외교부 대변인, 미상원의 '남북대화 촉구 결의안 채택' 비난 담화

11. 16. 미타임지. 11월 20일자 북한 금년 겨울 군사도발 위협 보도

11. 16. 북한, 세계복싱위원회(WBC) 회원 가입

11. 17. 김영삼 대통령 · 키팅 호주 총리 회담, 한반도 문제 논의(일 오사까)

- 양국 정상은 최근 북한 내부상황을 포함한 한반도 정세를 논의하였으며, 키팅 총리는 남북관계 진전에 맞추어 대북관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언급.

11. 17. 한 · 미 · 일, 고위정책협의회 구성 합의(일 오사까)

- 3국간 대북정책의 긴밀한 공조를 위해 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고위정책협의회 구성 합의

\*공로명 외무 · 크리스토퍼 미 국무 · 고노 일 외상 3자회담.

11. 17. 클린턴 미 대통령,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시사(일본기자단 인터뷰, 백악관)

- 주일 미군이나 주한 미군을 현 단계에서 상당수 감축할 경우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봄.

11. 18. 김영삼 대통령 · 무라야마 일 총리, 한 · 일 정상회담 개최(오사까)

- 김대통령은 일본의 대북 쌀지원이 북한의 한일 양국 이간전술에 일본이 말려 들으므로써 결과적으로 남북통일을 방해하는 인상을 주었다고 언급.

- 무라야마 총리는 대북 수교교섭과 관련 ▷ 한 · 일 관계를 손상치 않는다는 대원칙 아래 ▷ 남북관계의 진진과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 ▷ 수교 이전에는 대북 경제 지원 배제 등 3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언급

11. 19. 외무부, 북한 벌목공 1명 귀순 발표

\*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독립국가 연합으로 탈출한 북한 벌목공 신명철

11. 20. 북한, 내달 미국서 순회투자설명회 개최 예정(대한무역진흥공사 발표)

- 북 외교부 미주국장 이형철을 단장으로 한 실무국장 3명이 미 국제경제연구소(IEE) 초청으로 미국의 워싱턴, LA, 솔트레이크시티 등 3개 도시에서 공개 투자 유치 설명회 개최 예정



- 11. 20. 태국 록슬리사, 북 나진·선봉지역 통신사업 계약 체결(대한무역진흥공사 인용)
- 11. 20. 유럽연합(EU), 북경수로 건설지원 합의 (EU 외무부장관 회담, 브뤼셀)
- 11. 22. 북한, 대외거래용 새 화폐 유통 결정설(\*러시아 방송 보도)
  - 대외무역 결제와 외화교환시에 사용되는 화폐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무역은행은 새 화폐를 유통시키기로 했으며, 새 화폐는 21일부터 사용됨.
- 11. 23. 북한, 태국에 쌀 50만톤 추가도입 타진 보도(일 「라디오 프레스」 통신)
- 11. 23. 세계식량계획(WFP), 대북지원 쌀 1차분 5천톤 인도 발표
  - 쌀 5,140톤을 11. 24. 전달할 것이며, 이는 880만\$ 상당의 유엔 비상구호계획 중 첫 부분으로 남포항으로 인도될 것임.
- 11. 24. 대한적십자사, ‘한적’ 대북 수재구호품 남포항 도착 발표
  - 북한 수재민 지원용 모포 5천장이 북한 남포항에 도착, 국제적십자사 요원에게 인수됨.
- 11. 27. 국제적십자조사단, 북한 식량부족 심각
  - 대규모 아사자 발생 우려
  - 많은 주민들이 대규모의 식량부족 사태로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일반 주민들에 대한 쌀 배급은 이미 지장을 받고 있음.
- 11. 28. 제20차 통일관계 장관회의 개최
  - 북한이 최근 대남 비방·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점에 주목, 대북 경각심과 안보태세 강화
  - KEDO·북 경수로 공급협상 관련 우리의 중심적 역할 수행에 차질 없도록 한·미·일 긴밀협조 체제를 바탕으로 다각적 대책 강구
- 11. 29. 일본, 대북 추가 쌀 지원 양기로 결정(일 외무성 고위소식통 확인)
  - “대북한 쌀 지원은 마침표를 찍었음.”
- 11. 29. 북한, UNDP 평양사무소 통해 지난달 인터넷 연결(미 정부 소식통)
  - 지난달 중순부터 UNDP 평양사무소를 통해 북한과 외부세계와의 인터넷이 연결되기 시작했음.

- 11. 30. 공로명 외무부 장관, 한·우크라이나 외무장관 회담에서 우도벤코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에게 대북 첨단무기 수출 자제 요청
- 11. 30. 한·미 행정협정(SOFA) 개정 1차 회의 종료  
~12.1. \*제2차 회의는 12. 14.~15. 워싱턴에서 개최 예정

1995년 12월

- 12. 1. 김대통령, 북 대남도발 가능성 단호 대처 강조(제29차 통합방위중앙위원회)
- 12. 1. 국방부, 북한군 전방 중간배치 보고(제29차 통합방위중앙회의)
- 12. 1. 서울지방법원, 밀입북 박용길에 집행유예 3년 선고
- 12. 1. 북한 이종옥 부주석, 김정일 내년 7월 이후 주석직 승계시사(일 「도카이」 TV 회견)

- 부모가 죽으면 3년상을 치르는 것이 북한의 관습임

- 12. 1. 일 「산케이」신문, KEDO 3차 경수로 조사단 12월 방북 보도
- 12. 1. 북한, 일 지원 쌀 추가분 30만톤 수송지연 보도(일 「마이니치」신문)
- 12. 4. 두만강지역 개발계획 관리위원회 회의 개최(뉴욕)  
\* 참가국 : 남·북한, 중국, 몽골, 러시아
- 12. 5. 카라르 IOC사무국장, 북한 1996 애틀란타 올림픽 참가 거부
- 12. 6. 남·북한 등 5개국, '두만강 개발협정' 서명(뉴욕)  
\* 두만강지역 개발사업 및 동북아개발(TRADP)협의위원회 협정문과 환경양해 각서
- 12. 6. 고노 일 외상, 북한 식량난 심각 언급
- 12. 8. 나옹배 통일부총리, 기자 간담회에서 남북대화 전망 비관적이라고 언급

- 북한이 남한배제 전략을 철저히 고수하고 있어 당분간 당국간 대화는 어려울 것이며, 북한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남북관계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움

- 12. 8. 서울고법, 북한 공민권 소지 중국 교포에 한국 국적 인정판결

- 헌법상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 영토인 만큼 북한에서 발급한 공민권을 갖고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적 취득과 유지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음

- 12. 8. 카터 전 미 대통령, 김정일에게 1996 애틀란타 올림픽 참가 요청 서한
- 12. 10. 북한, 수재지원 쌀 군량미 비축 보도(일 「마이니치」신문)

- 한국과 일본이 북한에 지원한 쌀이 일반 주민에게 전해지지 않고 군량미 등으로 비축된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도

- 12. 11. 김영삼 대통령, 민주평통자문위원회의에서 북한군부 권력장악 언급

- "북한은 김일성 사망 1년 6개월이 되도록 주석직 승계자가 없으며, 이는 군부가 권력

을 잡았다는 뜻임.”

12. 11. 나웅배 통일부총리, 민주평통자문회의 보고에서 북한이 화해노력 악용 남북대화 추진 한계언급

-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의 일방적인 노력이 아니라 북한의 상응한 노력이 있어야 함.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관계의 개선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도록 해야 함.”

12. 11. 트레버페이지 WFP 북한 파견 단장, 북한 기아직전 상황언급

- 국제사회가 북한의 식량원조 요청에 잘 호응하지 않고 있어서 기아직전 상태임.

12. 11. 북한군, 이상행동 보도(일 NHK 방송)

- 북한군이 최근 들어 전시체제로 인정되는 조직의 변경과 부대이동 전개 등 한국동란 이후 한번도 확인되지 않았던 이상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

12. 11. 통일원 대변인, ‘북지원 쌀 군사용 비축’ 보도 부인

- “일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우리가 북측에 제공한 쌀은 하절기에 백미상태로 완전도정을 하여 보냈기 때문에 북한이 군량미로 장기 비축하여 활용하는 것은 가능치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임”

12. 12. 대한적십자사, 대북 수재구호용 담요 3천장 추가지원

- 담요 3천장을 남포항을 통해 국제적십자사연맹 대표에게 전달

\* 11. 23 담요 5천장 지원

12. 12. 안기부, 북한 주민 최세웅(34)씨 일가족 4명 귀순 발표

12. 12. 번스 미 국무부 대변인, 북한 군사동향 예의주시 언급(뉴스브리핑)

12. 12. 한스블릭스 IAEA사무총장, 북한의 핵연료 측정 거부 언급(IAEA 이사회 보고)

- 북한은 사용후 핵 연료량의 측정을 거부하고 있으며, 핵 개발과 관련한 IAEA의 정보보전 요구도 수용하지 않고 있음

12. 12. 이시영 외무차관·탈보트 미 국무부 장관, 한·미 고위전략대화 개최(워싱턴)

- 북한의 대남 적대정책이 철회돼야만 식량지원이 가능하다는데 의견일치

12. 13. 제21차 통일관계 장관회의, 경수로 공급협정안 논의

12. 13. 베르티니 WFP 사무총장, 대북식량원조사업 중단위기 언급

- “여러 국가들이 북한에 보낼 식량을 즉각 제공하지 않을 경우 1996. 1. 15.을 기해 북한 주재 사무소를 모두 철수할 수밖에 없다” 고 강조

12. 14. 청와대에서 한·헝가리 정상회담 개최

12. 14. (주)기산, 국산차량 대북 수출 발표

- 중국 교포가 운영하는 연변용흥집단공사를 통해 수출키로 하고, 1차로 차량 18대를 12. 19. 부산항에서 선적 예정

12. 14. 일 「아사히」 신문, 북 전시체제 유지로 군부 주도 강화 보도

- 북한은 김정일의 국가주석 및 당총비서 취임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시체제를 유지 하면서 군부의 주도를 강화하고 있음

12. 15. KEDO-북한, 대북 경수로 공급협정 타결(뉴욕)

\* 전문과 18개조 및 4개 부속서

12. 15. 북한 중앙통신, 두만강 개발 협정 조인 보도

- 두만강지역 개발과 관련한 3건의 협정서들이 12. 6. 유엔 본부에서 조인되었음

12. 15. KEDO 3차 경수로부지조사단 12. 16. 방북 예정

\* 한국 11명, 미국 1명, 일본 2명 등 14명의 전문가로 구성

# **남북대화 제64호**

(1995. 12. ~ 1996. 12)

# < 목 차 >

I.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한 4자회담 제의 .....	4
1. 4자회담 제의 .....	4
2. 4자회담 제의 배경 .....	6
3. 한·미 공동발표의 의의 .....	8
4. 회담성사 노력과 국내의 반응 .....	9
II. 대북경수로 지원을 위한 KEDO의 활동 .....	13
1. 후속의정서 협상 .....	13
2. 경수로사업 주요 추진성과 .....	44
3. KEDO의 활동 .....	46
4. 향후 전망 및 과제 .....	47
III. 남북 교류 협력 추진동향 .....	48
1. 개관 .....	48
2. 북한주민접촉 .....	49
3. 남북교역 .....	57
4. 남북경협 .....	63
5.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간 협력 .....	66
IV. 대북 수재지원 .....	69
1. ‘북한의 1995년 수재’ 지원 .....	69
2. ‘북한의 1996수재’ 지원 .....	73
V.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협력 .....	77
-제51주년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 해설 .....	77

VI. '제86우성호' 귀환 및 조난 북한인 인도 .....	83
1. '제86우성호' 선원 송환 .....	83
2. '제707대영호' 선원 송환 요구 .....	84
3. 북한 '염분진호' 조난선원 구조 및 송환< .....	85
4. 북한군인 및 민간인 시신 인도 .....	86
5. 소설가 김영 송환노력과 우리측 민간인 시신인수 .....	86
6. 미전향 장기수 문제 .....	88
부록 .....	91
□남북관계일지(1995. 12. 6~1996. 10. 31.) .....	91

## I.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한 4자회담 제의

### 1. 4자회담 제의

김영삼 대통령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1996년 4월 16일 제주도 신라호텔에서 한·미 정상 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남북한과 미국, 중국 대표간 ‘4자회담’을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조속하게 개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8개항의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한 4자회담 제의 한·미 공동 발표문’을 발표하였다.

이날 한·미 정상이 공동으로 발표, 제의한 4자회담의 내용은 회담 초기에는 남북한과 미국·중국 4자가 동시에 참석하되, 실질 협의 단계에서는 남북한간의 회담을 원칙으로 하고, 미국과 중국은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과정의 개시와 광범위한 긴장완화 조치를 협의한다는 것이다.

회담 개최 시기도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자는 것이며, 회담대표의 수준과 세부의제, 장소 등은 북한과 중국의 반응이 있을시 논의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공동으로 발표한 ‘공동발표문’은 다음과 같다.

####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한 4자회담 제의 한·미 공동 발표문(전문)

1. 김영삼 한국 대통령과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1996. 4. 16. 제주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 및 한반도에서의 대화와 평화증진을 위한 방안에 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을 하였다.
2. 클린턴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안보공약을 다짐하고 한·미 안보 동맹관계가 굳건함을 재확인하였다. 양국 대통령은 항구적인 평화협정에 의해 대체될 때까지 현정전협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3. 양국 대통령은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에서 안정되고 항구적인 평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공동의 희망을 피력하였다. 양국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적극적이며 열린 마음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4. 양국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안정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립하는 일은 한국민이 이룩해야 할 과제라는 기본원칙을 확인하였다. 양국 대통령은 새로운 항구적 평화체제를 추구하는 것은 남북한이 주도해야 하며, 한반도 평화와 관련하여 미국과 북한간의 별도 협상은 고려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였다.
5. 김대통령은 한국이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북한 대표와 정부차원에서 만날 용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이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는데 적극적이고 협조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혔다. 양국 대통령은 중국의 협력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6. 이에 따라 양국 대통령은 한국, 북한, 중국 및 미국 대표간의 4자회담을 아무런 전제조건없이



조속히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 회담은 항구적 평화협정을 이룩하는 과정을 개시하기 위한 것이다.

7. 양국 대통령은 4자회담에서 광범위한 긴장완화 조치도 토의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8. 클린턴 대통령은 한국의 이와 같은 주도적 제의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데 중요하고 적극적인 조치라고 평가하였으며, 김대통령은 미국의 지속적인 지지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발표에 이어서 한·미 양국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4자회담을 통해 한반도에서 남북한간의 대화와 교류를 촉진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나아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제반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의 제의에 대해 북한과 중국이 적극적인 호응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또한 김영삼 대통령은 “북한이 미·북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중국의 강택민 국가주석에게 친서를 보내 제안내용을 정중하고도 충분히 전달했다.” 라고 말했다. 동시에 김대통령은 북한에도 이미 이틀 전에 알렸음을 밝히면서, “북한이 당장 우리 제안에 대해 좋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이것 외에 더 이상은 선택할 것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최후의 선택이다.” 라고 강조하였다.

클린턴 대통령도 “물론 우리는 북한이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환영할 것이다. 그러나 금방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라고 말해 북한측이 이 제의를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한 후에 결국 받아들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 2. 4자회담 제의 배경

1996년 4월 16일 한·미 양국 정상이 제주 정상회담에서 공동발표 형식으로 4자회담을 제의한 것은 북한이 1993년부터 사실상 정전체제를 무력화시키는 일련의 위협한 조치와 미·북 평화협정 및 잠정협정 체결 주장에 쐐기를 박을 뿐 아니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한·미 양국 정부의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대책을 확실히 밝히기 위한 것이다.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에도 ‘비무장지대 유지·관리와 관련한 임무포기 담화’를 발표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 무장병력을 투입하여 무력시위를 하는 등 정전협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군사적 도발을 시도하였다.

당시 북한의 판문점 무장병력 투입 등 대남도발과 관련, 한·미 정상은 북한의 위협한 행동이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기로인으로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한·미 양국 정상의 공동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이 문제와 관련, “클린턴 대통령과 나는 최근 판문점 사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 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가졌다.”며 “△ 클린턴 대통령과 나는 최근 북한이 정전협정의 일방적인 무력화를 시도하면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의 군사활동을 통해 동 협정을 위반하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였다. △ 양국 정상은 앞으로 한반도에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해 양국이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 두 사람은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이전에는 정전협정이 계속 유지되고 준수되어야 하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문제는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클린턴 미국 대통령도 “미국은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방위공약을 재천명한다며, 우리는 한반도에서 안정되고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모든 지원을 할 결의가 되어 있다.”고 말하고 “정전협정 위반은 사고나 실수 또는 오판의 위협성을 증가시키며 이는 중대한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은 한반도에서 고도의 전투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우리군은 동맹국인 한국군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 체결되어 3년간 계속되던 6·25전쟁을 휴전시키고, 40년 넘게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여 온 협정이다.

‘정전협정’ 제4조는 쌍방 당사자들이 정치회담을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1954년 남북한과 관련국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네바 정치회담은 북한측의 일방적 주장과 정치선전으로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된 바 있다.

한편, 남북한은 1990년 9월부터 시작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이 문제를 협의한 결과 남북 당사자 합의하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데 합의한 바 있다. 즉, 1991년 12월 13일 합의하여 1992년 2월 19일 남북한이 공동으로 발효시킨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에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 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 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 협정을 준수한다.”라고 규정하였던 것이다.

남북한간에 이러한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1993년 4월 중립국감독위원회 체코 대표를 강제 축출하는 한편, 1994년 5월에는 북한측 군정위를 ‘판문점 대표부’로 임의 개칭하고, 1995년 1월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 폴란드 대표단을 강제 철수시키는 등, 일방적으로 정전체제를 와해시키는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하면서 1996년 2월에는 미국과 직접 협상에 의한 새로운 평화보장 체계의 수립을 요구했다.

북한이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의 직접적이고 실질적 당사자인 한국을 배제한 채 오직 미국과 한반도의 정치·군사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종래의 북한의 한반도 적화노선 불변임을 그대로 노출시킨 것으로서 전혀 부당한 요구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는 남북한이며,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평화협정은 어디까지나 남북한간에 논의되고 체결되어야 하며, 그때까지는 현재의 정전체제가 계속 준수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다.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제주도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김영삼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이 부분을 "우리는 새로운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현 정전협정을 유지해야 한다. 우리는 그러한 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모든 역할을 다할 용의가 있다. 평화구축은 한국인, 즉 남북한의 책임이다. 우리는 북한과 별도의 평화협정을 협상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재삼 강조하였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궁극적인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서는 정전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먼저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대로 정전협정을 준수하면서 남북간에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등 여건이 조성되면 정전협정 관련국인 미국, 중국과도 협의하여 남북한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한다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그후 한·미 양국은 북한측이 대화에 응해올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과 '정전협정' 서명 관련국인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의 개최가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가장 합리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게 되던 것이다.

### 3. 한·미 공동발표의 의의

한·미 양국 정상이 제주회담의 결과로서 '한반도 평화추진을 위한 4자회담 제의'를 하게 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고자 하는 한·미 양국의 진지한 노력과 굳은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게 되었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확립은 한국민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남북한이 이러한 과정을 주도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였다.

또한 북한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과시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관련하여 미·북간 직접 협상은 고려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그러므로, 한·미 양국은 이 공동발표문을 통해 확고한 동맹관계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일방적인 정전협정 파기 행위 및 대미 직접 협상기도에 대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4자회담 제의는 남북한 당사자의 합의뿐만이 아니라 정전협정 관련국인 미국과 중국의 협조와 보장을 전제로 하는 것임으로 한반도에서 실효적이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수립의 기본 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평화체제의 핵심은 한반도에서 실질적인 평화의 구축이며, 특히 군사적 대결구조의 완화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4자회담의 목적도 평화협정을 이룩하기 위한 과정의 개시에 두고 점진적, 단계적 접근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 4. 회담성사 노력과 국내외 반응

##### 가. 국내외 반응

제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으로 제의한 4자회담은 한·미는 물론 세계 각국 매스컴의 초점이 되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이 제안 자체가 획기적이기도 하지만 북한이 1994년 4월 미국에 '새로운 평화보장체제 수립'을 제의한데 이어 1996년 2월에는 '잠정협정'이라도 체결하자면서 이를 성사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군사도발을 계속함으로써 한반도 정세는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 있었다.

4자회담 제의에 대한 국내 언론과 각계 반응을 보면 정계는 물론 언론계, 경제계 등 모든 분야에서 지지성명이 쏟아져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획기적인 제안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 "북한과 중국은 이 제의를 수락해 조속한 시일 안에 그 같은 회담이 실현되기를 희망한다."는 논평을 각 정당별로 발표하였다.

국내 언론들도 "4자회담은 한반도에 냉전을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기도 하지만 북한의 평화의지에 대한 물음을 담은 공이기도 하다."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할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논평하고, 북한은 아무런 전제조건이 없는 이 회담에 나와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일부 신문은 4자회담의 중요성과 의의에는 긍정적인 입장에 있으면서도 "한반도 문제를 남북이 민족적 역량에 의해 자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미국과 중국을 끌어들이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4자회담의 당사국으로 참여하게 된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 기자 브리핑을 통해 한·미의 공동제의에 대한 입장을 신중하게 피력하였다.

심국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월 18일 정례 기자브리핑을 통해 "중국 정부는 한·미 양국의 4자회담 제의에 유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중국은 협상을 통해 합의가 이뤄지기를 바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전유지에 계속 긍정적 역할을 할 용의가 있다."면서 "정전협정이 상황 진전과 발맞춰 평화장치로 대체된다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리라는 것이 우리측 견해"라고 말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북한의 입장을 배려하는 듯한,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후 중국이 4자회담 제의에 기본적으로 긍정적 입장에 있음이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되었다. 1996년 4월 24일 제3차 한·중 고위정책협의회와, 7월 2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ARF(아시아지역 안보포럼)와 PMC(확대외무장관회담)에 참석한 중국측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조속한 남북대화를 희망했으며, 4자회담 성사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임을 표명하였다.

일본 정부도 4월 16일 제주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자 즉각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총리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하시모토 총리는 이 담화에서 "4자회담 개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지지한다.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신뢰조성이 촉진돼 현행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영속적인 평화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4자 회담 제의를 환영하였다.

또한 하시모토 총리는 1996년 6월 23일 김영삼 대통령과 제주 정상회담에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미·일 3국간 긴밀한 제휴가 중요하며, 4자회담을 실현시키기 위해 앞으로 한·

일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해, 4자회담 지지는 물론 이의 성사를 위해 일본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표명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는 일·북 관계 문제에 관해서도 4자회담이 성사된 후에야 수교협상이 가능할 것임을 밝혔다.

러시아 정부의 반응은 한반도 문제 회담에 러시아가 제외된 데 대해 불만을 표했다. [데프린]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996년 4월 16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4자회담 제안에 대해 면밀히 관찰하고 있으나 관련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가하는 국제회의만이 한반도문제를 해결할 방안이라는 종전의 입장을 밝혔으며, 1996년 5월 공로명 외무부장관이 4자회담 제안의 배경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데 대해서도 러시아측은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 회담에 직접 참여를 희망하였다.

4자회담에 대한 반응은 이 밖에도 세계 각국의 지지 의사 표시가 있었다. 그 중 특이한 것은 1996년 6월 29일 프랑스 리옹에서 개최된 G7 정상회담(서방 선진국 정상회담)에서의 성명이었다.

G7 정상회담에서는, "한·미가 공동제안한 4자회담 등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모든 제안들을 지지한다."라는 의장성명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던 것이다.

## 나. 북한의 반응

북한 당국의 첫 공식 반응은 4자회담 제의가 있는지 이틀이 지난 4월 18일 나왔다. 북한 외교부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한반도 평화보장문제는 우리와 미국 사이에 결정되어야 하는 문제인데, 미국측이 왜 갑자기 4자회담 제안을 내놓았는지 그 취지와 목적이 명백치 않으며, 4자회담 당사자들 사이에 진정한 평화협정을 맺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 알 수 없다. 미국측의 제안에 다른 기도가 깔려 있는지 않은지, 그리고 현실성이 있는지 따져 보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후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 손성필과 북한 아시아·태평양위원회 부위원장 이종혁, 그리고 김영남 외교부장 등이 4자회담 제의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주러시아대사 손성필은 4월 25일 [이타르타스]통신과의 회견에서 외교부 대변인이 표명한 내용에 "러시아와 중국의 참여는 검토를 요하는 문제로 우리는 미국과 평화보장문제를 결정지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국제적 논의를 통한 문제해결에는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러한 북한의 반응에 대해 내외언론은 북한이 직접적인 거부가 아닌 '신중히 검토'중임을 시사한 것으로 판단, 일단은 긍정적인 조짐으로 보여진다고 보도하였다.

4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두 번째 공식반응은 1996년 5월 7일 북한 외교부 대변인이 또 다시 [중앙통신]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어 나왔다.

북한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내놓은 제안의 취지, 목적, 모종의 기도, 현실성 등을 따져보기 위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그에 대한 공식설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측으로부터 설명이 있기를 좀 더 기다려야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북한의 입장은 북한 외교부 부부장 강석주에 의해 북한을 방문한 일본 기자단에게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1996년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된 한·미·일 고위정책협의회 내용이 알려지자, 북한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미·일 3국이 한반도 문제에 관한 긴밀한 공조체제를 점검하고 > 4자회담 제안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의 호응을 계속 설득해 나아가기로 한다.

> 4자회담 성사를 위해 별도의 대북 유도책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미 양국의 공동입장이 발표되자 북한은 1996년 5월 24일 [로동신문]논평을 통해 한·미 양국이 제의한 공동설명회와 관련,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즉, 노동신문은 "우리는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4자 회담의 취지와 목적을 명백히 파악하기 위해 미국에 설명을 요청했었다."라고 말하고, "그런데 남조선 통치배들이 공동설명회요 뭐요 하면서 나서서 짓는 것은 상식 이하의 행동"이라며 '한국 배제'라는 종전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밖에도 4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수용여부는 1996년 10월 말까지도 확실한 의사표명이 없이, '검토 중', '미국에 대해 설명을 요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선에서 계속 가부의 결정적 반응을 유보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에 대해 기회있을 때마다 잠정협정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면서, 김영삼 대통령이 제51회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4자회담 실천방향의 구체화를 제시하며 북한이 이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한데 대해서도 "4자회담은 반평화적 전쟁책동과 민족분열주의적인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광고 외는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비난을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과 관련한 모든 문제는 오직 북·미간에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이에 더해 9월 중순 나진·선봉 투자설명회에 참가를 신청한 우리측 기업들을 임의로 제한, 선별 초청하더니, 9월 17일에는 1995년 우리측이 북한의 수재민을 돕기 위해 15만톤의 쌀을

수송했던 그 해로를 통해 강릉해역에 잠수함을 이용한 26명의 무장 공비를 침투시키는 군사도발 사건을 저질렀다.

#### 다. 회담 성사 노력

4자회담은 제의 과정에서부터 회담 성사를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북한측을 배려했음을 알 수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제주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에서 "4자회담 제안 내용은 이미 북한과 중국에 전달하였다"고 말했다. 이는 제의에 따르는 신뢰성에 무게를 싣겠다는 조치였음을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특히 '4·16 제주선언' 이후 김영삼 대통령은 1996년 5월 9일 'Asia Society 서울 총회' 치사에서 "4자회담은 북한의 입장을 감안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며 회담이 성공할 경우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북한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회의 참석국가 대표들에게 4자회담 성사를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부는 북한이 4자회담에 응해 올 경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협정 문제와 긴장완화 조치문제 외에도 북한의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우리 정부가 협력할 수 있음을 수 차례 언급한 바 있다.

1996년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제주에서 열린 한·미·일 고위정책협의회에서는 북한이 4자회담에 호응해 오는 경우 북한의 식량지원 문제도 협의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또한 권오기 통일부총리는 1996년 5월 17일 민족통일연구원 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4자회담은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과 정전협정 관련 당사자인 미·중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사실에 바탕한 현실적인 제안"이며 "4자회담의 의제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 등 북한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한 열린 방안"이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어 1996년 6월 11일에는 앞으로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대북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4자회담이 성사되어 광범위한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차원에서 논의, 추진될 수 있을 것임도 밝혔다.

이와 같이 북한이 4자회담에 호응해 나올 경우 우리 정부가 경험지원 등의 특별 배려를 하고 있다는 의지표명은 대통령의 15대 국회 개원연설과 국무총리의 국회 답변, 외무장관의 한·미 포럼연설 등을 통해 계속되었다.

특히 김영삼 대통령은 제51회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북지원 의사를 천명하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경축사의 거의 전 부분을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에 할애하여 한반도 평화문제, 남북간 협력문제, 통일대비문제, 4자회담에 관한 문제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4자회담과 관련, '평화와 협력' 정신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함께 4자회담을 제의했다면서 4자회담에서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관한 광범한 문제가 토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 평화체제 구축문제 ▷ 군사적 신뢰문제와 함께 ▷ 남북경제 협력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김영삼 대통령은 4자회담에서 논의될 경제협력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구상까지도 밝혔다. 즉 그 내용은 첫째, 북한의 식량문제를 보다 근원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고, 둘째 나진·선봉지역의 투자와 남북교역을 확대하여 북한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며, 한국관광객의 북한 방문을 허용할 용의가 있다는 것 등이었다.

김영삼 대통령의 이러한 구상의 천명은 김대통령이 4자회담을 제의한 후 기회 있을 때마다, "4자회담이 개최되면 수혜자는 북한이 될 것이다"라고 언명한 배경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 II. 대북경수로 지원을 위한 KEDO의 활동

### 1. 후속의정서 협상

1995년 12월 15일 KEDO와 북한간에 국제법적 조약의 성격을 갖는 경수로 공급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에 있어 '한국 표준형' 원전 공급과 '한국의 중심적 역할' 수행이라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 재확인되었다.

공급협정에서 KEDO와 북한은 세부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분야별 후속의정서 10여 개를 단계적으로 체결해 나아가기로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1996년 4월 8일부터 뉴욕에서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에 관한 의정서'(이하 '특권·면제의정서'라 한다.) 협상이, 1996년 4월 16일부터는 '통행의정서' 및 '통신의정서'에 관한 협상이 각각 개최되었다.

특권·면제의정서 협상에는 KEDO측에서 Lucy Reed 법률자문을 수석대표로 KEDO사무국 직원과 한·미·일 3국 정부 대표가 참석하였으며, 북한측에서는 최병관 외교부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5명이 참석하였다.

통행·통신의정서 협상에는 KEDO측에서 Mitchell Reiss 사무총장 보좌관을 수석대표로 KEDO사무국 직원과 한·미·일 3국 정부 대표가 참석하였으며, 북한측에서는 이명식 원자력총국 참사(부부장급)를 수석대표로 7명이 참석하였다.

3개 의정서의 KEDO 협상단에는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경수로 기획단 관계자를 공식대표로 관련부처 및 한전 등의 전문가가 참석하였다.

특권·면제의정서는 1996년 5월 22일에, 통행·통신의정서는 1996년 6월 14일 양측 실무대표간에 각각 가서명되었으며, 1996년 7월 11일 뉴욕에서 KEDO의 Stephen W. Bosworth 사무총장과 북한의 허종 대사 간에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에 관한 의정서', '통행의정서' 및 '통신의정서'의 3개 의정서가 공식 서명되었다.

가.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에 관한 의정서

특권·면제의정서 협상에서 KEDO측은 경수로사업의 실제 이행에 필요한 사항들과 계약자 파견 인원의 신변안전보호장치 확보에 최대의 역점을 두어 이를 관철하였다.

특권·면제의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적지위 및 특권·면제(제1장)

(가) 법적지위

○ KEDO는 북한 내에서 법인격을 가지며 하기 활동 능력 보유

- 계약 체결

- 동산 및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 소송제기

- 북한의 관련 당국과 협상

- 미·북 기본합의 및 공급협정(의정서 포함)에 따른 여타 능력 행사

\* 유엔 및 전문기구의 특권·면제 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법적능력(계약체결~소송제기)의  
에 경수로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타 능력을 추가 규정

(나) 활동지역

○ 하기지역에서 경수로사업에 관련된 활동 수행

- 경수로사업 부지 : 건축·주거·휴식지역 및 여타 부지의정서에서 규정되는 지역 포함

- 관련지역 : 항만·공항·통행로 등 인원, 물자 수송에 관련되는 장소 포함

- 연계지역 : 경수로사업 관련 회의 및 여타 활동을 위해 임시로 선정되는 지역 및 비상사태  
및 여타 이유로 도달하는 지역 포함

\* 활동지역을 3가지로 구분하였으나, "비상사태 및 여타 이유로 도달하는 지역"을 포함하여  
사실상 북한 영토 전체가 활동지역이 될 수 있는 가능성 확보

(다) KEDO의 특권·면제

<재산 및 자산>

- KEDO, 그의 재산 및 자산은 모든 형태의 법적, 행정적 절차로부터 면제 향유
  - 수색·징발·몰수·수용 및 여타 간섭으로부터 면제
  - 북한은 KEDO, KEDO 재산 및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무
- KEDO사무소, 문서 및 서류의 불가침
- 재정적 통제, 규율 및 지불유예로부터 면제
  - 통화 보유 및 사용, 송금 및 환전 자유
- KEDO 재산, 자산, 소득 및 활동에 대한 모든 세금 및 관세 면제, KEDO와 북한이 합의하는 수수료 및 부과금 면제
  - 경수로사업 관련 수출입품에 대한 금지 및 제한 면제

<통신 편의>

- 통신 우선순위, 요금 및 세금관련 외교공관과 같은 편의
- 암호사용, 비화전화기 및 팩스, 신서사 및 봉인행낭 사용 권리
- 공적서한 및 통신에 대한 검열 불가
  - \* 유엔 및 유엔 전문기구의 특권·면제 협약에 규정된 특권·면제를 기초로 일부 특권·면제 내용을 강화
- 북한정부의 KEDO 재산, 사무실 및 자산의 보호의무
- 포괄적인 세금 및 관세의 면제

(라)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의 특권·면제

-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 그 재산·자산·소득 및 활동은 북한내 KEDO와 같은 대우 향유

(마) KEDO직원 및 회원국 대표의 특권·면제

- KEDO의 전문직원 및 KEDO 회원국 대표는 하기 특권·면제 향유
  - 체포, 구금 및 개인수하물 압류로부터 면제
  - 형사, 민사, 행정 재판관할권 및 법정에서의 증언의무 면제
  - 개인주거 및 문서와 서류를 포함한 자산의 불가침
  - 모든 세금 및 관세, KEDO와 북한이 합의하는 부과금 및 수수료 면제
  - 암호사용 및 신서사, 봉인행낭 사용 권리 등
- 가족 구성원도 동일한 특권·면제 향유. KEDO 비전문직 직원도 거의 유사한 특권·면제 향유

② 영사보호(제2장)

(가) 영사보호 주체

- KEDO 사무소가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 KEDO 인원 및 선박, 항공기의 승무원에 대한 영사보호 수행
  - KEDO 영사직원에 대한 국적제한 규정 무
- \* 국제기구가 영사보호를 수행하는 최초의 사례

(나) 영사활동 구역

- KEDO의 활동구역과 동일

(다) 영사보호 내용

-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및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양해각서에 규정된 영사보호 내용중 관련 내용 망라
- \* 북한의 자의적 조치에 대비한 이중적 보호규정으로 영사보호를 규정

③ KEDO 계약자 인원 안전 및 재산보호(제3장)

- 북한은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가 파견하는 모든 인원과 여타 KEDO의 관할하에 있는 인원 및 그 가족" (KEDO 계약자 인원)의 안전과 그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기 사항을 포함한 조치를 취할 의무

- KEDO 계약자 인원의 체포·구금 불가
  - 재판관할권 및 형집행권 배제
  - KEDO가 부지내 질서유지를 책임지며 북한은 KEDO의 질서 유지에 간섭 불가
  - 북한은 KEDO 계약자 인원이 북한 관습을 따르도록 요구하지 못하며 KEDO 계약자 인원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의무 부과 불가
  - 북한은 KEDO 계약자 인원의 개인 자산의 압수, 수색 및 침해 불가
  - KEDO 계약자 인원은 모든 세금 및 관세, KEDO와 북한이 합의하는 부과금 및 수수료로부터 면제
  - 상기 보호관련 남용이 있었다고 북측이 생각하는 경우 KEDO와 북한은 적절한 조치에 관해 협의
- \* KEDO의 부지내 자체 질서유지권 확보
- 부지내에서는 질서·안전 유지를 KEDO 자체가 책임진다는 의미

#### ④ 협조 조치(제4장)

- KEDO는 직원, 회원국 대표 및 계약자 인원에 대해 신분증을 발급
- 북한은 KEDO 계약자 인원에 대해 통행의정서에 규정된 출입국 지점에서의 무비자 입국 허용
- KEDO와 북한은 협정서 이행을 위한 실질적·법률적 문제의 상세에 관해 추후 논의 및 합의

다음은 KEDO와 북한간에 체결된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에 관한 의정서'의 전문이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의 법적지위,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에 관한 의정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이하 'KEDO'라 한다.)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이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한'이라 한다.)는, 1995년 12월 15일 서명된 'KEDO와 북한 정부간의 북한에 대한 경수로사업의 공급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각기의 의무를 KEDO와 북

한이 충실하게 수행할 것을 재확인하고, 북한내에서의 KEDO의 법적지위, 특권·면제 및 영사 보호를 구체화하기 위해 협정 제4조 제6항 및 제7항에 부합되게 의정서를 체결하는 것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제1장 법적 지위 및 특권·면제

### 제1조 법적 지위

KEDO는 북한내에서 법인격을 갖는다.

KEDO는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갖는다.

- a. 계약
- b. 동산 및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 c. 소송제기
- d. 북한 관련당국과의 협상
- e. 협정, 협정에 따라 체결된 모든 의정서, 그리고 1994년 10월 21일의 미합중국과 북한간의 기본 합의문 규정에 부합되며, KEDO의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하여 KEDO와 북한간에 합의한 기타 권한의 행사

### 제2조 활동지역

이 의정서의 목적을 위한 경수로사업 관련활동(이하 '경수로사업'이라 한다.)은 북한의 다음과 같은 구역에서 이루어진다.

- a. 경수로사업부지 : 건설부지, 주거 및 후생복지시설지역, '부지의 인수·접근 및 사용에 관한 의정서'에서 규정하는 여타 부지를 포함
- b. 관련지역 : 인력 및 물자를 사업부지로 수송하는 데 관련된 지역, 이를 위해 선정된 항구 및 공항, 이러한 장소와 경수로사업 부지간 왕래 통행로를 포함
- c. 연계지역 : 경수로사업과 관련된 회의나 여타 행사를 위하여 임시 또는 특별한 계기로 선정된 장소나 구역 및 비상 사태나 여타 사유로 도달된 장소를 포함

### 제3조 재산 및 자산

1. KEDO와 KEDO의 재산 및 자산은 북한내에서 그 위치나 소유자를 불문하고, 특별한 경우에 서면으로 명백하게 면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모든 형태의 법적·행정적 절차 및 여타 유사한 절차로부터 면제를 향유한다. 그러나, 여하한 면제의 포기도 어떠한 집행조치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2. KEDO의 모든 사무소는 불가침이며, 사무소장의 명시적 동의없이 출입할 수 없다.

KEDO의 재산과 자산은 북한내에서 위치나 소유자를 불문하고 수색, 징발, 압류, 수용 및 여타

여하한 형태의 간섭으로부터도 면제된다. 북한은 KEDO의 재산, 사무소 및 자산을 여하한 침해나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KEDO사무소의 평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KEDO의 공문서 및 모든 서류는 북한내에서 그 소재를 불문하고 침범당하지 아니한다.
4. 어떠한 종류의 재정적 통제·규제 및 지불유예에 제약됨이 없이,
  - a. KEDO는 그 자체의 목적을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자금이나 통화라도 보유할 수 있다.
  - b. KEDO는 북한 내외로 또는 북한내에서 통화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으며, KEDO가 보유하는 모든 태환성 통화를 북한에 의하여 인정된 여타 모든 태환성 통화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
5. KEDO와 그 재산, 자산, 소득 및 수행하는 활동은,
  - a. 모든 세금 및 관세, KEDO와 북한이 합의하는 부과금 및 수수료로부터 면제된다.
  - b. 경수로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KEDO가 반입·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 반출입 상의 금지 및 제한이 면제된다. 단, 이러한 물품들은 북한이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북한내에서 판매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 c. 신문, 서적, 정기간행물, 소책자, 도표 등 출판물, 오디오·비디오테이프, 소프트웨어, CD-ROM 등에 대하여는 관세, 반출입상이 금지나 제한이 면제된다. 상기 물품들은 경수로사업 부지 및 관련지역내에서 KEDO와 KEDO계약자·하청계약자의 모든 파견인원, KEDO대표단 구성원 및 KEDO 관할 하의 여타 인원과 그 동반가족 구성원(이하 이러한 인원들은 'KEDO인원' 또는 'KEDO인원들'이라 한다.)이 사용하게 된다.
6.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KEDO의 계약자와 하청계약자, 그 재산, 자산, 소득 및 활동은 북한내에서 KEDO의 관할 하에 있는 한, 이 조에서 KEDO와 그 재산, 자산, 소득 및 활동에 관하여 규정한 동등한 대우를 부여받는다. 단, KEDO계약자와 하청계약자의 재산 및 자산은 경수로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공급되고 사용된다.

#### 제4조 통신편의

1. KEDO는 우편, 전보, 전신, 무선전보, 전송, 전화, 팩시밀리 및 여타 통신수단의 우선순위, 효율, 세급에 있어 외교공관을 포함한 여하한 정부보다도 불리하지 않은 통신상의 대우를 향유한다.
2. KEDO는 암호, 비화전화기 및 팩시밀리 시설의 사용권과, 외교신서사 및 외교행낭에 대한 동일한 수준의 신서사 및 봉인행낭에 의한 서신 수발권을 갖는다.

3. 북한은 KEDO가 '통신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KEDO사무소를 위한 통신수단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4. KEDO의 공식적인 서신왕래나 통신은 검열받지 아니한다.
5.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KEDO의 계약자와 하청계약자는 그들이 북한내에서 KEDO의 관할 하에 있는 한 암호 및 봉인행낭 사용권리를 제외하고는 이 조에서 KEDO에 부여된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그러나 KEDO계약자와 하청계약자의 통신편의가 경수로사업 이행에 부합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제5조 KEDO직원 및 KEDO대표단 구성원

1. KEDO의 모든 전문직원과 KEDO대표단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 a. 체포, 구금 및 개인수하물의 압수로부터 면제
  - b. 형사, 민사 및 행정재판권과 증언으로부터 면제
    - 단, 공적 기능 이외에 상업적 활동에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 및 행정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
  - c. 개인주거와 서류 및 문서를 포함한 자산의 불가침
  - d. 모든 세금 및 관세, KEDO와 북한이 합의하는 부과금 및 수수료 면제
  - e. 암호를 사용하고 신서사나 봉인행낭으로 서류, 문서 및 서신을 수발할 수 있는 권리
  - f. 행정동원 및 군사적 의무를 포함한 북한의 국가적 의무로부터 면제
  - g. 출입국 제한 및 외국인 등록으로부터 면제
  - h. 국제법 및 국제관례에 따라 그 직위에 상응하는 외교관에게 부여되는 것과 같은 통화 또는 환전제한에 관한 특권
  - i. 북한 세관법상 금지되거나 검역규정상 통제되는 반출입 품목을 포함하고 있다는 상당한 근거가 없는 한, 국제법이나 국제관례에 따라 그 직위에 상응하는 외교관에게 부여되는 것과 같은 개인수하물에 대한 면제 및 편의. 이러한 검열은 KEDO직원이나 권한이 부여된 대표자의 입회 하에서만 행하여져야 한다.
  - j. 국제적인 위기시 외교관과 동등한 귀환 편의



2. KEDO의 비전문직 직원(즉, 사무직원 및 여타 지원요원)은 공무수행 이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 및 행정재판권으로부터의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항에 규정된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3. 이 조에 포함된 인원의 가구를 구성하는 가족구성원은 그 인원에게 부여되는 모든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4. 특권 및 면제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KEDO의 이익을 위하여 이 조에 따라 KEDO 직원 및 KEDO대표단 구성원에게 부여됨을 인식하고, KEDO사무총장은 그러한 면제가 사법절차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KEDO의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포기될 수 있는 경우 KEDO직원 또는 대표단 구성원에 대한 면제를 서면으로 포기할 수 있다.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KEDO집행이사회가 면제를 포기할 수 있다.

## 제2장 영사보호

### 제6조 KEDO의 영사보호기능 및 영사보호구역

1. KEDO는 북한내에서 영사보호기능을 수행하고, 북한은 이를 허용해야 한다.
2. 영사보호구역은 경수로사업부지, 관련지역 및 연계지역으로 한다.

### 제7조 영사보호기능 수행

1. KEDO사무소는 KEDO직원을 통해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 KEDO인원, 그리고 경수로사업 이행을 위해 북한내에 체재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승무원을 위하여 모든 영사보호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영사기능을 수행하는 KEDO직원은 '영사업무담당 KEDO 직원'(이하 'KEDO영사직원' 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8조 KEDO영사직원 통보

1. KEDO사무총장은 KEDO영사직원의 명단 및 그 교체를 북한관할 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 영사보호기능

1. 영사보호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 a. 북한내에서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 KEDO인원의 이익을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보호
  - b. KEDO인원에 대한 보조 및 지원

- c. 구금, 유치, 구속중인 KEDO인원에 대한 면회·서신교환 및 법적대리 주선을 위한 방문
- d. KEDO인원에게 KEDO증명서(제18조에 따라) 및 여행서류 발급
- e. 소송서류 및 소송 이외의 서류 송부
- f. 북한의 관행 및 절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KEDO인원이 부재 또는 기타의 사유로 적절한 시기에 그 권리와 이익의 방어를 맡을 수 없는 경우에 그러한 KEDO인원의 권리와 이익의 보전을 위한 가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북한의 재판소 및 기타 관계당국에서 KEDO인원을 위한 법적 대리나 적절한 대리행위의 주선
- g. 북한내에서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 KEDO인원의 이익보호
- h. 경수로사업 이행과 관련하여 북한 내에 체재하고 있는 선박, 항공기에 대한 감독 및 검사권의 행사
- i. 경수로사업 이행과 관련하여 북한내에 체재하고 있는 선박 및 항공기와 이들 승무원에 대한 협조 제공, 선박의 항행에 관한 진술 접수, 선박서류에 대한 검사 및 날인, 북한정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고 항행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사, 선장·선원 및 소속원 간의 모든 종류의 분쟁 해결

#### 제10조 영사통신

1. 북한은 영사직원과 KEDO인원간의 접근과 통신을 제한할 수 없다. 이러한 통신에는 우편, 전보, 팩시밀리와 기타 국내 및 국제 전화통신 등이 포함된다. KEDO영사직원은 북한내 위치를 불문하고 KEDO영사보호를 필요로 하는 KEDO인원이 KEDO사무소로, 또는 역으로 KEDO사무소에서 그 인원에게로 전화로 접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북한의 국내전화망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어야 한다.

#### 제11조 KEDO증명서 및 영사접근

1. KEDO증명서(제18조에 따라 발급된)를 소지하고 있는 인원은 북한의 관할당국으로부터 KEDO인원으로 인정되며, 북한은 이들 인원에게 보호 및 영사업무를 위한 KEDO의 영사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2. KEDO인원에 대한 영사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북한은 경수로사업부지, 관련지역 및 연계지역내에서 KEDO영사직원에게 그 기능수행을 위한 이동 및 여행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KEDO영사직원은 관련지역으로 여행시, 북한 당국에 통보한다. 비상사태가 아닌 경우 KEDO영사직원은 북한 당국에 통보하고 동의를 얻어 연계지역으로 여행할 수 있다. 비상사태의 경우 KEDO영사직원은 북한 당국에 통보하고 연계지역으로 여행할 수 있다.

### 제12조 체포·구금된 인원에 대한 접촉 및 방문권

장소나 여타 상황을 불문하고,

1. 북한 관할당국은 KEDO인원이 체포, 구금 또는 재판에 앞두고 유치되거나 다른 어떤 형태로 구속되는 경우, 즉시, 늦어도 2일 이내에 KEDO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체포·구금·유치·구속된 KEDO인원이 KEDO사무소에 연락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체없이 전달되어야 한다. 북한 당국은 KEDO해당인원에게 이 항의 권리사항을 지체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2. KEDO영사직원은 체포 또는 구금되거나 구속된 KEDO인원을 접견·교통할 권한을 가지며, 법적변호 및 통역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할 권한을 갖는다. 북한의 관할당국은 KEDO영사직원이 그러한 상황에 있는 KEDO인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속히, 요청이 제기된 후 늦어도 2일 이내에 허용해야 하며, 그와 같은 접근이 정기적으로 허용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KEDO영사직원은 또한 재판으로 구금, 유치, 구속된 KEDO인원에 대한 접견할 권한을 갖는다.

### 제13조 필수품 제공

북한의 관할당국은 KEDO영사직원이 체포·구금중인 KEDO인원에게 음식, 의류, 의약품 및 기타 필수품을 포함한 소화물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 제14조 북한 당국의 협조

북한의 관할당국은 KEDO영사직원의 요청에 따라 KEDO인원의 소재파악에 전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북한 관할당국은 유용한 모든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5조 사망 또는 사고의 통지

KEDO인원이 북한내에서 사망·실종, 부상 또는 입원한 것을 북한의 관할당국이 알게 된 경우, 북한은 지체없이 KEDO영사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북한의 관할당국은 KEDO영사직원의 요청에 따라 북한내에서 KEDO인원의 사망 또는 연루된 여타 사건에 대하여 유용한 모든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KEDO영사직원은 이러한 KEDO인원의 병원 후송이나 시신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제16조 영사기능의 병행

이 의정서의 어떠한 조항도 KEDO로부터 영사보호를 부여받는 KEDO인원을 위하여 본국 정부가 행사하는 영사보호권을 제한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제3장 안전보호

## 제17조 KEDO계약자 인원의 안전 및 그 재산의 보호

경수로사업 이행의 목적에 따라 북한은 KEDO계약자와 하청계약자가 파견한 모든 인원, KEDO의 관할하에 북한에 체류하는 여타 인원 및 그 가족구성원(이하 'KEDO계약자 인원'이라 한다.)의 안전과 KEDO계약자 인원의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한 조치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다.

1. 북한은 여하한 KEDO계약자 인원도 체포 또는 구금하여서는 아니된다.
2. KEDO계약자 인원은 북한의 여하한 형태의 관할권이나 북한내 집행처분에 예속되지 아니한다.
3. 북한은 경수로 부지, 관련지역 및 연계지역내에서 KEDO계약자 인원의 업무나 개인생활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KEDO는 경수로부지내의 질서유지에 책임을 지며, 북한은 KEDO의 질서유지에 대해 간섭하지 아니한다.
4. 북한은 KEDO계약자 인원에게 북한의 관습을 따르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사회적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5. KEDO계약자 인원은 행정동원, 군사적 의무를 포함한 북한의 국가적 역무에 예속되지 아니한다.
6. 북한은 비상사태시 KEDO계약자 인원에게 모든 귀국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7. KEDO계약자 인원은 모든 경우 및 여하한 상황하에서도 본의정서 제2장상의 영사보호를 향유할 권리를 부여 받는다.
8. 북한은 KEDO계약자 인원의 개인수하물, 서류, 문서를 포함한 개인재산 또는 주거를 압수·수색 또는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통관절차는 통행에 관한 의정서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9. KEDO계약자 인원은 모든 세금과 관세 및 북한과 KEDO가 합의하는 부과금과 수수료로부터 면제된다.
10. 북한이 이 의정서 이 장에 따른 보호가 KEDO의 목적과 기능 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되지 아니한 행위를 위하여 남용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KEDO와 북한간 협의가 개최되어야 한다. 이러한 협의의 개최는 협의의 결과로서 결정되지 않은 한, 어떤 경우에도 이 장에 제공되는 보호에 대하여 제한 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제4장 협조조치

## 제18조 통보와 사증절차

1. KEDO사무총장은 이 의정서 제1장 제5조상의 특권·면제를 향유하는 인원의 명단과 직위를 북한의 관할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2. 북한은 제1장 제5조상의 특권·면제를 부여받는 KEDO사무소에 배치된 모든 인원에 대해서 신분증명카드를 신속하게 발급하여야 한다.
3. KEDO는 KEDO직원, KEDO대표단 구성원 및 KEDO계약자 인원에게 신분증명서(이하 'KEDO증명서'이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KEDO증명서는 여권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북한은 이를 유효한 여행서류로 인정하여야 한다.
4. 북한은 KEDO의 요청에 따라 KEDO사무소에 배치된 인원으로서 제1장 제5조상의 특권·면제를 향유하는 인원에게 1년 유효기간의 복수 입국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북한은 이와 같은 사증을 신속히 무료로 발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신속한 여행편의도 제공되어야 한다.
5. KEDO계약자 인원은 경수로사업을 위해 '통행의정서'에 규정된 출입국 지점에서의 무사증 출입국 절차를 포함하는 북한의 출입국규정에 따라 출입국하여야 한다. 사증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북한의 관련당국은 신속히, 무료로 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6. KEDO계약자 인원은 북한의 외국인 등록이나 부당한 출입국제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제19조 잔여면제와 보호

이 의정서 제1장 제5조상의 면제와 제3장상의 안전보호는, 해당인원이 더 이상 KEDO를 위해 활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경수로사업 이행과정에서 담당할 활동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부여된다.

## 제20조 기타 특권·면제

이 의정서는 협정과 동 협정에 따라 체결되는 여타 의정서에 규정된 특권·면제에 대해 여하한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양측은 특권·면제와 기타 보호조치가 경수로사업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 제21조 북한 관련법 존중 및 상호협조

1. 양측은 이 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실제적, 법적 문제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로 논의하고 합의한다. KEDO는 공급협정에 따른 KEDO의 업무에 방해받지 않는 경우에는 적절한 사법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북한의 관련당국에 협조하여야 한다.
2.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에 의해 북한에 파견되는 모든 인원은 KEDO와 북한간에 합의

하는 북한의 관련법을 존중하고 항상 품위있고 전문가적인 태도로서 행동하여야 한다.

3. KEDO는 북한주민 또는 당국이 관련된 조사 등의 경우와 같이 KEDO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북한의 관계당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KEDO의 요청에 따라 북한은 KEDO에 이와 같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5장 일반조항

### 제22조 분쟁해결

이 의정서의 해석 및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하여는 협정 제15조를 적용한다.

### 제23조 효력발생 및 수정

1. 이 의정서는 서명한 날부터 발효한다.
2. 이 의정서는 쌍방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사항은 이를 서명한 날부터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96년 7월 11일에 뉴욕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를  
대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 나. 통행의정서

통행의정서에서는 모든 KEDO인원과 물자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수송을 위한 제반규정과 일정 시점 이후의 추가적인 통행로 등에 관한 규정이 합의되었다.

통행의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일반원칙

- 모든 KEDO인원과 물자의 적절하고 효율적 수송을 위해 양측간 상호 협조
-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와 KEDO인원은 적절하고 효율적인 통행로에 방해받지 않고 접근 가능
- 기초 굴착공사 개시 이전까지 KEDO인원과 물자의 수송을 위한 추가 통행로와 추가 출입지점 지정

### ② 항공로

- KEDO인원 및 물자의 항공 수송은 선덕공항 이용
- 기초 굴착공사 개시 이전까지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항공로를 포함한 추가 항공로 지정
  - 동 항공로 개설을 위한 기술협의를 조기에 개시
- 상기 항공로 합의시까지 고려민항 편으로 북경-선덕간 항공로 사용
  - 동 항공편은 인원수에 관계없이 양측이 합의하는 공정한 가격으로 제공

### ③ 해로

- KEDO인원 및 물자의 해상 수송은 부지의 물양장과 양화부두 사용
- 해상 수송은 하기 해로 사용
  - 연안 15~20마일의 물자수송을 위한 바지선과 소형선박용 해로
    - 바지선에 물자 호송인원 탑승, 바지선 및 소형 선박 귀환시 인원수송 가능
  - KEDO인원 및 물자수송을 위한 공해상 진입로
    - 부지 인수증 발급전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진입로로 대체

○ 주요 기자재 수송용 바지선을 위한 연안접근 항로 추후지정

④ 통행로 및 수송수단 선택

○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가 임의로 의정서에 규정된 통행로와 출입지점 중 선택 사용

○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가 필요에 따라 수송수단과 승무원을 차별없이 선택

⑤ 무비자 출입 절차

○ KEDO인원이 의정서에 규정된 출입지점으로 출입시 무비자 적용

○ KEDO인원 및 물자를 수송하는 승무원이 지정지역에 체재하는 경우 무비자 적용

⑥ 통관

○ 북한은 출입지점 및 부지에 KEDO와 북한이 합의하여 보세구역 지정

○ 자재의 반출입 관련 모든 세금 및 관세와 양측이 합의하는 부과금 및 수수료 면제

⑦ 상호협조

○ 조난 위험성 등 비상시 지정되지 않은 항구 및 공항사용 가능

○ 비상시 북측은 국제협정 및 국제관례에 따라 KEDO와 모든 인원에 대해 즉각적인 협조제공

○ 의료 비상사태 등 KEDO인원을 긴급 후송할 필요가 있을 경우 동 인원을 가장 효율적인 통행로로 신속하게 후송

○ KEDO측이 직접 KEDO인원을 후송할 수 없는 경우, 북한은 동 인원을 KEDO측이 후송 조치할 수 있는 북한내 장소로 후송

⑧ 양측간 협의 개최

○ 의정서의 신속하고 순조로운 이행을 위한 협의 개최(통신의정서와 동일한 절차)

다음은 KEDO와 북한간에 체결된 '통행의정서'의 전문이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간의 경수로사업 이행을 위한 통행에 관한 의정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이하 'KEDO'라 한다.)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이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한'이라 한다.)는 1995년 12월 15일 서명된 'KEDO와 북한 정부간의 북한에 대한 경수로사업의 공급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각기의 의무를 KEDO와 북한이 충실하게 수행할 것을 재확인하고, 적절하고 효율적인 사업부지로의 왕복통행로와 관련문제에 관해 협정 제9조 제1, 2, 3, 4항 및 제6항에 부합되는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를 체결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의

이 의정서의 목적을 위해:

1. 'KEDO인원'은 경수로사업과 관련하여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에 의해 북한에 파견되는 모든 인원과 KEDO의 관할하에 북한에 체재하는 여타인원, 그리고 위에 언급된 인원들의 가족 구성원을 의미한다.
2. '물자'는 모든 장비, 원료, 물품, 편의시설과 경수로사업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고, KEDO인원의 작업과 생활에 필요한 여타 품목들을 의미한다.
3. '사업부지'는 경수로발전소 지역과 관련지역을 의미하며, KEDO와 북한 간의 별도 의정서에서 규정한다.

제2조 일반원칙

1. KEDO와 북한은 경수로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모든 KEDO인원과 물자가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사업부지로 왕복통행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2. KEDO, 계약자, 하청계약자 및 KEDO인원은 이 의정서에 규정된 북한 내 출입지점과 사업부지로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왕복 통행로에 방해받지 않는 접근이 허용되어야 한다.
3. 경수로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KEDO인원과 물자의 통행을 위한 추가적인 출입지점과 통행로는 협정 제10조 제2항에 규정된 기초굴착공사 이전에 북한이 지정하고 KEDO와 북한간에 합의되어야 한다.
4. KEDO, 계약자, 하청계약자 및 KEDO인원은 KEDO와 북한이 합의하는 통행에 대한 북한의 관련법 및 규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항상 품위있고 전문가적인 태도로 행동하여야 한다.

제3조 항공로

1. KEDO인원과 물자의 항공수송은 선덕공항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2. 이 조 제3항에 명시된 항공로가 이용 가능하기 전에는, 이조 제1항에 규정된 항공수송은 다음과 같은 항공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고려항공을 통한 선덕-북경  
북한은 의정서 발효 1개월 이내에 선덕-북경간 항공로 개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하고, 적시에 KEDO인원이 KEDO와 북한이 합의하는 공정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항공로를 포함하는 추가적인 항공로는 협정 제10조 제2항에 규정된 기초 굴착공사 이전에 북한이 지정하고 KEDO와 북한간에 합의되어야 한다. KEDO와 북한은 위에서 언급된 항공로의 개설과 여타 관련문제를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 조속히 협의해야 한다.

#### 제4조 해상로

1. KEDO인원과 물자의 해상수송은 사업부지의 물양장시설 및 양화부두를 통해 이루어진다.  
해상수송이 양화부두를 통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 북한은 추가적인 항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KEDO는 양화부두에서 물자의 안전, 인도, 하역을 책임져야 한다.
2.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해상수송은 다음과 같은 해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 a. 바지선과 소형선박에 의한 물자수송을 위하여 이 의정서 제1부속서에 명시된 경로
  - b. KEDO인원과 물자를 수송하기 위하여 의정서 제4부속서에 명시된 도선구역에 이르는 제2부속서에 명시된 지점의 왕복경로  
북한은 위에서 언급한 경로를 협정 제10조 제2항에 명시된 부지인도증 발급에 앞서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경로로 교체해야 한다. 교체경로는 KEDO가 제공하는 좌표를 반영해야 한다.
3. 합리적 규모의 KEDO인원은 이 조 제2항 a에 명시된 해상통행로를 통한 물자 수송시 호송자로서 승선할 수 있다. 바지선이나 소형선박이 동 해로를 통하여 귀환할 때, 이러한 바지선이나 소형선박이 북한을 떠나는 바로 그날 항공수송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 규모의 KEDO인원이 승선하여 여행할 수 있다.
4. 이 의정서 제3부속서에 명시된 품목의 수송을 위해 제1부속서에 명시된 통행로보다 북한연안의 간조선에 근접하는 바지선의 추가적인 통행로는 경수로사업의 진전이 필요로 하는 바에 따라 그리고 품목들의 안전과 경수로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KEDO와 북한간에 합의되어야 한다.
5. KEDO는 이 조에 명시된 바지선과 선박들이 의정서 제4부속서에 명시된 도선구역과 이조 제1항에 명시된 항구에서의 정박 및 계류시 북한의 수로안내를 받아 운항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6. 북한은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가 사용하는 선박과 그들이 수송하는 KEDO인원과 물자에 대해 차별없이 협정 제9조 제4항에 부합되게 공정한 가격으로 항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북한과 외교 또는 영사관계를 갖지 않는 국가에서 등록되고, 북한으로 KEDO인원 또는 물자를 왕복 수송하는 데 사용되는 상업선박이 이 의정서 제4조 제2항 a에 규정된 해상로를 통하여 항행하는 경우 KEDO 깃발과 등록국의 깃발을 게양하여야 하며, 이 의정서 제4조 제2항 b에 언급한 해상로를 경유하여 항행하는 경우에는 등록국의 깃발만을 게양하여야 한다. 도선구역과 항구 사이에서는 이 조에 규정된 선박은 KEDO와 북한간 상호 합의에 따라 등록국의 깃발과 북한기를 게양하거나 아무 깃발도 게양하지 않아야 한다.

#### 제5조 북한영역내 육상로

1. KEDO인원과 물자의 육상수송은 이 의정서의 제5부속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북한의 출입지점과 사업부지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2.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는 양화부두, 물양장시설과 사업부지간에는 그들 소유의 수송수단을 선택·사용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선덕과 사업부지 간의 수송수단은 북한에 의해 제공되며, 승용차, 버스, 트럭, 기차가 포함된다. 사업부지에 체재하는 KEDO인원은 선덕공항과 사업부지간 KEDO인원과 물자를 호송할 수 있다.

#### 제6조 통행로와 수송수단의 선택

1. KEDO, 계약자 또는 하청계약자는 이 의정서에 규정한 통행로와 출입지점 중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통행로와 출입지점을 선택한다.
2. KEDO, 계약자 또는 하청계약자는 그들이 북한의 출입지점간 KEDO인원 및 물자의 왕복수송에 있어 필요할 경우 북한의 수송수단과 승무원을 포함하여 수송수단과 승무원을 차별없이 선택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 제7조 정보의 통지

1. KEDO와 북한은 통행로를 경유하고 북한의 출입지점을 통한 KEDO인원과 물자 수송에 요구되는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상호 제공하여야 한다.
2. 해상수송을 위해서, 사전 도착통보는 이 의정서 제4부속서에 규정된 도선구역 도착예정 72시간 전에 선박운용자나 KEDO가 북한 관련당국에 제출한다. 통보에는 선박명과 톤수, 선원명단, 적하목록을 포함한 선박의 주요 기술적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선박운용자는 도선구역 도착예정 24시간, 12시간, 4시간 전에 선박의 위치를 북한에 통보하여야 한다.  
선박이 이 의정서 제1부속서에 명시된 해상로에 진입할 경우 통과예정 2시간 전에 북한에 통보해야 한다.

### 제8조 무사증 출입 절차

1. KEDO인원은 이 의정서에 규정된 출입지점을 통하여 사증없이 북한을 출입할 수 있다.  
북한은 'KEDO와 북한 정부간의 북한내에서의 KEDO의 법적지위,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에 관한 의정서' 제18조 제5항에서 언급한 무사증 출입절차의 세부사항을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 조속히 KEDO에 제공하여야 한다.
2. 경수로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북한에 KEDO인원과 물자를 수송하는 승무원은 북한이 지정한 지역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북한의 항구를 출입하기 위한 출입사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제9조 통관 및 검역

1. 북한은 경수로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이행을 위해 북한의 통관절차에 따라 KEDO인원의 휴대품을 포함한 물자에 대한 통관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2. 이 조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북한은 북한내 출입지점과 부지내에 통관전에 물자 보관을 위한 장소(이하 '보세구역')를 KEDO와 북한간 합의에 따라 지정해야 한다. 보세구역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지의 인수·접근 및 사용에 관한 의정서'에서 KEDO와 북한간 합의한다.
3. 북한은 KEDO, 계약자, 하청계약자 및 KEDO인원에 대해 협정 제9조 제2항에 부합되는 물자의 반입·반출과 관련하여 모든 세금과 관세를 면제하며, 부과금과 수수료는 KEDO와 북한이 합의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4. 이 의정서 제6부속서에 명시된 제한 및 금지물품에 대한 반입규제를 위해 북한 세관당국은 진입지점이나 보세구역에서 신속하게 필요한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5. 북한으로 들어오는 KEDO인원과 물자는 적절한 검역증을 보유해야 한다. 북한은 국제관행에 일치되게 신속하고 무료로 검역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6.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는 사업부지로부터 어떠한 방해도 없이 북한 통관절차에 부합되게 물자를 재반출할 수 있다.
7. 이 조의 어떠한 사항도 'KEDO와 북한정부간의 북한내에서의 KEDO의 법적지위,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에 관한 의정서'에 명시된 특권·면제와 보호를 제한하지 않는다.

### 제10조 협조

1. 북한은 북한내에서의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의 수송수단의 유지 및 서비스를 위하여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에게 북한의 노동력과 보유 중인 물품을 요청에 따라 KEDO와 북한이 합의한 공정한 가격으로 제공해야 한다.

2.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가 사용하는 수송수단은 북한에 대한 사전 통보와 승인없이 고의적으로 이 의정서에 명시된 통행로를 이탈할 수 없다. 이러한 수송수단은 경수로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이 의정서에 명시된 출입지점과 통행로를 왕복 운행해야 한다.
3. 비상상황이나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의 수송수단의 운전자로 하여금 이 의정서에 명시된 통행로를 이탈하도록 하는 통제망의 상황이나 조건에 처한 경우, 운전자는 즉각적으로 북한의 관련 당국에 통보하고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운전자와 관련당국은 KEDO, 계약자, 하청계약자, KEDO인원 및 수송수단의 안전과 이러한 수송수단이 원래의 통행로로 안전하고 즉각적으로 귀항함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관례에 부합되게 상호 협조해야 한다.  
이러한 수송수단이 원래의 통행로로 안전하고 즉각적인 귀항이 어려운 비상상황일 경우 관련 국제협정과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관례에 부합되게 운전자는 이 의정서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북한 항구에 수송수단을 정박 또는 착륙시킬 수 있다.
4. 비상상황시 북한은 국제협정과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관행에 부합되게 KEDO, 계약자, 하청계약자 및 KEDO인원에게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비상상황 통보에 따라 북한은 KEDO, 계약자, 하청계약자, KEDO인원이 수행하는 비상발생지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 즉각적인 지원 조치를 관련 국제협정과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관행에 부합되게 허용해야 한다.
5. 영해를 포함한 북한영역 내에서 항공기나 선박과 관련된 사고의 경우 북한은 관련 국제협정과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관행에 부합되게 대책반을 구성하고 조사 및 관련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6. 의료비상상태를 포함 KEDO인원의 안전을 위해 해당인원을 후송해야 하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와 북한은 국제협정과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관행에 부합되게 상호 협조하여 해당인원을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거쳐 신속하게 후송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는 이 의정서에 명시된 통행로 이외의 통행로를 이용할 수 있다.
7.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가 비상발생지로부터 KEDO인원을 후송할 수 없을 경우, 북한은 KEDO의 요구에 따라 해당인원을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가 후송을 취할 수 있는 북한 영역내 장소로 후송하여야 한다.

#### 제11조 의정서 이행조치

KEDO와 북한은 이 의정서의 신속하고 원활한 이해보장을 위해 협의해야 한다. 이러한 협의는 필요에 따라 KEDO와 북한의 기술전문가를 포함하며 일방의 요구에 의해 사업부지나 필요시 상호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 제12조 발효 및 개정

1. 이 의정서는 서명한 날부터 발효한다.

2. 이 의정서의 부속서는 이 의정서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3. 이 의정서는 쌍방의 서면합의로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사항은 이를 서명한 날부터 발효한다.
4. 이 의정서에 관해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하여는 협정 제15조를 적용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96년 7월 11일 뉴욕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를  
대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 제1 부속서

제4조 제2항 a에 명시된 해상수송로의 좌표는 다음과 같다.

교차선: 교차선은 다음 두지점을 연결한다.

1. 북위 38도 36분 50/51초, 동경 128도 41분 00초
2. 북위 38도 36분 50/51초, 동경 128도 47분 24초 통과지점
  1. a) 북위 39도 04분 00초, 동경 128도 34분 30초
  - b) 북위 39도 04분 00초, 동경 128도 40분 40초
  - c) 북위 39도 03분 00초, 동경 128도 35분 00초
  - d) 북위 39도 03분 00초, 동경 128도 41분 24초
2. a) 북위 39도 31분 15초, 동경 128도 28분 15초
- b) 북위 39도 31분 15초, 동경 128도 34분 42초
- c) 북위 39도 30분 15초, 동경 128도 28분 30초
- d) 북위 39도 30분 15초, 동경 128도 35분 00초

#### 제2 부속서

제4조 제2항 b에 명시된 해상수송로 좌표는 다음과 같다.

북위 39도 17분 40초, 동경 129도 57분 00초

북위 39도 22분 00초, 동경 130도 00분 00초

#### 제3 부속서

제4조 제4항에 언급된 품목의 명세는 매 경수로원전별로 다음과 같다.

1. 가압기 1대
2. 원자로 내장품(노심 집합체) 및 노심
3. 주복수기 3대
4. 천정 크레인 1대
5. 수분 분리 가열기 2대
6. 저압 터빈케이싱 3대
7. 원자로 1대
8. 원자로 냉각재 펌프 및 전동기 4대
9. 터빈발전기 1식(저압터빈, 고압터빈 및 발전기로 구성)
10. 주변압기 및 기동변압기
11. 증기발생기 2대
12. 기타 KEDO와 북한이 합의하는 품목

#### 제4 부속서

제4조 제5항에 언급된 도선구역의 좌표는 다음과 같다.

1. 북위 40도 00분 00초, 동경 128도 20분 30초
2. 북위 40도 00분 00초, 동경 128도 27분 00초
3. 북위 39도 57분 12초, 동경 128도 28분 30초
4. 북위 39도 57분 12초, 동경 128도 22분 00초

#### 제5 부속서

제5조 제1항에 명시된 육상수송로는 다음과 같다.

1. 선덕공항 - 함흥 - 부지

- a. 선덕-함흥간 버스, 승용차 또는 화물차
  - b. 함흥 - 강상리간 기차
  - c. 강상리 - 부지간 버스, 승용차 또는 화물차
2. 양화부두 - 부지간 버스, 승용차, 또는 화물차

## 제6 부속서

제9조 제4항에 언급된 금지와 제한 품목은 다음과 같다.

1. 무기, 폭발성 탄약(경수로사업을 위해 허용된 화약, 신관, 다이ना마이트 도화선, 발파용 전원 장치 등 경수로사업을 위해 허용된 품목 제외), 군수물자, 살상무기
2. 쌍안경과 망원경 / 배율 10배 이상의 쌍안경, 160밀리미터 이상의 렌즈내장 카메라, 24배 줌 이상의 캠코더
3. 경수로사업 이행을 위한 통신에 관한 KEDO와 북한간 의정서에서 언급된 것을 제외한 무선 장비 및 부속품
4. 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 독약, 마취제, 독극물, 유독성 화학물질
5. 'KEDO와 북한 정부간의 북한내에서의 KEDO의 법적 지위,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에 관한 의정서'에서 정의된 경수로사업 부지와 관련 지역에서 KEDO, 계약자, 하청계약자 및 KEDO 인원이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 간행물, 비디오 테이프, 테이프레코더 카세트



## 다. 통신의정서

통신의정서에서는 모든 KEDO 인원의 방해받지 않는 효율적 통신에 관한 제반규정과 일정시점 이후의 독자적 위성통신망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합의되었다.

통신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일반원칙

-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와 KEDO 인원의 방해받지 않는 효율적 통신을 위하여 양측간 상호 협조
-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와 KEDO 인원은, 보안이 유지되는 독자적 통신수단을 설치할 수 있으며, 북한 내 통신수단을 방해받지 않고 사용 가능
-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와 KEDO 인원의 모든 통신은 방해받지 않음.

### ② 신서사의 사용

- 신서사의 북한 내외로의 이동시 통행의정서에 규정된 출입국 지점 및 통행로 사용

### ③ 우편

-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와 KEDO 인원은 북한의 국내 및 국제우편 서비스 사용가능
  - 북한은 부지 내에 우편사무소를 설치·운영
  - 양측이 합의하는 경로를 통해 국제우편 접수, 발송

### ④ 북한 통신수단의 사용

-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와 KEDO 인원은 양측이 합의하는 공정가격으로 북한내 통신시설을 방해받지 않고 사용
  - 북한은 부지 내에 통신서비스 사무소를 설치·운영
  - 국제전화, 장거리 전화 및 팩시밀리, 데이터통신을 위한 충분한 전화회선 제공
  - 통신협정 미체결 국가에 대해서도 KEDO가 동 국가의 통신회사와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통신을 연결

⑤ 독자 통신수단

-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는 공급협정 제9조 5항에 따라 보안이 유지되는 독자적 통신수단 설치, 사용 및 운영

-독자적 위성통신 시설과 휴대용 전화기, 위키토키를 포함하는 독자적 지상(유선 및 무선) 통신 시설 포함

-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는 부지준비 기공식으로부터 24개월 후 독자적 위성통신수단 설치 및 휴대용 전화기 사용 및 운영

-장비제작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사전에 주파수 배정

⑥ 허가 및 면세

- 북한은 통신관련 모든 신청을 신속하게 무료로 처리

- 통신관련 모든 세금 및 관세와 양측이 합의하는 부과금 및 수수료 면제

⑦ 양측간 협의 개최

- 통신의정서의 신속하고 순조로운 이행을 위한 양측간 협의 개최

-필요시 양측 기술전문가가 포함되며 부지 또는 여타 합의하는 장소에서 협의 개최

다음은 KEDO와 북한간에 체결된 '통신의정서'의 전문이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간의 경수로사업 이행을 위한 통신에 관한 의정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이하 'KEDO'라 한다.)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이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한'이라 한다.)는, 1995년 12월 15일 서명된 'KEDO와 북한 정부간의 북한에 대한 경수로사업의 공급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각기의 의무를 KEDO와 북한이 충실하게 수행할 것을 재확인하고, 방해받지 않고 효율적인 통신 및 관련 문제에 관한 협정 제9조 제1, 2, 4, 5항 및 제6항에 부합되는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를 체결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의

이 의정서의 목적을 위해

1. '통신'은 유, 무선 통신 서비스(전화, 팩스, 전신, 데이터 및 영상/비디오통신 포함)와 경수로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우편서비스 및 신서사를 통한 정보의 송수신을 의미한다.
2. 'KEDO 인원'은 경수로사업과 관련하여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에 의해 북한에 파견되는 모든 인원과 KEDO의 관할하에 북한에 체재하는 여타 인원, 그리고 위에 언급된 인원들의 가족구성원을 의미한다.
3. '사업부지'는 경수로발전소 지역과 관련 지역을 의미하며 KEDO와 북한간의 별도 의정서에서 규정한다.

### 제2조 일반원칙

1. KEDO와 북한은 경수로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이행과 관련하여 KEDO, 계약자, 하청계약자 및 KEDO 인원이 사업부지 내외로 및 사업부지내에서 방해받지 않고 효율적으로 통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2. KEDO, 계약자, 하청계약자 및 KEDO 인원은 경수로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목적을 위하여 북한내에서 이용가능한 통신수단을 방해받지 않고 사용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또한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는 장비신청서류에 대한 북한의 사전별 적시 검토에 근거하고 북한의 관련 통신법규에 따라 사무소를 위한 독자적 보안통신수단을 설치할 수 있다.
3. KEDO, 계약자, 하청계약자 및 KEDO 인원은 KEDO와 북한이 합의하는 북한의 통신관련 법규를 존중하여야 하며 항상 품위있고 전문가적인 태도로 행동하여야 한다.
4. 경수로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목적의 KEDO, 계약자, 하청계약자 및 KEDO 인원들이 관련된 모든 통신은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 제3조 신서사 사용

1. 'KEDO와 북한 정부간의 북한내에서의 KEDO의 법적 지위,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에 관한 의정서'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신서사는 'KEDO와 북한 정부간의 경수로사업 이행을 위한 통행에 관한 의정서'에 규정된 출입지점과 통행로를 통하여 각각 북한을 여행하고 북한 내외로 및 북한내에서 이동할 수 있다.

### 제4조 우편서비스

1. KEDO, 계약자, 하청계약자 및 KEDO인원은 북한내에서 국내 및 국제 우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북한은 KEDO와 북한이 합의하는 사업부지내 지점에 우편사무소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2. KEDO, 계약자, 하청계약자 및 KEDO인원은 KEDO와 북한이 합의한 경로와 1874년에 채택된 세계우편협약에 따라 북한의 국제우편서비스를 통하여 서신과 소포를 수발할 수 있다. KEDO, 계약자, 하청계약자 및 KEDO인원은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우편사무소의 사서함을 이용할 수 있다.
3. KEDO, 계약자, 하청계약자 및 KEDO인원은 상호간에 그리고 경수로사업과 관련된 북한기관 및 인원과의 서신교환을 위하여 북한내 우편서비스를 통하여 서신 및 소포를 수발할 수 있다.
4. 이 조에 규정된 북한 지역내 및 국제우편서비스의 가격은 KEDO와 북한이 합의하는 공정한 가격으로 하고 북한내에서 부과되는 가격을 적절히 고려하여 산출한다.

#### 제5조 북한 통신수단의 사용

1. 북한은 협정 제9조 제5항에 따라 KEDO, 계약자, 하청계약자 및 KEDO인원이 북한내의 이용 가능한 통신수단을 KEDO와 북한간 합의하고 북한에서 부과되는 가격을 적절히 고려하여 산출한 공정한 가격으로 방해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북한은 사업부지에 통신서비스 사무소를 설치하고 KEDO, 계약자, 하청계약자 및 KEDO인원에 게 그 요청에 따라 국제통화, 경수로사업관련 장거리통화, 팩스, 자료통신 및 임시회선 연결을 위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 KEDO, 계약자, 하청계약자 및 KEDO인원은 국제통화 및 경수로사업 관련 장거리통화를 할 수 있으며 사업부지 내외로 및 부지내에서 팩스와 자료통신을 송수신할 수 있다.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는 통신장비의 유지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부품과 부속품을 포함한 통신장비의 반출입과 그 장비를 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이 허용된다.
4. 이 조 제3항을 위하여 북한은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에게 팩스와 자료통신회선을 포함하여 충분한 수의 전화회선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한 회선들은 'KEDO와 북한 정부간의 북한내에서의 KEDO의 법적지위,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에 관한 의정서' 제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북한내에서 KEDO, 계약자, 하청계약자 및 KEDO인원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사용된다.
5. 북한은 KEDO, 계약자, 하청계약자 및 KEDO인원을 북한과 통신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만 연결하여 준다. 다만, KEDO가 북한과 그러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은 통신회사와 협정을 체결하였을 경우 북한은 KEDO, 계약자, 하청계약자 및 KEDO인원을 그 회사가 서비스하는 국가에게도 연결하여야 한다.

#### 제6조 독자적인 통신수단

1. 협정 제9조 제5항에 따라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는 사업부지내외로 및 사업부지내에서 통신을 함에 있어 그 사무소를 위하여 보안이 유지되는 독자적인 통신수단을 설치, 사용 및

운영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이 통신수단은 독자적인 위성통신시설 및 무선전화기와 워키토키를 포함하며 독자적인 지상통신시설(유선 및 무선)을 포함한다. 무선전화기는 사업부지내의 통신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독자적인 통신수단은 KEDO, 계약자, 하청계약자 및 KEDO인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며 'KEDO와 북한 정부간의 북한내에서의 KEDO의 법적지위,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에 관한 의정서' 제4조 제4항 및 제5항에 부합된다.
3. 경수로사업을 위한 부지준비의 공식적인 부지착공 행사로부터 24개월 후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는 자신의 위성통신수단·유형 및 무선전화기를 설치, 사용, 운영할 수 있으며 협정 제10조 제2항에 명시된 부지인도증 발급 후 실질적으로 가능한 빠른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기간동안 KEDO는 신속하고 원만한 경수로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협정 제3조 제3항에 따라 KEDO와 북한간에 체결될 인도일정에 관한 의정서에 명시되는 건설공정에 기초하여 경수로사업의 이행을 촉진시켜야 한다.
4.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는 경수로사업을 위하여 장비신청서류에 대한 북한의 사전별 적시 검토에 근거하고, 북한의 관련 통신법규에 따라 보안이 유지되는 독자적인 통신수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 항은 이 조 제3항의 목적을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
5.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는 워키토키, 무선전화기 및 위성통신을 위한 주파수를 포함한 독자적인 통신수단 설치에 대한 북한의 적시검토를 위해 장비신청서류를 북한에 제출해야 한다. 북한은 이러한 통신시설 설치 전에 주파수를 배정하며 이는 이 조 제3항에 부합되도록 KEDO와 북한간에 합의되어야 한다. 북한은 위성통신을 위한 주파수를 배정할 때 장비 제작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6. 이 조 제1항을 위하여,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는 통신시설 또는 그 시설의 수리 및 유지에 필요한 장비 및 부품을 포함한 부분품을 북한 내외로 반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7.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는 그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조에 명시된 독자적인 통신수단을 위한 물리적 방호를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 허가 및 조세로부터의 면제

1. 북한은 협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이 의정서 제4, 5, 6조에 명시된 통신을 포함하여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의 통신관련 모든 신청에 대한 승인절차를 협정 제9조 제1항에 부합되게 신속하게 무료로 진행한다.
2. 이 의정서를 위하여 KEDO, 계약자, 하청계약자 및 KEDO인원은 이 의정서 제4조 및 제5조에 명시된 공정한 가격을 제외한 북한의 모든 조세 및 관세로부터 면제된다. 부과금 및 수수료의 면제는 협정 제9조 제2항에 부합되게 KEDO와 북한간에 합의한다.

### 제8조 의정서 이행조치

KEDO와 북한은 이 의정서의 신속하고 원활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협의는 필요에 따라 KEDO와 북한의 기술전문가를 포함하며 사업부지나 필요시 상호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 일방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다.

### 제9조 발효 및 개정

1. 이 의정서는 서명한 날부터 발효한다.
2. 이 의정서는 쌍방의 서면합의로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사항은 이를 서명한 날부터 발효 한다.
3. 이 의정서에 관해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하여는 협정 제15조를 적용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96년 7월 11일에 뉴욕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를  
대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 라. 부지의정서 및 서비스이용의정서 협상

1996년 7월 20일~7월 30일간 두 개 의정서에 관한 1차 협상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북한의 묘향산 지역에서 개최되었다.

두 개 의정서 협상에는 KEDO측에서 Mitchell Reiss 사무총장 보좌관을 수석대표로 KEDO사무국 직원과 한·미·일 3국 정부대표 및 전문가가 참석하였으며, 북한측에서는 최인화 원자력총국 참사를 수석대표로 7명이 참석하였다.

1차 협상은 협상기간의 한정과 3국 정부와의 통신상 애로 등으로 양측의 기본입장을 좁혀 나가는 데 그치었다.

두 개 의정서에 관한 2차협상이며 1996년 8월 22일~9월 26일간 뉴욕에서 속개되어, 9월 26일 추후 한·미·일 3국 정부의 승인을 조건부로 실무대표단 차원의 의정서 문안을 확정하였다.

북한은 협상기간 동안 경수로사업에의 적극적 참여 및 원자력에 관한 기술습득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경수로 건설을 위한 부지착공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다.

협상기간 중인 1996년 9월 18일 동해안 강릉지역에서 발생한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에 대해 KEDO대표단이 북한대표단을 공박하자 북한의 최인화대표는 의정서 체결을 달가와하지 않는 측의 조작이며 경수로공사 지연 책임을 북측에 전가하려는 모략이라고 강변하기도 하였다.

두 개 의정서에 관한 정식서명은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으로 인한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적절한 시점으로 유보되고 있다.

## 2. 경수로사업 주요 추진성과

### 가. 경수로 부지조사

경수로건설 예정부지인 북한의 함경남도 신포지역에 대한 부지조사가 1995년 8월 15일 이후 현재까지 6차에 걸쳐 실시되었다.

1·2차 부지조사는 KEDO가 주관하고 한·미·일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였으나, 3차 부지조사 이후부터는 한전이 사업전용역(Pre-Project Service)의 일환으로 이를 수행함으로써 우리측 전문가가 부지조사를 주도하게 되었다.

1995년 12월 16일~1996년 1월 16일간 실시되었던 3차 부지조사시에는 총 15명의 조사단 중 우리측 전문가로 한전 1명, 한기 1명, 삼경기술용역단 7명 등이 참여하여 부지지형을 측량하고 1/1,000 지형도를 작성하였다.

4차 부지조사단은 23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중 한전 1명, 한기 2명, 동아건설턴트 13명 등이 우리측 전문가였다.

1996년 1월 16일~2월 24일 기간동안 4차 조사단은 암반조사, 지하수 수위측정 및 지질분석 등을 위한 보링작업과 지진반응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시추장비 3세트, 지진반응 조사장비 1세트 등 12톤 컨테이너 2대 규모의 장비가 동용해운 선박을 통해 부산에서 나진으로, 다시 신포 부지로 운송되었다.

1996년 4월 25일~5월 7일간 실시되었던 제5차 부지조사에는 우리측 전문가로 한전 5명, 한기 2명 등 7명이 참여하여 양화부두 등 부지 인근지역에 대한 기존 하부구조 및 신·증설이 필요한 하부구조에 대한 자료수집을 하였다.

1996년 7월 6일~7월 30일간 6차 부지조사가 실시되었다. 우리측에서는 한전 1명, 한기 7명, KIST 1명, 서울대 3명, 한양대 1명 등 13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북한기술자들과 함께 지진, 지질, 수문, 환경, 기상, 총괄 등 5개 분야별 조사팀을 구성하여 부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6차 부지조사에서는 북한의 기존자료를 재가공하고, 현장조사를 병행함으로써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PSAR), 환경영향평가보고서(ER)의 작성계획도 수립하였는데, 이러한 보고서들은 후일 북한당국으로부터 부지를 인수하고 경수로건설의 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사항들이다.

제6차 부지조사 기간 중인 1996년 7월 11일 신포부지에서 부지이주민들에게 약 9만불 상당의 인도적 지원물자를 전달하였다.

이는 경수로공급협정 체결당시 부지 이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해 주기로 양해한 사항에 따른 것으로 전달식에는 KEDO 및 북한 관련인사와 함께 한국정부를 대표하여 경수로기획단의 박성훈 부단장이 참석하였다.

이상의 6차 부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전은 개략적인 부지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1996년 8월 말에 KEDO에 제출하였다. 이에 의하면 신포지역이 원전건설 예정지로서 안전성면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KEDO는 한전이 제출한 부지조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북한측에 전달할 예정인데, 북한이 이를 검토한 후 부지인수증을 발급하기로 되어 있다.

세부지질조사, 기반시설 개발을 위한 사전준비, 부지경계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었던 제7차 부지조사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부지조사단의 신변안전문제로 유보되고 있으나, 부지조사는 앞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다음은 이제까지 실시된 경수로 부지조사의 현황이다.



나. '한전' 주계약자 공식 지정

KEDO 설립협정(1995.3.9)에 북한에 제공될 경수로를 한국표준형원자로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바 있고, 쿠알라룸푸르합의(1995.6.13)에서는 경수로사업의 기본원칙인 한국표준형경수로의 제공과 한국의 중심적 역할이 확인되었다.

(다음] 경수로 부지조사 현황

기간	인원구성	조사내용 및 결과
제1차 (1995.8.15~22.)	한국:4명 미국:7명 일본:4명 계: 15명	○ 러시아 조사자료 요약분 인수, 유용성 검토 ○ 부지적합성 검토 -지진·지질·수문·기후·건설환경 등 기초 육안조사
제2차 (1995.10.24~11.4.)	한국:7명 미국:9명 일본:3명 계: 19명	○ 부지안전성 조사평가 —지질·지진(계기설치)·자연재해 등 ○ 러시아 조사자료 검토 ○ 부지적합성 평가 및 시공성 검토 —취배수·전력·통신·용수·도로·건설재원 등
제3차 (1995.12.16~1996.1.16.)	한국:11명 미국:2명 일본:2명 계: 15명	○ 지형측량 및 지형도 작성 ○ 지진 감시계측기 운용 점검 ○ 예비 지질조사 준비사항 협의
제4차 (1996.1.16~2.24.)	한국:19명 미국:2명 일본:2명 계: 23명	○ 지진반응조사 ○ 연안 수심측량 및 해양조사 ○ 암반조사를 위한 굴착공사
제5차 (1996.4.25~5.7.)	한국:8명 미국:2명 일본:2명 계: 12명	○ 부지인근의 기존 하부구조 조사 ○ 신·증설에 필요한 하부구조 관련 자료수집 및 협의 ○ 초기사업계획을 위한 경제·사회적 여건조사 및 자료확보 관련 협의
제6차 (1996.7.6~7.30.)	한국:16명 미국:1명 일본:2명 계: 19명	○ PSAR, ER 작성 자료 수집 ○ 북측보유 러시아 부지조사 자료에 대한 공동평가

경수로 공급협정(1995.12.15)체결에 따라 KEDO는 집행이사회 결의 96-3호(1996.3.19)를 통해 한국전력공사(이하'한전')를 일괄도급방식으로 경수로사업을 수행할 주계약자로 선정하였다.

KEDO와 한전은 1996년 3월 20일, 한전을 북한에 대한 경수로 공급사업의 주계약자로 지정하는 합의문에 함께 서명하였다.

이로써 한전은 각각 1,000메가와트 용량의 한국표준형 원자로 2기로 구성되며, 울진 3.4호기를 참조발전소로 하여 대북 경수로 공급사업의 설계·제작·시공 및 사업관리 등을 전반적으로 수행해 나아갈 주계약자로서 공식 지정되었으며, 1997년 중 KEDO-한전간의 주계약 체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 다.부지준비공사 착수준비

경수로 공급협정 및 '특권·면제', '통행', '통신' 등 후속의정서가 체결되고, 부지인수, 서비스이용의정서 등의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KEDO에서는 부지준비공사 착수를 위한 준비를 추진하였다.

우리 정부도 KEDO-북한간에 부지인수, 서비스이용의정서 등 공사 착공에 필수적인 의정서들이 체결되고, KEDO-한전간에 최초 공사개시에 필요한 잠정계약이 체결되며, 북한에서 부지인도증을 발급하는 등 공사착공을 위한 제반 실무적 사항이 마무리되면 부지준비공사를 착수한다는 방침을 수립하고 관련사항을 준비해 나아가고 있다.

### 3. KEDO의 활동

경수로사업의 재원조달과 공급을 담당할 국제컨소시엄으로 KEDO(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가 한·미·일 주도하에 설립(1995.3.9.)된 이래, KEDO는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과 북한 핵문제의 전반적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로서의 역할과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KEDO의 기관으로는 집행이사회, 사무국, 총회 및 자문위원회 등이 있으며,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집행이사회는 KEDO의 원회원국들인 한·미·일 대표 각 1명으로 구성되는데 의사결정은 전원합의로 이루어지며, KEDO의 기능에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원회원국 국민 중 집행이사회에서 2년 임기로 선출되는 사무총장단은 집행이사회를 지휘·감독하에 KEDO사무국의 조직·인사·예산 등을 관장하고 대북협상 및 계약업무 등을 수행한다.

KEDO의 총회는 모든 회원국의 대표들로 구성되는데 년 1회의 정기회의 및 집행이사회를 지침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현재 KEDO에는 원회원국인 한국·미국·일본 3국 외에, 핀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인도네시아, 칠레, 아르헨티나 등 7개국이 KEDO의 목적을 지지하고 자금 등을 제공함으로써 집행이사회를 승인받아 일반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다.

1996년 9월 10일~9월 12일간 뉴욕에서 개최된 제2차 KEDO총회에는 한·미·일 원회원국 3개국과 일반회원국 7개국 외에 영국, 프랑스 등 옵저버 자격으로 참석한 17개 국가를 포함하여 총 27개 국가가 참여함으로써 KEDO가 명실상부한 국제기구로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총회는 KEDO 설립 후의 활동 및 예산에 대한 연례보고서 설명과 참가국대표의 발언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참가국 대표들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그간의 KEDO의 활동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KEDO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표명하였다.

총회 이후 KEDO는 EU의 KEDO 가입을 위한 교섭 등을 진행시켜 나아가고 있다.

#### 4. 향후 전망 및 과제

경수로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서는 경수로사업에 대한 북측의 성실한 자세와 함께 KEDO-북한간 후속의정서 협상, KEDO-한전간 주계약협상, 관련국간 재정분담문제 등 무수히 많고 복잡한 사안이 아직도 남아 있다.

아울러, 북한 핵활동 동결 유지 및 폐연료봉 처리 등 북한 핵문제해결을 위한 순조로운 조치도 확보되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대북 경수로 사업은 앞으로 KEDO와 한전간의 상업계약 체결, 이에 따른 주계약자 한전의 총괄 관리와 수많은 협력기업들의 참여하에 설계→제작·구매→시공·건설→시운전→운전의 단계를 거쳐 완성될 것이다.

대북 경수로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중심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동안 땀흘려 개발한 원전관련 첨단과학기술의 결정체인 한국형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우리 기업의 손으로 같은 동포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향후 10년 가까운 건설기간 동안 남북간의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공동발전'의 장을 여는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

앞으로 대북 경수로지원사업이 실질적인 건설단계에 들어서면

- ① 설계·제작·시공 사업관리에 있어 안전성과 경제성을 기하고
- ② 남북한 직접 접촉의 계기를 적극 활용하여 남북관계의 가시적 개선을 유도하면서
- ③ 궁극적으로 남북협력 구도를 정착시켜 '민족공동체' 구현의 여건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 Ⅲ. 남북 교류 협력 추진동향

#### 1. 개관

정부는 1988년 '7·7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분단의 벽을 헐고 모든 부문에 걸쳐 교류를 실현할 것"을 천명한 이래, 남북교류협력관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제도화·정착시키기 위해서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제정·시행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국내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당시 정부의 북방정책 추진으로 한·소 수교, 한·중 수교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면서, 남북한간에도 긴장완화와 화해·협력을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져 1990년 9월에는 분단이후 처음으로 남북한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고위급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남북고위급회담이 시작된지 1년여만인 1991년 12월 제5차회담에서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1992년 9월 제8차 회담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의 구체적 이행대책을 담은 '부속합의서'가 채택·발효됨으로써 남북한 화해·협력시대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간의 합의사항들은 북한이 팀스피리트훈련등을 구실로 1992년 11월 당시 예정되어 있던 '남북공동위'가동을 거부함에 따라 아직까지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북한은 1993년 3월 갑자기 NPT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북한 핵문제가 남북관계 전반을 경색국면으로 전환시켰으며, 이에 따라 남북교류협력도 침체되었다.

그러던 중, 1994년 10월 '미·북 제네바 합의'로 북한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됨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유보되었던 남북경협의 단계적 추진을 위한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기에 이르렀고, 1995년에는 동 조치에 따른 기업인 방북승인, 경제협력사업(자)승인 등 후속조치들을 취해 나갔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도 순수한 목적과 동기에서 출발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교류협력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허용해오고 있다.

1996년에도 남북한간의 직접적인 교류사례 없이 주로 제3국을 통한 대북접촉이 이루어져 왔으며, 일부 남북한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교류행사가 성사되기도 하였다. 경제분야에서는 기업인 방북이 1995년에 이어 계속되어 왔고, 남북교역도 꾸준히 추진되는 가운데 남북합영투자사업이 착수되는 단계에까지 진행되었다.

## 2. 북한주민접촉

### 가. 현황

남북한 주민간 접촉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통신·회합 등의 방법으로 상호간 정보나 메시지를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남북한 주민이 상호 왕래를 한다거나, 교역 또는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접촉을 통해 의견 교환을 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는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접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일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된 북한주민접촉 현황을 살펴보면, 1996년 들어 10월 31일 현재 690건의 신청에 대해 647건이 승인되었다. 이 중 실제로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는 405건이며, 이를 분야별로 보면 경제분야 269건(66%), 이산가족분야 79건(20%), 학술·문화·종교 등 사회문화분야 57건(14%) 등으로 경제분야에서의 접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북한주민 접촉신청 현황  
1989.6.29~1996.10.31. 건/(명)

구분	신청	승인	접촉성사
1989	36(70)	21(22)	-
1990	235(687)	206(652)	62(377)
1991	753(2,195)	685(2,047)	266(1,173)
1992	801(2,420)	744(2,250)	238(1,015)
1993	1,172(2,220)	1,148(2,182)	313(707)
1994	1,338(2,864)	1,261(2,673)	237(691)
1995	1,011(2,769)	1,007(2,703)	494(1,222)
1996	690(2,287)	647(1,975)	405(913)
계	6,036(15,512)	5,719(14,504)	2,015(6,098)

1996년 분야별 접촉 성사 현황  
1996.1.1~1996.10.31. 건/(명)

구분	경제	이산가족	학술	종교	체육	문화	관광교통	언론출판	기타	계
신청	331	200	50	25	14	13	15	14	28	690
승인	329	180	45	16	14	9	16	14	24	647
접촉	269	79	23	9	6	3	2	-	14	405

이처럼 경제분야의 남북한 접촉이 다른 분야에 비해 활발한 것은 우리 기업인들이 대북진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북한도 당면한 경제난 해결을 위해 비교적 적극 호응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남북 경제인 접촉에서는 물자교역·대북투자 협의와 함께 북한 현지조사 문제도 논의되고 있으며, 1996년에는 15개 기업에서 84명의 기업인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이산가족분야의 접촉은 대부분이 해외거주 친지를 통해 북한거주 혈육의 생사를 확인하고 서신

을 교환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가 제3국에서 상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금년들어 72가족이 재북가족의 생사를 확인하였으며, 북한가족이 보낸 서신 386통이 접수되었다. 아울러 14가족은 제3국에서 북한가족과 상봉도 하였다.

이러한 이산가족의 생사확인·서신교환·상봉은 현재 북한과의 직접적인 교류의 길이 막힌 상황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북한측에 기회있을 때마다 당국간 대화·협의를 촉구해 왔으나, 북한당국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 이산가족 접촉 성사현황

1990.1.1~1996.10.31.

연도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계
생사확인(가족)	35	127	132	221	135	104	72	826
서신교환(통)	44	193	462	948	584	571	386	3,188
제3국상봉(가족)	6	11	19	12	11	17	14	90

사회문화분야는 제3국에서 개최되는 학술·문화·종교 등의 국제행사에 남북한이 동시에 참가하는 다자간 교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부문별로는 학술 23건, 종교 9건, 체육 6건, 문화 3건 등의 교류가 성사되었다.

학술부문에서는 통일문제, 경제, 언어, 컴퓨터 등의 분야에서 학술회의가 개최되어 남북한 학자 또는 관계전문가들간에 접촉이 있었다. 주요 교류행사로는 제6차 동북아 경제포럼(1.18~19.하와이), 21세기 동아시아 사회와 문화 국제학술회의(8.1~4.심양), 한국어 언어학자 국제학술회의(8.5~7.장춘), 제3회 우리말 컴퓨터처리 국제학술회의(8.12~14.연길), 통일을 위한 남북해외학자 학술회의(9.13~15.북경)등을 들 수 있다.

종교부문에서는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연대를 위한 국제 에큐메니칼협의회(1.29~2.2.마카오),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제5차 기독교 동경회의(6.5~7.동경)등을 통해 남북 종교인 교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난해 목사·신부 등 종교인 6명이 북한을 방문한데 반해 1996년에는 종교인이 방북한 사례는 없었다. 또 1996년의 종교인 접촉에서는 종교교류 외에 북한 수재지원 문제도 거론되는 특징을 보이기도 하였다.

체육부문에서는 제19회 윌리엄존스배 국제농구대회(8. 14~26. 대만), 제5회 동아시아호프스 탁구 선수권대회(8. 26~28. 고베)등 국제체육대회에서 남북한간 경기가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체육행사 초청에는 호응하지 않고 있다.

이 외에도 KOREAN 평화미술전(2. 8~13. 오오사카), 가스파이프라인 연구회의(1. 8~9. 북경)등 소규모의 접촉·교류가 성사된 바 있다.

제3국에서의 접촉·교류는, 남북왕래교류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북당국 접촉·대화도 단절되어 있는 현실에서 남북한간에 유효한 교류통로가 되고 있다. 특히 일부 교류행사의 경우에는 정례적인 행사로 개최되고 있고, 교류내용면에서도 점차 심화발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선별적으로 호응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이중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본격적인 궤도에까지는 오르지 못하고 있다.

## 나. 주요 남북교류행사

### (1) 통일문제학술행사

#### (가) 제5차 코리아 평화통일심포지움

제5차 코리아 평화통일심포지움이 1996년 4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에서 남북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 심포지움은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남·북한간의 의견교환을 통해 상호인식을 제고시킨다는 목적하에 버클리대 한인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된 한국학위원회와 동교 종교협의회가 개최하는 학술행사이다.

우리측은 1991년 제1차 심포지움 이래 주최측의 참가 초청에 계속 응하여 왔으나, 북한측은 제1차·2차 행사와 금년도 행사에 참석한 바 있다. 그동안 우리측에서는 주최측의 요청대로 학계, 종교계, 여성계, 대학생, 정부인사 등이 참석해 왔으나, 북한측은 각계 대표 참가취지와 무관하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인사 등 대남관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참가시켜 왔다.

이번 5차 심포지움은 남북참가자 합동기자회견(4. 18.), 심포지움 전야제(4. 19.), 심포지움(4. 20.), 남북참가자 평화예배(4. 21.)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심포지움에서 북한측 참석자들은 연방제통일, 민족대단결, 북미평화협정체결 등을 주장하였으며, 교포학생들을 겨냥하여 통일투쟁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 참가자들은 북한의 연방제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남북당국간 대화, 민간 교류·협력의 활성화, 남북한 당사자가 참여하는 평화체제 구축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였다.

앞으로, 이 심포지움이 보다 건설적인 통일논의의 장으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참석자 및 토론주제 선정에 있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심포지움 개최 현황		
구분	참석자	발표
1차 심포지움 (1991. 3. 10~17.)	남 한 이영희(한양대 교수) 박형규(목사) 정현백(성균관대 교수)	분단민족 남북간의 전쟁능력 비교 이념과 체제의 차이를 극복하는 길 한반도 통일과 여성
	북 한 박영수(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김경남(통일문제연구소 연구위원)	평화와 통일의 전망 조국의 평화통일의 주된 장애
2차 심포지움 (1993. 4. 14~21.)	남 한 양영식(통일원 자문위원) 박형규(목사) 한명숙(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김정우(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조두현(서울대 총학생회장)	화해협력시대의 남북한 관계 지구촌의 미래와 한반도의 평화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여성 한반도 비핵화와 냉전구도의 종식 한반도의 냉전종식을 위하여
	북 한 김완수(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 이형철(군축평화연구소 실장) 허혁필(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국장) 윤병철(조국통일연구원 연구사)	전민족의 대단결 조선반도의 핵문제
3차 심포지움 (1994. 4. 22~23.)	* 북한 불참통보로 대학 자체포럼으로 대체	

4차 심포지움 (1995. 4. 7~9.)	남 한 윤병익(통일연수원 교수) 박영호(민족통일연구원 정책연구실장) 김윤옥(한국여성단체연합 평화통일위원장) 김태식(서울대 총학생회장)	화해와 협력으로 민족의 번영과 통일을 남북한 관계의 현안과 통일을 위한 우리의 과제 통일로 가는길 - 현존하는 장애물을 넘어서 통일시대를 맞는 전환기의 한반도에서 청년학생의 역할
	북 한 * 북한측은 참가자 명단을 주최측에 통보하고서도 행사직전 아무런 사유 한설명없이 일방적으로 불참	
5차 심포지움 (1996. 4. 18~21.)	남 한 이봉조(통일원 연구관) 지은희(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재성(서울대학생회 대학개혁 위원장)	민족동질성 회복방안의 모색 남북동질성 강화를 위한 여성의 역할 체제와 이념을 넘어서서
	북 한 김경남(사회과학원 통일문제연구소 부소장) 김령성(김일성대 사회정치학 연구실장) 권호웅(김일성대 학생위원회 편집위원)	민족대단결은 조국통일의 전제 민족적 공통성에 기초한 조국통일 방도에 대하여 조국통일과 청년학생들의 역할



(나) 통일을 위한 남북 및 해외학자 학술회의

통일을 위한 남북·해외학자 학술회의가 한국통일학술포럼(회장 백영철 교수)과 북한 사회정치학회 공동 주최로 1996년 9월 13일부터 9월 15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참석자는 우리측에서 백영철(건국대)·최장집(고려대)·장달중(서울대)·권만학(경희대) 교수 등 21명이었으며, 북한측에서는 김구식(통일문제연구소장)·최금춘(김일성대 교수) 등 9명이었다. 또 해외에서는 고병철(미국 일리노이대) 등 5명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는 1995년에 처음 개최되었는데, 지난해의 1차회의는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와 북한 사회정치학회가 공동 주최하였고, 남북한 및 해외에서 28명의 학자들이 참석하여 한반도 통일의 3대 원칙, 통일의 방식, 남북한 화해·협력 등의 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2차회의의 논의내용은 정치화해, 평화체제 및 군사문제, 경제사회 교류 및 협력 등 남북기본합의서상의 3개 부문에 대한 것이었다. 우리측 참석자들은 남북당국간 대화,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북한의 개혁 등을 주장하였으며, 북한측은 연방제 통일, 미·북간 잠정협정 체결, 개혁·개방에 따른 자유화 물결 유입 반대 등의 입장을 피력하였다.

남북한 및 해외학자들의 발표현황

구분	남	북	해 외
발표	최장집(고려대) 정진위(연세대)	김구식(통일문제연구소장) 최금춘(김일성대)	이체진(미국클레어몬트· 매카나대)
정치 화해	○ 기본합의서 이행 ○ 남북당국간 대화재개 ○ 분단의 평화적 관리와 상호 공존	○ 민족대단결 ○ 10대강령 ○ 연방제통일	○ 남북한 통일방안 접목 가능 ○ 남북고위급회담 및 교류협력 추진
발표	하영선(서울대)	원동연(아·태평화위)	고병철(미국 일리노이대)
평화체제 및 군사 문제	○ 주한미군 철수등 북측의 군사논리 치중 비판 ○ 정치적 평화기반 조성 ○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필요	○ 민족적·통일지향적 입장 추구 ○ 대결정책 포기 ○ 미·북간 잠정협정 체결	○ 북측의 평화협정체결 주장에 대한 비판 ○ 실현가능한 남북한 절충안 마련 필요
발표	안석교(한양대)	정영춘(인민경제대)	
경제교류 및 협력	○ 정·경분리 ○ 법적·제도적 장치마련 ○ 북한의 개혁 필요	○ 평화적 환경의 조성 ○ 경제교류를 방해하는 법적·제도적 장치 제거 ○ 개혁·개방 등 자유화 바람 유입 반대	

(2) 경제관련 세미나 행사

(가) 니이가타 동북아시아 경제회의

이 회의는 동북아시아경제권 형성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일본의 니이가타현, 환일본해경제연구소, UN등의 공동주최로 매년 개최되는 회의이다.

금년에는 남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월 7일부터 2월 9일까지 일본 니이가타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에서는 재경원 관계자를 비롯하여 LG, 대우 등의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하여, '동북아시아경제협력에 있어서 한국의 입장'(재경원 김광림 심의관),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 두만강 경제개발지역의 투자환경'(LG경제연구원 이윤호 대표이사) 등을 발표하였다.

북한측에서는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관계자 5명이 참석하여 '동북아경제협력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 방안'(김응렬 부위원장), '두만강지역 개발의 실천적 방도'(황정남 과장),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와 중계수송업'(이기만 연구원) 등을 발표하였다.

북한측은 이 회의 참석을 계기로 투자설명회 등 별도 행사를 마련하여 나진·선봉지역 투자유치 활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 (나) 발해만 경제협력의 전망 학술회의

발해만 경제협력의 전망 학술회의가 한국의 사회과학원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의 요녕대학의 공동 주최로 1996년 5월 8일부터 5월 12일까지 중국 심양소재 요녕대학에서 개최되었다.

남북한 및 중국의 학자들이 참석한 이 회의에 우리측에서는 김준엽 사회과학원 이사장 등 12명이 참석하였으며, 북한측에서는 진영걸 사회과학자학회 부위원장 등 6명이 참석하였다.

북한측의 참석은 중국의 요녕대학측이 북한과 교섭하여 이루어졌다.

우리측에서는 '신유교 원리와 발해만 경제발전'(송병락 서울대 교수), '발해만 역내국가의 경제협력 강화 방안'(안충영 중앙대 교수), '황해지역의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진홍택 KDI 연구위원), '환발해만 경제협력 강화조건 평가'(정영록 KIEP연구위원) 등 4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북한측은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전략과 환발해만 경제협력'(김명렬 김일성대 교수),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의 특징과 그 전망'(문춘광 김일성대 교수), '사상·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을 적극 발전시키자'(이동수 주체과학원 경제연구소 연구원), '평화와 선린에 기초하여 동북아 각국은 경제협력을 강화하자'(최성필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위원) 등 4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학술토론과 함께 산업시찰도 있었다. 산업시찰은 중국의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상을 북한 참석자들에게 직접 보여주기 위해 계획된 것으로 중국기업인 요양목란그룹(자동차양계장)과 한국투자기업 요양신봉플라스틱주식회사 및 요양한화협력주식회사(운동화 제조공장)등을 방문하였다.

### (3) 언어·문화 학술회의

#### (가) 한국어 언어학자 국제학술회의

국립국어연구원은 북한 국어사정위원회, 중국 조선어사정위원회와 공동 주최로 1996년 8월 5일부터 8월 7일까지 중국 장춘에서 한국어 언어학자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 우리측은 안병희 교수(서울대) 등 5명, 북한측은 심병호 서기장(국어사정위원회) 등 6

명, 중국측은 최윤갑 주임(조선어사정위원회) 등 6명이 각각 참석하였다.

이 회의는 남북어문규범의 차이를 극복하고,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우리말 규범의 통일안을 마련해보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남북한 및 중국의 책임있는 어문기관이 개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주요 발표 및 토론내용은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부호에 관한 것이었으며, 우리측에서는 '한글맞춤법 연혁과 그 원리'(안병희 서울대 교수), '띄어쓰기의 역사와 그 규정'(서종학 국립국어연구원 부장), '국어문장부호의 변천'(양명희 국립국어연구원 연구원), '우리말 외래어 표기법의 어제와 오늘'(임홍빈 서울대 교수) 등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북한측은 '우리말 한자어의 표기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최정후 언어학 연구소장), '조선말의 자모수와 그 순서 및 이름에 대하여'(선우용화 언어학연구소 부소장), '불완전 명사와 보조적 동사의 띄어쓰기에 대하여'(심병호 국어사정위원회 서기장), '문장부호의 성격과 종류에 대하여'(한선희 국어사정위원회 지도원) 등을 발표하였다.

남북한 분과별 주요 쟁점사항은 다음과 같다.

분 과	쟁 점 사 항	예 시
맞춤법	사이시옷→우리측 사용, 북한측은 폐지 한자음의 어두 ㄴ, ㄹ표기→우리측 표음주의, 북한측은 형태주의	곳간(남), 고간(북) 여자(남), 녀자(북)
띄어쓰기	보조동사, 의존명사의 띄어쓰기→우리측 띄어쓰, 북한측은 붙여쓰	보고 싶다(남) 보고싶다(북)
문장부호	다른분야에 비해 남북한 차이가 비교적 적음	

이번 회의에서 남북한 간에 특정 통일안을 마련하지는 않았으나, ① 앞으로 어문규범을 개정할 시에는 지금보다 더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② 학술회의는 앞으로 계속 개최하도록 하되 그 시기와 주제는 차후에 협의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 (나) 제3회 우리말 컴퓨터처리 국제학술대회

제3회 우리말 컴퓨터처리 국제학술대회가 국어정보학회(남), 과학기술총연맹(북), 연변 조선족자치주 과학기술협회(중국)의 공동 주최로 1996년 8월 12일부터 8월 14일까지 중국 연길시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우리말 전산화 공동발전과 남북통일에 대비한 남북통일안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1994년과 1995년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된 회의이다. 우리측에서 서정수(한양대 교수)등 28명이 참석하였으며, 북한측에서는 최기룡(과학기술총연맹 서기장) 등 10명, 중국측에서는 김영철(연변 과학기술협회 주석) 등 43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의 논의내용을 기초로 전산용어, 자모순, 컴퓨터자판, 한글부호계 등에 대한 통일안을 모색해 보는데 주안을 두었다.

#### 분과별 합의사항



### 3. 남북교역

#### 가. 교역 규모

1988년 '7. 7선언'과 그에 따른 '남북경제개방조치' (1988. 10.)로 시작된 남북교역은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제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남북교역은 1988년 이후 꾸준한 증가추세를 계속하면서 중단없이 지속되어, 1995년에는 남북교역 규모가 3억 1천만 불을 기록하여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대일·대중 무역에 이어 3번째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1996년 들어 9월 말까지의 남북교역은 승인기준으로 반입 699건 1억 3,479만 달러, 반출 544건 5,479만 달러로, 합계 1,243건 1억 8,958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교역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03건 2억 5,289만 달러에 비해 25.0% 감소한 수준이다.

#### 남북교역 현황

(단위:건, 개, 천달러)

구분	반입			반출			합계		
	건수	품목수	금액	건수	품목수	금액	건수	품목수	금액
1988	4	4	1,037	-	-	-	4	4	1,037
1989	57	20	22,235	1	1	69	58	21	22,304
1990	75	26	20,354	4	4	4,731	79	30	25,085
1991	328	92	165,996	40	48	26,176	368	140	192,172
1992	365	93	200,685	42	34	12,818	407	127	213,503
1993	478	87	188,528	76	39	10,262	554	126	198,790
1994	601	92	203,521	173	50	25,423	774	142	228,944
1995	755	120	236,075	604	86	73,751	1,359	206	309,826
소계	2,663	213	1,038,431	940	158	153,230	3,603	371	1,191,661
1996	699	114	134,792	544	65	54,791	1,243	179	189,583
	(567)		(193,021)	(436)		(59,869)	(1,003)		(252,890)
합계	3,362		1,173,223	1,484		208,021	4,846		1,381,244

주: 1) 승인기준

2) 1996년은 1~9월누계 3) ( )는 1995년동기실적

남북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교역품목의 수는 반입 114개, 반출 65개, 합계 179개 품목이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반입의 경우 금괴·아연괴·빌레트 등 철강금속류가 58.7%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위탁가공물품인 의류 등 섬유류가 17.7%, 호두·버섯·팥·한약재 등 농임산물 12.1%, 북어·문어 등 수산물 4.3%, 컬러TV·자동차 배선 등 기계전자 3.0%, 자갈·마그네사이트 등 광산물 1.0%, 삼산화비소 등 화학제품 0.04%, 당면·먹는샘물·신발·초제방석 등 기타가 3.2%를 차지하고 있다.

반출의 경우에는 직물 등 위탁가공 원부자재인 섬유류가 52.6%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KEDO의 대북지원 중유·LDPE 등 화학제품이 25.3%, 위탁가공용 TV부분품과 자동차배선 부분품·자동차사기·지게차 등 기계전자 6.6%, 밀가루 등 농임산물 0.8%, 설탕·고무·조미료·라면 등 기타가 14.7%를 각기 차지하고 있다.

반입품목 구조

(단위:천달러)

구분	농임산물	수산물	광산물	철강금속	섬유류	화학제품	기계전자	기타	합계
1988		233 (22.5)		660 (63.6)				144 (13.9)	1,037 (100)
1989	510 (2.3)	357 (1.6)	3,956 (16.2)	15,945 (71.7)	1,479 (6.7)			348 (1.6)	22,235 (100)
1990	6,843 (33.6)	2,080 (10.2)	3,257 (16.0)	6,625 (32.6)	249 (1.2)	89 (0.4)		1,211 (5.9)	20,354 (100)
1991	17,426 (10.5)	25,821 (15.6)	23,231 (13.9)	91,720 (55.3)	2,870 (1.7)	3,141 (1.9)		1,787 (1.1)	165,996 (100)
1992	24,485 (12.2)	13,685 (6.8)	31,916 (15.9)	123,395 (61.5)	3,878 (1.9)	1,630 (0.8)		1,696 (0.9)	200,685 (100)
1993	16,060 (8.5)	4,163 (2.2)	1,084 (0.6)	151,316 (80.3)	11,182 (5.9)	617 (0.3)		4,106 (2.2)	188,528 (100)
1994	34,645 (17.0)	4,200 (20.1)	4,522 (2.2)	130,351 (64.0)	22,918 (11.3)	952 (0.5)		5,933 (2.9)	203,521 (100)
1995	25,463 (10.8)	4,691 (2.0)	3,633 (1.5)	163,262 (69.2)	32,311 (13.7)	52 (-)		6,663 (2.9)	236,075 (100)
1996	16,320 (12.1)	5,713 (4.3)	1,331 (1.0)	79,168 (58.7)	23,864 (17.7)	60 (-)	4,007 (3.0)	4,329 (3.2)	134,792 (100)
합계	141,752 (12.1)	60,943 (5.2)	72,570 (6.2)	762,442 (65.0)	98,751 (8.4)	6,541 (0.6)	4,007 (0.3)	26,217 (2.2)	1,173,223 (100)

주: 1) 승인기준

2) 1996년은 1~9월누계

3) ()안은총액대비비율

반출품목 구조

(단위:천달러)

구분	농수산물	섬유류	기계전자	화학제품	철강재	기타	합계
1989		69					69
1990		2,450 (51.8)	2,188 (46.2)	83 (1.8)		10 (0.2)	4,731 (100)
1991	1,750 (6.7)	7,196 (27.5)	1,560 (6.0)	13,530 (51.7)		2,140 (8.2)	26,176 (100)
1992	410 (3.2)	467 (3.6)	23 (0.2)	9,493 (74.1)	2,102 (16.4)	323 (2.5)	12,818 (100)
1993	491 (4.8)	7,217 (70.4)	679 (6.6)	936 (9.1)	39 (0.4)	900 (8.7)	10,262 (100)
1994	50 (0.2)	13,794 (54.3)	80 (0.3)	5,957 (23.4)	151 (0.6)	5,391 (21.2)	25,423 (100)
1995	2,164 (2.9)	46,013 (62.4)	1,987 (2.7)	6,960 (9.4)	1,592 (2.2)	15,035 (20.4)	73,751 (100)
1996	436 (0.8)	28,819 (52.6)	3,625 (6.6)	13,873 (25.3)		8,038 (14.7)	54,791 (100)
합계	5,301 (2.5)	106,025 (51.0)	10,142 (4.9)	50,832 (24.4)	3,884 (1.9)	31,837 (15.3)	208,021 (100)

주: 1) 승인기준

2) 1996년은 1~6월누계

3) ( )안은총액대비비율

1996년도에 남북교역에 참여한 우리의 업체 수는 219개 업체이다. 현재까지의 남북교역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기업을 교역액의 전체 남북교역액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남북교역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설명회 개최, 정보자료 제공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관심을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참여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 연도별 교역업체수

구분	반입	반출	합계
1988	4		4
1989	21	1	21
1990	37	4	37
1991	125	9	126
1992	117	16	123
1993	132	25	132
1994	150	29	160
1995	181	77	213
1996	192	79	219
합계	621	156	672

주: 1) 1996년은 1~9월 누계

나. 교역 형태

1996년 들어 9월 말까지의 교역실적으로 볼 때, 간접교역이 92.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직교역은 7.9%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초기의 남북교역은 해외중개상을 통한 순수한 간접교역형태 위주였으나, 점차 교역상담은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 지사에서 북한 상대방과 직접하되 계약 및 대금결제는 해외 중개상을 통하는 변형된 간접교역 형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1991년 이후부터는 북한측과의 직교역을 추진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으나, 남북간에 대금결제·분쟁해결 등 직교역 추진을 위한 당국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직교역의 확대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직교역 확대를 위해 1992년부터 한약재, 호두, 당면 등의 품목을 대상으로 직교역을 유도해 오고 있다.

형태별 남북교역 현황

(단위: 건, 천 달러)

구분	간접교역		직접교역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88~1990	131	48,426			131	48,426
1991	365	177,814	3	14,358	368	192,172
1992	396	205,131	11	8,372	407	213,503
1993	540	195,343	14	3,447	554	198,790
1994	752	218,578	22	10,366	774	228,944
1995	1,291	282,863	68	26,963	1,359	309,826
1996	1,182	174,645	61	14,938	1,243	189,583
합계	4,657	1,302,800	179	78,444	4,836	1,381,244

주: 1)승인기준

2)1996년은 1~9월 누계

우리 원부자재를 북한에 반출하여 가공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하는 교역방식인 위탁가공교역은 1991년 시작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6년 들어 9월 말까지의 위탁가공규모는 4,688만 달러로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739만 달러에 비해 25.4% 증가한 수준이다.

이처럼 대북 위탁가공교역이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북한의 저렴하고 질 좋은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탁가공 교역 추진과정을 향후 남북경협을 준비 과정으로 보아 국내기업들이 적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측으로서도 노동력을 활용하면서 투자부담없이 외화 획득이 가능하고, 낙후된 경공업분야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탁가공교역으로 반입되는 물품은 의류가 대부분이며, 가방·신발·완구 등이 일부 반입되고 있으나, 1995년 이후에는 봉제제품 이외에 약세사리·칼라TV·TV스피커·자전거바퀴·자동차 전기 배선 등 다양한 품목을 대상으로 한 위탁가공이 새롭게 시도되고 있다.



## 대북 위탁가공교역 현황

(단위: 천달러)

구분	반입		반출		합계	
		위탁가공		위탁가공		위탁가공
1988	1,037	-	-	-	1,037	-
1989	22,235	-	69	-	22,304	-
1990	20,354	-	4,731	-	25,085	-
1991	165,996	23	26,176	13	192,172	36
1992	200,685	556	12,818	413	213,503	969
1993	188,528	4,385	10,262	3,611	198,790	7,996
1994	203,521	16,598	25,423	11,966	228,944	28,564
1995	236,075	26,490	73,751	20,747	309,826	47,237
소계	1,038,431	48,052	150,230	36,750	1,191,661	84,802
1996	134,792	21,863	54,791	25,014	189,583	46,877
	(193,021)	(21,769)	(59,869)	(15,625)	(252,890)	(37,394)
합계	1,173,223	69,915	208,021	61,764	1,381,244	131,679

주 : 1)승인기준

2)1996년은 1~9월누계

3)( )는 1995년동기실적

#### 다. 과제와 전망

현재까지의 남북교역은 우리측의 일방적인 조치에 따라 진행되어 왔다. 북한측은 '남북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에서 당국간 협의 하에 남북교역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남북교역 규모가 연간 약 3억 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는 현재까지도 직교역 체제를 꺼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교역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몇 가지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첫째, 남북 당국간 제도적 장치의 미비에 따른 문제들을 들 수 있다. 남북교역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분쟁해결, 대금결제, 제3국 물품의 위장반입 방지 등에 대해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향후 남북관계가 진전되어 당국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게 될 경우, 이와 같은 문제들이 우선적으로 협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역정보의 문제이다. 북한사회의 폐쇄성이나 남북간 통신 등 정보교류의 제약으로, 교역가능품목 현황이나 물류 관련 정보 등이 불확실하거나 입수자체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역관련 정보자료지 발간·배포, 남북교역 설명회 개최, 남북교역 상담창구 설치 등 교역관련 정보 교류를 위한 자체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으나, 정확한 북한측 통계자료와 교역정보의 교환을 위한 북한측의 협조가 요망되고 있다.

셋째, 과도한 물류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현재 남북간에는 교통로가 개설되지 못하여 남북교역 물자는 일본·중국 등 제3국을 경유하거나, 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제3국 선박에 의해 수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송기간이 지연되고 운임이 과도하게 소요되고 있어, 최소한 해로를 통해서라도 효율적인 수송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남북한의 교역은 상호 보완성을 띠고 서로에게 이익을 주는 매개역할을 한다고 볼 때, 위에서 제기된 교역환경이 개선되면 남북교역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으리라 전망된다.

#### 4. 남북경협

##### 가. 개 황

남북경협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근거와 절차가 마련되었으나, 북한 핵문제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으로 그간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1994년 10월 미·북 제네바 핵 협상 타결로 북한 핵문제가 해결국면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됨에 따라 정부는 동년 11월 8일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였다. 동 조치는 ①기업인 방북 등 남북 경제인사 상호방문 허용, ②위탁가공용 시설재 반출 허용 및 기술자 방북 허용, ③시범적 경제협력사업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조치를 계기로 북한 핵문제로 인해 그간 유보되어 왔던 기업인 방북이 허용됨으로써 다수 기업인들이 경협 협의 및 현지조사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였다. 또한, 정부는 동 조치로 가능하게 된 대북 경제협력사업의 추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협력사업 승인절차와 대북투자에 따른 외국환의 관리절차 등 관련 규정도 아울러 마련하였다.

이러한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의 결과로 북한측과 협의를 진행시켜온 일부 기업들이 관련 법규정에 따른 승인절차를 거쳐 경협사업추진을 준비하고 있고, 이 중에서 1개 기업은 합영사업에 착수, 공장가동 단계에 들어가 있다.

#### 나. 기업인 방북

1992년 10월 남포경공업단지 투자실무조사단의 방북이래 2년여간 남북왕래가 없었던 기업인의 방북은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 이후 1994년 12월 쌍용그룹 관계자의 방북을 필두로 하여 1996년 10월말부터 현재까지 34개 기업, 208명에 이르고 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11개 사, 중소기업이 23개 사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기업들은 경협 추진에 따른 사전조사 및 협의목적으로 주로 평양·남포지역과 나진·선봉지역을 방문하였다. 방북경로는 북한측이 관문점을 통한 직접왕래를 꺼리고 있는 관계로 중국 북경을 경유하여 항공편을 이용하거나, 중국 도문-북한 남양 간 국경을 통해 육로로 방문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다. 협력사업 추진현황

남북경제협력 추진과 관련하여 준비차원에서 진행되었던 주요 사안들을 살펴보면, 먼저 1989년 1월 현대그룹회장 일행이 북한을 방문하고 금강산 관광지 개발 등 합작사업 추진에 합의한 바 있으나 구체적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1992년 1월에는 대우그룹 회장 일행이 북한을 방문하여 셔츠·블라투스·자켓·가방 등 9개 품목에 대해 남포경공업단지를 활용, 합영방식으로 경협을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으며, 정부는 1992년 10월 5일 최초로 (주) 대우를 협력사업자로 승인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북한 핵문제로 인해 더 이상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1994년 11월 정부가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를 발표, 이후인 1995년 5월 17일 (주)대우의 남포공단 합영 사업간에 대해 정부가 협력사업 승인을 함에 따라 대북투자가 가능하게 되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시범적 경협에 해당하는 투자사업들에 대하여 '협력사업자' 승인을 해 오고 있으며, 1996년 10월 말까지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기업은 10개 기업에 이르고 있다.

남북경제협력사업(자) 승인현황

기업명	승인일	사업내용	투자규모	북측회사	투자지역
(주)대우	1995.5.17 (협력사업승인)	셔츠(283) 가방(114) 자켓(115)	512만불	삼천리 총회사	남포공단
고합물산(주)	1995.5.17	의류·봉제(70) 직물(450) 이불·솜(66) 수지병(100)	686만불	광명성 총회사	협의중
한일합섬(주)	1995.6.26	웨타(250) 봉제(110) 모포(220) 방직(400)	980만불	조선은하 무역총회사	남포
국제상사(주)	1995.6.26	신발제조	350만불	"	"
(주)녹십자	1995.9.15	의약품 제조 (유로키나제)	300만불	광명성 총회사	평양시 대동강 또는 용성구역
동양시멘트(주)	1995.9.15	시멘트 저장 싸이로(10,000) 1기 건설	300만불	대외경제 협력추진 위원회	나진항
동룡해운(주)	1995.6.26	하역설비 (지게차 2대, 크레인 1대)	500만불	해양무역 회사	"
삼성전자(주)	1996.4.27	통신센터 건설·운영	700만불	조선체신 회사	나진·선봉 지역
(주)대창	1996.4.27	금강산 샘플 개발·판매	580만불	능라888 무역총회사	금강산 지역
대우전자(주)	1996.4.27	TV등 전기전자 제품 생산판매	640만불	삼천리 총공사	남포공단
한전	1996.7.19	천 메가와트급 경수로 건설	미정		신포

남북경협은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초기단계에서는 시범적 차원에서 내실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앞으로 북한의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투자보장협정 등 남북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남북경협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 5.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간 협력

### 가. 두만강개발계획 참여

1990년대 들어 경제개발이 낙후된 동북아 지역의 발전 방안으로 개발잠재력과 상호보완적 발전 가능성이 높은 두만강 유역에 대한 동북아 국가간 상호협력을 통한 개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1991년 7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유엔개발계획(UNDP) 회의에서 두만강개발계획(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 : TRADP)을 동북아 국가간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1992년 2월 서울에서 제1차 계획관리위원회(Programme Management Committee : PMC)회의가 개최된 이후 지금까지 6차례의 PMC회의와 분야별 실무작업반(Working Group : WG) 회의 등을 거쳐 최근 2차례의 5개국 위원회(Commission) 회의가 개최되었다.

우리 정부는 동 회의에 북한의 개방을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협력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며, 국제기구를 통한 동북아시아 국가간 국제적 협력 증진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북한도 1991년 12월 TRADP 지역내 나진·선봉 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하고, 동북아의 국제화물중계, 가공수출 및 관광 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외자유치를 위해 동 회의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TRADP 사업은 1995년 12월 4일~7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제6차 PMC 회의에서 5개국간의 '두만강 경제개발지역 및 동북아시아 개발을 위한 협의위원회 설립 협정' 및 접경 3개국간의 '두만강지역개발조정위원회 설립협정' 과 '환경양해각서(MOU)' 가 정식 서명됨으로써 이제 실천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5개국 협의위원회(The Consultative Commission)는 개발 촉진, 경제·환경·기술 협력증진과 투자유치 등의 중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3개국 조정위원회(The Coordination Committee)는 출입국 문제 등 지역적 특수성이 있는 사항을 조정하는 보완적 기능을 담당한다. 이들 기구의 설립협정과 함께 Commission과 Committee 통합사무국 설치·운영, 통신, 인프라, 환경 등의 실무작업반(Working Group)설치·운영 등에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TRADP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뉴욕회의에서 채택된 설립협정에 따라 출범한 5개국 위원회의 제1차 회의가 1996년 4월 18일~19일 남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회원국과 UNDP측이 참가한 가운데 의장국인 중국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사무국 소재지와 관련, 1996년 7월~1999년 6월의 3년간 북경에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1998년 7월 이전에 사무국 소재지 이전을 위한 회의를 개최키로 결정하였다. 또한 회원국은 사무국 운영 경비로 2만 5천 달러씩 균등 부담하고, 중기 사업계획, 사무국장 선임, Commission 의사규칙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차기 회의를 9월 중 북경에서 개최키로 하였다.

제1차 회의는 1995년 12월 협정 서명으로 2단계에 들어선 TRADP 사업을 진전시키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이제까지 TRADP 사업의 산과역을 담당해 온 UNDP가 점차 보조역할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반면, 회원국들은 UNDP의 적극 지원을 요청하는 등 상반된 입장의 조화가

앞으로 과제로 대두되었다.

제2차 5개국 위원회 회의는 1996년 10월 21일~23일 역시 의장국인 중국에서 회원국과 UNDP 관계자, 일본, 핀란드, ADB 등 업저버 국가와 미국, 호주 등 준업저버 국가들이 참가 가운데 열렸다. 동 회의에서는 5개국 위원회(Commission) 의사규칙을 채택하였고, 일본 Commission 회원국 가입 권유안을 채택하고 일본측에 통보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사무국장 선임, 재원조달, TRADP 조직 및 운영, 1997년도 사업계획, 제2단계 사업 추진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북한 등 접경 3개국의 재원조달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났다.

#### 나. 남북한 비행정보구역 통과항로 개설을 위한 관계국 회의

1994년 12월 북한의 항로개방 선언 이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등은 남북한과 협의하여 평양 비행정보구역(Flight Information Region : FIR) 통과항로개설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대구—평양 FIR을 통과하는 국제 민간항공기 항로개설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관계 당사국간 회의가 ICAO주선으로 1996년 9월 10일~13일 기간 동안 방콕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남북한 및 일본, 중국의 항공당국 실무대표가 참가하였으며, 남북한에서는 각기 4명씩의 대표가 참석하였다.

회의에서는 대구—평양 FIR을 통과하는 북미주—서울간 항로개설 문제와 북한상공을 통과하는 일—중간 항로개설 문제가 논의되었으며, 우리 민간항공기를 포함 모든 민간항공기에 대한 무차별 개방원칙과 통과항공기의 안전보장 조치 등에 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구—평양 FIR을 통과하는 항공기 안전운항의 핵심사항인 대구—평양관제소간 관제직통 통신망 구성방식에 대하여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회의를 종료하였다.

남북한 및 ICAO는 남북한 관제소간 가장 적절한 관제직통 통신망 구성방식에 대해 상호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구—평양 FIR 통과 국제 항로 개설문제를 타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 IV. 대북 수재지원

##### 1. ‘북한의 1995년 수재’ 지원

정부는 1995년 9월 14일 대한적십자사를 단일창구로 한 민간차원의 대북 수재물자 제공 허용을 결정하였다. 대한적십자사는 이러한 정부의 결정에 따라 9월 15일 대북 수재물자 접수 및 전달용 의를 표명하고, 북한 수재민 구호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북한적십자회에 직접 전달하려 하였다. 그러나 북한적십자회측의 회신이 없어 1995년 11월 23일, 1차로 담요 5,000장(1억 2천만원 상당)을, 12월 8일, 2차로 담요 3,000장(7천만원 상당)을 국제적십자사연맹을 통하여 지원하였다.

정부가 대한적십자사로 대북 수재지원 창구를 일원화한 것은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에 따른 것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은 1995년 12월 9일부터 16일까지 북한을 방문하여 수해에 따른 식량사정을 조사하고 12월 28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성명은, “북한은 1995년 여름 홍수로 식량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주민들은 이미 심각한 영양부족 상태에 빠져 있으며, 특히 어린이 210만 명과 임산부 등 260만 명이 가장 곤경에 처해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수개월 내에 수백만명이 기아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대한적십자사는 이러한 북한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1996년 1월 10일 북한 수재민 구호와 복구에 협조하기 위하여 북한적십자회에 전화통지문을 보내려 했다. 그러나 북한측이 접수를 거부하여 다음과 같은 방송통지문을 보냈다.

한적 총재 대북 방송통지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성호 귀하

본인은 작년 9월 15일 귀측의 수재민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우리 국민들이 제공하는 물품을 귀측에 전달할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담요를 국제적십자사연맹을 통해 귀측에 보냈습니다. 나는 세번째로 우리 국민들이 보내온 성금으로 구입한 담요와 라면 등을 이달에 보낼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런데 귀측의 수재민들을 위해 성금을 모으고 있는 우리의 여러 단체에서는 귀측 수재민들이 필요로하는 물품을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귀측에서 귀측 수재민 구호와 수해지역 복구에 유용한 물품이 어떠한 것인지 알려주기를 희망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에 대한 통보가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1996. 1. 10

대한적십자사 총재 강영훈

그러나 북한적십자회측은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방송통지문에 대하여 일언반구의 회신도 하지 않

았다. 오히려 북한 외교부 대변인은 1996년 1월 20일 ‘조선중앙통신’ 과의 기자회견을 통하여 “일부 서방언론 및 남조선이 인도주의적 지원 문제를 개혁·개방 유도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고 비난하면서 추가 수재지원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 1996년 2월 2일 외교부 부부장 최수현이 북한 지역 내에서 수재구호 활동중이던 UN기구 및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대표를 소집하여 UN인도지원국(UNDHA)이 추진중이던 국제사회에 대한 추가 북한 수재지원 호소계획의 중지와 현재 진행중인 북한 내 구호활동 완료 및 구호요원의 철수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다른 한편으로, 1996년 1월 독일 공산당 전당대회에 참가한 북한노동당 간부가 독일에 수해원조를 요청하는가 하면, 대외경제위원장 이성대도 2월 2일 일본경제신문과 회견을 통하여 일본에 대해 식량 추가 원조 요청을 하였다. 또, 2월 8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식량구입을 위한 미국측의 WFP(세계식량계획)에 대한 200만 달러 기증 결정을 환영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이 양면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북한에 체류 중인 국제기구 요원들의 자유로운 활동에 제동을 걸 필요성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 지원국들이 수재지원을 북한의 개방유도와 연계시키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데 대하여 체제에 대한 위기의식의 발로로 볼 수 있다.

국제적십자사연맹 대표로서 1996년 1월 23~26일 북한을 방문해 수해와 식량사정을 현지조사한 아·태 지역부 「시몬·미씨리」 대표는 1996년 1월 29일 대한적십자사에 들러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북한의 식량 부족분이 200만 톤에 달하고 구호대상 수재민이 50여 만명이나 된다. 다음 추수기까지 국제적인 지원이 계속되지 않으면 북한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 이라고 경고하였다.

대한적십자사는 이러한 북한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북한적십자회와 국제적십자사연맹이 요청한 물품인 담요, 라면, 양말 등(1억 2천만원 상당)을 구입하여 3차 구호품을 보냈다.

이 구호품은 제3국 선박을 이용하여 1996년 1월 30일 인천항에서 남포항으로 직수송되었으며, 북한에 체류하는 국제적십자사연맹 직원들이 물품을 인수하여 수재민들에게 분배토록 하였다.

국제적십자사연맹은 1996년 2월 16일 대한적십자사가 1995년도 북한에 보낸 구호품 중 1,2차분 담요 8천장을 북한의 5개도 13개 지역 수재민 25,940세대에 분배하고, 그 결과를 대한적십자사에 알려왔다. 또, 국제적십자사연맹은 북한적십자회로부터 통보받은 구호물품 주문내용도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왔다.

- 라면과 같은 가공식품은 시간과 노동력이 많이 들어 받지 않겠음.(※ 한국상품으로된 포장지를 벗겨내고 새로운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임.)
- 담요는 이미 많은 양이 분배되었고, 북한 당국이 계속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지원은 사양함.
- 건축자재는 자금이 확보되면 북한 지역에서도 확보할 수 있음.
- 대한적십자사가 희망한 구호물자의 육로 수송과 한적대표를 연맹대표단 일원으로 북한에 파견하는 것은 곤란함.

## 연맹의 구호대상 지역 및 세대수

도 별	평안북도	자강도	황해북도	황해남도	강원도	합 계
지역별 세대수	신의주 4,800 박 천 470 정 주 530	희천 6,115 고풍 1,810 동신 2,650	은파 2,581 인산 2,152 신평 1,105 신계 1,182	배천 1,130	이천 550 철원 865	
계	5,800	10,575	7,020	1,130	1,415	25,940

이후 국제적십자사연맹은 1996년 3월 22일 대한적십자사에 보낸 ‘북한상황보고서’에서, 1996년 2월 21일 북한적십자회 사무총장이 북한 정부와의 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왔다.

- 북한적십자회는 13만명의 수재민 지원을 위한 연맹의 1차 호소에 의한 구호활동이 끝나면, 2차 호소를 통해 구호활동을 10월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공식 요청할 예정임.
- 2차 호소의 내용은 1차 호소와 같이 연맹의 구호대상자에 대한 식품(쌀·콩·식용유)지원에 초점을 둘 것임.
- 수재민들을 위하여 추진 중인 중인 주택 1,900채 건설사업은 계속 할 것임.

이외에도 국제적십자사연맹은 북한상황보고서에서 연맹이 1995년도 7~8월 북한 지역의 홍수 후 3개월간 북한 수재민에게 주로 식량을 지원할 목적으로, 1995년 9월 13일 1차 호소를 한 이후 현재까지의 실적을 알려왔다.

보고서에 의하면 총 호소금액 4,981,000 CHF(\*스위스프랑, 1프랑은 약630원)(현금 CHF 1,720,000, 물품 CHF 3,261,000)중 일본·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덴마크 등 16개국 적십자사가 현금 CHF 3,393,272를, 한국·중국·영국 3개국 적십자사가 CHF 784,572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여 1차 호소금액의 83.9%인 CHF 4,177,844가 접수되었다고 알려왔다.

이와 같이 연맹의 다른 호소에 비하여 모금실적이 좋은 것은 북한적십자회가 처음으로 연맹을 통하여 국제사회에 지원을 호소하였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당초 국제적십자사연맹은 북한에서의 구호활동을 1996년 2월까지로 계획했다. 그러나 북한 수재 지역의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데다, 북한의 요청이 있어 가을 추수기까지 7개월간 2만 6천세대, 13만명을 지원 목표로, 2차로 CHF 7,658,000 상당의 물품(쌀·콩·옥수수·식용유 등) 및 현금을 지원해 줄 것을 1996년 3월 22일 각국 적십자사에 호소하였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지원 실적이 저조하자 연맹 사무총장인 죠지 웨버는 5월 25일~28일까지 4일 동안 직접 북한내의 수해 지역을 시찰하고, 이종욱 부주석 등 북한 정부 및 북한적십자회 고위인사들과 회합을 가진 후 귀로에 5월 29일 북경에서 언론 및 북경주재 주요 기증국 정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북한 수재민들은 국제적십자사연맹의 식량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현재까지 연맹의 2차 호소금액의 23%만이 모금된 실정이다. 10월 가을 추수기까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북한 수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미화 5백 25만 달러가 추가로 필요하다.” 라고 국제사회에 호소하였다.

그의 방북 결과로 1996년 8월 9일 현재 각국 적십자사 및 정부의 지원 실적은 2차 호소금액의 63%에 달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1996년 3월 28일 ‘큰물피해대책위원회’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하여 3월 5일 미국의 ‘해외자산통제규정’ 완화 조치를 호의적으로 평가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은 지속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도를 표명하였는데, 이는 2월 2일 미국정부의 북한 수재민에 대한 200만불 지원에 사의를 표명한 1996년 2월 8일 북한 당국의 담화와 맥을 같이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 대변인은 1996년 4월 1일 기자들에게 북한이 지난 1월 내세웠던 국제사회에 대한 식량원조 거부 의사를 철회하고 긴급지원 요청을 재개하는 서한을 제네바 소재 UN인도지원국(UNDHA)에 접수시켰다고 발표하였다.

또, 북한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이종혁도 4월 29일 미국조지아대학에서 열린 학술회의에 참석하여 “우리는 모든 난관을 스스로 풀어 가는데 익숙한 사람이지만, 워낙 피해가 커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에 호소키로 한 것” 이라면서 “자연재해를 겪거나 힘들 때 돕는 것은 민족고유의 미풍” 이라면서 우리 정부의 식량지원을 강력히 희망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북한을 돕기위한 국제사회의 호소에 동참하기 위하여 1996년 7월 1일 미화 200만 불을 세계식량프로그램에 현금으로 송금하는 한편, 8월 30일에는 미화 100만 불 상당의 분유를 인천항을 통하여 북한에 주재하고 있는 UN아동기금 대표에게 보냈다.

다음은 1996년 10월 30일까지, 북한주재 국제적십자사연맹대표가 대한적십자사가 보낸 구호품을 북한의 각 지역에 분배한 결과를 확인한 후 알려진 내역이다.

지역별	세대수	인원수	담요(장)	라면(개)	양말(족)	식용유(리터)
신의주시	4,800	24,000	1,500	18,510	3,700	34,560
박 천 군	470	2,350	150	1,800	365	3,370
정 주 군	530	2,650	310	2,040	410	3,800
회 천 시	6,115	30,575	1,870	23,550	4,170	44,000
고 풍 군	1,810	9,050	1,100	6,990	1,400	13,010
동 신 군	2,650	13,250	1,490	10,200	2,040	19,070
은 파 군	2,581	12,950	835	9,960	1,990	18,557
린 산 군	2,152	10,760	640	8,310	1,660	15,490
신 평 군	1,105	5,525	625	4,260	850	7,950
신 계 군	1,182	5,910	580	4,560	910	8,518
배 천 군	1,130	5,650	400	4,350	870	8,137
이 천 군	550	2,750	200	2,100	425	3,960
철 원 군	865	4,325	300	3,360	670	6,210
계	25,940	129,745	10,000	100,000	20,000	186,624

## 2. ‘북한의 1996수재’ 지원

북한은 1996년 7월 28일, 중앙TV와 7월 29일 중앙통신을 통하여 7월 하순에 북한 남·서부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 상황과 이로 인한 피해 내용을 보도하였다.

또, 8월 7일 북한 외교부 대변인이 관영 중앙통신과 평양방송을 통하여 “7월 하순의 집중폭우로 인하여 8개 도 117개 시·군이 피해를 입었으며, 최소한 200여명이 사망하고 이재민 327만명이 발생,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액은 17억 달러에 이른다. 우리는 국제사회로부터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라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강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1995년 수재에 이어 2년 연속 수재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북한 동포들을 돕기 위하여 1996년 8월 12일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25주년에 즈음한 성명을 통해 이산가족문제와 북한 수재구호 등 시급한 인도적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사간 총재 또는 부총재급 회담을 제의하였다.

강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이 성명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적십자 회담은 남북간의 정치적·군사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진전되어야 하며, 더우기 외부의 상황 변화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특히 북한 수재 극복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북한적십자회가 대화에 나서게 되면 북한 수재민을 돕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될 수 있을 것” 입을 강조하였다.

다음은 강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성명문 전문이다.

###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25주년에 즈음한

#### 대한적십자사 총재 성명문

지난 197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가 분단 4반세기만에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한 후 또한번 4반세기가 흘렀습니다.

인도주의 구현을 기본목표로 하는 적십자정신에 따라 성사된 남북적십자회담은 분단사상 처음으로 남북대화의 물꼬를 튼 역사적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동안 남북적십자회담은 온 민족의 기대 속에 100여 차례의 회담과 접촉을 통해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근접해 감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1985년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사업이 성사되었을 때는 온 민족이 기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합의단계에 이르렀던 이산가족 고향방문사업이 실현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들이 실천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남북적십자회담까지도 단절 되므로써 7천만 민족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산가족이 천륜을 다시 이어 가는 것은 가장 초보적인 인권에 관한 사항이며, 하늘이 준 권리로써 어떤 이유로도 방치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은 비록 남북간에 정치적·군사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진전되어야 하며, 더욱이 외부상황의 변화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인은 이러한 취지에서 남북적십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북한 적십자회측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산가족문제는 더 이상 해결을 늦출 이유도 없으며, 시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시간은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더할 뿐 아니라, 유명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헤어진 부모자식과 형제, 배우자를 애타게 그리며 고통받고 있는 이산가족들에게는 백마디의 말보다도 한가지의 실천이 더 절실합니다.

최소한 금년 내에는 모든 이산가족들이 헤어진 가족들의 소식을 교환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실마리라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측은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적 견지에서 금년에 들어와서는 지난 3월 5일 북한 화물선 염분진호 생존선원 2명 및 시신2구를 송환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서해상에서 표류중 발견된 북한측 시신 2구도 즉시 송환하였음을 북한측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정신에 입각하여 작년 북한지역의 수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북한동포를 돕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밀가루 704톤, 식용유 18만 7천리터, 분유76톤, 라면 10만개, 담요1만장, 양말 2만 켤레 등 총 11억 8천만원 상당의 구호품을 북한측에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남과 북이 인도주의와 동포애에 입각하여 상대측 지역에 자연재해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적십자 단체가 앞장서서 서로 돕기로 한 남북기본합의서와 교류협력부속합의서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남과 북의 적십자단체가 협력한다면 수재로 인한 북한동포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일이 훨씬 더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남북적십자 사이에는 이산가족문제를 비롯하여 자연재난 등 인도주의와 동포애에 입각하여 상부상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시급한 과제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쌍방 적십자 단체의 총재 또는 부총재(위원장 또는 부위원장)가 어디에서든지 아무런 조건없이 조속히 회동할 것을 북한적십자회 측에 정중히 제의합니다.

본인은 남북의 적십자단체가 적십자 본연의 정신에 입각하여 서로 협력하는 것이 적십자의 기본 사명을 실천하는 길인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믿으며, 북한적십자회측의 긍정적 호응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1996. 8. 12.

대한적십자사 총재 강 영 훈

이와 같이 대한적십자사는 '강영훈 총재의 성명문'을 발표하고 동시에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국제적십자사연맹 앞으로 동 성명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북한 적십자회는 지금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다.

한편, 국제적십자사연맹 대표는 북한적십자회의 요청으로 북한의 수재지역을 시찰하고 돌아와 1996년 9월 13일 대한적십자사에 북한의 수재상황 보고를 보내왔다. 그의 보고에 의하면, 북한은 이번 폭우로 자강도와 황해남북도, 개성직할시 등의 피해가 극심하며, 8개 도에 29만 헥타르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어 쌀 생산량은 평년에 비해 30~40%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적십자사연맹은 1996년 11월 중순까지 북한적십자회에 대한 식량지원 사업을 계속할 것이며, 그후 수재지역에 대표를 파견하여 추가지원의 계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현재 북한적십자회 직원의 재해대비 훈련프로그램과 구호창고 건설 계획도 진행 중에 있다고, 9월 13일 대한적십자사에 보낸 북한 상황보고에서 밝히고 있다.

현재 북한의 수재민을 돕기 위하여 평양에 설치된 국제적십자사연맹대표부는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인도지원국(UNDHA),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계획(WFP),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식량농업기구(FAO), 국경없는 의사회(MSF)등 다른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조 아래 활동하고 있다.

대한 적십자사도 1996년 9월 현재, 76개 기관과 75명의 독지가들이 인도적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내준 15억6천4백만원(※대한적십자사 예산 1억1천1백만원 포함)의 성금중 14억4천만원 상당에 해당하는 담요 1만장, 라면 10만개, 양말 2만 켤레, 식용유 186,624리터, 전지분유 76톤, 밀가루 1,424톤의 구호품을 국제적십자사연맹을 통해 9차에 걸쳐 북한적십자회에 전달하였다.

대한적십자사는 현재도 1억4천만원의 대북수재 지원성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잠수함을 이용한 공비 침투 사건으로 10차분을 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은 1995년부터 지금까지의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한국 국민의 대북 수원지원실적이다.

한적의 북한 수재민 지원실적(1차-9차)

지원 차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계
품목	1995.11.23	1995.12.8	1996.1.30	1996.5.16	1996.7.18	1996.7.24	1996.8.10	1996.9.9	1996.9.17	
담요	5,000매	3,000매	2,000매							10,000매
라면			100,000개							100,000개
양말										20,000족
식용유			20,000족	186,624리터						186,624리터
밀가루				(103,680병)	13,000포	13,000포	6,000포	22,000포	50,000포	(103,680병)
전지분유					(286톤)	(286톤)	(132톤)	(220톤)	(500톤)	104,000포
					1,800포		2,000포			(1,424톤)
					(36톤)		(40톤)			3,800포
										(76톤)
계	1억2천1백만원	7천만원	1억1천8백만원	2억8백만원	3억2백만원	1억2백만원	2억6천만원	7천9백만원	1억7천5백만원	14억3천5백만원

위의 북한에 전달된 구호품은 북한적십자회가 국제적십자사연맹에 요청한 품목-쌀·콩·옥수수·식용유·현금-중 국제적십자사연맹의 확인을 통해 북한 수재민들에게 지원된 것이다.

한편, 북한적십자회는 1996년 7월 하순에서 8월 초 사이 내린 북한지역의 홍수 피해로 계속적인 구호를 국제적십자사 연맹에 요청했다. 이에 국제적십자사연맹은 그 동안 북한 수재민을 지원해준 일본·영국·스웨덴 등 6개국 지원국 적십자사회의를 10월 2~4일 평양에서 개최하고, 북한 수재민 지원을 위한 3차 국제구호 호소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원국 적십자사의 일원으로 북한 수재지역을 둘러본 일본적십자사의 히로시 히가슈라 국제부차장은 귀로에 10월 5일 북경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은 2년 연속의 홍수 피해로 1인당 연간 식량 배급량도 260kg에서 100kg으로 삭감됐으며, 국제적십자사연맹이 식량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2만 6천가구 13만명에 대해서는 하루 영양보급에 필요한 450g의 쌀을 지원하고

있으나, 북한 정부 및 UN 공동지원 지역에서는 하루 1인당 200g밖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음을 북한 당국도 시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적십자사연맹은 10월 10일 대한적십자사에 보낸 전문에서 북한내 식량사정을 자세히 조사한 후 식량지원 규모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2명의 국제적십자사연맹 대표를 10월 19일부터 11월 5일까지 북한에 파견할 예정이며, 11월 중 각국 적십자사에 3차 대북 지원을 호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V.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협력

### -제51주년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 해설

김영삼 대통령은 1996년 8월 15일 제51주년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진정한 광복을 다짐하는 세계일류국가의 청사진을 구체화하여 천명하였다. 이는 7천만 우리겨레의 지도자로서 위상제고와 함께 광복 1세기를 향한 민족의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이날 경축사의 가장 큰 특징은 거의 전부분을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에 할애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어느 시대,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일로서 통일문제가 현실의 과제로서 다가오고 있다는 인식과 그에 따른 굳은 실천 의지가 담겨져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이 연설문에는 민족전체가 '하나'라는 자세하에 모두를 포용하려는 정신이 시종일관하게 흐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 동포를 시야에 넣는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문제 >남북간의 협력문제 >통일대비문제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구성면에서 보면, ① 향후 100년을 바라보는 민족적 비전 제시 ② 7천만 민족전체를 생각하는 자세 강조 ③ 북한에 대한 기본입장 천명 ④ 4자회담의 의의 재조명 ⑤ 북한 식량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방안제시 ⑥ 통일 대비의 과제를 정식으로 제기하는 등 6개부분으로,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에 대한 철학과 정책방향 그리고 구체적 대안을 정리, 제시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광복 후반세기를 향한 민족적 비전을 제시하였다.

김대통령은 평화통일을 이루는 것을 참다운 광복을 완성하기 위한 필수요건으로 규정하고, 광복 100년을 내다보며 진정한 광복을 위한 결의를 다짐하였다. >민주와 번영으로 세계를 앞서가는 '선진국가' >정치적 가치와 도덕성이 존중되는 '문화국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통일국가' 등으로 세계 인류국가의 청사진을 구체화하였다.

둘째, 7천만 민족전체를 생각하는 자세를 강조하였다.

평화통일의 첫걸음을 무엇보다 "7천만 동포가 하나라는 인식을 함께 하는데 있다."며 "항상 한반도의 남쪽만이 아니라 북녘을 포함한 세계 곳곳에 있는 온겨레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해 민족전체를 위한 통일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난해 북한에 15만톤의 쌀을 지원한 것이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긴 민족사적 안목으로 보면 획기적인 의의를 갖는 일이 될 것임을 지적하였다.

셋째, 북한에 대한 기본입장을 분명하게 천명하였다.

김대통령은 "① 북한의 불안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안정을 원한다. ② 북한이 국제사회에 온전한 성원이 되어 세계에 공헌하게 되기를 바라며, 고립을 원하지 않는다. ③ 통일은 남북간의 합의에 의해 평화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일방적 통일은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민족전체를 생각하는 큰 시각에서, 특히 북한의 불안을 덜어주고, 우리정부가 북한을 봉쇄, 붕괴로 촉진하여 흡수통일을 이루려 한다는 일부의 오해도 씻어내는 동시에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남북기

본합의서의 이행을 대통령 차원에서 촉구하는 것이었다.

네째, '4자회담'의 의의를 재조명하였다.

4자회담은 '평화와 협력'의 정신을 옹기 위한 것이라고 하여 그의 철학적 배경을 설명하였다. 또한 4자회담이 성사되면 북한은 정치적 안정과 군사적 신뢰, 그리고 경제적 실리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과 한반도 뿐만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4자회담임을 강조, 4자회담 제의의 큰 의의를 지적하면서 북측의 호응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다섯째, 북한 식량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식량난은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외부의 일시적 지원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함을 분명히 지적하고, 이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농업생산성 제고 ▷장비대여를 통한 수해복구 등을 예시하며, 남북 농업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① 나진·선봉지역에의 투자 ② 남북교역의 확대를 통해 북한에 필요한 물자공급 ③ 한국 관광객의 북한 방문 허용 용의 등을 예시하여 북한의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치를 구체화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한국관광객의 북한 방문 허용이다. 이는 단기간 내에 북한에 대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 성사를 위해서는 남북 당국간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 이 모든 문제를 4자회담을 통해서 논의될 수 있다는 포용적 입장을 밝혔다.

여섯째, 통일대비 문제를 정식으로 제시하였다.

통일대비를 위해 ① 감상적 통일론이나 일방적 시혜론은 남북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자유민주주의에 도전하는 체제전복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③ 국군통수권자로서 나라와 국민을 지키며, 굳건한 국가안보를 유지할 것이라는 등의 기본적 과제를 먼저 제시하였다.

이어서 통일을 이루기 위한 주요 과제로서 ①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의 국민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② 정치는 국민의 힘을 모으는 전문화·세계화로 발전되어야 한다. ③ 21세기 초까지 경제규모 1조달러, 무역 규모 5천억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경제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④ 변화와 개혁을 꾸준히 추진, 정의와 합리성이 뿌리내려야 한다. ⑤ 세계화를 촉진하여 모든 분야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는 등을 아울러 제시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통일 대비의 사회적 과제도 제시하였다. 변화와 개혁을 꾸준히 추진, 우리사회에 정의와 합리성이 뿌리내리게 해야함과 동시에 세계화를 더욱 촉진하여 모든 분야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함도 강조했다.

이와 같은 대통령의 제51회 8·15경축사에서 우리는 통일문제를 국정 최대과제로 삼아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려는 김영삼대통령의 의지가 구절구절마다 배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가 당장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 새롭고도 의미있는 메시지로 전달되었다는 데서 우리는 남북관계에 새로운 희망을 걸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의 제51주년 광복절 경축사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51주년 광복절 경축사(전문)

친애하는 7천만 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라를 되찾은 지 선한들을 맞아, 민족의 통일과 영광을 다짐하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지켜보는 겨레의 가슴속에서는 식민통치의 압제에서 벗어나 '흙 다시 만져보고 바닷물도 춤을 추던' 그 날의 감격이 물결치고 있습니다.

오직 피와 땀과 눈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지난 반세기의 역정에 대한 긍지가 넘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를 한민족의 위대한 시대로 꽃 피우자는 희망과 용기가 불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맞아 때마다 '나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낍니다.

'나라'가 있기에 우리가 번영을 구가하며 세계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신명을 다 바쳐 조국의 주춧돌을 놓아주신 애국 선열들에게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자유와 번영의 나라를 만든 주역이신 위대한 우리 국민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여러분!

반세기 동안, 우리는 분단의 멍에와 전쟁의 폐허를 딛고 나라 세우기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가혹한 역경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 막았지만, 불굴의 의지로 마침내 오늘의 이 나라를 만들어 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하나로 출발한 한국은 이제 세계 11위의 경제력과 국민소득 1만 달러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쟁취한 민주주의는 국민을 나라의 참다운 주인으로 만들었고, 조국을 세계속에 당당한 나라로 바꾸었습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고 민족사의 정통성을 확립하여 민족의 자존을 한껏 드높였습니다.

남의 도움을 받던 나라로부터 남에게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된 것도 우리의 큰 보람입니다.

열흘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도 우리는 민족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진 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자유와 정의, 평화와 번영의 독립국가를 갈구했던 선열들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반세기, 국민 여러분께서 '한국의 신화'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7천만 동포여러분!

광복 후반세기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오늘, 우리는 광복 100년을 내다보며 새로운 출발을 결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절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미완인 우리의 광복을 진정한 광복으로 완성하자는 것입니다.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선 일류국가, 한민족의 위대한 시대를 우리 손으로 창조하자는 것입니다.

민주와 번영으로 세계를 앞서가는 선진국가, 정신적 가치와 도덕성이 존중되는 문화국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통일국가... 이것이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신화'를 창조한 그 위대한 힘으로 '한민족의 영광'을 반드시 실현할 수 있습니다.

내외 동포 여러분!

이제 우리 민족의 최대 과제는 평화통일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참다운 광복을 완성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평화통일의 첫걸음은 무엇보다 7천만 동포가 하나라는 인식을 함께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한반도의 남쪽만이 아니라 저 북녘, 나아가 세계곳곳 온 겨레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해 1천 9백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쌀을 아무 조건없이 북한에 지원한 것도 북한동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선의가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으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이것은 민족사의 긴 안목으로 보면 획기적인 의의를 갖는 일이 될 것입니다.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요체는 바로 '평화와 협력'입니다.

'평화와 협력'만이 분단의 고통과 비극을 극복하고 통일과 번영의 큰 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저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협력'을 위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첫째, 우리는 북한의 안정을 원합니다.

지금 북한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북한이 안정에 영향을 줄 사태로 비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둘째, 우리는 북한의 고립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온전한 성원이 되어 우리와 함께 민족의 역량을 키우고, 세계에 공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는 일방적인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는 남과 북 상호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평화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남북한은 이미 기본합의서를 통해, 남북한의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서로 교류·협력해 나가기로 세계와 민족 앞에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약속의 이행이 지연되어서는 안됩니다.

저는 이와 같은 기본 정신에 바탕을 두고 남북관계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7천만 동포 여러분!

지난 4월 저와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함께 북한에 4자회담을 제의한 것도 '평화와 협력'의 정신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4자회담에서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관한 광범한 문제가 토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무엇보다 평화체제의 구축문제가 논의될 것입니다.

군사적 신뢰문제도 협의될 것입니다.

그리고 긴장완화 조치의 차원에서 남북 경제협력 문제도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특히 4자회담에서 논의될 경제협력문제에 관해 우리의 생각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식량문제입니다.

북한은 지금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달 집중 폭우로 인한 수해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같은 동족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동포애로써 북한을 도와왔고, 앞으로 국제적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난은 외부의 일시적 지원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식량문제를 보다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용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의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장비대여 등을 통해 수해 농지를 복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나진·선봉지역에 투자하고 남북교역을 확대하여 북한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며, 한국 관광객의 북한방문을 허용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교류는 주로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 질 것이며, 이에 따른 인적·물적 교류의 안전 등을 보장하기 위해 남북 당국자간에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남북한 당국간의 좀 더 의미있고 실질적인 경제협력은 긴장완화와 호혜원칙 아래 대화를 통해 진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북한의 경제문제는 남북한 간의 진정한 협의와 협력을 통해서만 풀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북한을 돕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4자회담이 성사되면 북한은 정치적 안정과 군사적 신뢰 그리고 경제적 실리를 모두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세계 각국이 4자회담을 지지하고 있는 것도 이 회담이 한반도만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북한당국이 그들 자신은 물론 민족의 장래와 동북아의 앞날을 위해서도 4자회담에 호응해 나올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

평화통일은 이제 현실의 과제로 등장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명운은 진적으로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통일에 구체적으로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통일에 대한 우리의 열정이 뜨거울 만큼, 통일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신중해야 합니다.

감상적인 통일론이나 일방적인 시혜론은 남북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의 존립 토대인 자유민주주의에 도전하는 체제전복세력에는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국가안보는 굳건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군의 최고통수권자로서, 막강한 국방력으로 나라와 국민을 확고히 지킬 것입니다.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협조체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확고합니다.

통일조국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통합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의 통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의 정치는 이제 지역이나 파벌에 의한 권력투쟁이 아니라 통합과 조화에 의해 국민의 힘을 모으는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으로 국가를 경영하는 전문화된 정치, 세계를 경영하는 세계화된 정치로 발전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의 경제도 7천만 동포가 다함께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한 단계 더 도약을 이루어야 합니다.

다음 세기 초까지 경제규모를 1조 달러로 키우고, 무역규모도 5천억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최근 우리경제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걱정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근검절약을 통해 가계를 풍요롭게 하고 경제를 회복하는데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우리 사회에서 또한 변화와 개혁의 꾸준한 추진을 통해 정의와 합리성이 뿌리내리게 해야 합니다.

세계화를 더욱 촉진하여 모든 분야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온 국민이 이처럼 일치된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의 통일 역량은 배가되어 통일조국의 모습은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설 것입니다.

7천만 내외 동포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는 신천지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서 인류번영과 세계평화를 앞장서 이끌어야 할 21세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참다운 광복을 위해 어깨를 나란히 하여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세대의 손으로 민족의 통일을 이룩합시다.

세계가 우러러 보는 일류국가를 만들시다.

위대한 한민족의 시대를 창조합시다.

그리하여 선열들이 그렇게도 애타게 희구했던 '한민족의 영광'을 자손만대에 물려줍시다.

감사합니다.

## VI. '제86우성호' 귀환 및 조난 북한인 인도

### 1. '제86우성호' 선원 송환

정부는 지난 1995년 5월 30일 백령도 북서방 25마일 공해상에서 북한 경비정에 의해 총격 납치된 '제86우성호'의 송환을 위해 그동안 다각도의 노력을 해왔다. (※ 「남북대화」 제63호 참조)

이러한 정부의 국내외 송환 노력으로, 북한은 1995년 12월 22일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12월 26일 생존선원 5명과 사망선원 유골 3구를 12월 26일 하오 판문점을 통해 우리측에 송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통일원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비무장 순수 민간어선을 무력에 의해 나포하고, 7개월 동안이나 억류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북한이 늦게나마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나,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로 유가족들에게 대해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발표하였다.

'86우성호' 선원들은 예정대로 12월 26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하였다. 이날 귀환한 '86우성호'선장 김부곤은 남북회담사무국 전방사무소에 마련된 임시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나포 당시 짙은 안개 때문에 앞을 분간할 수 없었다고 말하고, 북한경비정을 '85우성호'로 잘못 알고 접근했다가 북한경비정으로부터 총격을 받아 2명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에 억류 당시 북한당국의 강요에 못이겨 우리 정부를 비방하는 기자회견을 했었다고 밝히고 억류 중 선원 1명이 병사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은 1995년 12월 26일 송환된 '제86우성호' 생존 및 사망선원 명단이다.

- 생존자 : 김부곤(35세), 박재열(45세), 이병소(39세)  
          김우석(37세), 윤경순(32세)
- 사망자 : 신흥광(38세), 심재정(36세), 이일용(30세)

## 2. '제707대영호' 선원 송환 요구

1995년 12월 26일 선원 8명을 태우고 제주도 성산포항을 출항한 '제707대영호'가 1996년 1월 8일 오전 성산포 동남쪽 45마일 해상에 정박중임을 통신보고한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에 대해 1월 13일 제주해경은 조사결과 선원들이 불법적 사건을 일으킨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북한으로 월북한 것 같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사건 후 북한의 '중방'과 '평방'은 1월 28일 대영호의 김책항 도착과 4명의 선원들이 월북 기자회견을 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선원들이 평양시내 김일성동상 등을 참관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정부는 2월 12일 강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로 북한적십자회에 방송통지문을 보내, 인도적 차원에서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선원 4명의 안위를 알려줄 것과 선원 모두가 하루 속히 가족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음은 강영훈 총재 명의로 북한적십자회에 보낸 대북 방송통지문이다.

한적총재 대북 방송통지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지난해 12월 26일 제주도 성산포항을 출항, 조업하다가 금년 1월 8일 실종된 서귀포 선적 '제707 대영호'가 선원 4명에 의해 월북하였다고 귀측 방송이 보도하였습니다.

'제707 대영호'는 성산포항 출항시 8명이 승선하였으나 귀측 보도에 의하면 선장 김정언, 선장 내연의 처 이길심, 기관장 김정현, 선원 고천권 등 4명만 월북한 것으로 발표되고 나머지 고영수, 곽민수, 정학봉, 조수남 등 선원 4명의 행방과 안위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귀측 방송은 이들이 의거 월북하였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들 가족들은 그들이 일시적인 불가피한 사정으로 월북한 것으로 믿고 있으며, 조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인도적 차원에서 귀 적십자회가 행방과 안위가 알려지지 않은 선원 4명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여 우리측에 알려주기를 요청하며, '제707 대영호'선원 모두가 하루라도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기 바랍니다.

1996. 2. 12.

대한적십자사 총재 강영훈

그밖에도 정부는 '제707 대영호' 송환을 위해 1996년 3월 4일 북한의 염분진호 선원 송환시 등 기회있을 때마다 북한측에 이 배 선원들의 송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 3. 북한 '염분진호' 조난선원 구조 및 송환<

북한 석탄화물선 '염분진호'(9,955t)가 1996년 2월 27일 하오, 북한 장전 동쪽 14마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긴급구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우리 해군은 즉시 이들의 구조활동에 들어갔으며, 2월 29일 강원도 강릉 동쪽 1백마일 해상에서 북한선원 2명을 구조하고, 시체 2구를 인양하였다.

이에 정부는 즉각 이들의 송환을 결정하는 한편, 대한적십자사 총재명의로 이들의 송환시기와 장소를 북한적십자회에 알리면서 북측도 억류중인 우리측의 '동진호'와 '대영호' 선원들을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송환해줄 것을 촉구하는 대북전화통지문을 북한적십자회에 발송하였다.

다음은 대한적십자사 강영훈 총재명의로 북한적십자회에 보낸 대북전화통지문이다.

한적총재 대북 전화통지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우리측 관계 당국은 지난 2월 29일 동해상에서 우리측 해군 경비함에 의해 구조된 화물선 염분진호 생존선원 2명을 치료, 보호 중이며 사망자 시신 2구도 안치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적 견지에서 이들을 1996년 3월 5일(화) 오전 11시 판문점을 통해 귀측에 송환하기로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귀측의 상응하는 조치를 바랍니다.

아울러 동진호·대영호 선원 등을 포함하여 귀측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측 인원들도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조속히 송환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1996년 3월 14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강영훈

이와 같은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북한 염분진호 생존선원 2명과 사망선원 시신 2구는 예정대로 1996년 3월 5일 판문점에서 남북적십자사 연락관 접촉을 통해 송환되었다.

#### 4. 북한군인 및 민간인 시신 인도

정부는 1996년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내린 집중폭우로 임진강 상류에서 떠내려 온 북한병사와 서해상에 표류하던 북한의 소형선박 1척과 시신 2구를 인양하였음을 밝히고, 이들의 즉각 송환 방침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총재명의로 대북전화통지문을 보내 송환절차를 알리려 하였으나 북한 적십자회측은 전화통지문 접수를 거부하고, 대남방송을 통해 그들의 송환을 요구하였다.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불손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임진강으로 떠내려 온 북한병사를 7월 29일 판문점에서 송환하고, 서해상으로 떠내려 온 북한민간인 시신 2구는 8월 7일 북한측에 송환하였다.

#### 5. 소설가 김영 송환노력과 우리측 민간인 시신인수

북한은 1996년 8월 5일 '평양방송'을 통해 7월 31일 새벽 북부 국경을 불법침입한 남조선 사람을 단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그가 중국 연변에서 실종된 소설가 김영(필명 김하기)임을 확인하고, 대한적십자사 총재명의로 북한적십자회에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가족에게 보내줄 것을 즉각 요청하였다.

다음은 강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북한적십자회 위원장 대리 이성호에게 보낸 전화통지문이다.

한적총재 대북전화통지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는 지난 7월 31일 소설가 김영(부산예술전문학교 강사)이 귀측 북부 국경을 불법 침입하여 해당기관에서 단속·조사 중이라는 귀측 중앙통신 보도를 접했습니다.

상기 김영은 아버지를 모시고 동생과 함께 중국 길림성 연변지역을 단체관광하던 중 지난 7월 30일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술에 몹시 취한 상태에서 실수로 월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는 본의 아니게 귀측 지역에 들어가게 된 김영이 조속히 그의 가족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귀측이 협조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1996년 8월 5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강영훈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소설가 김영은 1996년 8월 14일 중국을 통해 8월 15일 귀국할 수 있었다.

한편, 북한적십자회는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앞으로 전화통지문을 보내, 8월 9일 서해상에서 발견된 우리측 민간인 시신 1구를 보관하고 있다면서 이의 인도를 위해 쌍방적십자연락관 접촉을 요구하였다.

이에 우리측은 연락관 접촉에 응하는 전화통지문을 북한 적십자회에 보냈으며, 남북적십자사 연락관간의 협의를 거쳐 1996년 8월 12일 우리측 주민 시신(강대회, 1965년생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을 인수, 가족에게 인계하였다.

## 6. 미전향 장기수 문제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성호는 1996년 8월 30일 강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 앞으로 전화통지문을 보내 광주거주 출소공산주의자 김인서를 북한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다.

김인서는 우리 정부가 누차 밝힌 바와 같이 6·25전쟁 중 북한 정치공작사업을 담당한 정치공작 대원으로 남파되어 전라남도 장흥지구 유격대 사령부 참모와 노동당전남당학교 간부로 활동하다가 정규군 대열에서 이탈, 게릴라 활동을 하던 중 체포되어, 1952년 4월 '비상사태 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등을 위반하여 27년을 복역하다가 출소한 사람이다.

그는 이와 같은 전력 때문에 '제네바협약'에 규정된 포로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았고, '육전법 및 관습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범죄인으로 분류되어 휴전협정 발효 이후 시행된 포로송환에서도 제외되었다.

또한, 그는 스스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명백한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북한측은 어떠한 경우를 들어서라도 송환을 요구할 명분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하여 1996년 9월 3일 대한적십자사총재명의로 북한적십자회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우리측의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1993년 9월 19일 미전향장기수 이인모를 인도적 견지에서 북한에 보낸 이후 북측이 그를 정치적 선전에 이용해 오고 있는 사실을 환기시키면서, 이산가족 재회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사 총재 또는 부총재회담을 제의한 우리측 제안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

다음은 강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명의로 북한적십자회에 보낸 전화통지문이다.

한적총재 대북 전화통지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성호 귀하

귀하의 8. 30.자 전화통지문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미 여러 차례 김인서 노인의 송환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측의 입장을 귀측에 분명히 밝혀 왔습니다.

귀측은 김인서 노인이 거동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와병중이라고 하였으나, 김노인은 지금 광주 시 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빛고을 탕제원’에서 침술 등 한방치료를 받아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측은 지난 1993년 이인모 노인을 아무런 전제조건없이 귀측에 돌려보내는 등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인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귀측이 이를 정치선전에 이용해 온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따라서 나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이산가족재회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본인이 지난 8. 12.제의한 쌍방 적십자단체의 총재 또는 부총재(위원장 또는 부위원장)회담에 지체없이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합니다.

1996년 9월 2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강영훈

그러나 이와 같은 우리측의 입장에 대해 북한적십자회는 일언반구의 반응도 보이지 않고, 1993년 9월 3일 또다시 소위 ‘남조선의 비전향장기수 구원대책조선위’라는 단체이름으로 북한측 의료진과 김인서의 두 딸을 우리측에 파견하여 김인서를 간호하겠다고면서 북측인원의 신변안전과 편의의 보장을 요구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북한측의 이러한 주장은 남북간의 이산가족문제 등 많은 인도적 문제를 외면한 정치적 선전선동에 불과할 것이다. 이에 우리측은 또다시 강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명의로 북한적십자회측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김인서의 생활상태와 함께 남북간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조건없이 개최할 것을 재 촉구하였다.

다음은 1996년 9월 17일 자로 북한적십자회에 보낸 대한적십자사 강영훈 총재명의로의 전화통지문이다.

한적총재 대북전화통지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성호 귀하

나는 이미 여러 차례 김인서 노인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측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귀측이 9월 16일 또다시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김인서 노인은 한 때 하반신 마비증세가 있었으나 매우 빠른 속도로 치유되어 현재 일상생활에 지장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본인은 지난 8월 12일자 성명과 9월 2일자 전통문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남북간 인도주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적십자회담을 조건없이 개최할 것을 거듭 제의하면서 우리의 이러한 입장은 확고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1996년 9월 17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강영훈

지금도 북한에는 우리측의 동진호 선원을 비롯하며 민간여객기 승무원 등 강제 납치된 400여명이 억류되어 있다. 또한 남북으로 흩어져 생사조차 모르고 지내는 1천만 이산가족들이 있다. 북한은 이들의 고통을 인도적 견지에서 해결해 주자는 우리측의 제의를 철저히 외면하면서도 게릴라 활동으로 장기복역하고 출소하여 스스로 대한민국 국민이 된 자를 송환하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우리는 북한이 이러한 기만적인 인도주의에서 벗어나 적십자정신과 동포애적 견지로 돌아가 대한적십자사가 제의한 남북적십자회담에 하루 속히 응해 나오기를 기대한다.

부록

□남북관계일지(1995. 12. 6~1996. 10. 31.)

1995년 12월

- 12. 16. KEDO 3차 경수로부지조사단, 평양도착
- 12. 16. 북한외교부 대변인, 경수로제공 협정체결 관련 기자회견

-미국과 KEDO가, 합의된 ‘동시이행 원칙’에 따라 경수로 대상 실현을 일정대로 추진시켜 나가면, 그에 맞물려진 우리의 핵동결 의무도 계속 이행해 나갈 것임.

- 12. 18. 미국 ‘프리덤하우스’, 북한 인권 최하등급 평가
- 12. 19. 세계식량계획(WFP), 대북수해지원 평양사무소 폐쇄
- 12. 22. 통일원 대변인, 북한 ‘제86우성호’ 선원 송환 발표 관련 성명 발표

-민간어선을 강제 납치하고,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임.

- 12. 23. 북한군 하전사 최광혁(25세) 귀순
- 12. 24. 김수환 추기경 등 종교계 지도자 33명, 북한 돕기 호소 대국민 성명 발표
- 12. 25. 중통, 김정일 정책담화 보도

-사회주의 이념의 수정론자들과 경제개혁론자들이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있으며, 마르크시즘과 혁명선배들의 전통을 굳게 지킬 것을 촉구함.

- 12. 26. 남북 ‘86우성호’ (5. 30. 나포) 선원 판문점 통해 귀환
- 12. 28. FAO·WFP, 북한 어린이 210만명 기아직면 공동성명
- 12. 30. 공로명 외무장관, 대북쌀 추가지원 조건 제시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한 사실조사가 선행되고, 지원되는 식량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는다는 조건이 충족되면 북한에 쌀을 제공할 수 있음.

1996년 1월

- 1. 3. IOC, 북한의 애틀랜타 올림픽 참가 공식 확인
- 1. 4. 손학규 신한국당 대변인, ‘선 북한의 태도변화, 후 쌀지원’ 방침 표명
- 1. 5. KEDO-한전, 대북경수로건설 상업용역 계약 체결
- 1. 9. 김영삼 대통령, 새해 국정운영에 관한 담화

-북한이 동족을 위협하는 군사력 유지에 모든 국력을 쏟아 넣으면서 국제사회의 구호를 바라는 것은 민족에 대한 배신이며 최악임.

-북한은 화해와 협력이라는 세계적인 추세를 직시하고, 대남자세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강력히 촉구함.

1. 9. 노로타 일본 농산상, 대북 쌀 추가지원 전제조건 제시

-대북 추가 쌀지원을 위해서는 북한의 정확한 배분 상황을 일본에 알려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

-1. 11. 미·북 미군 유해 협상(하와이)

~13.

1. 15. 미 국무부, 미·북 유해협상 결렬 성명

1. 15. 김 콜스 주한 미8군 대변인, 미군포로 북한 생존 부인

1. 16. 귀순, 최수봉·유세도 서울 도착

1. 16. 제4차 KEDO 경수로 부지조사단 평양도착 및 제3차 조사단 평양 출발

1. 19. 국제축구연맹(FIFA), 대한축구협회에 북한의 월드컵 공동개최 제의 관련 통보

-북한 만경대구역 축구협회가 FIFA에 두 차례의 전문을 보내 2002년 월드컵 남북한 공동개최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실무적인 조언을 요청

1. 20.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회장, 북한의 월드컵 공동개최 제의 환영 기자회견(LA).

1. 25. 이수성 총리, 임시국회 국정보고.

-북한이 ▷대남비방 중지 ▷공식적 요청 ▷당사자간의 협의 등 기본조건이 충족될 경우, 쌀지원 등 대북 협력이 가능할 것임.

1. 29. 유엔, 국제기구 등의 대북식량지원 2,800만 불 발표

1. 30. IAEA 대변인, 북한이 주요 핵시설에 대한 사찰 여전히 거부 언급

1. 30. 귀순, 북한 외교관 현성일(37세) 서울 도착

1. 30. 안기부 북한주민 4명 귀순발표

1996년 2월

2. 1. 권오기 통일부총리, 기자회견에서 이산가족 상봉 최우선 추진 언급

-남북회담이 열리면, 최우선적으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문제가 실현되도록 힘 쓸 것임.

2. 2. 김운용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북한체육인 서울 방문 초청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6차 세계생활체육총회(1996. 4. 21~24. 워커히호텔)에 북한 체육



위원장 박명철 초청

- 2. 2. 이성대 북한 대외경제위원장, 일본에 식량추가지원 요청
- 2. 8. 미 NYT지, 북한 식량지원 중단 요청 보도

-북한의 외교부 부부장 최수현은 지난 2. 2. 국제구호단들에게 식량지원 활동의 중단을 요청하였음.

-이 같은 북한 정책의 변화는 식량지원에 대하여 북한군부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임.

- 2. 12. 북한 유엔 대표부 국제 쌀지원 선별 수용 방침 발표
- 2. 12. 강영훈, 한적 총재, '제707 대영호' 선원 송환 요구 대북 방송통지문 발송
- 2. 13. 북한, 애틀란타 올림픽 아시아지역 탁구예선 참가 신청
- 2. 14. 국방부, 1996 T/S 훈련중지 발표
- 2. 15. 러시아 정부 대변인,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 북한무장 망명 병사(25세, 정치범 수용소 경비병) 자살 발표(2. 15.)
- 2. 15. 북한 '중통', 성혜림 망명설 관련 대남 보복 경고
- 2. 22. 존 도이치 미 CIA 국장, 북한 붕괴 가능성 발언
- 2. 22. 북한 외교부 대변인, 평화보장체계 수립관련 담화발표

-▷조·미 사이에 잠정협정 체결 ▷조·미 공동군사기구 조직·운영

- 2. 23. 통일원 대변인, 북한 잠정협정체결 대미제의 관련 논평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에 따라 현정전상태가 남북한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될 때까지 현정전협정을 준수하고, 군사정전위원회에 하루 속히 복귀해야 할 것임.

- 2. 23. 니콜컬리스 번스 미 국무부 대변인, 북한의 잠정협정 제의관련 언론 발표

-미국은 북한과의 어떠한 협정체결도 고려하지 않고 있음.

- 2. 25. KEDO 제4차 부지조사단 실포 방문 후 귀환(1. 16~2. 25.)
- 2. 26. EU, KEDO에 625만 불 지원 결의(브뤼셀)
- 2. 27. 남북종교인 대회에서 '남북종교인회의' 정례화 개최 잠정합의 ~28.
- 2. 29. 국방부, 북한 선원 2명 구조 및 시신 2구 인양(염분진호)발표

1996년 3월

- 3. 1. 이성호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위원장 대리, 염분진호 선원 송환 요청 대남전통문
- 3. 2. 한적, 북한 화물선 염분진호 구조선원 조속 송환 방침 표명

- 3. 4. 일본, 표류 중 구조(2. 22.)된 북한 어부 4명 송환
- 3. 5. 북한 화물선 염분진호 선원 2명, 시신 2구 판문점을 통해 송환
- 3. 5. 외무부 대변인, 미국이 북한을 여행경고국 지정에서 해제한 사실을 확인
- 3. 6. 미국무부, 북한 인권상황 최악 상태 지속 평가(연례세계인권보고서)
- 3. 8.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평화보장체계 수립 관련 비망록 발표
- 3. 11. 싱가포르 통상 대표단, 대북경협 논의차 방북
- 3. 12. 김영삼 대통령, 탈북자 700여명 입국희망, 선별수용 언급
- 3. 12. 이삼로 태국주재 북한대사, “북·미 평화회담 성사 때 한국 옹저버자격 참가 검토” 발언
- 3. 15. 북한 올림픽위원회 전무이사 장웅, 남북한 월드컵 공동개최안 부정
- 3. 16. 박길연 주유엔 북한 대표부 대사 경질, 후임에 김형우 외교부 부부장 내정
- 3. 18. KEDO 집행이사회, 경수로 사업 주계약자로 ‘한전’ 공식 지정
- 3. 20. 공로명 외무부 장관, 중국 錢其·외교부장과 회담(북경)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잠정협정은 실현성이 없으며, 한반도의 정전체제는 유효하다는 데 합의

- 3. 20. 전금철 북경접촉 북측단장, 제4차 북경접촉 3. 27. 개최 제의 대남전문
- 3. 20. KEDO-한전, 주계약자 합의서에 서명(뉴욕)
- 3. 20. WFP, 대북 쌀 수송선 중국선적 ‘청다호’ (2,819톤), 대만해협에서 침몰 발표
- 3. 26. KEDO 총장단 6명 방북
- 3. 29. 김광진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비무장지대에서의 모종조치위협 대남담화

-우리의 평화보장체 제안마저 거부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대화의 방법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줌

-우리의 대응책에는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의 지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 상황에 따르는 조치들이 포함될 것임.

- 3. 29. 카리신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북한 김광진 차수 담화관련,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은 새로운 협정이 마련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고 논평
- 3. 30. 국방부, 북한 김광진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담화관련 성명 발표

-북한이 자신의 체제 내부분제를 호도하기 위해 무모한 도발을 자행할 경우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

- 3. 30. 니컬러스 번스 미국무부 대변인, 북한 김광진 차수 담화 관련 발언

-한반도 현재 상황은 안정되어 있으며 정전체제는 계속 유지되어야 함.

1996년 4월

- 4. 4.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 ‘DMZ 불인정’ 담화 발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유지 및 관리와 관련한 임무를 포기 ▷관문점 공동경비 구역  
과 비무장지대 출입 북한측 인원·차량들에 식별표지는 착용하지 않도록 함.

4. 5. 전금철 남북 북경접촉 북측단장, 대남 FAX문 발송보도

-남북이 진실로 서로 마주앉을 의사가 있다면, 모든 부당한 주장(▷대남비방 중상 중지,  
▷한반도내 당국간 회담 개최)들을 철회하고, 무조건 4차 북경접촉에 나와야 함.

4. 5. 통일원 대변인, 북측의 대남전문 관련 기자브리핑

-앞으로의 남북회담은 한반도 내에서 공식적인 당국회담으로 열려야 하며, 대남비방 중상  
중지 등 기존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거듭 밝힘.

4. 5. 국방부, 북한의 DMZ 불인정 관련 성명

-현정전협정은 일방적으로 폐기 또는 수정될 수 없으며, 남북한 합의를 통하여 항구적 평  
화체제로 전환될 때까지는 엄수되어야 함을 재차 분명히 함.

4. 5. 파노프 러시아 외무차관, 기존의 정전체제 유지 발언

-남북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새로운 체제가 성립될 때까지 현정전체제가 유지되어야 함.

4. 5. 북한군, 1개 중대 관문점 공동경비구역 1차 진입(18시경 진입, 20:30경 철수)

4. 6. 북한군, 260여명 관문점 공동경비구역 2차 진입(19시경 진입, 22:20경 철수)

4. 6. 김영삼 대통령, 북한의 DMZ 도발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

4. 7. 북한군, 230여명 관문점 공동경비구역 3차 진입(20:07 진입, 22:35 철수)

4. 9. 유엔안보리, 북한 도발 관련 긴급의제 채택

4. 9. 진건 중국 외교부 대변인, 휴전협정 유효 표명

4. 9. 타노프 미국무차관, 남북 당사자 원칙 준수 강조

4. 11. 유엔안보리, 북한의 DMZ 도발관련 '의장 언론 발표문' 채택

4. 15. 파노프 리 외무차관, 한반도 주변국 8자 회담 개최 제안

4. 16. 한·미 제주 정상 회담에서 '4자 회담' 제의

-한국·북한·미국·중국 대표간의 4자 회담을 아무런 전제조건없이 조속히 개최할 것을  
제의

4. 16. 손성필 주러북한대사, '4자회담' 제의 관련 거부 표명

4. 16. 이삼로 주태국북한대사, 정전협정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인 만큼, 정전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회담도 북-미간에 열려야 함을 주장

4. 16. 하시모토 일본총리, '4자회담' 제의 지지 표명

4. 17. 심국방 중국 외교부 대변인, '4자회담'관련 발언

-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4자회담 제의 관련, 중국은 적극적 역할을 할 것임.

4. 18. 북한 외교부 대변인, 4자회담 관련 기자회견

- 4자회담 제안이 당사자들 사이에 진정한 평화협정을 맺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아직 알 수 없음.

4. 18. 통일원 대변인, 북측의 4자회담 반응 관련 논평

- 우리는 북한측이 4자회담 제의에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하며, 북한의 태도를 지켜 볼 것임.

4. 18. 세계식량계획(WFP), 2차 대북 지원쌀 8,265톤 남포항 도착 발표

4. 19. 북한 경비정 2척, 서해 북방한계선(NLL)침범

4. 20. 국방부, 북한 해군 경비정 2척 서해 경계선 침범 발표

4. 20. 미·북 베를린 미사일 회담 제1차 회의 종료

4. 22. 북한 김정우 대외경제위원장 워싱턴에서 >주체경제노선의 획기적 정책전환>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적극적 침투>자본주의 사업방식 도입 발언

4. 26.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남북한 '대학총장회담'개최 제의

4. 27. 통일원, >삼성전자>태창>대우전자 3개업체에 대북 '협력사업자' 승인

4. 27. 제5차 KEDO 경수로 부지조사단 방북, 귀환  
~5. 7.

4. 29. 대우, 북한 남포공장에 첫 합영공장 설립 발표

4. 29. 북한, 대만에 여행사 개설

1996년 5월

5. 1. 미 국무부, 북한 테러 활동 지원국 발표

5. 1. 매커리 미 백악관 대변인, 북한 핵연료봉 봉인착수 발표

5. 4. 미·북, 뉴욕에서 제2차 유해 협상 개최

5. 6. 공로명 외무장관, 러시아에 4자회담 협조 요청

5. 7. 니컬러스 번스 미 국무부 대변인, 북한이 4자회담 관련, 추가회동을 요청하거나, 추가 정보를 원할 경우 기꺼이 제공할 것임을 언급

5. 7. 북한 외교부 대변인, 미국에 4자회담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

5. 9. 미 국방부, 미·북 유해협상 합의문 발표

- 미국은 미군유해 발굴과 관련하여 북한에 2백만 달러를 지불함.

5. 11. 레이니 주한 미 대사 「Asia Society」 7차총회에서 "4자회담에서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지하는 차원을 넘어 긍정적 관계의 틀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

5. 13. 한·미·일, 제주에서 고위정책협의회 개최

~14.

5. 13. LG그룹, 대북 임가공 컬러TV 첫 반입

5. 13. WFP·FAO, 북한 식량난 관련 성명

- 북한의 지난해 수확량은 거의 소비되었으며 식량재고가 심각하게 낮은 수준임. 이는 북한 전역에서 광범위한 식량부족 사태를 의미하며, 식량난은 1997년까지 이어질 것임.

5. 14. 한·미·일 제주고위정책협의회 공동언론발표문 발표

- 북한이 4자회담에 호응해 오는 경우, 식량문제도 토의될 수 있다는 데 의견 일치
- 3국은 4자회담 성사를 위해 별도의 대북 유도책 고려하지 않고 있음.

5. 16. 크리스토퍼 미 국무장관, 4자회담 관련 발언

- 북한이 더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고, 이 제의에 진지한 관심을 보임으로써, 우리는 이를 일부진전으로 평가함.
- 중국도 4자회담을 합리적 제안으로 생각하며, 북한 참여시 중국도 참여할 것임을 시사함.

5. 17. 김영삼 대통령, 월드컵 남북 분산개최 거듭 표명

- 한국이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유치하면, 북한에서도 일부경기를 하도록 할 것임.

5. 17. 국방부, 무장 북한군 중부전선 군사분계선 침범 발표

5. 18. 국방부 대변인, 무장 북한군 침범 관련 성명

- 북한군의 이번 도발 행위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중무장 투입(4. 5~7.), 중동부 전선 군사분계선 월선(4.11.)에 이어 자행된 정진협정 위반임.

5. 20. 주한 유엔사, 유해발굴비 200만불 대북전달

5. 20. 강석주 북한 외교부 제1부부장, 4자회담 관련 발언

- 4자회담은 아직 검토 중으로 미국의 설명을 기다리고 있으며, 수용할 수 있으면 받아들일 것임.
- 일본측이 북한의 4자회담 대응을 지켜보면서 일·북 수교 협상방안을 결정하겠다고 한 것을 이해할 수 없음.

- 5. 20. 주한 유엔사, 판문점에서 북한군 월선 항의문 대북전달
- 5. 23. 북한 공군 이철수 대위(30세) 망명
- 5. 26. 리처드슨 미 하원의원 일행 평양도착
- 5. 27. 러시아 연해주 지사, "북한 탈출자 3명중 1명이 북한에 인도되자 즉각사살 당했다."고 밝힘.
- 5. 29. 이인모 신병치료차 방미, 귀환  
~6. 29.
- 5. 29. 주스웨덴 북한 대사 김홍립, 대미 4자회담 설명 요구
- 5. 31. 북한 과학자 정갑렬 등 2명 한국 귀순 발표

1996년 6월

- 6. 6. 유엔 인도지원사무국(DHA), 대북 2차 지원 4,300만불로 확정
- 6. 7. 귀순 정갑렬·장해성 기자회견
- 6. 8. 미군유해 발굴문제 협의차 미국 실무대표단 평양 도착
- 6. 10. 미·북 미군유해 발굴 관련 합의서 채택(평양)  
~14.
- 6. 11. 일본 정부, 대북 식량난 관련 6백만 불 지원 잠정결정
- 6. 11. 권오기 통일부총리, 대북식량지원 관련 발표
  - 지원규모는 300만 불, 지원품목은 배합분말 및 분유
- 6. 12. 유엔인도지원국(DHA), 북한 식량난 실태보고서 발표
  - 북한은 8개 도 145개 군에 걸쳐 520여 만명이 홍수피해를 입었음.
  - 현최소배급량을 기준으로 추수기인 1996년 9월 말까지 47만 톤의 곡물지원이 더 필요함.
- 6. 12. 니컬러스 번스 미 국무부 대변인, 북한 식량난 관련 620만 불 지원결정 발표
- 6. 14. 국방부, 북한 경비정 3척 서해 연평도 서남쪽 북방한계선 침범발표
- 6. 14. KEDO-북한, 뉴욕에서 대북경수로 통행·통신의정서 가서명
- 6. 14. 한적, 제5차 대북수재민 지원계획(6월 중 밀가루 572톤)발표
- 6. 14. 레이니 주한미대사, 북한 냉해보험금 관련 발언
  - 북한의 1994 홍작에 대한 보험금이 1억 3천만 불로 알려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1,300만 불임.
- 6. 17. 북한·중국, 원정-권하 무비자 통행 합의
- 6. 17. 유엔군축회의, 남북한 동시가입 승인(체네바)
- 6. 21. 북한 고위대표단 이성록 등 6명 대만 방문
- 6. 24. 귀순 이철수 대위, 러시아의 위성자료 대북제공 언급

- 6. 25. 제5차 IAEA 협상대표단 평양도착
- 6. 26. 북한 외교부 대변인, 유엔군사령부 해체관련 비망록 발표
- 6. 28. KEDO, 대북협상 발표

- KEDO와 북한은 7. 20.부터 묘향산에서 경수로 지원관련 2개의 의정서(▷부지인수·부지접근 및 부지사용에 관한 의정서, ▷북한의 인력·물자 등 북측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의정서) 협상을 개최키로 합의하였음.

- 6. 29. G7 정상회담, 4자회담지지 의장 성명(프랑스 리용)

1996년 7월

- 7. 3. 문화체육부, 남북한어문규범 학술회의(8. 5~9.)개최발표
- 7. 3. 국방부, 6·25당시 실종·포로 2만여 명으로 추정 집계
- 7. 3. KEDO, 제6차 부지조사단 방북발표

- 분야별 전문가 13명 등 20명의 제6차 대북경수로 부지조사단이 함남 신포지역(7. 4~30.)을 방문함.

- 7. 4. 정부, 한총련 및 재야인사 김일성 2주기 조문단 출국 금지조치
- 7. 5. 안기부, 북한 서해안 일대와 양강도에 콜레라 수백명 감염 발표
- 7. 6.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민하 중앙대 총장), 남북대학 총장회담 추진 결의
- 7. 11. KEDO-북한, 경수로 공급협정 이행을 위한 3개 부속의정서에 공식 서명
- 7. 11. 북한 주민 최승찬(29세)귀순
- 7. 14.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 부위원장 김정우, 나진·선봉지구 투자유치차 방일 기자회견
- 7. 15.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 부위원장 김정우 도쿄에서 투자설명회
- 7. 19. 통일원, '한전'에 대해 경수로사업관련 '협력사업자'승인
- 7. 20. KEDO 의정서 협상실무대표단 평양 도착
- 7. 24. 니컬러스 번스 미 국무부 대변인, 4자회담 관련, 미·북 실무접촉 사실 확인
- 7. 25.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 대미 장성급 회담개최 제의
- 7. 25. 북한 중앙인민위, '휴전협정일'을 국가적 명절로 제정
- 7. 27. 북적 위원장 대리 이성호, 북한군 김영길 송환요구 대남전통문
- 7. 29. 통일원 대변인, 나진·선봉 국제투자포럼 관련 기자회견

- 정부는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및 유엔개발계획(UNDP) 후원 하에 개최되는 나진·선봉 국제투자포럼(9. 13~15.)에 우리기업인, 정부관계자 및 언론인이 참가토록할 방침임.

- 7. 30. 소설가 김영(38세, 필명 김하기), 중국 연길에서 실종
- 7. 31. 김영삼 대통령, 북한 4자회담 수용시 대북경제지원 협력 표명

1996년 8월

8. 1. 한적 총재, 북한 선박·시신 송환관련 대북전통문

8. 1. 국방부, 북한군 시신 2구 송환계획 발표

8. 2.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최근 북한과의 합의결과 발표

- 북한은 12월부터 한국을 포함한 외국항공사들에게 북한 영공을 개방할 것임.

8. 2. 제프리 테니스 주북한 국적(IFRC)대표, 북한 호우로 47명 사망 언급

8. 5. 북한 '중통', 중국에서 실종된 소설가 김영 '조사중' 보도

8. 5. 강영훈 한적 총재, 김영 송환 요청 대북전통문

8. 6. 북한 민간인 시신송환 관련, 남북적십자 연락관 접촉

8. 7. 북한 군인, 민간인 시신 4구 판문점을 통해 송환

8. 7. 국방부·한미연합사, 을지포커스 훈련(8. 19~30.)실시 발표

8. 7. 국립국어연구원, '한국어 언어학자 국제학술회의'(8. 5~7.)결과 발표(남북한·중국측 참가)

- 남북한은 앞으로 어문규범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았음.

8. 10. 북한 적십자회 위원장 대리 이성호, 남측 민간인 시신(강대회) 1구 보관 관련 대남방송 통지문

8. 10. 북한 중앙·평방, '한총련'대표(유세홍·도종화)평양 도착 보도

8. 10. 북한, 김유순(64세)병사 발표

8. 12. 강영훈 한적총재, 북한 보관 남한 시신 인수관련 대북전통문

8. 12. 통일원 대변인, 나진·선봉 투자설명회 참가 관련 기자 브리핑

- 전체 참가규모는 49명이며, 북한이 발급하는 초청장 접수 및 방북승인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임.

8. 12. 강영훈 한적총재, 남북적십자회담 재개 대북제의

8. 13. 이성호 북적 위원장 대리, 김영(필명 김하기) 송환통보 대남전통문

8. 14. 북한, 김영 중국측에 인도

8. 15. 김영삼 대통령, 8·15 경축사에서 4자회담 실천방안 구체화 제시

8. 16. 북한군 하사 장철봉(23세) 귀순

8. 17. 입북 김영 중국 경유 귀환

8. 20. 대북식량지원 미국 선박 쌀 3천톤 외 옥수수, 식품 등을 싣고 첫 방북

8. 25. 중국, 안승운 목사 납치범 이경춘(41, 북한인) 2년형 선고 사실, 우리측에 통보

8. 28. 북·일 수교 교섭 관련 실무접촉 재개(북경)

~29.

8. 30. 글렌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변인 '3자회담설'관련 입장 표명



- 북한의 3자회담 제의설 관련,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4자회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변함이 없음.

8. 30. 이성호 북한 적십자회 위원장 대리, 김인서 송환 요구 대남 전화통지문

1996년 9월

- 9. 2. 강영훈 한적총재, 북한의 김인서 송환 요구에 대한 대북 전화 통지문
- 9. 8. 통일원 대변인, 나진·선봉 투자포럼 참가문제 UNDP에 협조 요청 언급
- 9. 9. 한적, 제8차 대북 구호밀가루 220톤 지원
- 9. 10. KEDO 제2차 정기총회 개막(뉴욕)  
~12
- 9. 10. 통일원, 나진·선봉 투자 포럼 불참 발표

- 북한측은 우리측의 53명의 참가 신청에 대해 아무런 설명 없이 기업인 25명만을 자의적으로 선별함.

-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행위를 수락할 수 없으며, 이번 설명회에 참가단을 파견않기로 결정하였음.

- 9. 10. 유엔총회,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채택
- 9. 11. 국적(IFRC), 북한 수해 상황보고서 공개
- 9. 13 나진·선봉 국제 투자 및 기업토론회 개최  
~14.
- 9. 15. 통일원 대변인, 안승운 강제 납치범 유죄 판결 관련, 대북성명
- 9. 16. 이성호 북적 위원장 대리, 김인서 송환 재요청 대남전통문
- 9. 16. 북한 여객기 마카오 첫 취항
- 9. 17. 강영훈 한적총재, 김인서 문제 관련 대북전통문
- 9. 17. 제6차 미-북 전문가 협상 미국대표단(폐연료 처리 전문가)평양도착
- 9. 18. 국방부 대변인, 북한 잠수정 동해 침투(8. 18.)관련 성명 발표
- 9. 19 유엔사, 북한의 무장간첩 침투에 항의 대북통지문(북한측 접수거부)
- 9. 20. 유엔안보리, 북한 무장잠수함 침투관련 의장성명 채택

- 북한의 잠수함 이용 무장공비 침투사건은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 9. 20. IAEA, 북한 과거핵규명 촉구 결의안 채택
- 9. 23. 국회, 북한 경수로 무장공비 침투관련 대북결의안 채택
- 9. 23. 북한 인민무력부 대변인 담화, 훈련중 표류하다 좌초된 잠수함 및 승조원들을 즉시 돌려보내달라고 요구
- 9. 23. 국방부, 북측의 잠수함 침투인원 송환요구 관련 성명

- 북한이 도발사건 발생 6일이 지나서야 '정상적 훈련' 운운하면서 송환을 요구한 것은 내외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대북 규탄여론을 희석시켜 보려는 기만책략임.
9. 23. KEDO-북한, 부지 인수 및 서비스 의정서 2차협상 중단(뉴욕)
9. 24. 클린턴 미국 대통령 제51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도발적 행위' 발언
-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와 같은 도발행위가 일어난 상황에서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영구적 평화를 추구해야 함.
9. 24. 글렌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변인, T/S 훈련 재개 용의 언급
- 이번 잠수함 침투사건은 중요한 사건이며 우리는 T/S 훈련 재개를 배제하지 않음.
9. 25. 북한 적십자 대변인, 안승운 목사 납북문제 관련 성명
- 안승운 목사는 그 누구의 강요와 납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 넘어온 사람임.
9. 26. 공로명 외무장관 제51차 유엔총회에서 연설
- 최근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는 우리의 영해에 대한 심각한 침범행위이며, 정진협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임.
  - 북한은 4자회담을 수락함으로써,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협상에 임해 올 것을 재 촉구함.
9. 26. 최수현 북한 외교부 부부장 제51차 유엔총회에서 연설 (뉴욕)
- 우리는 1994. 4. 선반도에서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할데 대한 제안과 1996. 2. 에는 구체적 조치로서 조·미간 잠정협정을 체결할 데 대한 제안을 내놓았음.
9. 26. '조평통 서기국' 대변인 김인서 송환 거부관련 성명
9. 27. 북한 중앙통신사, 무장공비 침투관련 성명
- 우리는 피해자로서 가해자에게 보복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천배의 것으로도 될 수 있음.

1996년 10월

- 9. 30. 권오기 통일부총리, 국정감사에서 대북 경수로 의정서 가서명 유보 언급
- 10. 1.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T/S훈련 재개 방침 표명
- 10. 1. 최덕근 주브라디보스토크 영사 피살
- 10. 6. 북한 '중통', 미국인 에반 헨지크 간첩혐의 체포 보도
- 10. 9. 니컬러스 번스 미 국무부 대변인, 북한 헨지크 체포관련 발언
  - 미 국무부는 이 문제 관련 주유엔북한대표부와 수차례 접촉을 가졌으며, 즉시 석방을 요구하였음.
  - 북한이 8월말 체포하고도 최근 발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과 관련 다른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이는 일은 없을 것임.
- 10. 10. 김영삼 대통령, 무장간첩 민간인 3명 살해 대북 응징경고
- 10. 10. 심국방 중국 외교부대변인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 관련 논평
  - 남북한 양측은 한반도의 평화 및 안정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중국은 한반도 정세에 깊은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음.
- 10. 12. 국회, 북한 무장공비 침투 및 보복협박 관련 2차 대북 결의안 채택
- 10. 12. 공로명 외무장관·윈스턴 로드 미 국무부 차관보, 북한 무장공비 침투 대응방안 논의
  - 양측은 최근 북한의 침투 및 대남 보복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연합방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 양측은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대화 재개 및 미-북 제네바 합의를 이행하고, 4자회담 수락을 계속 촉구키로함.
- 10. 12. 북한 '조국전선', 잠수함 및 승무원 송환요구 성명
- 10. 13. 남북한 학자 학술회의 개막(북경)
- 10. 15. 중국, 대북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에 동의
- 10. 15. UN안보리, 북한 잠수함 침투관련 의장성명 채택
- 10. 17. 니컬러스 번스 미 국무부 대변인, '노동1호' 발사 대북 경고
- 10. 18. 권오기 통일부총리, 북한의 분명한 태도변화가 있을 때까지 일방적 시혜나 교섭에 의하지 않는 대북 지원을 재고하겠다고 언급
- 10. 21. 김영삼 대통령, 제181회 정기국회 시정연설에서 무장 공비 침투 사과 및 재발방지 조치 대북 촉구
- 10. 21. 두만강개발계획 5개국위 제2차회의 개막(북경)
- 10. 25. 크리스토퍼 미 국무장관, 북한 핵동결 파기 군사대응경고
- 10. 29. 생포 무장간첩 이광수(31세)기자회견

- 북한은 대남 침투용으로 80여명이 승선하는 1천톤급의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으며, 무력통일에 관한 교양을 강화하고 있음.

10. 29. 유엔총회, 핵안전협정 이행촉구 대북 결의안 채택

- 핵안전협정 이행관련 모든 정보를 IAEA에 제공하는 등 성실하게 협력할 것을 북한에게 촉구함.

10. 30. ESCAP각료회의, 남북한 철도복원 노력키로 합의(뉴델리)

10. 30. 민트 미 국무부 한국과장 · 북한외교부 이형철 미주국장 쌍방 현안합의 2차 실무접촉

# **남북대화 제65호**

(1996. 12. ~ 1998. 3)

# < 목 차 >

I.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의 추진 .....	3
1. 4자 회담 제의 이후 공동설명회 성립 경위 .....	3
2. 회담별 진행경과 .....	5
II. 대북 구호물자 전달을 위한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	17
1. 배경 .....	17
2. 대표접촉 진행경과 .....	19
3. 한적을 통한 대북 구호물자 전달경과 .....	33
III. 대북 경수로 지원 활동 .....	35
1. 배경 .....	35
2. KEDO - 북한간 후속의정서 협상 .....	37
3. 부지준비공사 착공 .....	64
부록 .....	73
□남북관계일지(1996.11~1997.12) .....	73

## I.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의 추진

### 1. 4자 회담 제의 이후 공동설명회 성립 경위

1996년 4월 16일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과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을 제의한 이후 북한 외교부 대변인은 5월 7일 북한중앙통신(KCNA)과의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미국이 내놓은 제안의 취지, 목적, 현실성 등을 따져 보기 위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것을 즉시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그에 대한 설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고 주장하고 "미국측으로부터 설명이 있기를 좀 더 기다려 보고자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 번스 대변인은 5월 7일 브리핑을 통해 "북한측이 4자회담 관련 추가 회동을 원하거나 추가 정보를 원할 경우 기꺼이 제공할 것"이라고 논평하였다.

이와 관련, 한국정부도 "북한측이 4자회담에 대해 설명을 원한다면 한·미가 공동으로 설명해 줄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5월 14일 제주에서 개최된 「한·미·일 고위급협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4자회담을 수락토록 하는 설득작업의 일환으로 한·미가 공동참여하는 설명회 개최를 북한에 제시키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자 북한측은 5월 24일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미국 대통령이 4자회담을 제기하여 왔으므로 이 제안에 대해 설명해줄 것을 미국에게 요구하였다"라고 하면서 "남측이 나서서 공동설명에 참여하려는 것은 상식이하의 행동이며, 남측에게서는 들을 것도 들어볼 것도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북한측은 9월 2일 외교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은 4자회담의 목적이 항구적인 평화협정 마련에 있다하였으므로 회담 주 의제는 미군철거 문제로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새롭게 주장하고 "미국측이 4자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즉시 철수 문제를 논의할 용의가 없다면, 4자회담은 쓸모가 없다"고 강변하였다.

이처럼 북한측은 철저히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의 협상만을 주장하고 그 논의 의제로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새롭게 거론함으로써 4자회담의 조기 성사는 불투명해 보였다.

그러던중 1996년 9월 18일, 우리의 강릉지역에 북한 군인 20여명이 잠수함을 타고 침투하려다가 우리측에게 발각된 사건이 일어났다.

잠수함은 좌초되고 무장한 북한 군인 20여명이 내륙으로 침투해서 민간인을 사살하고 도주함으로써 남북한간에는 군사적 긴장상태가 조성되었다.

이들 침투 북한 군인중 생포된 이광수는 그들의 임무가 남한내군사시설 정찰과 요인 암살과 같은 간첩행위였다고 자백함으로써 북한측이 그동안 비밀리에 진행해온 무력도발 실태의 한면이 드러나게 되었다.

북한측은 처음에는 '통상적인 잠수함 훈련중 좌초한 사건'이라고 억지주장을 하면서 우리의 대응을 비난하였으나, 우리가 북한측의 도발행위에 대해 단호한 자세를 보이고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도 비난이 고조되자 북한측은 이 사건에 대한 공개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2월 29일 북한측은 평양방송을 통해 마침내 잠수함 침투사건에 대한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12월 30일 북한 중앙통신은 "미·북간 실무접촉이 12월 9일부터 29일 사이에 뉴욕에서 있었는데 이 접촉에서 잠수함사건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주장하면서 "4자회담 공동설명회를 경청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1996년 12월 29일 평양방송으로 발표된 북한의 사과성명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대변인은 위임에 의하여 막심한 인명피해를 초래한 1996년 9월 남조선 강릉 해상에서의 잠수함 사건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러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며, 조선반도에서의 공고한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유관측들과 함께 힘쓸 것이다.

북한측의 이와 같은 공개 사과는 그들의 과거 행적으로 볼 때 매우 특이한 일이었으며, 특히 그동안 우리 정부의 참여를 비난하며 부정적 태도를 보여왔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4자 회담」에 대해 다소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도 새로운 일이었다.

북한측의 입장 변화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1997년 1월 20일 서울에서 4자회담 공동설명회 개최에 따른 실무 협의를 갖고, 4자회담 공동설명회를 1997년 1월 29일 뉴욕에서 개최하고 한국어를 공용어로 하여 영어 통역을 실시하며, 설명회의 양국 대표단은 각기 송영식 외무부 제1차관보와 카트만 미 국무부 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따라 1월 25일 우리 정부는 "남북한 및 미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 공동설명회를 1월 29일 뉴욕에서 개최한다"고 언론에 발표하였다.

그러나 1월 27일 북한측은 돌연 미 국무부에 대해 "미 카길회사와 진행중인 곡물거래에 대한 협상이 타결되어야 공동설명회에 응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동설명회를 2월 5일로 연기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어 1월 31일 북한측은 미 카길사와의 곡물거래 협상 미타결을 이유로 "4자회담 공동설명회에 참가할 북한측 대표단이 제날짜에 평양을 출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함으로써 2월 5일로 연기된 공동설명회를 다시 일방적으로 연기시켰다.

북한측의 공동설명회 연기와 관련하여 미 국무부 대변인은 2월 4일 "미국은 북한이 4자회담을 위한 3자설명회에 참석할 의사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앞으로 북한과의 협상을 위한 구체적 일정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미 카길사와의 식량구매 협상에서 미국 정부가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으나 미국 정부는 상업적인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같은 미국의 입장 표명이 있는 후 북한측은 태도 변화를 보여 공동설명회 참석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피력하였다.



## 2. 회담별 진행경과

### 가. 공동설명회 개최

북한측이 공동설명회 참석에 긍정적 의사를 밝힘에 따라 4자회담 공동설명회는 당초 예정했던 1월 29일에서 한달 이상 늦춰진 1997년 3월 5일 뉴욕 '힐튼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 공동설명회에 우리측은 송영식 외무부 제1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유명환 외무부 북미국장, 권종락 대통령비서실 외교비서관, 이봉조 통일원 제1정책관이 대표로 참가하였다.

북한측에서는 김계관 외교부 부부장을 대표단장으로, 이근 외교부 미주국 부국장, 한성열 주유엔대표부 공사, 박명국 외교부 미주국 과장이 대표로 참가하였다.

한편, 미국 측에서는 찰스 카트만(Charles Kartman)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리를 수석대표로 하여, 마크 민튼(Mark Minton)한국과장, 잭 프리차드(Jack Pritchard)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주담당 보좌관, 토마스 하비(Thomas Harvey)국방부 한국담당관이 대표로 참석하였다.

3자 수석대표들은 회의 시작전 함께 손을 맞잡고 기자들의 사진촬영에 응했으며, 사진촬영후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공동설명회는 미국측 수석대표의 사회로 인사 및 대표단 소개, 기조발언, 4자회담 제의에 관한 한·미양측의 설명, 그리고 토론순으로 진행되었다.

우리측 송영식 수석대표는 4자회담 제의배경에 대해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남·북한의 공동번영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여기에는 아무런 전제조건이 없다"고 설명하고,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는 남·북한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간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우리측은 4자회담에서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의 일환으로, 남·북경협 추진문제도 함께 논의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우리측은 4자회담의 구체적 추진과 관련하여, 공동설명회 종료후 가급적 조속히 4자회담 본회담을 상호 합의하는 장소에서 개최할 것과 회담대표는 장관급을 수석대표로 하고 차관급을 교체 수석대표로 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회담의제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문제」와 「남·북한간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문제」를 양대 의제로 하여 토의를 진행할 것을 제의하였다.

한편, 미국측의 카트만 수석대표는 이번 공동설명회가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을 희망하고, 이러한 평화정착 과정이 「남북기본합의서」와 「미·북 제네바 합의문」을 기초로 하여 조속히 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미국측은 한반도의 평화정착 문제는 미·북간에 협상할 문제가 아니며, 어디까지나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간에 논의되어야 하며 바로 4자회담은 이러한 틀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한·미 양측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정전협정의 서명당사국인 중국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아울러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주로 듣기만 하던 북한측 김계관 단장은 회의 말미에 가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와 관련, "남·북한간에 이미 불가침 합의가 있으므로 미·북한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참가국간 관계의 불균형 문제'등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한국과 미국 측의 설명내용에 대하여 "돌아가서 신중히 품을 들여 연구하겠다"고 언급함으로써 다소간 긍정적인 여운을 남겼다.

## 나. 공동설명회 후속협약

공동설명회가 끝난 뒤 한달여가 지난 시점에서 북한측은 "지난번 공동설명회에 대한 답을 주겠다"고 하면서 공동설명회의 후속협약 개최를 요청함에 따라 1997년 4월 16일 「4자회담 공동설명회 후속협약」가 뉴욕 '유엔 프라자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에서는 송영식 수석대표를 비롯하여, 유명환, 권종락, 이봉조 그리고 이수혁 주미대사관 정무참사관이 대표로 참석하였으며, 북한측은 지난번 공동설명회때와 마찬가지로 김계관 대표단장 외 4명, 미국측은 카트만 수석대표 외 4명이 각각 대표로 참석하였다.

이 협약에서 우리측은 북한측이 4자회담 개최에 긍정적으로 호응한데 대해 평가하고 4자회담 본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강조하면서 북한측이 당장 본회담 개최에 호응하기 어렵다면, 실무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4자회담 예비회담」을 5월말에, 그리고 예비회담에서의 실무절차 문제에 합의를 이룰 경우 「4자회담 본회담」을 6월말에 개최하자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4자회담을 원칙적으로 수용한다"고 하면서도 예비회담 및 본회담의 개최일자를 정하는데는 반대하는 애매한 태도를 보이는 한편, 오히려 4자회담 개최 전후에 한·미의 대북 식량지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4자회담이 시작되면 남북한간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북한 및 미국은 4월 16일 전체회의 이후 4월 21일까지 3차례의 실무대표 접촉과 1차례의 비공식 수석대표 접촉을 통해 4자회담 예비회담과 본회담 개최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북한측은 대북식량지원 보장을 거둬 주장하며 4자회담 예비회담과 본회담 개최시기를 수용치 않았다.

또한, 북한측은 접촉과정에서 4자회담 형식과 관련, 남북한과 미국이 참가하는 3자회담을 진행하다가 적절한 단계에 가서 중국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새롭게 제기함으로써 4자회담 개최에 난관을 조성했다.

결국, 앞으로 외교채널을 통해 3자간 실무접촉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고 별 진전없이 4월 21일 공동설명회 후속협약이 종료되었다.

이날 후속협약 이후 우리측은 "북한측이 4자회담을 수락하도록 최선을 다했으나 결국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데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 회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4자회담을 위한 협상과정의 일부였다"라고 평가하였다.

#### 다. 차관보급 3자협약

공동설명회 후속협약이 종료된 후 남·북·미 3자 실무대표들은 5월 30일부터 6월 28일까지 뉴욕에서 몇차례의 접촉을 갖고 4자회담 개최와 관련된 문제들을 계속 논의하였다.

이 실무접촉에서 북한측은 4자회담 예비회담의 개최전에 북한이 필요로 하는 식량지원에 대한 한·미가 보장해 줄 것을 다시금 요청하였다.

이에 대한 한·미는 "4자회담 참석을 조건으로 하는 식량제공의 사전 보장은 불가하며, 인도적 성격의 식량지원은 계속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되 정부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은 4자회담 테두리 내에서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하는 기존의 입장을 북한측에 설명하였다.

또한 우리측은 북한측에게 4자회담을 수락하는 것만이 한반도의 평화정착 뿐만 아니라 북한의 경제난을 극복하는 길임을 꾸준히 설득하였다.

북한측은 이러한 한·미의 일관된 입장과 설득을 통해 예비회담 개최가 지연되는 상황이 북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듯 마침내 4자회담 예비회담 개최에 호응해 나오게 되었다.

1997년 6월 30일 남·북·미 대표단은 뉴욕 '팔레스 호텔'에서 「차관보급 3자협약」을 개최하여 그동안 3자 실무대표간 협의를 통해 논의된 내용들을 최종 확인함으로써, 중국을 포함하는 '4자회담 예비회담'을 1997년 8월 5일 뉴욕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게 되었다.

차관보급 3자협약에 참석한 대표단 중 남·북의 대표단은 지난 공동설명회 후속 협의회 대표단과 변동이 없었으나 미국측은 토마스 하비 대신 리처드 핀(Richard Finn) 국방부 한국담당관이 참석하였다.

다음은 공동 언론발표문 전문이다.

공동 언론발표문  
(1997. 6. 30(월), 뉴욕)

대한민국 송영식 외무부 차관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계관 외교부부부장 및 미 합중국 찰스 카트만 국무부 차관보 대리는 1997년 6월 30일 뉴욕에서 3자 협의를 갖고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1)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 합중국 및 중화인민공화국간 4자회담을 위한 차관보급 예비회담을 1997년 8월 5일 뉴욕에서 개최한다.

2) 예비회담에서는 합의 가능한 가장 빠른 본회담 개최시기, 장소 및 의제를 포함한 4자회담 본회담에 관한 절차문제들을 협의, 결정한다.

이렇게 하므로써 1996년 4월 16일 한·미 대통령이 공동으로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4자 회담'을 제의한 이래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4자회담 과정이 사실상 개시되게 되었다.

4자회담의 목적은 남북한간의 긴장완화와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해 불안정한 현 정전체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4자회담 예비회담 개최에 대한 합의는 지난 44년간 '전쟁을 일시중단'한 상태로 불안하게 유지되어 온 한반도 평화문제가 이제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게 되었음을 의미하였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남북한과 미국 및 중국이 참석하는 4자회담을 수락하고 예비회담 개최에 합의해 나온 것을 환영하면서 "4자회담은 현 정전체제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는 과정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4자회담의 진전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달성은 물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 라. 4자회담 제1차 예비회담

「차관보급 3자협의」에서의 합의에 따라 남북한 및 미국, 중국이 참가하는 4자회담 예비회담이 1997년 8월 5일부터 7일까지 뉴욕 '콜롬비아대학교 국제 및 공공정책 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한·미 양측은 4자회담이 예비회담 단계로 진전됨에 따라 장기간 국제회의를 개최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물색한 끝에 동시통역시설이 있는 콜롬비아대학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이 예비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송영식 외무부 제1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유명환 외무부 북미국장, 권종락 대통령비서실 외교 비서관, 이봉조 통일원 제1정책관, 유진규 국방부 군비 통제관실 차장, 이수혁 주미대사관 정무참사관, 전옥현 국무총리실 심의관 등 7명이 대표로 참석하였다.

북한측에서는 김계관 외교부 부부장을 대표단장으로, 이근 주 유엔대표부 부대사, 장장천 외교부 미주국 부국장, 박명국 외교부 미주국 과장, 김명길 주 유엔대표부 참사관이 대표로 참가하였다.

미국측에서는 찰스 카트만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대리를 수석대표로 하여, 마크 민튼 국무부 한국과장, 잭 프리차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주담당 보좌관, 토마스 하비 국방부 한국담당관, 에릭 존(Eric John) 국무부 한국과 북한담당관, 로렌스 로빈슨(Lawrence Robinson) 주한 미국대사관 1등 서기관 등이 대표로 참석하였다.

한편, 중국측에서는 첸지엔(陳健)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닝푸쿠이(寧賦魁) 외교부 아주국 부국장, 티엔바오전(田寶珍) 외교부 한국과장, 티엔춘옌(田春燕) 북미·대양주국 1등 서기관, 양시위(楊希雨) 주미중국대사관 1등 서기관, 싱하이밍(邪海明) 외교부 한국과 2등 서기관 등이 대표로 참석하였다.

4개국 대표들은 한국과 북한, 미국과 중국의 대표단이 서로 마주보는 위치에 정사각형 형태로 둘러 앉았으며, 각 대표단 사이의 별도 탁자에 각각 영어, 중국어, 한국어 통역들이 앉았다.

통역은 순차적 동시통역으로, 예를 들면, 한국 수석대표가 발언하면 이어서 그것을 각기 영어, 중국어로 동시에 통역을 실시하였고, 미국측 수석대표가 발언하면 이어서 한국어, 중국어로 동시에 통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8월 5일 첫날 회의는 4자 수석대표들이 회담 시작전 공개적으로 함께 기념촬영을 한 후 미국측 수석대표의 사회로 비공개리에 진행되었다.

우리측은 기조발언에서 "6.25전쟁이후 지난 반세기 가까이 지속되어 온 불안정한 남북관계를 하루빨리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큰 길을 여는 것이 우리 민족의 간절한 염원이며,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우리측은 "한반도에서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남과 북이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서로에 대해 진지한 협의를 하는 것이며,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에서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을 지원하고 촉진시킬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새로운 평화체제 이행을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기조발언에서 "현행 한반도 정전협정을 대체하기 위한 평화협정은 미국과 북한간에 체결되어야 하며, 주한미군 문제도 4자 회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측은 기조발언에서 "4자회담은 한반도에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법률적,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며, 중국은 남북한 화해, 미·북간 관계개선,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과 통일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미국측은 기조발언에서 "4개국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해 지난 44년간 지속되어 온 정전체제를

향구적인 평화체제로 바꾸는 대화를 시작한 것은 큰 정치적 용단"이라면서 "미국은 4자회담의 성공을 위해 모든 과정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4자 대표단이 각각 기초발언을 한 후 한·미 양국은 예비회담의 성격에 맞게 우선 본 회담의 시기, 장소, 운영방식 등 실무절차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4자회담의 의제문제가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쉬운 문제부터 해결해 나간다"는 원칙아래 우선 회담 시기, 장소, 대표단 수준 등 실무절차 문제를 먼저 논의하고 난항이 예상되는 의제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자고 설명하자, 미국과 중국이 동의하였으며, 북한측은 "의제문제까지 합의해야 완전 합의된 것으로 하자"고 주장하면서 시기, 장소, 대표단 수준 등 실무절차 문제 토의에 호응해 왔다.

따라서 제1차 예비회담에서는 4자회담 본 회담의 개최 시기, 장소, 대표 수준, 소위원회 설치, 회의 운영방식 등에 대해서 잠정합의가 도출되었다.

본 회담 개최와 관련하여 합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본 회담 개최시기는 예비회담 종료 후 대략 6주 이내에 개최하기로 합의한다.
- 대표수준은 4자 회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가능한 경우 외무장관들이 참석토록 하고, 여타 본 회담에는 외무장관이 임명하는 고위관리가 대리 참석토록 한다.
- 개최장소는 스위스 제네바로 한다.
- 1차 본 회담의 사회는 미국이 맡고 2차회담부터는 추첨에 의해 사회국을 정한다. 회의사회를 맡은 국가가 서기업무도 맡는다.
-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등은 본 회담에서 협의하여 설치한다.
- 회담 기간은 사전에 합의하여 정한다.

본 회담 의제에 관한 토의에서 우리측은 의제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문제」와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문제」라는 포괄적인 두 개의 큰 의제로 하자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체제 수립」이라는 의제 밑에 세부의제로서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으로부터의 미군철수', '조·미 평화협정 체결'을 포함하자고 주장하였다.

한편, 미국측은 우리측이 제의한 의제에 동의하였고 중국측은 「반도의 평화체제 수립문제」와 「관련 각측간 관계 개선문제」라는 두 개의 포괄적인 의제를 제의하였다.

결국 의제문제에 대해서는 4자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를 다음 예비회담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차기 예비회담은 9월 15일로 시작되는 주, 뉴욕에서 개최기로 하되 구체적인 문제는 추후 실무 협의에서 정하기로 하였다.

#### 마. 4자회담 제2차 예비회담

4자회담 제2차 예비회담 개최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장승길 이집트주재 북한대사와 그의 형인 장승호 파리주재 무역대표부 참사관 일가족이 미국으로 망명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북한측은 미국측에 대해 장승길 일가의 북한 송환을 요구하며, 송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북·미간 정상적인 관계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제2차 예비회담 개최는 다소 불확실해 보였다.

미국은 장승길 대사 일행의 송환을 거부하는 한편, 한국과의 협의를 통해 제2차 예비회담이 장승길 망명사건과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당초 합의된 날짜(9월 15일로 시작되는 주)에 예정대로 열려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미·북간 별도 협의시 제2차 예비회담 날짜를 9월 18일~19일에 가질 것을 북한측에 제의하기로 하였다.

이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9월 10일 북경에서 개최된 미·북 협의에서 미국과 북한은 제2차 예비회담을 9월 18일에 갖기로 합의하였고 중국도 이에 동의함에 따라 4자회담 제2차 예비회담이 9월 18일, 뉴욕 콜롬비아대학에서 열리게 되었다.

제2차 예비회담의 대표는 지난 1차 예비회담의 대표들이 대부분 그대로 참석하였으며, 중국대표단 중 티엔바오진(田寶珍) 대신에 관화병(關華兵) 신임 한국과장, 싱하이밍(邢海明) 대신에 장천강(張承剛) 한국과 3등 서기관, 미국대표단 중 로빈슨(Robinson) 대신에 로버트 칼린(Robert Carlin) 국무부 정보조사국 부과장으로 교체되었다.

본 회담 개최와 관련된 실무 문제들은 이미 제1차 예비회담에서 대부분 합의가 되어 있었으므로 제2차 예비회담에서는 지난 1차 예비회담시 합의를 이루지 못한 본 회담의 의제 문제가 주요 협의 안건이었다.

그러나 북한측은 첫날 회의(9.18)에서 1차 회담시 제의한 2개의 세부의제(한반도와 그 주변지역으로부터의 미군철수, 미·북 평화협정 체결)외에 '남과 북의 한반도 외부로부터 군사장비 도입 금지'라는 새로운 의제를 추가함으로써 의제문제 토의에 난관을 조성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예비회담에서 세부의제 설정을 논의하게 되면 예비회담이 무한정 길어질 수 있으므로 본 회담의 의제를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제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긴장완화에 관한 제반 문제'라는 단일의제를 제시하고 북한측의 수락을 촉구하였다. 미국측은 우리측의 단일 의제에 동의하면서 북한이 내놓은 세부의제는 미리 본 회담의 어떤 결과를 예단하고 있는 것이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중국측도 4자 모두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희망하고 있는 공통점에서 출발하여 각측의 관심사항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의제를 일반적이고 포괄적으로 채택하는데 동의하였다.

북한측은 의제문제는 본질적인 문제이므로 현 단계에서 의제문제에 대해 신축성을 보일 수 없다고 완강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4자 대표단은 첫날회의를 종료하고 다음날인 9월 19일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였다.

한편, 북한측의 요구로 9월 18일 오후 남·북한 및 미국은 3자간 협의를 갖고 의제문제 등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였으나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다.

제2일 회의(9.19)에서 한·미 양국은 예비회담의 목적이 4자회담 본 회담의 개최를 위해 필요한 절차문제를 협의·결정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고 북한측이 의제문제를 구실로 본 회담 개최를 지연시켜서는 안될 것이라고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북한측은 의제문제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집하면서 아무런 융통성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의제에 대한 절충점을 찾지 못한 채 제2차 예비회담이 종료되었다.

#### 바. 4자회담 제3차 예비회담

제2차 예비회담에서 본 회담 의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북한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4자회담과 관련한 회담은 가까운 시일 내 개최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던 중 1997년 10월 21일, 미 스탠포드 대학에서 개최된 한 세미나에 참석했던 마크 민튼 미국무부 한국과장과 이근 주유엔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비공식 접촉을 갖고 4자회담 개최문제에 대해 협의하였다. 이 접촉에서 이근은 4차 예비회담과 본 회담 개최에 호응할 뜻을 비쳤다.

이러한 북한측의 태도 변화에 따라 뉴욕에서 4자간 실무협의를 개최하게 되었고, 실무협의 과정에서 북한측은 그동안 주장해오던 세부의제 대신에 의제를 일반화하는데 융통성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4차 실무대표들은 계속된 실무협의를 통해 제3차 예비회담을 개최하는데 합의하게 됨으로써 제3차 예비회담이 11월 21일, 뉴욕 콜롬비아대학에서 개최되게 되었다.

3차 예비회담에 참가한 대표단은 지난 2차 예비회담 때와 같았다.

제3차 예비회담에서 북한측은 본 회담 의제를 우리측이 지난 2차 예비회담에서 제시했던 포괄적 단일 의제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한 제반문제(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ssues concerning tension reduction there)」로 하는 데 동의하였고 중국측과 미국측도 이를 지지함으로써 그 동안 쟁점이 되었던 의제문제가 타결되었다.

또한 4차 수석대표들은 본 회담 개최 날짜에 대해 협의하였는바 본 회담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개최하되 각국의 사정을 감안, 12월 9일에 제1차 본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공동 발표하였다.

또한 회담 대표단 구성과 관련, 우리측은 제1차 본 회담의 중요성과 상징성을 고려하여 제1차 본 회담의 수석대표는 장관급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의하였으나, 다른 국가들이 장관급의 참여를 미리 결정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본 회담 대표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본 회담 개최전에 별도의 협의를 거쳐 발표하기로 하였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공동 언론 발표문 전문이다.

#### 공동 언론발표문

(1997. 11. 21)

4자회담 예비회담 대표단은 1997년 8월 5일부터 11월 21일까지 뉴욕에서 세차례 예비회담을 갖고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4자회담 본 회담을 1997년 12월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시한다.

4자회담의 의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한 제반문제」로 한다.

4자회담 대표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회담 개시전에 발표한다.

4자회담 예비회담 대표단은 세차례의 예비회담 개최를 위해 시설을 제공해 준 콜롬비아 대학 측에 사의를 표한다.



이로써 1996년 4월 16일 한·미 정상회담을 제외한 지 1년 7개월 여만에, 한반도에서 휴전이 성립된 지 43년 4개월만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 본 회담」이 성사되게 되었다.

#### 사. 제1차 4자회담(본 회담)

남북한 및 미국·중국에 참여하는 제1차 4자회담이 1997년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제네바 국제회의 센터(CICG)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사무국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스위스 정부는 4자회담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회의장과 각 대표단용 차량, 경호 등 여러 가지 편의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었다.

제1차 4자회담에 우리측에서는 외무차관을 역임한 이시영 주프랑스대사를 수석대표로 하여, 문무홍 통일원 남북회담사무국장(차석대표), 유명환 외무부 북미국장, 유진규 국방부 군비통제관, 권종락 대통령비서실 외교비서관, 이수혁 주미대사관 정무참사관, 이봉조 통일원 제1정책관, 전옥현 국무총리실 심의관 등 8명의 대표가 참가하였다.

북한측에서는 김계관 외교부 부부장이 대표단장으로, 이근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가 부단장으로, 박석균 외교부 부국장, 김정남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참사, 박명국 외교부 미주국 과장, 정동학 외교부 직원 등이 대표로 참가하였다.

미국측은 스탠리 로스(Stanley Roth)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고, 찰스 카트만(Charles Kartman)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를 차석대표로 하여, 윌리엄 라이트(William Wright) 국방부 아·태 담당 국장, 마이클 모슬리(Michael Moseley) 합참 준장, 잭 프리차드(Jack Pritchard)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주담당 보좌관, 노름 울프(Norm Wulf) 군비통제·군축처 비확산 및 지역 군비통제담당 차장보 대리, 마크 민튼(Mark Minton) 국무부 한국과장 등이 대표로 참가하였다.

중국측은 탕자쉬엔(唐家璇) 외교부 부부장을 수석대표로, 쉰저쑹(沙祖康) 주제네바 대표부 대사를 차석대표로 하여, 닝푸쿠이(寧賦魁) 외교부 아주국 부국장, 천밍밍(陳明明) 외교부 북미·대양주국 참사관, 관화빙(關華兵) 외교부 아주국 한국과장, 꾸즈핑(顧子平) 외교부 신문국 과장, 티엔쉬에쥘(田學軍) 외교부 부부장 비서관, 양시위(楊希雨) 주미 중국대사관 1등서기관 등이 대표로 참가하였다.

회의의 진행은 미국측 수석대표 스탠리 로스가 맡았으며, 진행순서와 방법은 예비회담과 대체로 같았다. 대표단 좌석은 예비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정사각형 형태로 배치하였다.

첫날 회의(12.9)는 회의장 취재를 위한 기자들이 입장한 가운데 야콥 켈렌버거 스위스 외무차관의 인사말과 4자 수석대표간 기념촬영이 있는 후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우리측은 기조연설을 통해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현 정전상태의 공고한 평화상태로의 전환을 위한 공동노력에 합의한 바 있으나 아직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남북간에 실효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의 수립은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4자회담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4자회담 제의의 취지를 다시 한번 명확히 설명하였다.

우리측은 나아가 "남북당사자 원칙 존중,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 강구, 남북기본합의서와 군사정전협정 등 기존합의의 준수·이행, 평화체제 구축 및 긴장완화 조치의 상호주의에 바탕한 점진적 협의·이행, 회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분과위 구성" 등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5개항의 기본틀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공동인식을 넓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북한측은 "4자회담을 미·북대화와 남북대화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대화 연단의 하나로 될 수 있다고 보고 참여하는 용단을 내렸다"고 주장하면서도 "한반도의 평화보장체제 수립과 긴장완화 및 신뢰조성을 위해서는 미·북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문제 논의가 우선하여야 한다"는 등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였다.

미국은 "4자회담이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긴장완화 그리고 4자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그 과정에서 정전협정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각측이 이미 이에 분명히 동의한바 있음을 상기시켰다.

또한, 한반도의 긴장완화 문제와 관련, 이미 합의된 남북기본합의서상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4자회담 틀안에서 그것의 활용방안을 찾는 일이 우리 임무중 하나라고 강조하고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북측의 주장에 대해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가 북한의 안보 위협때문"이라고 단호하게 논박하였다.

한편, 중국은 한반도 긴장상태의 지속은 남북한 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4자회담 틀내에서 상호 단계적 관계개선과 신뢰강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므로써 4자회담의 목적을 실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4자회담에서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미·북관계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4자 수석대표들은 기초발언에서 한반도의 평화정착 과정이 하루아침에 극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복잡하고 오래 걸릴 것이라는 인식을 공통적으로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같은 기초발언이 끝난 후 차기 본회담 의장국에 대한 추첨이 있었는데 그 결과 차기 의장국의 순서는 중국, 한국, 북한의 순서로 정해졌다.

이틀간(12.9~10)의 토의과정에서 한·미측은 회담의 틀을 갖추고 토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이미 합의한 의제에 상응하는 방향으로 분과위원회를 먼저 구성하자고 제의하였으나, 북한측은 분과위 구성보다는 본회담 의제를 구체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상호간의 근원적인 문제들에 대한 토론을 갖자고 주장함으로써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러나 4자 수석대표간 협의를 통해 제2차 4자회담 준비를 위한 특별소위원회를 2월중순 북경에서 개최하고 제2차 본회담을 3월 16일부터 제네바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를 의장성명(1997.12.10)으로 발표하였다.

다음은 12월 10일 발표된 의장 성명 전문이다.

#### 4자회담 의장 성명

1997년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차 4자평화회담 대표들은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협상과정을 성공적으로 개시하였다.

금번 회담은 우호적이고 생산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4자회담 대표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의장국에 의한 추첨 결과 차기 회의 의장국을 중화인민공화국,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미합중국 순서로 한다.
2. 차기 본회담은 3월 16일부터 제네바에서 개최한다.
3. 1차 4자회담 의장국은 2차 4자회담 이전에 이 회담 준비를 위해 2월 중순 북경에서 특별소위원회를 소집한다.
4. 특별소위원회에서는 2차 4자회담에서 논의할 사안들을 검토하여 이를 본회담에서 심의하도록 건의한다.

4자 대표단은 모두 금번 회의를 위한 스위스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였다.

이로써 한반도에서 공고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되었다.

정부는 한·미 양국 대통령이 공동으로 제안한 4자회담 본연의 정신과 목표를 견지하면서 앞으로의 평화정착 과정을 밟아나갈 방침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긴장완화는 남북간의 신뢰구축과 교류협력 문제를 비롯하여 복잡한 문제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과 인내심을 가지고 4자회담을 차분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II. 대북 구호물자 전달을 위한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 1. 배경

북한은 영농체계의 저생산성, 비료·농약 등 영농자재 부족으로 인한 농업생산 부진, 외화수입 고갈로 인한 식량수입 감소 등 사회주의 체제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어 왔다. 더구나, 1995~1996년의 흉수, 1997년의 가뭄·해일 등 자연재해는 북한의 식량난을 더욱 악화시켰다.

우리 정부는 1994년 3월 이후 이러한 북한의 식량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대북 식량지원 용의를 표명해 왔으며, 1995년에는 북경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15만톤의 쌀을 직접 지원하기도 하였다.

한편, 북한은 1995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흉수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음을 밝히고 유엔에 긴급 구호를 요청하였다.

이에 우리정부는 1995년 9월 이후 정부차원에서 WFP, UNICEF 등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한편, 지원을 원하는 민간단체들에 대해서도 대한적십자사를 단일창구로 하여 지원금품을 모아 국제적십자사 연맹을 통해 북한동포를 돕도록 하였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는 기존의 국제적십자 연맹을 통한 간접전달방식은 남북간의 직접 전달방식보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불편함을 고려하여 남북간 직접전달 방법을 추진하기로 하고, 1997년 4월 18일 강영훈 총재 명의로 북한 적십자회 이성호 위원장 대리에게 보낸 전화통지문을 통해 1997년 4월 29일 판문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간 대표접촉을 갖자고 제의하였다.

다음은 대북 전화통지문의 전문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성호 귀하

최근 여러 국제기관 단체들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 귀측의 어려운 식량사정을 접하면서, 나는 같은 민족으로서 깊은 우려와 함께 적십자인의 사명감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대한적십자사는 그동안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에 입각하여 귀측의 식량난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는 일에 국제적십자연맹과 협력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3월 31일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귀측으로 보내는 식량과 물품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남북 적십자인이 만나 직접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나는 귀측에 대한 구호식량 및 물품제공에 따른 절차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적십자간 대표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합니다.

대표접촉은 쌍방 적십자 사무총장(서기장)급을 수석대표로 하여 각기 3명씩의 대표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판문점에서 가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귀측의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1997. 4. 18.

대한적십자사 총재 강영훈

이러한 제의에 대해 4월 19일 북한 적십자회는, 5월 3일 중국 북경에서 접촉을 갖자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보내왔다.

이와 같은 북한측의 수정제의에 대해 우리측은 4월 24일, 남북적십자인들이 남의 나라에서 만나야 할 이유가 없으며, 대표접촉을 성사시키기 위해 장소 문제를 포함한 회의 진행절차에 관한 실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실무요원이 판문점에서 만날 것을 북한측에 제의하는 전화통지문을 보냈다.

그러나 북한측은 쌍방사이에 접촉 의제와 형식, 대표단 구성등 기본문제에 합의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복잡하게 중간 협의를 할것없이 북경접촉에 동의하라는 전화통지문을 보내어 접촉 장소를 북경으로 할 것을 계속 고집하면서 판문점 실무요원 접촉을 기피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인도적인 측면을 고려, 장소 문제를 가지고 시일을 지체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판단에 북한측의 제의 내용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은 전화통지문을 보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성호 귀하

나는 최근 남북적십자간에 모처럼 오가고 있는 의사소통이 쌍방간의 만남으로 이어짐으로써 귀측에 대한 지원절차 문제 토의가 원만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북적십자간에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수 많은 접촉을 해온 바 있고 재해를 당했을 때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은 일도 있는 만큼 남북적십자인들의 접촉을 굳이 남의 나라에서 가져야 할 이유가 없다는 우리측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접촉장소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시일을 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과 함께 귀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예외적 조치로 오는 5월 3일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3명의 대표와 3명의 수행원으로 구성된 우리측 대표단을 중국 북경에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나는 북경 현지에서 만날 장소와 시간은 판문점 적십자 상설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를 통해 협의하면 될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귀측의 의견을 조속히 알려주기 바랍니다.

1997. 4. 30.

대한적십자사 총재 강영훈

이에 북한측은 5월 1일 오후, 판문점 남북적십자 상설연락사무소 연락관간의 전화를 통하여 북경 대표접촉의 일시와 장소를 1997. 5. 3, 북경 샹그릴라 호텔로 할 것을 통보해 왔으며, 이어서 우리측의 대표명단 통보에 상응하여 북측 대표명단을 우리측에 통보해 오으로써 대북 구호물자 전달을 위한 제1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이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게 되었다.

## 2. 대표접촉 진행경과

### 가. 제1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우리측의 제의로 이루어진 제1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이 5월 3일과 5월 5일 중국 북경 '샹그릴라 호텔'에서 개최되어 대북구호물자 절차를 협의하였다.

우리측은 이병용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을 수석대표로 조명균·김장균 대한적십자사 긴급구호대책본부 운영위원이 대표로 참석하였으며, 북한측은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서기장 백용호를 대표단장으로 정영춘·김성립 북한적십자회 큰물피해복구위원회 위원이 참석하였다.

우리측 이병용 수석대표는 기초발언을 통해 대북 지원물품의 전달은 기존의 국제적십자사 연맹을 통한 방법보다는 남북적십자간 직접전달이 바람직함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절차문제로서 수송방법, 제공주체 표시 및 분배의 투명성 보장, 업무연락 및 통신문제, 돌발사고 대비 방안 강구, 신변안전 보장, 편의제공, 수송차량과 선박의 표지문제 등에 대해 우리측의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우리측은 남북적십자간 직접전달이 효율적인 방안임을 설명하고, 북한측의 분배과정에 한적요원이 참관할 경우 대북지원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북한측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연맹을 통한 대북지원이 별다른 지장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지원식량과 물품의 직접전달 지원절차문제 토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대략적인 지원물량과 지원시기 등을 밝혀 줄 것을 우리측에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남북간 직접전달 통로가 확보되면 대북지원이 확대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우리측 기탁자들의 구호물자 전달과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설명하고 준비해간 우리측 합의서안을 북한측에 전달하였다.

북한측이 우리측안을 검토할 의사를 보임에 따라, 양측은 5월 5일 다시 제2일차 회의를 갖기로 하였다.

우리측은 2일차 회의 모두에 1일차 회의시 우리측이 제시한 합의서안에 대한 북한측의 의견을 물었다. 그러나, 북한측은 지원 규모·시기에 대한 우리측의 계획을 먼저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우리측은 대한적십자사의 대북구호물자 지원은 민간단체들의 성금과 물품들이 모아지는 대로 북한에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시기와 양을 사전에 확정적으로 제시하기가 곤란하다는 정황을 북한측에 설명하는 한편, 성금이나 구호물품이 신속히 전달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므로 지원절차 문제에 대한 토의에 들어 갈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이 구체적인 지원 규모·시기가 제시된 후 지원절차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함으로써 쌍방간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제1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은 종결되었으며, 다만 다음 접촉을 갖는다는 데에 합의하고 판문점 남북 직통전화를 통해 접촉일자를 정하기로 하였다.

나. 제2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한적은 제1차 대표접촉이 결렬된 이후 민간지원단체 대표들에게 그 결과를 설명하여 각 단체의 대략적인 대북지원 규모 및 시기를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강영훈 총재는 5월 16일 북한적십자회 이성호 위원장 대리에게 전화통지문을 보내, 5월 23일 판문점이나 서울, 평양에서 제2차 대표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하면서 2차 접촉에서는 북한측이 요구하는 지원 규모도 밝힐 것임을 시사하였다.

다음은 전화통지문 전문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성호 귀하

지난 5월 3일과 5일 남북 쌍방 적십자인들은 귀측에 대한 구호식량 및 물품을 직접 전달하기 위한 절차문제를 협의한 바 있습니다.

나는 지난번 접촉에서 우리가 비록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근 5년만에 남북적십자인들이 다시 만나 서로 의견을 나누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민간단체들이 기탁해 오고 있는 구호식량 및 물품들을 귀측에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절차문제에 대한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나는 제2차 대표접촉을 오는 5월 23일(금)에 서로 편리한 판문점이나 서울 또는 평양에서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접촉에서는 지원규모에 대해서도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귀측의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1997. 5. 16

대한적십자사 총재 강영훈

북한측은 5월 23일 보내온 전화통지문에서 제2차 대표접촉 개최에 동의하면서도 중국 북경에서 만날 것을 주장하였다.

우리측은 북한측이 시간과 경비를 들이며 굳이 제3국 접촉을 고집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인도적 견지에서 1차 접촉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측의 북경 개최 요구를 수용하기로 하였다. 제2차 대표접촉은 1997년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중국 북경 시내 '차이나월드 호텔'에서 개최되게 되었다.

제2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대표단은 제1차 접촉과 동일하였다.

(1)제1일차 회의

5월 23일 북경 차이나월드 호텔에서 열린 제1일차 회의에서 우리측은 북한측이 제1차 접촉에서 지원품목과 총량·시기를 밝혀달라고 요구한데 따라, 옥수수를 위주로 하여 밀가루·라면·분유·식용유 등을 옥수수 기준으로 약 4만톤 정도를 1997년 7월말까지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북한측에 제시하였다.



또한 우리측은 「직접 지원절차에 관한 합의서(안)」을 제시하면서 절차문제 토의에 들어갈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1차분이 7월말까지라면 2차분은 규모가 얼마나 되며, 대한적십자사가 모금하려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우리측은 "북한에 지원하고 있는 물품 전량이 국민들의 성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측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절차문제에 합의하느냐에 따라 모금활동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우리측이 제시한 합의서(안)을 토대로 절차문제 토의에 들어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2차분 규모를 물으면서 "총량규모 제시가 절차문제 협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계속 주장하다가 결국 준비해 온 절차문제 합의서(안)을 제시하며 절차문제 협의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쌍방은 5월 24일 제2일차 회의를 열어 쌍방 합의서(안)을 대비하면서 조항별 문안조정 및 정리작업을 하기로 하였다.

## (2)제2일차 회의

제2일차 회의에서 우리측은 우리측 수정안을 북한측안과 비교하면서 일치사항을 우선적으로 합의한 다음, 이견사항 및 절충사항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였다.

양측은 물자 전달방법, 편의제공, 신변안전 및 안전운행 보장, 수송차량 및 선박의 표식, 검수 및 검역, 수송계획에 대한 통보, 수송조건, 분쟁해결, 수정 및 보충에 대해서는 일부 문안을 조정하여 합의하였다.

이후 양측은 제2일차 회의가 끝난 후 각기 1명씩의 대표가 만나 문안조정을 위한 실무접촉을 갖기로 하였다.

## (3)문안조정 실무접촉

제1차 문안조정 실무접촉에서 양측은 오전회의 결과를 토대로 토의를 진행, 구호물자의 수량, 전달시기, 전달경로, 물품포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합의서 문안에 합의하였다.

지원수량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지원목표 총량으로 옥수수 10만톤을 명시해달라는 북한측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으며, 북한측은 1차 지원목표를 이미 북측에 전달키로 한 1만 5천톤을 제외한 4만톤으로 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하였다.

전달시기는 북한측은 7월부터 장마가 시작되고 식량사정도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시기를 앞당겨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전달경로는 우리측은 '남양'을 추가할 경우 전달시기를 앞당기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절충안을 제시한 반면, 북한측은 관문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물품포장과 관련하여, 대한적십자사 표지를 반드시 부착하려는 우리측 입장에 대해 북한측은 적십자 표지(+)만 부착하고 그 밑에 민간단체명 또는 개인명의를 함께 표기할 것을 거듭 주장하였다. 문안조정 실무접촉은 5월 25일 오후에도 계속되었다. 차이나월드 호텔에서 열린 제2차 문안조정에서 우리측은 우리의 입장을 다시 한번 북한측에 설명하였고 북한측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최종입장으로 제시하였다.

- 구호물자의 수량은 전체 목표량을 밝힐 수 없다면 2차 지원 목표량이라도 제시해 줄 것. 1차 지원분도 이미 통보된 1만 5천톤을 제외한 4만톤은 되어야 함.
- 전달시기 및 전달경로는 1차 지원분을 6월말까지로 앞당겨 줄 경우 남양, 만포를 인도·인수 지점으로 개방할 용의가 있음. 그러나, 관문점은 불가함.
- 물자포장은 적십자 표지(+)는 가능하며, 대한적십자사 명칭은 한적이 직접 기증단체가 될 경우 기증단체로서 포장에 표기하는 것은 무방함.

따라서, 5월 25일 저녁 차이나월드 호텔에서 제3차 문안조정 실무접촉이 이루어졌고 이 접촉에서 우리측은 쌍방 이견사항에 대해, 1차 지원분에 1만톤 정도를 추가하여 7월중순까지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으니, 북한측은 남양·만포를 인도장소로 추가지정하고, 모든 물품에 대한적십자사를 명기하는 것을 허용하라는 절충안을 북한측에 제시함으로써, 최종합의서가 타결되게 되었다.

#### (4) 제3일차 회의

따라서, 양측은 5월 26일 오전 제3일차 회의를 개최하여 쌍방 수석대표들이 전문과 본문 16개 조항으로 된 「남북적십자 사이의 구호물자 전달 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민간차원의 대북 구호물자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이번 남북적십자간 접촉을 통하여 양측은 중단되었던 적십자간의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1985년 이후 12년만에 남북적십자간의 합의를 도출해냄으로써 인도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아울러 이번 접촉에서 우리측은 협상을 통해 기탁자 이름명기, 제공물자의 기존 상표 부착, 분배대상자 및 대상지역 지정 등 지원물자를 기탁하는 민간단체의 주요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다음은 양측 수석대표가 서명한 합의서 전문이다.

#### <남북적십자 사이의 구호물자 전달 절차에 관한 합의서>

대한적십자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적십자회는 1997년 5월 3일부터 26일 사이에 북경에서 2차례의 대표접촉을 가지고 북측에 대한 남측 구호물자의 직접 전달에 따르는 절차문제를 협의하였다.

쌍방은 그동안 북측 주민들에 대해 국제적십자사연맹이 해 온 구호활동을 평가하고, 구호물자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국제적십자사연맹과의 협조하에 남북간에 직접 인도·인수하기로 하고 그와 관련한 실무절차들을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1. 구호물자의 수량과 품종 및 인도시기

##### 가. 구호물자의 수량과 품종

- ① 구호물자의 수량은 1차적으로 옥수수를 기준으로 하여 5만톤 정도로 한다.
- ② 구호물자의 품종은 옥수수를 위주로 하여 밀가루, 라면, 분유, 식용유 등으로 한다.

나. 구호물자의 전달시기

- ① 제1차 지원분은 1997년 7월 말까지 인도·인수한다.
- ② 제1차 지원분 인도 이후 확보되는 물자의 전달시기는 쌍방 합의에 따라 정한다.

2. 물자수송 및 인도인수 지점

- ① 남측은 육로와 해로를 통하여 구호물자를 편리한 수송수단을 이용하여 쌍방이 합의하는 인도·인수 장소까지 운반한다.
- ② 물자수송량은 편의상 회당 육로의 경우 화차 20량 이상, 해로의 경우 1천톤 내지 2천톤 이상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인도·인수 지점은 육로의 경우 신의주·남양·만포로 하고, 해로의 경우 남포항과 홍남항으로 한다.
- ④ 필요할 경우 쌍방 합의에 따라 인도·인수 지점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정할 수 있다.

3. 물자전달 방법

- ① 자기측 적십자사 총재(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쌍방의 적십자인원들이 인도·인수장소에서 물자의 수량과 품질 등을 확인하고 인도증과 인수증을 서명·교환하는 방법으로 전달하며, 육로수송의 경우 수량확인은 화차 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 ② 남측 적십자사의 인도인원은 2명 내지 3명으로 한다.
- ③ 인도·인수시에는 국제적십자사연맹 현지대표의 참가를 허용한다.

4. 지정전달

북측은 남측 기증자가 지원 지역 및 대상자를 지정하여 기탁할 경우 지정된 지역 및 대상자에게 그 물자를 전달하도록 한다.

5. 분배과정 입회

북측은 국제적십자사연맹 현지대표의 북측지역내 분배과정입회를 보장한다.

6. 편의보장

① 북측은 남측인원의 북측지역 체류시 전신·전화 등 통신을 보장하고, 가능한 경우 남북 사이에 이미 가설되어 있는 직통전화를 이용하도록 한다. 남측 인원이 사용한 국제전화 요금은 남측이 부담한다.

② 북측은 남측 인원들의 북측지역 체류기간중 숙식·차량·안내 등 편의를 제공한다.

#### 7. 기록협조

북측은 구호물자 인도·인수장소에서 남측 적십자인원들의 사진촬영을 협조, 보장한다.

#### 8. 신변안전 및 안전운행 보장

북측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오는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과 선박·차량의 안전운행, 신속한 무사귀환을 보장하는 관계당국의 안전보장각서를 남측에 사전 전달한다.

#### 9. 수송차량 및 선박의 표지

① 남측의 수송차량에는 적십자 표지를 부착한다.

② 남측 선박의 북측지역 항구 입·출항시 양측 국기를 게양하지 않고 적십자 깃발만을 단다.

#### 10. 물자포장

물자포장에는 적십자 표지와 지원하는 단체명 또는 개인명의를 표기하며, 물자에 붙어있는 기존상표와 사용설명서는 그대로 둔다.

#### 11. 검수 및 검역

검수 및 검역절차는 국제관례에 따라 이행·처리한다.

#### 12. 수송계획에 대한 사전통보

① 남측은 수송일시, 품목 및 수량, 수송차량과 선박의 제원, 선적 수량, 수송인원 명단등 구체적 사항을 기록한 수송계획을 출발 10일전까지 남북직통전화를 통해 북측에 통보한다.

② 북측은 하역항과 하역 준비상태 및 기타 하역에 필요한 자료를 출발 5일전까지 남북 직통 전화를 통해 남측에 통보한다.

③ 수송물량 및 수송수단의 사정에 따라서 통보 일정을 쌍방 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

#### 13. 수송조건

남측은 운임, 보험료 등 북측 하역지역 도착시까지 수송에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며, 북측하역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역비용, 항만비용과 체선·체차료, 조출료 등은 북측이 부담한다.

14. 분쟁해결

이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본 적십자 대표단간에 협의·해결한다.

15. 수정 및 보충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16. 발 효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1997년 5월 26일

대 한 적 십 자 사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남측대표단  
수 석 대 표 이 병 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북남적십자 대표접촉 북측대표단  
단 장 백 용 호

다. 제3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우리측은 제1차 대북 구호물자 지원이 마무리될 즈음, 제2차 지원을 위한 제3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을 제의하는 대북 전화통지문을 1997년 7월 12일 다음과 같이 북한측에 보내게 되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성호 귀하

나는 지난 5월 26일 귀측과 합의한 구호물자 제1차분 5만톤의 전달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서 쌍방간에 제1차분 전달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제2차분 지원문제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견지에서 나는 제3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을 오는 7월 22일(화)우리나라 안의 관문점 또는 다른 편리한 장소에서 가질 것을 제의합니다.

대표단은 지난번과 같이 쌍방 적십자 사무총장(서기장)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각기 3명의 대표들로 하면 될 것입니다.

귀측의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1997. 7. 12

대한적십자사 총재 강영훈

이러한 우리측의 제의에 대해 북한측은 제3차 접촉에 동의하면서도 여전히 접촉장소로 중국 북경을 고집하였다. 북한측은 접촉장소로 북경을 고집하는 이유로 "이번 접촉이 지난번 접촉의 연속이니만큼 중국 북경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였다.

우리측으로서는 북한의 이와 같은 주장에 동의할 수는 없었지만, 또다시 장소문제로 접촉일자를 지연시킬 수 없었기에 이를 수락하였다.

제3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우리측 대표단은 1, 2차 때와 마찬가지로 대한적십자사 이병웅 사무총장을 수석대표로 한 3명의 대표와 3명의 수행원이 참가하였으며, 북한측은 1, 2차 접촉 수석대표인 백용호 대신에 새로 북한적십자회 서기장으로 임명된 최경린을 단장으로 3명의 대표가 참가하였다.

(1) 제1일차 회의

7월 23일 제1일차 회의에서 북한측은 그동안의 1차지원에 대해 우리측 지원단체와 한적측에 사의를 표하고 민족내부간 상부상조의 좋은 선례가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우리측의 2차 지원품목과 수량·전달시기를 밝혀달라고 요구하였다.

우리측은 1차 지원이 원만하게 진행되었다고 평가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한 합의서(안)을 북한측에 제시하였다.

우리측의 합의서(안)에 대해 북한측은 쌀·옥수수를 위주로하여 1차지원보다 많은 양을 9월 20일까지 전달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옥수수 등 1차 지원품목 외에 의약품·의류·비료 등을 추가하여 5만톤을 10월말까지 전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측은 그외 물자수송 및 인도·인수지점의 추가와 지정기탁대상자 확인 협조는 거부하였으며, 분배투명성 보장문제, 기차 취재활동, 인도요원 편의보장 문제 등은 언급을 회피하였다.

## (2) 제2일차 회의

7월 24일 오전에 개최된 제2일차 회의에서 북한측은 우리측이 제시한 지원규모 5만톤에 변동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규모가 단계적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하면서 지원시기를 9월말까지로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북한측은 동사진 촬영, 심양주재 북한영사관 비자발급, 물자 인수후 20일 이내 분배내역 통보에는 동의하였으나, 인도·인수 지점 추가, 분배과정 입회, 이산가족 생사·주소확인, 지정기탁 문제 등은 반대하였고, 취재활동 보장, 인도요원 편의보장 문제 등은 1차 때의 합의대로 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양측은 7월 24일 오후, 2차에 걸친 문안조정 실무접촉을 갖고 지원품목, 인도시기, 물자검수, 분배결과 통보, 기존합의서와의 관계 등에 합의하였으며, 합의서에 포함되지 않은 절차내용은 '양해사항'으로 작성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북한측은 전달시기를 9월말까지로 하면서 분배투명성 보장을 위한 국제연맹 대표의 분배과정 확인을 보장토록 한다는 우리측안을 수용하였다. 또한 구호품목에서 우리측은 비료를, 북한측은 의약품을 제외할 것을 제안·합의하였다.

## (3) 제3일차 회의

실무접촉에서 합의서가 합의됨에 따라 7월 2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2차례의 문안조정 실무접촉을 통해 작성된 합의서를 최종검토한 후, '합의서'와 '양해사항'에 서명·교환함으로써 제2차 대북 구호물자 전달절차를 마련하게 되었다.

제3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에서는 북한에 파견된 국제적십자사연맹 현지 대표들이 우리측의 구호물자가 전달된 지역에 대해 분배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북한측이 지역·대상·품목·수량 등을 명기한 구호물자의 구체적 분배내역을 구호물자 전달후 20일 이내에 문건으로 우리측에 통보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분배의 투명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측은 비록 합의서에 명기되지는 않았지만 북한측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는 부분과 해로 수송시 우리측 인도요원들이 북한측 지역에 체류할 동안 숙식을 배에서 하지 않고 육지에 상륙하여 하도록 하는 등 전달절차상의 일부 실무적 개선부분에 대해서는 '양해사항'으로 별도 합의를 도출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다음은 이날 서명·교환된 '합의서'와 '양해사항'이다.

### <남북적십자 사이의 제2차 구호물자 전달 절차에 관한 합의서>

대한적십자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는 1997년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북경에서 대표접촉을 가지고 북측에 대한 남측의 구호물자 2차분의 직접 전달에 따르는 절차문제를 협의하였다.

쌍방은 1997년 5월 26일 「남북적십자 사이의 구호물자 전달 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남측의 1차분 구호물자가 북측에 인도·인수되고 있는데 대해 평가하고, 2차분의 지원수량·품종·시기와 합의서 보충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2차분 구호물자의 수량과 품종 및 인도시기

- ① 구호물자의 수량은 옥수수를 기준으로하여 5만톤 정도로 한다.
- ② 구호물자의 품종은 옥수수 등 식량을 위주로 한다.
- ③ 제2차 지원분은 1997년 9월 말까지 인도·인수한다.

2. 물자 검수

구호물자의 검수는 육로의 경우 화차량 기준, 해로의 경우 선상인도 방식으로 하며 국제관례에 따른다.

3. 분배과정 입회 및 분배결과 통보

- ① 북측은 국제적십자사연맹 현지 대표들이 남측의 구호물자가 전달된 지역에 대해 분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② 북측은 물자의 구체적 분배내역(지역, 대상, 품목, 수량 등을 명기)을 구호물자 전달후 20일 이내에 문건으로 남측에 통보한다.

4. 기존 합의서와의 관계

쌍방이 1997년 5월 26일 합의한 「남북적십자 사이의 구호물자 전달 절차에 관한 합의서」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

1997년 7월 25일

대한적십자사  
남북적십자대표접촉남측대표단  
수석대표 이병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북남적십자 대표접촉 북측대표단  
단장 최경린

<양해사항>

- 1. 해로 수송시 남측 인도인원들의 북측지역 체류기간중 숙식은 육지에서 하도록 한다.
- 2. 인도·인수장면, 하역장면, 검수장면에 대해 육로, 해로 모두 사진촬영과 함께 녹화촬영도 보장한다.
- 3. 구호물자 수송계획 및 분배결과 통보는 적십자 남북연락대표를 통해 문건으로 전달한다.
- 4. 남측 인도인원들의 북측지역 방문을 위해 필요한 방문사증은 심양주재 북측 총영사관에서도



발급한다.

5. 자연재해, 휴일 등으로 수송기일을 어기게 될 경우에는 인도·인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6. 남측은 북측에 전달되는 물자의 품질 및 정량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1997년 7월 25일

대 한 적 십 자 사  
남북적십자대표집측남측대표단  
수 석 대 표 이 병 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북남적십자 대표집측 북측대표단  
단 장 최 경 린

#### 라. 제4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1997년 9월말까지 전달기로 합의된 제2차 대북 구호물자는 중국 현지의 옥수수 구매가격 변동, 북한의 화차회송 지연, 추석연휴와 중국의 국경일등이 겹쳐 10월 29일에서야 전달이 완료되었다.

그후, 북한측은 1997년 11월 7일 대한적십자사에 대남전화통지문을 보내와 제2차 대북 구호물자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마지막 전달(10월 11일~10월 29일) 물량에 대한 분배 내역을 통보할 것이며 우리측 요청사항(국제연맹 지원지역 이외의 전달지역에 대한 분배결과 확인)에 유의하면서 이런 문제를 포함한 사업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북경에서 제4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을 갖자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이 보내온 분배정형(분배내역)에는 8월 12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전달한 물자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었다.

이에, 대한적십자사는 북한측이 합의대로 국제적십자사 연맹이 연맹 구호대상지역 이외에 우리측 구호물자가 전달된 지역에 대해서도 분배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줄 것과 8월 12일~10월 29일까지 지원된 제2차 지원 전체에 대한 분배결과를 통보받고 난 후 제4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대북전화통지문을 보냈다.

이와 같은 우리측 요구에 대해 북한측은 8월 12일~10월 20일간의 분배결과를 보내왔으나 이것은 우리측이 보낸 지정기탁 내용을 새로이 작성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으며, 북한측은 국제적십자사 연맹의 분배결과 확인보장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제4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을 가질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12월 8일 연락관 접촉을 통해 전달한 대북통지문에서 제4차 접촉을 12월 22일 북경에서 가질 것을 제의하고, 제4차 접촉에서는 분배결과 확인에 대해 종래보다 진일보한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북한측이 12월 11일 대남전통문을 통해 동의해 줌으로써 제4차 남북적십자 대표 접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우리측 대표단은 1~3차 때와 같이 대한적십자사 이병웅 사무총장을 수석대표로 한 3명의 대표와 3명의 수행원이 참가하였다. 북한측은 북한적십자회 서기장 최경린을 단장으로 3명의 대표가 참가하였는데, 1~3차 대표 김성림 대신에 이천일이 새로운 대표로 참가하였다.

##### (1) 제1일차 회의

12월 22일 첫날 회의에서 북한측은 북한적십자회는 남측이 지원한 물자를 정확히 전달하고, 합의에 따라 그 내역을 남측에 통보하였다고 말하고, 기증단체 및 개별인사들과 대한적십자사에 사의를 표명하는 한편, 제3차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규모·품종·시기 등에 대해 토의를 진행해 나가자고 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분배결과 확인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분배의 투명성 보장을 촉구하고, 지난 11월 8일 우리측의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제의에 대해 북한측의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한편, 제3차 지원과 관련한 우리측 합의서안을 제시하였다.

이후 양측간 세부 토의가 이어졌는데, 우리측은 규모는 1차 및 2차 지원분과 같은 수준으로 노력하되 우리측의 환율변동을 고려하여 지원규모를 명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고, 품목은 국내물품 위주로 하되 식량 및 의약품, 모포, 의류, 식용유 등 생필품으로 할 것과 인도시기는 3월말까지 노력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지원규모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과 지원품목에 화학비료·농사용 비닐을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우리측이 지원품목으로 제시한 의약품은 연맹에 현금으로 기탁하고 의류는 규격대로 보내지 않을 경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달시기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인도·인수지점 추가지정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판문점·청진항(또는 나진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북한측은 육로는 신의주만 유지하고 해로는 남포·홍남항을 주장하면서, 나진·선봉은 다른 차원에서 개설한 것으로 나진항 추가는 나진·선봉지대 당국과의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이산가족에 대한 지정전달 문제와 관련, 우리측은 북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북한측은 식량지원 문제를 협의하는 이번 접촉에서 논의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분배과정 입회 및 분배결과 통보문제에 관해서, 우리측은 한적 인원들이 분배지역을 1~2회 방문하여 분배과정을 입회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적십자연맹 현지 대표들이 연맹 구호대상지역 이외 한적 구호물자 전달지역도 분배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2차 지원 합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분배결과 문건을 전달 후 20일 이내에 시·군 단위, 지원대상 세대수 등 구체적인 분배내용을 명시하여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한적요원의 분배과정 입회는 시기상조이며 지원활동은 신뢰를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데 분배결과를 의심하는 것은 적십자 사업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연맹 분배결과 확인은 연맹 구호대상 지역에 한해서 합의한 것이며, 대북 지원을 남북간에 직접 할 것인가, 연맹을 계속 개입시킬 것인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연맹을 개입시킬 경우, 연맹 대상 구호 지역에 한해서만 분배결과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제1차분 대북지원시 연맹과 협조하기로 한 합의는 당시 백용호 서기장이 잘못된 것이라면서, 모든 지원물품을 연맹으로 통해서 하거나, 연맹을 제외하고 남북간에 직접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산가족면회소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측이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운영이나 노부모 방문단 교환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 접촉에 호응할 것을 촉구하자, 북한측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 방안은 남북기본합의서안에 들어 있으므로 남북관계가 진전되어 남북기본합의서가 실천되면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외에 우리측은 1984년 북한측의 대남 수재지원시 우리측이 지원내용을 상세히 보도한 사실을 들어, 북한측이 우리의 지원에 대해 보도를 하지 않아 지원단체에 대한 대한적십자사의 분배투명성 설명이 곤란하다고 지적하자, 북한측은 답변을 회피하면서 "시기적으로 금번 접촉에 대해 북측은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남북관계가 진전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제1일 전체회의에서 지원규모·품목, 분배투명성 문제 등에 대해 입장차이로 의견접근을 보지 못하고, 오후에 문안조정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을 가졌으나 북한측의 태도변화가 없어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12월23일 오후에 제2일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 (2) 제2일차 회의

12월23일 오후에 열린 제2일 전체회의에서 북한측은 기본 입장을 바꾸지는 않았으나, 인수지점에 나진항 추가 지정과 분배결과 통보문제에 대한 우리측 제시안을 수용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분배과정 입회 문제와 분배결과 확인문제는 연맹에 맡기든지 북한적십자회를 믿든지 하라고 요구하였으며, 지정전달 협조 및 취재·보도활동 문제 등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

합의에 의해 오후 6시에 열린 실무대표 접촉에서는 지원규모, 지원품목, 인도시기, 인도·인수지점 등에 대해 잠정 합의를 이루었다. 그러나, 국제적십자연맹 현지 대표들의 분배 결과 확인문제는 12월 24일 전체회의에서 재토의하기로 하였다.

### (3) 제3일 전체회의

12월 24일 오전 10시, 제3일 전체회의가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준비한 합의서(안)을 북한측에 전달하고 합의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측 단장 최경린은 "남한측 요구가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합의서중 분배투명성 문제에 대해 완강하게 반대입장을 고수하였다.

이에 우리측은 "분배투명성과 관련해서는 북한측이 좀더 연구·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다시 접촉을 갖도록 하자" 라고 하면서, 차후 남북적십자간 직통전화를 통해 협의를 계속한 후 남북적십자실무대표 접촉을 북경에서 갖거나 또는 관문점에서 연락관을 통해 문서를 교환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이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 제4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은 국제적십자연맹을 통한 분배투명성 문제로 아무런 성과없이 다음 회담날짜도 정하지 못한 채 종료되고 말았다.

### 3. 한적을 통한 대북 구호물자 전달경과

북경 남북 적십자대표 접촉에서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대북 구호물자 전달은 제1차 지원이 6월 12일 시작되어 7월 23일 종료되었으며, 제2차 지원은 8월 12일 시작되어 10월 29일 종료되었다. 이 기간에 전달된 구호물자는 1차분 53,841톤과 2차분 52,888.1톤을 합하여 옥수수 기준 총 106,729톤으로, 당초 합의된 물량보다 6,700여톤이 초과 지원되었다.

#### 가. 제1차 대북 구호물자 전달 현황

##### (1) 전달 경로

6월 12일부터 시작된 제1차 대북 구호물자는 53,841톤이 전달되었다. 육로전달은 7월 23일까지 4차에 걸쳐 3개 지역을 통해 총 41,511톤을 전달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신의주 17,111톤, 만포9,000톤, 도문15,400톤이며, 시기별로는 1차 11,200톤(6.12~19), 2차 10,600톤(6.20~27), 3차 7,711톤(6.28~7.5), 4차 12,000톤(7.9~23)이었다.

해로전달은 우리 나라 국적선을 이용, 2차에 걸쳐 밀가루·라면·비료 등 옥수수 기준으로 총 12,330톤의 국내산 물자를 전달하였다. 1차 전달은 밀가루·라면 등 옥수수 기준 총 5,330여톤(1997.6.26. 부산항→홍남항, 장영8호), 2차 전달은 밀가루·라면·비료 등 옥수수 기준 총 7,000여톤(1997.7.26. 부산항→남포항, 동진나고야호)이었다.

##### (2) 지원 물자

1차 구호물자의 종류는 중국산 옥수수 및 옥수수 가루 41,511톤과 밀가루·라면·비료 등 국내산 물자 12,330톤(옥수수기준)이었으며, 국내산 물자는 기존 국산상표를 부착한 상태로 전달되었다. 중국산 옥수수(가루)의 경우에는 중국 현지에서 한적 마크와 기증자가 표기된 별도 포대를 제작하였다.

또한, 북한측이 국제사회에 비료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 1998년도 북한의 농산물 작황에 도움을 주기 위해 비료 2,000톤을 추가로 지원하였다.

##### (3) 지원단체 및 분배지역

1차분 지원에 참여한 우리측 민간단체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거래사랑 북한동포돕기 범국민운동 등 총10개 단체(현대그룹 명예회장 정주영씨 포함)였으며, 우리측은 함경도, 평안도 등 9개 도 및 개성직할시를 포함한 북한 전지역과 조선적십자회, 농업위원회, 조선기독교도연맹, 조선천주교인협회중앙위 등 4개 단체에 지정전달토록 요청하였다.

##### (4) 방북 인도인원

제1차 구호물자 인도를 위해 방북한 인도인원은 총 42명(선박 승무원 20명을 포함할 경우에는 총 62명)에 달하였다. 육로수송의 경우 4차에 걸쳐 3개 지역 총 36명이며, 해로수송의 경우는 2차에 걸쳐 6명이었다.

북한측은 우리측 인도인원에 대해 숙식·차량 등의 편의를 제공했으나, 해로(홍남)의 경우 홍남항내 숙박시설 부족을 이유로 거절하였다. 그리고, 인도인원들은 북측 지역 체류시 중국-북한간 국제전화를 사용하여 통신을 하였다.

#### 나. 제2차 대북 구호물자 전달 현황

##### (1) 전달 경로

지난 7월 25일의 「제3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합의에 따라 8월 13일부터 북한측에 전달되기 시작한 2차분 대북 구호물자는 10월 29일까지 옥수수 기준 총 52,888.1톤을 전달하였다.

이를 전달 경로별로 보면, 육로전달은 중국산 옥수수와 수수 및 감자를 신의주 12,211.4톤, 남양 15,664.7톤, 만포 4,800톤 등 32,676.1톤을 전달하였으며, 해로전달은 3차에 걸쳐 남포항(2회)·홍남항(1회)을 통해 밀가루, 식용유, 감자, 분유, 이유식, 어린이 영양제(비타민)등 옥수수 기준 총 20,212톤을 전달하였다.

##### (2) 지원물자

2차분 대북 구호물자는 옥수수 17,100톤, 수수 14,576.1톤, 밀가루 5,501톤, 식용유 27만 ℓ, 감자 1,300톤, 이유식 96.74톤, 분유 100톤, 어린이 영양제(비타민) 3만병이었으며, 「어린이 영양제」 지원은 아동이 우선 구호 대상임과 우리 민간단체의 지원요청 등을 고려하여, 2차분 옥수수 기준 5만톤 이외에 추가로 전달한 것이다.

##### (3) 지원단체 및 분배지역

2차분 지원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한국선명회, 일천만이산가족 재회추진위원회 등 25개 종교단체·시민단체와 여러 개인기탁자들이 참여하였으며, 우리측은 함경도, 평안도, 양강도, 자강도 등 8개 도, 7개 시·군과 북한적십자회 및 시·도 적십자회, 조선기독교도연맹, 조선직업총동맹 등 13개 단체에 지정전달이 되도록 요청하였다.

##### (4) 방북 인도인원

2차분 대북구호 물자의 인도·인수를 위해 북한을 방문한 우리측 인도인원은 육로·해로 수송을 포함하여 총 63명이었다. 특히, 우리측은 2차분 지원기간 중 인도요원과 별도로 검수요원 총 12명을 중국에 파견하여 대북 지원물품의 품질 및 정량 확보 업무를 담당케 하였다.

### III. 대북 경수로 지원 활동

#### 1. 배경

북한의 핵 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본격 대두된 것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 북한간 안전조치협정 체결(1992.1)이후 북한 핵시설에 대한 IAEA의 6차례 임시·일반사찰 결과와 북한의 사전신고 내용간에 '중대한 불일치'가 발생한데서 비롯되었다.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한차례 소규모 추출하였다는 북한의 신고와는 달리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쳐 보다 많은 플루토늄을 추출한 것으로 판명(1993.2)되었으며, 특히 미신고시설 두 곳은 재처리한 핵폐기물 저장소로 추정되었고 방사화학실험실은 대규모 재처리시설임이 밝혀졌던 것이다.

IAEA의 특별사찰 요구에 북한은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를 선언(1993.3.12)함으로써 이후 1994년 10월 21일 북한 핵문제 해결의 기본구도인 「제네바 기본합의」가 서명되기까지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국제사회와 북한간에 일촉즉발의 긴장상태가 이어졌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크게 두갈래로 진행되었는데 하나는 IAEA와 UN안보리 그리고 미국이 중심이 된 국제사회의 노력이었으며, 또 다른 하나는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정부차원의 노력이었다.

IAEA의 외교적 설득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하자 결국 북한의 NPT복귀와 IAEA 사찰의무 수용을 촉구한 UN안보리 결의(1993.5.11)에 근거하여 전세계적인 핵비확산 체제를 주도하여 온 미국이 북한과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였다.

2단계 미·북 협상 이후 북한이 1994년 5월 5MWe 실험용원자로의 연료봉 인출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여 UN안보리 제재가 추진되는 위급한 국면을 맞기도 하였지만, 카터 진 미 대통령의 방북시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미·북대화 재개를 약속함으로써 사용 후 연료봉의 재처리 금지 등을 조건으로 3단계 미·북협상(1994.7.8)이 열리게 되었으며, 우리 정부도 분단이후 최초로 북한과 남북정상회담 개최(1994.7.25~7.27, 평양)를 합의하였다.

김일성의 사망(1994.7.8)으로 3단계 협상은 연기되고, 남북정상 회담도 무산되었지만 김영삼대통령은 199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하여 북한 핵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고 「민족발전 공동계획」의 차원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자는 구상아래 대북 경수로건설 지원방침을 천명하였다.

이같은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입장표명에 힘입어 3단계 미·북협상은 급진전되었고, 1994년 10월 21일 북한의 흑연감속원자로와 관련시설을 동결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해체하는 대신 북한에 경수로 건설을 지원하여 준다는 요지의 「제네바 기본합의」를 채택·서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북 협상과정에서 경수로지원에는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반드시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던 우리 정부는 경수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995년 1월 23일 통일원에 '경수로 사업 지원기획단'을 설치하였으며, 경수로의 공급과 재원조달을 담당할 국제기구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도 한·미·일 3국 주도하에 1995년 3월 9일 설립하였다.

이후 미·북간 쿠알라룸푸르 합의 (1995.6.13)에서 북한은 한국표준형 원전의 대북 제공을 수용하였으며, 우리 정부대표로 경수로 기획단 관계자 등이 참가한 KEDO - 북한간 회담에서 마침내 1995년 12월 15일 국제법적 조약의 성격을 지니며 경수로사업의 기본골격이 되는 경수로 공급협정이 체결되었다.

공급협정 체결이후 KEDO는 일괄도급방식으로 북한에 제공하는 경수로 사업을 전반적으로 수행해 나갈 주계약자로 한전을 공식 지정(1996.3.20)하였고, 또한 공급협정 규정에 따라 KEDO-북한간 후속 의정서 협상이 이루어져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 의정서, 「통행」·「통신」 의정서를 1996년 7월 11일 서명·발효시켰으며, 「부지」 및 「서비스이용」 의정서도 1996년 9월 26일 타결하였으나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으로 말미암아 정식서명은 유보하고 북한측에 잠수함사건에 대한 시인·사과를 정식으로 요구하였다.



## 2. KEDO - 북한간 후속의정서 협상

「부지」, 「서비스이용」 의정서 협상기간 중인 1996년 9월 18일 동해안 강릉지역에서 발생한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으로 협상입지가 약화된 북한이 협상을 서둘러 종결하기를 희망한 결과 북한이 제공하는 노무 등에 대한 가격설정을 둘러싸고 상당기간 공전되기도 하던 2개 협상은 결국 우리측 입장이 대부분 반영된 형태로 1996년 9월 26일 타결되었다.

그러나 정식서명은 우리측의 반대로 유보되어 오다가 잠수함 침투사건에 대한 북한측의 시인·사과(1996.12.28)로 잠수함 국면이 해소된 후인 1997년 1월 8일 뉴욕에서 서명·발효됨으로써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이 다시 재개되었다.

### 가. 부지의정서

부지의정서는 공급협정 제5조 제3항에 따라 경수로사업 부지의 인수·접근 및 사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다음은 부지의정서의 주요 내용이다.

#### ○ 사업에 필요한 약270여만평 규모의 발전소 부지 및 주택구역 확보

- 골재원의 무료제공 및 코리도지역 (발전소 부지와 주택구역 사이 연결도로변) 공동사용 합의

\* KEDO 인원 500명 이상 거주 또는 부지 착공 후 14개월 중 선도래 시점에 주택구역앞 해안개방

#### ○ 부지의 배타적 사용권한 확보

- 북측인원 부지 출입시 KEDO의 사전 승인
- 경수로사업에 종사하는 북측인력은 KEDO·KEDO사업자의 내부질서 존중

#### ○ 사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북측 협조사항 규정

- 북측은 보세구역 설정 및 신속한 통관을 보장하며 필요시 서류심사 통관 보장
- 부지인도증 발급으로 북한원자력 당국의 건설허가 및 시운전 허가를 제외한 부지내 모든 건설허가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

다음은 KEDO와 북한간에 체결된 부지의정서의 전문이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간의 경수로사업 이행을 위한  
부지의 인수·접근 및 사용에 관한 의정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이하"KEDO"라 한다)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이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북한"이라 한다)는, 1995년 12월 15일 서명된 「KEDO와 북한 정부간의 북한에 대한 경수로사업의 공급에 관한 협정(이하"협정"이라 한다)」 과 부속의정서들에 따른 각기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재확인하고,

협정 제5조 제3항에 따른 경수로사업부지의 인수·접근 및 사용과 관련사항들에 관한 의정서(이하"의정서"라 한다)의 체결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제1조 정 의

이 의정서의 목적을 위해:

1. "KEDO인원"은 경수로사업과 관련하여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에 의해 북한에 파견되는 모든 인원과 KEDO대표단 구성원, KEDO의 관할하에 있는 여타 인원 및 이들의 동반가족을 말한다.
2. "물자"는 경수로사업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어, KEDO인원의 작업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장비, 원자재, 물품, 편의시설과 여타 품목들을 말한다.
3. 협정의 각 부속의정서상에 경수로사업부지 또는 사업부지로 표기된 "부지"는 이 의정서 제1부속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경수로발전소와 관련시설이 위치한 지역을 말한다.
4. "부지조사"는 해당지역이 KEDO와 북한이 합의하는 부지선정 기준에 부합되는 것을 보장하고, 기간시설의 개선을 포함하여 경수로발전소의 설계,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필요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의 금호지역에 대하여 KEDO가 실시하는 예비조사 및 분석을 말한다. 부지조사는 협정 제10조 제2항에 언급된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PSAR)에 포함되는 부지조사검토의 일부를 구성한다.

### 제1장 부지경계 및 부지인수

#### 제2조 부 지 경 계

1. 의정서 제1부속서에 명시되고 지도상에 표시된 부지의 외곽경계는 의정서 제2부속서로 첨부된다. 부지경계는 경수로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KEDO와 북한간의 합의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
2. KEDO는 부지조사, 협정 제2부속서 제2항에 따라 북한으로부터 제공된 관련자료 및 부지선정 기준에 기초하여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부지경계의 세부좌표를 포함하는 부지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지조사보고서는 부지가 부지선정기준에 합치하는지를 증명하여야 한다. 부지가 부지선정기준에 합치하는지의 최종확인인 PSAR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제3조 부 지 인 도 증

1. 북한은 부지조사보고서 접수후 가능한 신속하게 KEDO와 북한이 합의하는 양식과 내용에 따

라 부지인도증을 KEDO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부지인도증은 경수로사업 기간동안 효력을 갖는다. 북한에 의한 부지인도증의 발급으로 유용한 광물자원과 문화재의 소유권은 이전되지 아니하나, 이 소유권의 주장으로 경수로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이행이 방해되어서는 아니된다. 부지인도증의 발급후 KEDO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수로사업의 안전과 이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작을 목적으로 북한주민에게 부지의 일정부분을 한시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 경수로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KEDO와 북한의 합의에 의하여, 의정서 제2조 제1항에 언급된 부지경계를 포함해서 부지인도증을 개정할 수 있다. 이에는 북한이 협정 제3조 제2항에 명시된데 따라 제1기 경수로발전소와 관련시설에 대한 발전소인수증을 발급하는 때의 부지인도증 개정도 포함된다.
3. 북한은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부지인도증을 발급하기 전에 협정 제2부속서 제1, 2, 5항 및 제6항에 명시된 관련임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협정 제2부속서 제1항에 언급된 부지내의 현존 구조물 및 시설에는 매설폭발물, 지하시설물, 양어장시설과 문화재 및 기타 재산등이 포함되며 도로는 제외된다.

## 제2장 부지에의 접근, 부지사용 및 부지내에서의 권리

### 제4조 부 지 사 용

1.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는 경수로발전소와 관련시설의 건설과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의 사무소, KEDO인원의 주거와 여가시설, 서비스시설 및 경수로사업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연관된 여타 모든 목적을 위한 관련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북한의 방해받지 않고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2. 북한은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교활동의 권리 등을 포함하여 부지내에서의 KEDO인원의 작업 및 개인생활에 대하여 간섭할 수 없다.
3. KEDO, 계약자, 하청계약자 및 KEDO인원은 KEDO와 북한간에 합의하는 바에 따라 환경 및 건설에 관한 법규를 포함하여 북한의 관련법률과 규정을 존중하며, 항상 품위있고 전문가적인 태도로 행동하여야 한다.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는 KEDO와 북한간에 별도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수로사업의 이행중 변경된 지형을 복구하거나 복구를 대신하여 북한에 보상하지 않는다.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는 KEDO와 북한이 합의하는 바에 따라 경수로사업의 이행중 변경된 부지내의 도로, 철도, 강과 호수의 제방 및 관개시설을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복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복구에는 KEDO와 북한이 합의하는 바에 따라 평토작업이 포함된다.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는 제2기 경수로발전소의 완공후 쌍방이 합의하는 기간의 경과 후 북한에 인도되는 것을 제외한 여타 시설물과 구조물의 철거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KEDO와 북한은 각각의 시설물과 구조물이 북한에 인도될 것인지 또는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에 의하여 철거될 것인지의 기준에 관하여 합의해야 한다.

4. KEDO, 계약자, 하청계약자 및 KEDO인원은 KEDO와 북한이 합의하는 바에 따라 경수로사업과 관련하여 부지내에서 폭발물을 사용할 수 있다.
5. 부지내에서 건설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는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는 주변지역의 보호와 보존에 대해 유의하며 이를 위하여 북한과 협력한다. 북한은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가 부지의 경계를 넘는 지역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설활동을 하는 때에는 북한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KEDO는 부지내에서의 질서유지에 책임을 지며, 질서유지를 확보하기 위한 체제의 수립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북한주민은 KEDO의 사전 조치없이 부지내로 출입하지 못한다.
7. 경수로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북한의 동의하에 KEDO인원이 부지밖의 목적물을 사진 또는 비디오촬영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 북한의 동의없이 부지를 통과하는 북한의 수송수단을 KEDO인원이 사진 또는 비디오촬영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KEDO인원은 부지내에서 항상 품위있고 전문가적인 태도로 행동하여야 한다.

#### 제5조 부 지 접 근

1. KEDO, 계약자, 하청계약자, KEDO인원 및 물자는 「KEDO와 북한 정부간의 경수로사업 이행을 위한 통행에 관한 의정서」 제5부속서에 언급된 통행로와 부지간 연결도로를 통하여 방해받지 않고 부지를 출입할 수 있다. KEDO인원이 부지를 출입할 때에는 각각 KEDO가 발급하는 신분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2. 부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KEDO는 부지를 출입하는 인원, 물품 및 수송수단의 출입통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를 위하여 담장, 말뚝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부지경계를 표시할 수 있다. 북한은 부지 인근구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KEDO와 북한이 합의하는 부지외곽의 지점에 신분확인을 위한 검문소를 설치할 수 있다. KEDO와 북한은 검문소에서 적용할 신분확인 절차에 관하여 합의해야 하며, 그 절차는 경수로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이행을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 부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KEDO와 KEDO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는 KEDO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수로사업과 관련하여 종사하는 각각의 북한주민에 대하여 출입증을 발급한다. 출입증을 소지하지 않은 북한 주민은 부지내로의 출입이 거부될 수 있다. 부지내에 들어온 북한주민은 부지내에서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가 정한 내부규칙과 규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협조적인 태도로 행동하여야 한다.

#### 제6조 부지내 및 부지간 연결도로상의 통행

1.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가 경수로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부지내 및 부지간 연결도로에서 사용하기 위한 어떠한 수송수단도 북한내외로 반출입할 수 있다. 「KEDO

와 북한 정부간의 경수로사업 이행을 위한 통행에 관한 의정서」에 규정된 출입지점을 통해 반출입되는 수송수단은 차별없이 북한내외로 반출입될 수 있으며,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장비신청 서류에 대한 사안별 적시 검토하에 북한의 통신 관련 규정에 따라 보안이 유지되는 통신장치의 장착이 허용된다.

2. KEDO는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가 부지내 및 부지간 연결도로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북한으로 반입하거나 북한에서 취득한 모든 수송수단에 경수로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수송수단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이 의정서 제3부속서에 명시된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3. 북한은 경수로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부지내 및 부지간 연결도로에서 사용할 적절한 수송수단을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의 요구에 따라 가능한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수송수단의 가격은 「KEDO와 북한 정부간의 경수로사업 이행을 위한 노무, 물자, 시설 및 기타 서비스에 관한 의정서」에 부합되게 결정되는 공정한 가격으로 한다.
4.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가 부지내 및 부지간 연결도로상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자체 수송수단을 반입하는 경우, 북한은 수송수단 운행에 필요한 허가서를 부지에서 발급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KEDO인원은 북한의 세관을 통관한 수송수단을 부지로 운전하여 갈 수 있다. 상기 허가서의 발급신청은 협정 제9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신속하게 무료로 처리되어야 한다.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는 상기 허가서의 발급과 관련하여 KEDO와 북한간에 합의하는 바에 따라 모든 세금, 관세, 부과금 및 수수료가 면제된다. 북한내에서의 수송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허가는 경수로사업 기간동안 효력을 갖는다.
5. 북한은 부지내 및 부지간 연결도로에서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가 사용하는 수송수단을 운전 또는 운행하는 KEDO인원이 필요로 하는 모든 허가를 승인처리하여 발급한다. 이를 위하여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는 2매의 여권용 사진과 함께 KEDO에서 확인한 운전 또는 운행면허증 사본을 북한에 제출한다. 운전 또는 운행허가서의 발급신청은 협정 제9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신속하게 무료로 처리되어야 한다. KEDO, 계약자, 하청계약자 및 KEDO인원은 운전 또는 운행허가서의 발급과 관련하여 KEDO와 북한간에 합의하는 바에 따라 모든 세금, 관세, 부과금 및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북한내에서 수송수단의 운전 또는 운행을 위하여 KEDO인원에게 필요한 허가는 합의된 기간동안 효력을 갖는다.
6.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는 북한의 사전허가를 받아 KEDO인원 및 물자를 공적인 목적으로 부지외의 북한내 지역으로 수송하기 위하여 「KEDO와 북한 정부간의 경수로사업 이행을 위한 통행에 관한 의정서」 제5조 제2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수송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7. 북한은 건설장비를 제외한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가 사용하는 육상 수송수단에 대하여 1년 단위로 검사하며, 부지외에서의 교통안전에 책임을 진다. 상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수수료의 면제 및 여타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KEDO와 북한이 합의하여 정한다.

#### 제7조 부지내의 건설 및 설치

1.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는 협정에 따라서 그리고 경수로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KEDO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 시설, 물자 및 기타 재산(이하 이 조에서는 "재산"이라 한다)을 부지내에 건설하거나 설치한다.
2. 부지인도증의 발급에 따라 협정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된 허가를 제외하고 협정 및 부속의 정서에서 요구되는 부지내에서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어떠한 허가 및 면허도 북한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간주된다.
3. KEDO는 경수로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재산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의정서 제3부속서에 명시된 표지를 모든 재산에 부착할 수 있다.
4. 북한은 KEDO와 북한이 합의하는 바에 따라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재산의 건설 및 설치를 저해할 수 있는 도로, 철도 또는 해상교통을 일시 폐쇄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 제8조 KEDO인원을 위한 물자의 반출입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가 KEDO인원을 위한 물자를 북한 내외로 반출입하는 것이 허용된다. 상기 물자에는 외국의 신문·서적·정기간행물 및 소책자 등; 오디오·비디오테이프; 소프트웨어; CD-ROM 등과 같은 편의품 및; 위성안테나를 포함하는 장치들이 포함된다. 위성안테나는 외국 TV 및 라디오방송 수신을 위하여 KEDO 인원에게만 사용이 국한되며 장비요구서에 대한 적시성 있는 사안별 검토에 따라 반출입이 허용된다.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으로 반입된 물자는 KEDO와 북한이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지내에서 KEDO, 계약자, 하청계약자 및 KEDO인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한다.

#### 제9조 보세구역

1. 물자의 신속한 통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KEDO와 북한 정부간의 경수로사업 이행을 위한 통행에 관한 의정서」 제9조 제2항에 따라 북한은 부지내에 통관대기중인 물자의 장치 및 유지보수를 위해 KEDO와 북한이 합의하는 장소(이하 "보세 구역"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보세구역의 지정은 KEDO와 북한간에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경수로사업 기간 동안 효력을 갖는다.
2. 물자의 성질상 또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하여 보세구역에 물자를 장치할 수 없는 경우 북한은 KEDO의 요청에 따라 KEDO, 계약자 또는 하청계약자가 통관대기중인 물자를 보세구역외의 장소에서 장치 또는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3. 「KEDO와 북한 정부간의 경수로사업 이행을 위한 통행에 관한 의정서」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물자에 대한 검사 및 승인으로 세관절차는 완료된 것으로 본다.

4. 북한에 의한 세관검사는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기초로 가능한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 세관당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서류심사만으로 세관검사를 행한다. 반입지점에서 개장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물자에 대하여는 북한 세관당국이 이를 봉인하고, 보세구역 또는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구역에서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가 개장하는 때에 세관검사를 실시한다.

5.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의 요청에 따라서 경수로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북한은 「KEDO와 북한 정부간의 경수로사업 이행을 위한 통행에 관한 의정서」에 명시된 반입·반출지점과 부지내 보세구역간에 검사를 위하여 물자를 바로 운송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 제10조 부지내 공중보건과 공중위생

1. KEDO, 계약자, 하청계약자 및 KEDO 인원은 부지내에서의 공중보건 및 공중위생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부지내 또는 주변지역에서 공중보건 또는 공중위생상의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KEDO와 북한은 신속하게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양측은 가능한한 안전하고 신속하게 그러한 공중보건 및 공중위생상의 비상상황을 해결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3. KEDO 인원은 애완용 동물과 관상용 식물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동물이나 식물도 부지내에서 기르지 못한다.

4. 「KEDO 와 북한 정부간의 경수로사업 이행을 위한 통행에 관한 의정서」에 명시된 출입지점을 통하여 북한에 들어가는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는 적절한 대로 검역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KEDO와 북한은 부지내에서의 공중보건의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KEDO 인원 및 부지내에서 작업중인 북한주민에 대한 의료검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KEDO 와 북한은 KEDO 인원 또는 부지내에서 작업중인 북한주민이 공중보건상의 위해를 초래하는 경우 상호 협력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제11조 여타 작업구역

북한은 KEDO, 계약자, 하청계약자 및 KEDO 인원에 대하여 의정서 제4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부지외의 여타 작업구역(이하 “여타 작업구역”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여타 작업구역의 세부위치·경계 및 사용기간이 의정서 제16조에 규정된 협의를 통하여 KEDO와 북한간에 합의되는 때에 상기 여타 작업구역은 그 사용기간 동안 협정의 부속의정서상의 경수로사업부지 및 사업부지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며, 의정서 제2조, 제3조 제2항 및 제9조 제5항의 규정을 제외한 의정서상의 부지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향유한다. KEDO는 KEDO사무소를 제외한 여타 작업구역에서의 질서유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12조 주거·여가지역과 발전소 건설지역을 연결하는 통로/휴식지역

KEDO 인원은 주거·여가지역과 발전소 건설지역 사이의 육상 통로지역을 언제든지 방해받지 않고 통행한다. 통로/휴식지역의 정확한 경계는 의정서 제16조에 규정된 KEDO와 북한간의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 제13조 해안지역

1. KEDO 인원은 500인 이상의 KEDO 인원이 주거·여가지역에 거주하게 되거나 경수로사업의 부지준비를 위한 공식 부지착공 기공식후 14개월이 경과되는 때 중 선도래 시점에서 주거·여가지역 전방에 있는 해안지역에 언제든지 방해받지 않고 출입할 수 있다. 해안지역의 경계는 의정서 제5부속서에 명시한다. 해안지역의 경계는 의정서 제2부속서 각주3에 언급된 현지 조사를 통하여 확정된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해안지역은 북한이 책임을 지는 질서유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KEDO 인원만이 이용할 수 있다. KEDO 와 북한은 의정서 제16조에 명시된 협의를 통하여 질서 유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의 수립과 KEDO 인원 및 상기 지역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 제14조 KEDO 영사직원의 통지의무 면제

KEDO 영사직원이 의정서 제12조 및 제13조에 명시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거주하는 경우에 「KEDO와 북한 정부간의 북한내에서의 KEDO의 법적지위,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에 관한 의정서」 제11조 제2항에 명시된 통지가 면제된다.

## 제3장 협력 및 이행

### 제15조 협력

1. KEDO와 북한은 부지내에서의 KEDO인원 및 물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KEDO인원, 건물, 사무소, 시설, 물자 및 경수로사업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여타 재산의 안전을 위하여 즉각적인 결정과 행동이 요구되는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북한은 관련 국제협정과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관행에 따라 최대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즉각적이고도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2.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는 북한의 사전 동의하에 부지외의 북한지역에서 물자의 수리, 제작, 조립, 시험 및 교환작업을 할 수 있다. 북한은 요청을 받는 경우 상기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3. 북한은 KEDO의 요구에 따라 파이프라인, 통신시설, 배전선 및 열형광방사능계측기를 포함한 환경방사능감시시스템 등 경수로사업과 관련된 시설물들의 물리적 방호를 위하여 KEDO, 계



약자 및 하청계약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 제16조 의정서의 이행조치

KEDO와 북한은 의정서의 신속하고 원활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협의는 어느 일방의 요청에 의해, 사업부지 또는 필요한 경우 상호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필요시 KEDO와 북한의 기술전문가를 포함한다.

#### 제17조 기타

1. 경수로사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북한은 KEDO가 공급할 2기의 경수로 발전소의 공식 명칭을 KEDO와의 협의이후 결정해야 한다.
2. 경수로사업의 건설을 위하여 북한이 제공하는 참조기준점과 삼각 측량점의 세부사항은 의정서 제6부속서에 명시한다.

#### 제18조 일반조항

1. 의정서는 서명한 날부터 발효한다.
2. 의정서의 부속서들은 그 각주를 포함하여 이 의정서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3. 의정서는 쌍방의 서면합의로 개정될 수 있다. 의정서의 개정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한다.
4. 의정서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하여는 협정 제15조를 적용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97년 1월 8일 뉴욕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를  
대표하여  
Bosworth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허중

#### 제1부속서

의정서 제1조 제3항에 언급된 부지는 아래 지역을 포함한다.

1. 발전소 건설지역: 발전설비지역, 임시전력생산설비지역, 취·배수시설지역, 물양장시설지역, 방파제 및 해양상의 관련 항만 지역, 창고 및 야적장지역,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지역, 물양장시설과 이 항에 명시된 지역간의 도로, 오물처리를 위하여 임대 또는 제공된 지역, 건

조물 및 가건물지역, 건설쓰레기의 분리 및 임시저장지역, 경수로 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기타 지역을 포함

2. 주거 및 여가지역 : KEDO 인원의 주거·후생복지 및 여가를 위한 지역, 통신시설지역 및 전력생산설비지역 등을 포함
3. 용수, 채석 및 골재원지역 : 취수원지역, 채석원 및 채석저장지역을 포함한 채석장 부지지역, 골재원지역, 음용수 및 공정용수를 위한 용수지역 등을 포함

제2부속서

의정서 제2조 제1항에 언급된 부지경계지도는 아래와 같다.

부지경계(1) : 발전소 부지



부지경계(2) : 골재 · 용수원 지역



### 제3부속서

의정서 제6조 제2항 및 제7조 제3항에 명시된 표지는 다음과 같다.

1. KEDO의 명칭 및 상징표시물
2. KEDO의 명칭 및 상징표시물과 함께 부착하는 KEDO의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의 명칭 및 상표.
3. KEDO의 명칭 및 상징표시물과 함께 부착하는 수송수단과 장비 생산자의 명칭 및 상표.
4. KEDO와 북한이 합의하는 기타 명칭 및 상징표시물.  
KEDO는 상기 명칭 및 상징표시물이 북한에서 사용되기 전에 미리 북한에 통보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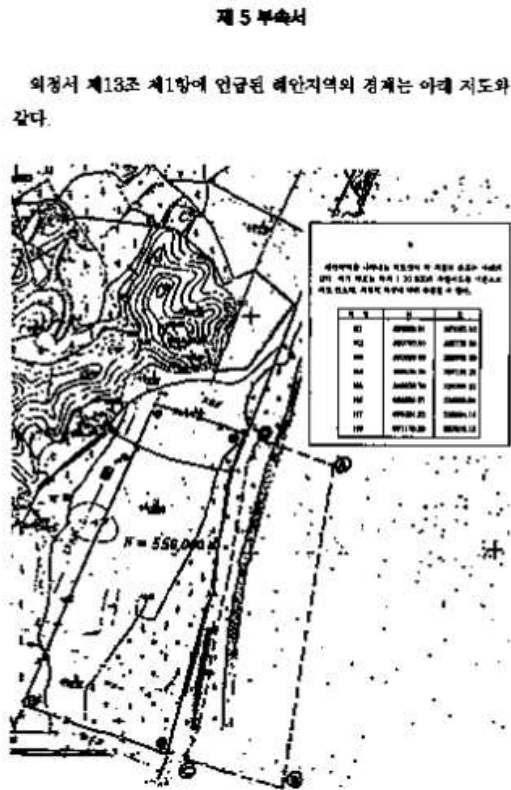
### 제4부속서

의정서 제11조에 언급된 여타 작업구역은 다음의 지역을 포함한다.

1. 물자의 선적·하역 및 저장을 위하여 『KEDO와 북한 정부간의 경수로사업 이행을 위한 통행에 관한 의정서』에 명시된 출입지점과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가 사용하는 사무소
2. 파이프라인 및 배전선 등 필수시설의 연결에 필요한 시설지역, 생활쓰레기 처리지역, 잉여굴착토 및 준설물 처분지역, 열형광 방사능계측기를 포함한 환경방사능감시시스템 설치지역 등을 포함하는 고정작업지역
3.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가 건설·개선 또는 보수하고 있는 의정서 제1부속서 제3항에 명시된 도로 또는 그 도로의 일부분을 포함하는 임시작업지역
4. KEDO 인원이 경수로사업의 이행을 목적으로 연장기간동안 작업을 하는 지역으로서 이 부속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지역

제5부속서

의정서 제13조 제1항에 언급된 해안지역의 경계는 아래 지도와 같다.



## 제6부속서

의정서 제17조 제2항에 명시된 참조기준점과 삼각측량점의 좌표는 다음과 같다.

(단위 : 미터)

### 1. 참조기준점 (매바마을 입구)

$$X = 896,785.560$$

$$Y = 328,302.130$$

$$H = 0.650$$

### 2. 삼각측량원점

#### a. 발전소 건설부지

삼각측량점 (어인봉)

$$X = 894,634.260$$

$$Y = 328,838.410$$

$$H = 136.70$$

삼각측량점 (현금호쪽 A-부지정상)

$$X = 896,739.740$$

$$Y = 327,495.030$$

$$H = 63.42$$

#### b. 주거 및 여가지역

삼각측량점(주거·여가지역 인근 산정상)

$$X = 890,904.750$$

$$Y = 326,722.870$$

$$H = 85.02$$

삼각측량점 (신호봉)

$$X = 891,495.970$$

$$Y = 325,083.740$$

$$H = 215.30$$

#### c. 공정용수 취수시설 및 수로건설지역

삼각측량점 (당우리 서쪽 산정상)

$$X = 906,330.410$$

$$Y = 324,440.230$$

$$H = 135.76$$

삼각측량점(중고대 남서쪽 천외산 정상)

$$X = 907,149.260$$

$$Y = 322,781.820$$

$$H = 364.85$$

주 : 상기 참조기준점 및 삼각측량점의 좌표는 북한의 국내좌표를 말함

X = 위도      Y = 경도      H = 고도



## 나. 서비스이용 의정서

서비스이용 의정서는 공급협정 제9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북한이 제공하는 노무, 물자, 시설 및 기타 서비스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다음은 서비스이용 의정서의 주요 내용이다.

- 계약체결 구조는 『KEDO/KEDO계약자-북한/북한회사』 간 계약체결에 대한 가이드라인 결정 후 한전 등 우리측 사업자와 북측 회사가 직접 계약 체결
- 북측이 제공하는 노무, 물자 등의 가격은 북한내 합영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 적용되는 가격을 고려하여 KEDO측과 북측이 협의 결정
- 북한인력 사용시 북측은 인력 리스트 제공
  - KEDO측은 북측과 협의를 거쳐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종료 이 전에 돌려보낼 수 있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탁월한 작업성과에 대한 재정적 또는 기타의 보상 등 성과급 제도 명시
- KEDO측 은행의 금융서비스 제공 근거 명시
  - 부지 굴착공사 기공식 후 14개월 경과 또는 부지준비의 완료 중 선도래 시점부터는 KEDO측 은행 지점 개설 가능
  - 사업초기는 KEDO측 은행사무소가 수신, 환전, 송금 등 필수적인 서비스 제공
- 부지내 자체 의료시설 설치·운영
  - 의료진 초치 및 의료장비 반·출입

다음은 KEDO와 북한간에 체결된 서비스이용 의정서의 전문이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간의 경수로사업 이행을 위한  
노무, 물자, 시설 및 기타 서비스에 관한 의정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이하 “KEDO” 라 한다)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이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한” 이라 한다)는,

1995년 12월 15일 서명된 『KEDO와 북한 정부간의 북한에 대한 경수로사업의 공급(이하 “경수로사업” 이라 한다)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 이라 한다)』 과 부속의정서들에 따른 각기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재확인하고, 협정 제9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노무, 물자, 시설 및 기타 서비스에 관한 의정서(이하 “의정서” 라 한다)의 체결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제 1 장 의정서의 목적 및 일반원칙

### 제 1 조 의정서의 목적

의정서의 목적은 KEDO와 북한이 KEDO, 계약자, 하청계약자 및 KEDO의 관할하에 있는 인원과 동반가족을 포함한 그들의 인원들(이하 “KEDO 인원” 이라 한다)에게 제공되는 노무, 물자, 시설 및 기타 서비스에 관한 제공조건을 규정하는데 있다.

### 제 2 조 일반원칙

1. 북한은 KEDO, 계약자, 하청계약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협정 제9조 제4항에 따라 KEDO, 계약자, 하청계약자 및 KEDO 인원에게 가능한 범위내에서 북한의 노무, 물자, 시설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북한은 이러한 북한의 노무, 물자, 시설, 기타 서비스의 제공에 대해 책임을 지는 회사(이하 “북한회사” 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2. KEDO와 북한은 각각 부지 및 부지인근에 설치하는 사무소를 통해 KEDO, 계약자, 하청계약자와 북한회사가 경수로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북한의 노무, 물자, 시설 및 기타 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KEDO와 북한의 사무소는 KEDO 계약자와 하청계약자, 북한회사와 공동으로 북한의 노무, 물자, 시설, 기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계약의 효과적 체결 및 이행을 위한 일반원칙과 준거지침에 관해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3. KEDO, 계약자, 하청계약자와 북한회사는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일반원칙과 준거지침에 부합되도록 관련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해야 한다.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는 KEDO의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의 자격으로 북한의 노무, 물자, 시설 및 기타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러한 노무, 물자, 시설, 기타 서비스의 가격은 KEDO, 계약자, 하청계약자와 북한회사간에 합의된 공정한 가격이어야 한다. 이러한 가격은 북한내에서 운영중인 합영회사와 외국인투자회사에게 적용되는 가격을 고려해서 산정되며 생산성, 기술숙련도 및 기타 관련 요소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4. KEDO, 계약자, 하청계약자는 북한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제공되는 노무, 물자, 시설 및 기타 서비스의 가격을 미 달러화로 북한회사에 직접 지불해야 한다. 발전소 건설지역과 주거 및 여가지역간의 통로/휴식지역에서의 모든 지불 또한 미 달러화로 이루어져야 한다.
5. KEDO, 계약자, 하청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북한은 KEDO와 북한이 합의하는 가격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서비스와 기타 관련사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 2 장 노 무

### 제 3 조 북한노무의 제공

1. 북한회사는 경수로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KEDO, 계약자, 하청계약자에게 이 의정서에 따라 북한의 노무인력을 적시에 가능한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2. 경수로사업을 위해 KEDO, 계약자, 하청계약자는 비용효과성과 노무의 질을 고려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북한 노무인력을 사용하며, 경수로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이해보장을 위해 KEDO회원국과 KEDO에 기여한 국가의 노무인력을 사용한다. 북한회사와의 협의를 거쳐 KEDO, 계약자, 하청계약자는 여타 국가의 노무인력을 사용할 수 있다.
3. KEDO, 계약자, 하청계약자는 북한 노무에 대한 요청을 북한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청접수 후 북한회사는 이용가능한 북한 노무인력의 작업수행능력을 포함한 상세한 관련 정보와 함께 그 명단을 KEDO, 계약자, 하청계약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KEDO, 계약자, 하청계약자는 경수로사업을 위해 북한회사가 제공한 북한 노무인력의 접수를 북한회사와의 협의를 거쳐 거부할 수 있다.
4. 사업부지에서 북한 노무인력이 경수로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이행을 저해하는 어떠한 형태의 행위도 하지 않을 것임을 북한회사는 보장하여야 한다.
5. KEDO, 계약자, 하청계약자는 경수로사업과 관련하여 일하고 있는 북한 노무인력을 계약종료 이전이라도 그 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되돌려 보낼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제 4 조 임 금

1. 제2조에 언급된 관련계약에서 규정될 임금은 기본임금, 탁월한 작업성공에 대한 재정적 또는 기타의 보상, 위험수당 그리고 일요일이나 휴일작업을 포함한 초과근무수당으로 구성된다. 북한 노무인력에 대한 임금은 관련계약에 따라 지급된다.
2. 북한회사는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임금이 관련 북한 노무인력에게 차질없이 지급됨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 5 조 안전교육 및 훈련

KEDO, 계약자, 하청계약자는 경수로사업과 관련하여 작업하는 북한 노무인력에게 안전교육, 관련 직무훈련, 보호장비 및 기타 재해예방조치를 포함한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 3 장 물자와 시설

##### 제 6 조 물 자

1. 북한회사는 제2조에 따라 경수로사업을 위해 북한내에서 구입 가능한 물자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동 물자에는 KEDO, 계약자, 하청계약자 및 KEDO 인원의 생활과 작업

에 필요한 다음 품목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가. 농산물, 육류, 어류, 과일, 채소, 음용수 및 식료품과 같은 생활에 필요한 품목

나. 시멘트, 철강제품, 전신주, 가솔린, 연료, 안정적인 전력, 목재, 기타 건축기계를 포함한 물자 및 장비와 같은 작업에 필요한 품목

2. KEDO, 계약자, 하청계약자는 경수로사업을 위해 북한회사가 제공하는 어떠한 물자에 대해서도 이 의정서 제2조에 규정된 관련계약에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3. KEDO, 계약자, 하청계약자는 KEDO 인원들에 대한 편의품과 기타 물자의 제공을 위해 KEDO와 북한 정부간의 경수로사업 이행을 위한 부지의 인수, 접근 및 사용에 관한 의정서』에 제8조 및 제9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원산지에 구매받음이 없이 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물자를 북한내외로 반출·입할 수 있다.

#### 제 7 조 편의시설

1. KEDO, 계약자, 하청계약자는 KEDO인원들에 대한 편의품과 기타 물자의 제공을 위해서 이 의정서의 부속서에 규정된 편의시설을 사업부지내에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편의시설들은 북한의 모든 부과금과 수수료로부터 면제된다.
2. KEDO, 계약자, 하청계약자는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편의시설을 비영리, 실비 기준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3. 북한은 숙박, 식사, 여가 및 기타 서비스를 위한 편의시설을 사업 부지밖에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제 4 장 서 비 스

##### 제 8 조 의료서비스

1. KEDO, 계약자, 하청계약자는 자체의료시설을 사업부지내에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사업부지내로 의료진을 초치할 수 있고,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어떠한 의료장비도 북한내외로 반출·입할 수 있으며, 또한 의정서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북한의 의사, 간호사 및 기술자들을 참여시킬 수 있다.
2. 북한회사는 의정서 제2조에 따라 북한내의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를 KEDO 인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 9 조 금융서비스

1. 의정서 제2조에 따라 북한은 북한무역은행이 공시하는 환율에 따른 환전과 기타 금융서비스를 KEDO, 계약자, 하청계약자와 KEDO 인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이 조 제1항을 위해 북한무역은행과 조선국제보험회사는 KEDO, 계약자, 하청계약자 및 KEDO 인원이 금융거래와 보험구매를 할 수 있도록 KEDO와 북한이 합의하는 부지내 일정 장소에 각각 지점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북한무역은행의 지점이 이 조 제4항에 언급된 비북한 은행의 대표사무소나 합영은행의 지점이 사업부지내에 설치·운영되기 전까지 모든 적절한 금융거래와 서비스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조선국제보험회사의 지점은 KEDO, 계약자, 하청계약자와 KEDO 인원에게 육상운송수단에 대한 제3자 책임 보험을 제공할 수 있다.
3. 북한은 경수로사업의 부지준비를 위한 공식 부지굴착공사 기공식 후 14개월의 경과 또 부지 준비의 완료중 선도래 시점에 KEDO의 요청에 따라 비북한 은행 및 여타 금융기관이 사업부지내에 지점을 설치·운영하고 KEDO, 계약자, 하청계약자 및 KEDO 인원을 위한 모든 적절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이 항에 언급된 비북한은행 및 여타 금융기관의 지점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는 오직 경수로사업의 이행과 관련되도록 사용되어야 한다.
4. 이 의정서가 발효된 후 가능한 신속하게 북한은 KEDO의 요청에 따라, 비북한 은행이 사업부지내에 대표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KEDO, 계약자, 하청계약자 및 KEDO 인원을 위한 수신, 환전, 송금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또한, 북한은 의정서가 발효된 후 가능한 신속하게 KEDO의 요청에 따라, 북한의 관련법과 규정에 부합되게 합영은행이 사업부지내에 지점을 설치·운영하고, KEDO, 계약자, 하청계약자 및 KEDO 인원을 위한 모든 적절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5. 『KEDO와 북한 정부간의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에 관한 의정서』 제3조 제4항에 따라 KEDO, 계약자, 하청계약자는 북한내외로 이전하는 자금규모 및 송금액수에 있어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 제 5 장 일반조항

### 제 10 조 의정서 이행조치

KEDO와 북한은 의정서의 신속하고 원활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협의는 어느 일방의 요구에 의해 사업부지에서 이루어지거나 또는 필요한 경우 상호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필요시 KEDO와 북한의 기술전문가를 포함한다.

### 제 11 조 기 타

의정서의 어떠한 사항도 협정 및 여타 부속의정서에서 KEDO, 계약자, 하청계약자 및 KEDO 인원에게 부여된 어떠한 특권, 면제, 보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제 12 조 일 반 조 항

1. 의정서는 서명한 날부터 발효한다.
2. 의정서의 부속서는 이 의정서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3. 의정서는 쌍방의 서면합의로 개정될 수 있다. 의정서의 개정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한다.
4. 의정서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하여는 협정 제15조를 적용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97년 1월 8일에 뉴욕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를  
대표하여  
Bosworth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허종

#### 부 속 서

의정서 제7조 제1항에 언급된 편의시설은 아래 항목을 포함한다.

1. 식당시설
2. 식료품 및 의약품 판매시설
3. 생활용품시설
4. 공원을 포함한 실내 및 실외 여가시설
5. 종교시설

다. 미지급시 조치 의정서

1997년 3월 18일 뉴욕에서 KEDO-북한간 「미지급시 조치 의정서」 협상이 개최되었다.

KEDO측에서는 Mitchell Reiss 보좌관을 수석대표로 KEDO 사무국 직원과 한·미·일 3국 정부대표가 참석하였으며, 북한측에서는 장창천 외교부 연구관을 수석대표로 7명이 참석하였다.

협상에서는 경수로건설공사를 KEDO측이 지연할 경우 북한측이 입게 될 재정적 손실도 같이 규정하여야 한다는 북한측의 주장에 따라 협상이 다소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북한측의 미지급시 벌칙금을 중심으로 미지급시 조치 의정서가 가서명(1997.5.2)되었고, 1997년 6월 24일 정식으로 서명·발효되었다.

미지급시 조치 의정서는 공급협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일방이 타방에 대한 채무의 상환을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벌칙금을 산정 부과하는 것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을 정한 의정서로서 다음은 미지급시 조치 의정서의 주요 내용이다.

○ 미상환시 벌칙금(Penalty) 부과

- 미상환시 ‘실제 조달비용(기본이자율) + 3%(또는 가능할 경우 2%)’ 의 벌칙금리 적용

○ 기한이익 상실(Acceleration Clause) 규정

- 미상환 상태로 30일 경과 후부터는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잔액의 전부(또는 일부)를 즉시 상환하게 할 수 있는 「기한이익 상실권」 발동 가능

○ 기한이익 상실시 미상환금액 전액에 대한 벌칙금 부과

- 기한이익 상실조항 발동 후 정한 날(서면통지)까지 다시 미상환할 경우 동일한 벌칙금(Penalty)부과

다음은 KEDO와 북한간에 체결된 미지급시 조치 의정서의 전문이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재정적 의무와 관련한 미지급시 조치에 관한 의정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이하 “KEDO” 라 한다)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이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한” 이라 한다)는,

1995년 12월 15일 서명된 「KEDO와 북한 정부간의 북한에 대한 경수로사업의 공급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 이라 한다)」 과 부속의정서에 따른 각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재확인하고, 협정 제16조 제3항에 따라, 협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재정적 의무에 대하여 지급이 지체되거나 미지급될 경우 취해질 조치들에 관한 의정서(이하 “의정서” 라 한다)의 체결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제 1 조 정 의

이 의정서의 목적을 위해 :

1. “당사자” 는 KEDO 또는 북한을 의미하고 “당사자들” 은 KEDO와 북한을 의미한다.
2. “재정적 의무” 는 경수로사업과 관련하여 협정, 부속의정서 또는 협정과 부속의정서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제3항에서 규정된 지급 기일에 지급하겠다는 지급약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급약정은 현금·현금등가물에 의한 지급 또는 재화의 양도를 통한 지급 등 지급형태를 불문한 재정적 의무이다.
3. “지급기일”은 협정, 부속의정서 또는 협정과 부속의정서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서면 합의에 명시된 재정적 의무의 지급기일을 의미한다.
4. “미지급”은 지급기일 또는 그 이전에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5. “의무불이행 당사자”는 재정적 의무와 또는 위약금의 발생근거가 되는 협정, 부속의정서 또는 협정과 부속의정서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서면합의에 명시된 조건에 부합되도록 재정적 의무와 또는 위약금의 지급을 이행하지 못한 당사자를 말한다.
6. “위약금” 혹은 “위약금들”이란 미지급시 의무불이행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전적 벌칙이다.

## 제2조 일반원칙

1. 각 당사자는 협정, 부속의정서, 또는 협정과 부속의정서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서면 합의에 규정된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기일 또는 그 이전에 신속히 모든 재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 의무불이행 당사자에 의해 미지급이 발생한 경우, 타방 당사자는 의무불이행 당사자에게 이 의정서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위약금이나 위약금들을 산정하여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

## 제3조 미지급 위약금 산정 및 부과

1. 일방 당사자가 지급기일 또는 그 이전에 재정적 의무의 전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타방 당사자는 의무불이행 당사자에게, 지급기일로부터(지급기일 포함) 재정적 의무와 미지급 위약금이 지급되는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미지급액에다 부속서에서 정한 기본이자율에 연리 3% 또는 가능하다면 2%를 가산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미지급 위약금을 산정하여 부과한다.
2. 각 당사자는 재정적 의무를 구성하는 통화 또는 통화들별로 제1항에서 언급한 기본이자율을



신속히 타방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재정적 의무와 미지급 위약금은 그 재정적 의무와 미지급 위약금이 지불되어야 하는 당사자에게 지급기일이 지난 후 언제라도 지급되어야 한다.

#### 제4조 기한이익의 상실의 산정과 부과

1. 일방 당사자가 지급기일 또는 그 이전에 재정적 의무의 전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타방 당사자는 지급기일 경과 30일 이후 어느 때나, 협정, 부속의정서 또는 협정과 부속의정서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서면합의에 규정된 다른 재정적 의무의 전체 또는 그 일부(이하 "기한이익의 상실금액"이라 한다)가 즉시 기일이 도래하고 상환되어야 함을 의무불이행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함으로써 선언할 수 있다.
2. 서면통지를 받은 즉시, 추가적 지급제시, 청구, 이의제기, 다른 종류의 공식행위 없이도, 기한이익의 상실금액은 즉시 만기가 되어 상환되어야 하며, 서면통지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그 통지서를 받은 날이 지급기일이 되는 재정적 의무로 간주된다.

#### 제5조 협 의

KEDO와 북한은 의정서의 신속하고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신속히 협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협의는, 필요한 경우 KEDO와 북한측의 금융전문가를 대동할 수 있으며,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양자가 합의하는 장소에서 개최된다.

#### 제6조 일 반 규 정

1. 의정서는 서명한 날부터 발효한다.
2. 의정서의 부속서는 이 의정서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3. 의정서는 쌍방의 서면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의정서의 개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4. 의정서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해서는 협정 제15조를 적용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97년 6월 24일 뉴욕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를  
대표하여  
Bosworth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허 종

## 부속서

제3조 제1항에서 언급한 기본이자율은 적용가능한 바에 따라 다음 이자율을 의미한다.

- (1) 의무불이행 당사자의 재정적 의무의 원인이 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타방 당사자가 조달한 자금의 이자율; 혹은
- (2) 의무불이행 당사자가 지급기일 또는 그 이전에 재정적 의무 전액을 지불하지 못함으로써 타방 당사자가 현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조달하는 자금의 이자율; 혹은
- (3) 의무불이행 당사자가 상환기일에 재정적 의무 전액을 지불했다면 수취할 수 있는 6개월 만기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율. 제3조 제1항에서 언급된 연리 2% 또는 3%의 가산이자율은 이 조항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3)의 이자율은 (1)과 (2)의 이자율이 적용될 수 없는 재정적 의무나 그 일부분에 적용된다.

(1)과 (2)의 이자율은 자금조달 당시의 상업적 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 자금조달 당사자는 자금조달 시점에 공개적으로 통용되는 이자율을 타방 당사자에게 신속히 통지한다.

어떤 재정적 의무와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상이한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일중 혹은 다중 통화의 기본이자율은 적용가능한 이자율의 가중평균이거나 통화별 관련이자율의 가중평균이다.

## 라. 품질보장 및 보증의정서

1997년 11월 4일~11월 11일간 KEDO와 북한은 기체결된 6개 의정서에 이어 일곱 번째 의정서가 되는 「품질보장 및 보증 의정서」 협상을 북한의 묘향산 지역에서 개최하였다.

KEDO측에서는 Mitchell Reiss 보좌관을 수석대표로 KEDO사무국 직원과 한·미·일 3국 정부 대표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으며, 북한측에서는 이명식 원자력총국 고문을 수석대표로 16명이 협상에 참여하였다.

품질보장 및 보증의정서는 북한 금호지역에 건설되는 경수로 발전소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품질보장 활동과 발전용량 및 구조물 공사에 대한 성능 보증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에서 개최된 1차 협상에서는 양측의 기본입장이 제시되는 선에서 협상이 종결되었으며, 이어 1997년 12월 3일부터 12월 23일까지 뉴욕에서 속개된 2차 협상에서도 양측이 품질보장 및 보증의 범위와 조건에 관한 일부 의견차이를 해소하지 못함으로써 의정서의 타결은 1998년도 과제로 미루어지게 되었다.

### 3. 부지준비공사 착공

#### 가. 부지조사 실시

부지조사는 경수로건설 예정지인 북한의 함경남도 금호지역이 발전소부지로 적합한지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부지조사 결과는 발전소의 설계 및 건설의 인허가 취득을 위한 예비안전성 분석 보고서와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작성의 기초자료로도 활용하게 된다.

KEDO와 북한은 이미 경수로 공급협정에서 양측이 합의하는 부지선정기준에 경수로 예정부지가 적합한지를 KEDO가 조사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부지조사 완료시 그 결과에 따라 북한이 KEDO에 부지인도증을 발급하기로 규정하였었다.

이에 따라 KEDO는 1995년 8월 15일부터 부지조사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는데 1·2차 부지조사는 KEDO가 주관하고, 한·미·일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였으나, 3차 부지조사부터는 한전이 사업전 용역(Pre-Project Service)의 일환으로 이를 수행함으로써 우리측 전문가가 부지조사를 주도하게 되었다.

KEDO는 1996년 7월 실시되었던 6차 부지조사까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북한의 금호지역이 원전건설예정지로 적합함을 잠정평가하는 개략적인 부지조사 보고서를 북한에 제출(1997. 2)하였다.

북한은 이를 검토한 후, 1997년 7월 21일 「부지인도증」을 KEDO에 발급하였는데, KEDO가 정식으로 부지를 인수받음으로써 영사보호의정서 규정에 따라 경수로부지내 모든 질서 유지를 KEDO가 책임지게 되었으며 우리 건설인력들이 안심하고 건설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한편 1997년 3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4개월에 걸쳐 실시된 제7차 부지조사에서는 우리측 전문가 48명이 미국 4명, 일본 3명과 함께 부지의 지질특성 조사를 위한 시추작업, 굴절탄성과 검사·단층촬영·지하수 유동조사 등 현장시험, 부지의 범위를 결정하는 부지경계 측량을 실시하였다.

또한 예비안전성 분석보고서(PSAR) 및 환경영향평가서(ER)작성을 위한 사계절 현장조사인 제8차 부지조사 중 추계조사를 우리측 전문가 22명이 참여하여 1997년 10월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실시하였다. 동 조사에서는 자동 기상관측기기 설치, 대기혼합고 측정 등 기상조사, 부지인근에 대한 생태계 및 환경질 조사 등이 실시되었는데 앞으로 해양조사 등을 포함하여 사계절 현장조사가 계속될 예정이다.

## 나. 부지준비공사 착공 관련 KEDO-북한간 실무협상

경수로 공급협정상 KEDO-북한간 체결토록 되어 있는 후속의정서 중 영사보호·통행·통신 등 기본적인 의정서가 타결되고, 경수로부지 예정지인 금호지역에 대한 기초적인 부지조사도 마무리 되어감에 따라 정부는 미·일과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1997년 중 부지준비공사 착공 방침을 정하고 이에 대한 준비작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이미 1996년 7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한전을 대북 경수로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남북협력사업자」로 승인한 바 있었다.

일괄도급 방식의 대북경수로지원은 발주자인 KEDO와 주계약자인 한전간에 일괄도급계약 (Turn-Key Contract)이 체결되고 난 후 공사가 시작되는 것이 원칙이나, KEDO 집행이사국간의 경수로 총사업비 규모의 결정 및 이에 따른 재원분담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본공사 이전에 초기의 부지 준비공사만이라도 우선 착공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북한측이 핵시설을 동결하고 있는 사용후 연료봉에 대한 봉인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네바합의 이후 경수로 사업에 대한 가시적 진전이 없는데 대한 북한측의 의구심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재원분담협상 종결 및 KEDO-한전간 주계약 체결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부지준비공사가 실제로 착공되기 위해서는 KEDO와 북한간에 기합의한 6개 의정서의 원칙적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분야별 세부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인원과 물자의 왕래가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남북관계의 현실상 북한지역에서 이루어질 경수로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이행되기 위해서는 우리 건설인력의 자유로운 북한 입출입 및 체류, 물자·장비의 대규모 투입과 운영 등에 관한 KEDO-북한간에 세부절차 합의가 필수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입출입 및 해상 수송절차·공로 이동절차·세관통관 및 검역절차, 부지에서의 긴급환자 발생시 의료대책·질서유지 대책, 남북간 우편 및 통신연결 등 제반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KEDO와 북한간의 전문가 실무협상이 개최되었다.

1997년 4월 9일부터 4월 15일까지 북한의 신포·마전지역에서 개최된 1차 실무협상의 KEDO대표단은 우리측 대표 40명, 미국측 대표 3명, 일본측 대표 3명, KEDO사무국 직원 8명 등 총 54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우리측 대표단에는 경수로기획단 관계자, 통일원,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기관의 전문가와 주계약자인 한전측 관계자가 참가하였으며, 특히 분야별 협상에서는 남북한 전문가들이 직접 협상 당사자가 되어 제반문제들을 협의하였다.

이 협상에서 KEDO대표단은 한국해양대학교의 실습선인 '한나라호'를 이용하여 강원도 동해항과 함경남도 양화항을 왕래하였는데, 이는 통행의정서상의 해로를 이용한 첫 사례로서, 우리측 대규모 인원의 해로를 통한 첫 방북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1차 실무협상에 이어 1997년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의 북한 묘향산 지역에서의 2차 협상 및 1997년 6월 23일부터 7월 2일까지의 뉴욕에서의 3차 협상 결과 KEDO와 북한은 1997년 7월 2일 의정서 이행과 관련된 각종 절차 및 양해 각서 등으로 구성된 19개 분야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모두 19개 분야 합의서상의 제반 절차 규정은 앞으로 남북교류협력 시대의 본격 개막시 좋은 참고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19개 분야 합의서의 주요 내용이다.

### □ 출 입 절 차

- 무사증원칙에 입각, KEDO 증명서를 사용하여 방북
  - 단, 지정된 출입지점(양화항 및 선덕공항) 이외의 지역으로 출입시에는 KEDO증명서에 사증 취득 필요
- KEDO 인원예 대한 체류수속은 1년 단위로 실시하되 체류연장 요청시 자동연장
  - \* 2주 이내 단기출장자는 체류수속 면제
- 부지, 여타 작업구역 및 부지-숙소간 코리도지역의 자유통행 보장
- 선덕공항 등 관련지역 여행시 24시간전 통보만 하면 여행가능
  - 기타 공무상 연계지역으로 여행시 KEDO측 요청에 의해 북측은 여행증명서 발급
  - \* 비상시는 통보후 즉시 여행가능

□통관

- 개인 수하물·휴대품 통관은 기계검사를 원칙으로 하여 통관편의 확보
  - 기계검사결과 금수품 휴대혐의가 제기되는 경우만 개장검사
- 현금·유가증권 등의 제한없는 반출입 근거 마련
  - 1인당 미화 3천불 상당까지는 세관신고도 면제
- 화물통관은 보세구역 및 출입지점중 KEDO측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
- 보세구역내 화물통관은 원칙적으로 통관검사 요청후 2일 이내 실시
  - \* 통행 의정서상 출입지점외의 다른 지점(평양, 나진 등)을 통해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KEDO 측 요청에 의해 부지내 보세구역까지 운송후 통관

□검역

- 검역은 인원, 동·식물 및 가공품, 의약품, container 및 포장재료, 수송수단을 대상으로 실시
  - 검역대상 병균 및 병해충은 국제기준 및 북측 자체기준을 고려하여 규정

- KEDO 인원은 필요한 예방접종 증명, 동·식물은 관련검역 증명을 소지
    - 예방접종 증명은 전염병 발생상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요구하며 미소지한 경우에도 KEDO측 의료시설에서 접종 가능
  - 향후 우리측의 필요에 따라 일부 채소류등 재배가 가능토록 사안별 합의에 의해 식물종자 반입 가능
  - 검역절차는 KEDO 직원 입회하에 진행해야 하며 검역상 필요시 시료채취는 가능하되 인체는 대상에서 제외
  - 식료품의 경우 장시간 경과시 변질문제 등을 고려하여, 검역은 통관절차와 동시 진행
  - KEDO측은 부지내의 위생·방역·전염병방지 활동을 자체적으로 실시
  - KEDO와 북한측은 질병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위해 상호협조하며 전염병 발생시 각각 자기측 인원에 대해 전염병 방지조치를 실시
- 해상수송
- KEDO 선박에 대한 안전항해 보장
    - 항해중 비상사태시 북한측이 국제관례에 따라 인근항구 피항 등을 포함한 적절한 지원을 즉시 제공
  - 선박운항 관련 통지절차 및 통신방법은 통행의정서 및 국제관례 준용
  - 연안항로를 이용하는 소형선박은 3,000GT이하로 규정
  - 입항관련 검사(CIQ)를 위한 북측 검사요원의 승선은 최대 14명 이하로 제한
  - 부두 화물작업시 KEDO측에 최대 편의제공 및 작업중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국제관례에 따라 보상
  - 선박 검사는 원칙적으로 선교, 기관실, 통신실, 보세창고등 공공구역만 실시
    - 통신장비는 도선구역에서부터 봉인 가능하나, 필요시 또는 항구에 적절한 국제 통신시설 미비시 사용 가능
    - 여객선·바지선은 도선구역-항구까지의 구간에서 항해장비를 계속 사용하며, 화물선만 항해장비 봉인

\* 항구 정박중에는 항해장비 동력 스위치 봉인 가능

○ 항만요금은 북한측이 외국선박에 적용하는 요금의 75% 수준 적용

\* 선박톤세, 입항세 등 세금 성격의 요금은 면제

□ 육 상 수 송

○ 등록 및 면허대상 장비는 수송장비로 한정(건설장비는 원칙적으로 제외)

\*통관을 완료한 수송장비는 KEDO 인원이 기존 면허증으로 부지까지 직접 운전하여 갈 수 있고  
정식 등록전 북측 관계자 입회하에 부지간 운행 가능

○ 건설장비를 제외한 수송장비에 대해서만 연1회 기술검사 실시

○ 교통사고 발생시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 의정서 규정에 따라 처리

-사고에 대한 사실 확인은 KEDO 영사와 북측관계자 입회하에 실시

-사고현장은 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환자에 대한 응급조치 가능

□은행 서비스 및 비북한 은행 설립

○ 조선무역은행이 지점을 설치하여 KEDO 측 은행의 출장소 설립시까지 경수로 사업관련 은행  
업무(예금, 송금, 환전 등)를 수행

-KEDO측의 필요시 외화대출 및 당좌대월도 가능

○ 예금비밀 보장 및 예치금 등에 대한 보호의무 부과

○ KEDO측이 대상은행을 선정후 출장소(지점) 설립을 북한에 요청하면 북측은 15일 이내에 동  
의해야 하며, 대상은행은 북측의 동의통지를 받은 즉시 영업 가능

-KEDO은행 출장소의 부지내 설립에 대해서는 북한측의 은행관련 법령의 적용 배제

○ KEDO은행 출장소는 지점과 같이 모든 은행업무 수행 가능

-출장소는 공사착공 14개월의 경과 또는 부지공사 완공중선도래 시점에 지점으로 승격

○ 경수로사업관련 합영은행 설립시 그 일방의 북측 당사자는 조선무역은행으로 합의



□보험 서비스

- 자동차 제3자 책임보험은 KEDO측의 판단에 따라 북측 보험회사(조선국제보험회사)를 이용 가능

\*필요시 제3국 보험회사도 이용

- 보험료 납입 이전에도 차량운행이 가능토록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가입(보험증서 발행) 즉시 발생

- 사고시에는 KEDO영사직원의 참여하에 북측 교통안전기관이 사실 확인

-다만, 부지내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회사 감정원과 KEDO 영사직원이 함께 사실확인

- 북측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KEDO 인원의 피해방지를 위한 특약조항 마련

-보험회사는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별도로 KEDO측에 손해 보상 요구 불가

-피해자측에서 피보험자에게 추가적 보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

□항공

- 북경-순안(평양인근 공항)간 정기노선 이용가능 근거 확보

- 북경-선덕(부지인근 공항)및 순안-선덕간 전세기 이용가능

-KEDO측 구매자-북한간 합의하는 공정한 요금 적용

-북측은 선덕공항 이착륙시 안전관련 제반조치 시행

-비행기 기종은 우리측 항공전문가의 안전성 심의를 거쳐 선정

- 항공기 운항지연 및 계약취소에 대한 보상은 지연 및 취소에 책임이 있는 측이 보상

- 항공사고 발생시 배상은 북측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협정(바르샤바 협약)에 따라 실시

□통신

- 부지-한국간 통신망은 중계국을 경유 구성

-부지와 한국간 전용회선은 부지공사 착수와 함께 개설·운영

- 다만 IDD(공중통신망)는 착공후 14개월 또는 부지정지공사 완료중 선도래 시점부터 사용
- 통신망 고장시 북측 관계자의 입회하에 예비통신 장비(INMARSAT 휴대전화 장비)사용
- 통신요금은 동북아지역과 북미지역으로 구분 각각 단일요금 적용
- 부지내 구내교환 설비 설치
  - 위키토키는 차량 또는 사무실에 설치 사용도 가능
- 위성 TV수신은 착공과 동시 가능하며 설비는 KEDO가 독자적으로 운영

□우편

- 북한은 양해각서 발효 3주후부터 부지내 우체국을 설치·운영
- 초기에는 북경을 통한 개낭 중계 방식을 이용하되 부지정지 공사 착공후 14개월 또는 부지정지공사 완료중 선도래 시점에 폐낭 중계로 전환
- 우편물의 종류는 편지, 인쇄물, 소포 등을 모두 취급
- 주소는 "Seoul Korea"+"국내주소"/"KEDO Kumho"+"북한주소"로 표기하며, 국내 및 북한주소는 한글 표기
- 우편요금은 미국 및 동북아지역으로 구분하여 요금을 책정하고 현금으로 지불
- 폐낭으로 전환시 북한과의 요금정산 및 분실·훼손시 보상은 UPU 조약 준용

□노무, 물자, 시설 및 서비스 사용을 위한 일반원칙

- 개별계약은 KEDO와 북측 관련기관을 경유하여 공급자와 직접 체결
  - 공급자가 미리 선정된 경우에는 직접계약도 가능
- 사용자의 북측 노동자의 선정, 작업지시 등 노동력 관리권한 확보
- 미숙련근로자의 임금은 간접비를 포함한 기본임금 110불로 하고 중식 및 초과근무수당 제공
- 적정한 단위사업에 대하여는 하도급업자의 이행보증과 책임하에 북측 기업에 대한 도급 가능

- 북측의 물자공급시 공급자측의 품질보장, 운송책임, 이행보증, 신용장 개설 등의 계약 이행수단 확보

□의료

- KEDO 의료진 파견 및 부지내 자체 의료시설 운영
  - 북한 의사 및 간호원 채용 및 북한 근로자에 대한 응급치료 실시
- 함흥 인민병원을 이용한 KEDO 의료진의 KEDO 환자 치료 및 북한의료진과 협진 가능
  - 양측 의료진의 협의에 따라 필요시 함흥 인민병원보다 시설·장비가 우수한 병원 사용 가능
- 북한병원은 KEDO 환자에 대한 모든 진료기록을 KEDO측에 제공하고 의료사고시 협의 처리 (공동책임)
- 주계약자(한진)는 필요한 구급차를 북한에 반입·사용
- KEDO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환자를 북한밖으로 후송 가능
- 환자가족 방문·간병에 대한 북측의 최대한 협조 보장

□경제적 해상로

- 「통행의정서」상의 인원 및 물자수송 해로를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해로로 교체
  - 동해기점 200마일에서 182마일로 조정
  - \*1.5~2시간 단축효과 기대
- 향후 적절한 시점(500명 이상의 KEDO 인원이 파견되거나 착공후 14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중 선도래 시점)에 보다 경제적인 해로로 교체하기로 약속

#### 다. 부지준비공사 착공

KEDO와 북한간 부지준비공사 착공을 위한 19개 분야 세부절차가 합의됨에 따라 공사착공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다.

먼저 북한연해를 따라 설정된 바지선 항로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한 바지선의 시험 운항이 1997년 7월 15일부터 7월 20일까지 실시되었고, 경수로부지 진입도로인 양화항-부지간의 도로보수공사가 1997년 7월 18일 개시되었으며, 1997년 7월 24일부터는 경수로사업부지와 남한과의 우편이 개통되었으며, 1997년 7월 25일에는 한전 및 현대건설·대우·동아건설·한국중공업으로 구성된 합동 시공단의 초기건설인력 70여명과 약 9,000톤 규모의 중장비 및 자재가 건설현장에 투입되었다.

1997년 7월 28일에는 KEDO 인원에 대한 영사보호와 KEDO-북한간 업무연락을 맡게 될 EDO 금호사무소가 개설되었으며, 분단이후 최초로 우리 정부대표 2명이 미국대표 2명, 일본대표 1명과 함께 북한에 상주하며 우리 건설인력에 대한 영사보호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1997년 7월 29일 KEDO는 북한측으로부터 270여만평에 이르는 부지에 대한 인도증을 접수하였으며, 북한의 금호지역과 한전과의 업무연락을 위한 전용통신망 8회선도 1997년 8월 4일 정식으로 개통되어 전화·팩스 등 통신서비스가 시작되었다.

또한 1997년 8월 16일 우리 정부는 4,500만달러 규모의 초기 부지준비공사에 대한 「협력사업」을 승인함으로써 한전이 국내법적으로도 북한과 경수로건설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였는데, 공사비용 4,500만 달러는 우리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에서 KEDO에 용자형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북한측은 부지일대를 신포시에서 독립시켜 함경남도 직속의 금호 특별행정구역으로 변경하고, 우리의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에 대응할 수 있는 경수로업무 전담부서로서 외교부, 원자력총국 등 관련부처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경수로대상사업국을 설치하였다.

이렇듯 세밀한 준비과정을 거쳐 1997년 8월 19일 역사적인 경수로 부지준비공사 착공식이 북한의 함경남도 금호지구 경수로사업부지에서 거행되었다. 착공식 행사에는 장선섭 경수로기획단장 등 한·미·일 정부대표와 보스워스 사무총장 등 KEDO관계자 그리고 경수로 사업의 주계약자인 한전과 합동 시공단 대표 및 우리 건설인력 2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북한측에서도 원자력총국장, 경수로대상사업국장, 허종대사 등 8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착공식은 한·미·일 언론 취재단이 착공식 진행모습을 전세계에 중계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부지준비공사 착공은 미-북 제네바 합의 이후 2년 10개월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제네바합의로부터 시작된 대북 경수로지원사업이 이제 본격적인 실천단계에 돌입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남북관계 측면에서 볼 때, 분단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협력사업에 남북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의 새로운 이정표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부지준비공사는 부지정지 및 근로자숙소, 부지내 통행로 등 약 4,500만불 규모로 1년간 진행될 예정이지만, 특히 우리 정부는 금번 착공을 계기로 경수로사업이 단순히 북한의 핵문제 해결의 차원을 넘어 남북한 화해와 협력의 초석이 되고, 나아가 동북아지역에서 냉전 이데올로기의 잔재를 마지막으로 일소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부록

□남북관계일지(1996.11~1997.12)

1996년 11월

11. 1 한·미 제28차 연례안보협의회의 개최

-북한에 4자회담에 호응하고, 남북합의서에 기초하여 한국정부와 직접 대화할 것을 촉구  
(국방장관 공동성명)

- 11. 4 한·미 국방장관 회담, 북한잠수함 침투는 주권 침해 행위 규정
- 11. 8 김영삼 대통령, 잠수함 침투 사과전 대북경수로 지원 불가 언명
- 11.10 레이니 주한미대사, 북한 잠수함 침투 사과해야 4자회담 가능 발언
- 11.11 북한 외교부 대변인, 4자회담 공동설명회 거부 시사(기자회견)
- 11.11 김요웅 북한 민항총국장, 북한영공 개방시 남한포함 언급
- 11.13 정부, 판문점 「자유의 집」 신축 기공식
- 11.14 유엔사·북한, 무장잠수함사건 관련 비서장급 접촉 (판문점)
- 11.17 장정연 주한 중국대사, 4자회담 성사기대 표명
- 11.18 북한, 잠수함 등 송환 거부시 대남 보복 성명(중앙통신)
- 11.19 북한, 판문점 연락사무소 철수 및 업무중지 보도(중앙통신)
- 11.19 유엔사·북한, 무장잠수함 침투관련 비서장급 접촉(판문점)
- 11.20 북한, 판문점 연락사무소 철수는 응당한 조치 논평(중앙방송)
- 11.20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 중국에 4자회담 성사 협력요청
- 11.23 국방부 대변인, 서해상 표류 북한군 1명 구조 발표
- 11.23 북한 적십자회 대변인, 표류 북한사병 송환요구 담화
- 11.24 한·미 대통령, 북한의 4자회담 수락 촉구 공동 언론 발표 (필리핀)
- 11.24 김정일, 북한군 판문점대표부 시찰
- 11.26 서해 표류 북한군인 정광선 북한 송환(판문점)
- 11.28 북한,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의 4자회담 중재요구 비난 논평(평양방송)

1996년 12월

- 12. 5 김영삼 대통령, 북한의 사과없이 대북지원 불가(통합방위 중앙회의)
- 12. 7 북한 조평통 대변인, 잠수함 및 유해송환 촉구 담화
- 12. 9 김경호 일가족 등 탈북 북한인 17명 입경
- 12.11 도이치 미 CIA 국장, 3가지 북한장래 시나리오 제시

-남침,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한 자체붕괴, 한국과의 평화적 해결이나 통일모색

- 12.13 통일원 대변인,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5주년 즈음 성명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따라 화해와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함.

#### 12.13 노동신문,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5돌 즈음 논평

-조·미간 평화보장체계가 수립되어야 북남합의서 이행을 위한 분위기도 마련될 수 있음.

12.17 유종하 외무장관, 대북 경수로사업 정상화 위해 북한 사과 필수

12.17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12.18 미 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 연례평가보고서, 북한 인권상황 '전세계 최악' 보고

12.20 권오기 통일부총리, 잠수함 사건 해결되면 식량지원 검토

12.21 김영삼 대통령, 잠수함사건 관련 북한의 분명한 사과·재발방지 약속없는 한 대북지원 불가(특전사·동부전선 시찰)

12.24 통일원, 「남북 교역추진 현황(1988~1996)」 발표

-남북교역 시작 7년 6개월만에 총교역액 10억불 돌파

12.26 북·러, 정부간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조인(평양)

12.29 북한 외교부 대변인, 잠수함 침투사건 사과성명 발표(평방, 중앙통신)

-남조선 강릉해상에서의 잠수함 사건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그러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

12.29 통일원 대변인, 북한측 사과성명 관련 성명 발표

- 북한의 재발방지 약속 이행으로 남북간 신뢰회복과 긴장완화에 기여하게 되길 기대함.

12.30 UNC-북한군간 군정위 비서장급 접촉, 무장공비 시신(유골) 24구 송환 (판문점)

12.30 북한, 4자회담 공동설명회 참가 용의 보도 (중앙통신)

1997년 1월

1. 1 김영삼 대통령, 신년사 발표

-올해는 남북관계에서도 화해와 협력의 전기가 오길 진심으로 바램.

1. 1 북한, 당보·군보·청년보 「공동사설」 발표

-통일문제는 민족적인 문제인 동시에 유관국들도 책임을 느끼고 적극 협력해야 할 국제적인 문제임.

- 1. 7 김영삼 대통령, 북한에 「4자회담」 호응 재촉구 (연두 기자회견)
- 1. 8 KEDO-북한, 대북경수로 제공을 위한 서비스의정서와 부지의정서 서명
- 1. 15 통일원 대변인, 북한·대만간 핵폐기물 매립 협정체결 중지 촉구 논평
- 1. 22 북한주민 두가족(김영진, 유송일) 8명, 서해 해상 표류중 구조·귀순

1997년 2월

- 2. 6 패트릭 휴즈 미국방정보국장, 북한원조식량 군사용전용 언급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 2. 12 외무부,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비서 황장엽 한국망명 발표
- 2. 12 북한 외교부, 노동당 국제담당비서 황장엽 납치주장
- 2. 15 아시아·유럽회의(ASEM),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관련 성명 채택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며 그 이전까지는 현행 정전협정이 유지 되어야 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남북한간에 대화가 이뤄져야 함.

- 2. 17 북한 외교부 대변인, 황장엽 망명목인 시사 (중앙통신 기자회견)

-변절자는 갈테면 가라는 것이 우리 입장임.

- 2. 21 최광, 북한 인민무력부장 사망
- 2. 26 카트만 미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대행, 대북 경제제재 해제는 한반도 평화체제가 선행 되어야 가능 (미하원 아·태소위, 미국의 대북정책 청문회)
- 2. 27 김광진, 북한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사망

1997년 3월

- 3. 5 4자회담 공동선명회 개최 (뉴욕)
- 3. 6 국방부, 1997년도 한·미 T/S훈련 취소 발표
- 3. 10 합참, 북한군 5명 군사분계선 1시간동안 침범 발표
- 3. 11 번스 미국무부 대변인,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를 4자회담 진전과 연계 시사
- 3. 14 중국, 탈북 방조범 처벌 새 형법 공포
- 3. 17 북한-세계식량계획(WFP), 긴급 식량지원을 위한 이해각서 조인 (평양)
- 3. 19 번스 미국무부 대변인, 4자회담 성사전제로 미국내 북한자산동결 해제 검토 언급
- 3. 26 권오기 통일부총리, 대북정책의 근본기조는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북한의 완만한 변화 유도 라고 언급 (아사히신문 회견)
- 3. 31 통일원 대변인, 민간단체 대북지원 확대 허용 발표  
-쌀을 포함한 곡물지원과 경제단체를 통한 기업체의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

1997년 4월

- 4. 5 북한, 미 카길사와 미국산 밀 3만톤 반입 합의
- 4. 8 북한행 KEDO실무단, 동해항 출발
- 4. 10 비동맹 외무장관회의, 한반도 문제 평화적 해결 촉구 (인도 뉴델리)
- 4. 11 일본 산케이신문, 북한 노동1호 미사일 10기 동해안 배치 보도
- 4. 14 권오기 통일부총리, 민간부문의 대북지원은 창구단일화로 지원 당부 (전경련 남북경협 위원회 초청강연)
- 4. 12 북한외교부 대변인, 4자회담 개최와 식량지원은 별개문제 논평
- 4. 14 IPU 서울총회, 대만핵 북한 이전 반대결의안 채택
- 4. 16 한·미·북, 4자회담 공동설명회 후속협의 개최 (뉴욕, 4. 16~4. 17, 4. 19~4. 21)
- 4. 18 강영훈 한적총재, 북측에 식량지원 및 물품제공 절차 협의위한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제의 대북전통문 발송
- 4. 20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비서, 한국 도착
- 4. 24 강영훈 한적총재, 남북 적십자요원 판문점 접촉 제의 대북전통문 발송
- 4. 25 미·일 양국정상, 북한의 4자회담 호응 촉구 (공동기자회견)
- 4. 28 이성호 북적 위원장대리, 적십자접촉 관련 대남전통문 발송

- 5. 3일 북경에서 접촉 기대

- 4. 30 강영훈 한적총재,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북경개최 수용 대북전통문 발송

1997년 5월

- 5. 2 이성호 북적 위원장대리,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대표단 명단 대남전통문 발송

-단장 백용호, 대표 정영춘·김성림

- 5. 3 남북적십자 실무대표 접촉 (북경, 5. 3, 5. 5)
- 5. 6 북적 중앙위 대변인, 지원조건 구체적 제시하면 적십자회담 재개 용의 언급
- 5. 12 북한주민 2가족(안국선, 김원형) 14명 귀순
- 5. 16 강영훈 한적총재,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판문점 또는 서울·평양 개최 제의 대북전통문 발송
- 5. 17 이성호 북적 위원장대리, 북경접촉으로 수정제의 대남전통문 발송
- 5. 20 강영훈 한적총재, 5. 23 북경접촉 수락 대북전통문 발송
- 5. 23 제2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북경, 5. 23~5. 26)

-남북적십자간 「대북구호 전달절차에 관한 합의서」 채택 (5. 26)

- 5. 27 EU, 4자회담 수용촉구 대북성명 발표
- 5. 29 북한탈출자(홍진희) 가족 등 5명 귀순

1997년 6월



- 6. 2 강영훈 한적총재, 이성호 북적 위원장대리 앞으로 대북지원 (지정기탁) 제1차 구호물자 수송 계획 통보
- 6. 5 번스 미국무부 대변인, '중국은 4자회담의 주요 당사국' 언급
- 6. 7 이성호 북적 위원장대리, 대북구호물품 인수계획 및 한적 인도요원 인적사항 통보 요청
- 6. 7 강영훈 한적총재, 대북지원 제1차 구호물자 인도요원 인적사항 통보
- 6. 9 이성호 북적 위원장대리, 구호물자 지원관련 한국측 인도요원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각서 통보
- 6. 10 일본 산케이신문, 중국이 북한난민 유입 저지위해 군동원 보도
- 6. 12 권오기 통일부총리, 북한 이탈주민 수용시설 건립 1998년 말까지 완공예정 언급
- 6. 16 미국무부 대변인, 북한과 미사일회담 정례화 추진 언급
- 6. 23 이성호 북적 위원장대리, 대북식량지원 제1차 지정 기탁분 분배결과 통보
- 6. 24 김영삼 대통령, DMZ보존 남북한 협력 제의 (유엔 환경총회 연설)
- 6. 24 KEDO-북한, 채무불이행시 조치의정서 서명·발효
- 6. 30 한·미·북, 4자회담 개최를 위한 차관보급 3자협의 개최 (뉴욕)

1997년 7월

- 7. 9 김영삼 대통령, 북한에 대남 적화노선 포기 촉구 (민주평통 8기 출범식)
- 7. 10 북한, 황장엽 기자회견 관련 4자회담 무산 경고 (민민전 방송)
- 7. 12 북한, 북한 비난 사설관련 조선일보사에 보복 위협 (평양방송)
- 7. 12 강영훈 한적총재, 이성호 북적 위원장대리 앞으로 제3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제의 대북전통문 발송
- 7. 15 이성호 북적 위원장대리, 강영훈 한적총재의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제의에 대한 수락 회신
- 7. 14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발효
- 7. 23 제3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개최 (북경, 7. 23~7. 25)

-제2차 구호물자 전달관련 합의서 타결 (7. 25)

- 7. 24 경수로사업 관련 남북한 우편물 교환 시행
- 7. 27 아세안 안보포럼(ARF), 한반도 정전협정 계속유지 성명 채택
- 7. 28 KEDO, 함남 금호지구에 현장사무소 개설

1997년 8월

- 8. 4 대북경수로 관련 남북간 통신개설
- 8. 4 정원식 한적총재, 제2차 대북지원계획 통보 대북전통문 발송
- 8. 5 4자회담 제1차 예비회담 개최 (뉴욕, 8. 5~8. 7)
- 8. 8 정원식 한적총재, 제2차 대북지원 첫번째 수송계획 통보
- 8. 8 이성호 북적 위원장대리, 대북 구호물자 인수계획 통보
- 8. 9 노동신문 사설, 「미군주둔 이유로 남북 직접대화 거부」 주장
- 8. 10 정부, 경수로 건설부지인 북한 신포 금호지구를 국내 사업장으로 규정

- 8. 11 이성호 북적 위원장대리, 한적의 제1차 대북식량지원 분배내역 통보
- 8. 12 정원식 한적총재,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추진 언급 (남북적십자회담 26주년 기자간담회)

-판문점 등 남북한이 합의하는 장소이면 어디든지 무방.

- 8. 15 김영삼 대통령, 「한반도 평화정착 4대방향」 등 제시 (광복절 경축사)

-무력포기, 상호존중, 신뢰구축, 상호협력

- 8. 15 오익제 전 천도교 중앙교구회 교령, 입북
- 8. 16 북한, 4자회담이 결실없이 끝난 책임을 미국측에 전가 (노동신문)
- 8. 19 경수로 부지공사 착공식 개최 (함남 신포 금호지구)
- 8. 21 유엔 인권소위, 북한주민 출입국 자유 등 촉구 결의안 채택 (제네바)
- 8. 22 북·일, 수교 본회담 조속개최 합의
- 8. 23 북한, 유엔 「인권협약」 탈퇴 선언 (중앙방송)
- 8. 27 북한 외교부 대변인, 장승길대사 형제 실종 공식 확인
- 8. 27 루빈 미국무부 대변인, 장승길 북한대사 미국내 임시 입국허가 상태

#### 1997년 9월

- 9. 3 권오기 통일부총리, 북한 지원사업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교류 확대에 기여 언급 (서울클럽 주최 초청강연)
- 9. 10 북한, 주체연호 사용 보도 (중앙방송)
- 9. 18 4자회담 제2차 예비회담 개최 (뉴욕, 9. 18~9. 19)
- 9. 23 미·일, 신방위협력지침 합의
- 9. 24 KEDO 연례총회 개최 (뉴욕, 9. 24~9. 26)

-KEDO 집행이사회, 북한 위기사태시 파견인원 신변안전 결의

#### 1997년 10월

- 10. 5 김정일 사진계재 노동신문 훼손 관련, 경수로공사 일시 중단사건 발생
- 10. 7 남북한, 대구-평양 관제소간 직통전화 설치 합의 (태국 방콕, 10. 7~10. 9)
- 10. 8 김정일, 조선노동당 총비서 공식 추대
- 10. 14 유종하 외무장관, 경수로 의정서 위반시 추가비용의 북측부담 통보(국회 통일외무위 국정감사)
- 10. 17 국방부 대변인, 대성동 주민 2명 납북사건 발표
- 10. 21 납북 대성동 주민 2명, 판문점 통해 귀환
- 10. 29 미·중 정상회담, 북한의 4자회담 참여 촉구
- 10. 30 유엔인권위, 북한의 「국제인권협약」 탈퇴 불가 성명

1997년 11월

- 11. 4 북한 외교부 대변인, 4자회담 참가는 우리 자신이 결정할 문제
- 11. 7 이성호 북적 위원장대리, 제4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제의 대남전통문 발송
- 11. 8 정원식 한적총재, 남북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제의 대북 전통문 발송
- 11. 8 북송 일본인처 고향방문단 제1진 15명 일본방문 (11. 8~11. 15)
- 11. 13 남·북·중, 속초 - 나진·선봉 카페리항로 개설 실무협의 개최(북경, 11. 13~11. 14)
- 11. 16 북한, KBS 2TV드라마 '진달래꽃 필 때까지' 제작 중단요구 및 관련자 암살 위협 보도 (평양 방송)
- 11. 19 남북한, 향로관제소간 직통전화 개통
- 11. 20 안기부, 북한 직파 부부간첩 검거(10. 27)관련 수사결과 발표

-서울대 고영복 명예교수, 지하철공사 심정웅 분소장 등

- 11. 21 4자회담 제3차 예비회담 개최 (뉴욕)

-4자회담 본회담 개최(1997. 12. 9,제네바) 합의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및 긴장완화를 위한 제반문제」를 의제로 설정

- 11. 23 올브라이트 미국무장관, 주한미군 철수문제 4자회담 의제에서 제외 언급 (ABC 방송 대담)
- 11. 24 전기침 중국 외교부장, 4자회담서 건설적 역할 수행 언급

1997년 12월

- 12. 8 북한 「조평통」 대변인, 금호지구내 남한측 경수로 건설자 부재자 투표 불허 담화
- 12. 8 정원식 한적총재, 제4차 북경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12. 22 개최제의 대북통지문 전달
- 12. 9 4자회담 제1차 본회담 개최 (제네바, 12. 9~12. 10)
- 12. 11 이성호 북적 위원장대리, 제4차 북경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12. 22 동의 대남전통문 발송
- 12. 13 통일원 대변인,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6주년 논평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한 남북간의 모든 합의사항들이 조건없이 준수·이행되어야 함.

- 12. 19 대만 연합보, 대만 핵폐기물 북한 이전계약 취소 보도
- 12. 19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강조 및 남북 정상회담 시사 (대통령 당선 기자회견)
- 12. 22 제4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개최 (북경, 12. 22~12. 24)